



# NFT 미술시장 기초 조사 및 제도 연구용역

## 최종보고서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송 창 선  
책임연구원 이 재 경

## 제 출 문

---

예술경영지원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NFT 미술시장 기초 조사 및 제도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9월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송 창 선

책임연구원 이 재 경

---

## 연구진

---

연구책임 이재경      건국대학교 상허교양대학

공동연구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고승혜      백아트갤러리  
박겸숙      아트노이드178  
김민지      KAIST 대학원 석사  
심성우      SBS 법무팀  
이윤수      법무법인 주원

# 목 차

## I. 서론

1. 본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본건 연구의 방법 .....	3

## II. NFT의 의의 및 유형

1. NFT의 등장 배경 .....	4
2. NFT의 개념 .....	5
3. NFT의 유형 .....	6
가. 가상자산형 .....	6
나. 증권형 .....	8
다. 실물형 .....	9
라. 기타형 .....	10

## III. NFT 시장 현황 및 거래 현황 조사

1. NFT 시장 규모 및 주요 현황 .....	12
가. NFT 시장 규모 분석 .....	12
나. NFT 주요 기술과 산업 동향 .....	20
2. NFT 미술시장 기초조사 .....	32
가. NFT 미술시장 사례 연구 개요 .....	32
나. 국내 NFT 미술시장 대상별 기초조사 .....	36

다. 국외 NFT 미술시장 대상별 기초조사 .....	74
라. 미술계 인식 조사 .....	110
3. NFT 시장의 전망 .....	139
가. NFT와 신기술 연계가능성 .....	139
나. NFT 관련 신기술 유형 .....	140

#### IV. NFT 아트의 저작권법적 쟁점

1. 서론 .....	150
2. NFT가 저작물 생태계에 미친 효과 .....	151
3. NFT 아트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153
가. 물건의 ‘소유’ 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의 구분 .....	153
나. NFT에 대한 소유권 개념의 인정 여부 .....	153
4. NFT 아트 콘텐츠의 저작물성 .....	155
가. ‘저작물’ 의 정의 .....	155
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	156
다. 표현 .....	157
라. 창작성 .....	158
마.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보호 방법 .....	160
5. NFT 아트 콘텐츠와 저작자 .....	161
가. 저작자 .....	161
나. 공동저작자 .....	161
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	162
6. NFT 아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의 내용 .....	164
가. 저작인격권 .....	164

나. 저작재산권 .....	164
다. 저작인접권 .....	169
7. NFT 아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침해 및 보호방안 .....	170
가. 저작권 침해의 양태 .....	170
나. 저작권의 보호방안 .....	172
다. NFT 플랫폼의 책임 .....	173

## V. NFT 아트의 플랫폼 관련 쟁점

1. NFT 플랫폼의 법적 지위 .....	176
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	176
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해당성 .....	178
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성 .....	178
2. NFT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 .....	179
가. NFT 플랫폼의 계약상 책임 .....	179
나. NFT 플랫폼의 불법행위 책임 및 형사책임 .....	201
다. NFT 플랫폼의 역할 .....	203
라. NFT 플랫폼과 보험 .....	205
마. 국외 NFT 플랫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	207

## VI. NFT 아트의 과세 쟁점

1. NFT의 유형과 과세 쟁점 .....	209
가. NFT의 유형 .....	209
나. NFT 유형별 과세 쟁점 .....	209

다. 과세 논의 시 유의사항 .....	210
2. NFT 아트의 유형별 과세 검토 .....	211
가. 가상자산형 .....	211
나. 증권형 .....	218
다. 실물형 .....	221
라. 기타형 .....	222

## VII. NFT 아트의 ESG 쟁점

1. ESG 개념과 부상 .....	224
가. ESG 개념과 세부 요소 .....	224
나.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 .....	224
2. NFT와 환경 .....	225
가. 환경에 대한 논의 배경 .....	225
나. 대규모 전력 사용과 탄소 배출 문제 .....	225
다. 블록체인 및 NFT 업계에 부는 親ESG 바람 .....	227
3. NFT와 탈중앙화 .....	229

## VIII. 결론 .....

232

# 표 목 차

<표 III-1> NFT 플랫폼 전송 주별 총 전송 가치와 평균 거래 가치 .....	14
<표 III-2> NFT 활성 구매자와 판매자 수 .....	15
<표 III-3> 주요 NFT 마켓의 지역 월간 웹 트래픽 .....	15
<표 III-4> NFT 유형별 판매량 비중 .....	16
<표 III-5> NFT 유형별 거래량 비중 .....	17
<표 III-6> NFT 시가총액과 블루칩 NFT 프로젝트의 우량지수 .....	18
<표 III-7> 지난 1주간 가장 고가에 판매된 NFT 컬렉션의 비중 (2022. 6.) ....	19
<표 III-8> 주간 블루칩 NFT의 평균 ETH 및 USD 가격 .....	19
<표 III-9> NFT 미술시장 기초 조사 연구 조사 일정 .....	34
<표 III-10> NFT 미술 거래 기초 조사 인터뷰 내용 .....	35
<표 III-11> NFT 미술 거래 기초 조사 미술계 집단 서면 인터뷰 내용 .....	35
<표 III-12>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개요 비교분석표 .....	69
<표 III-13>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운용 방식 비교분석표 .....	70
<표 III-14>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결제 방식 비교분석표 .....	71
<표 III-15>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작품운용방식 비교분석표 .....	72
<표 III-16>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법·세제 관련 비교분석표 .....	73
<표 III-17>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개요 비교분석표 .....	107
<표 III-18>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운용 방식 비교분석표 .....	108
<표 III-19>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결제 방식 비교분석표 .....	109
<표 III-20>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작품운용방식 비교분석표 .....	109
<표 III-21>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법·세제 관련 비교분석표 .....	110
<표 III-22> NFT 아트에 대한 미술계의 인식조사 분석 .....	111



<표 III-23> NFT 아트의 정의와 범위_작가 의견용 .....	113
<표 III-24> NFT 아트의 정의와 범위_NFT 아트 종사자 의견 .....	113
<표 III-25> NFT 아트의 정의와 범위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	114
<표 III-26> NFT 아트 거래가 새로운 미술품 거래방식에 미치는 영향_작가 의견 .....	115
<표 III-27> NFT 아트 거래가 새로운 미술품 거래방식에 미치는 영향_NFT 아트 종사자 의견 .....	116
<표 III-28> NFT 아트 거래가 새로운 미술품 거래방식에 미치는 영향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	117
<표 III-29> NFT 아트 거래 사업의 특징점_작가 의견 .....	118
<표 III-30> NFT 아트 거래 사업의 특징점_NFT 아트 종사자 의견 .....	118
<표 III-31> NFT 아트 거래 사업의 특징점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	119
<표 III-32> NFT 아트 거래 사업이 국내 미술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_작가 의견 .....	120
<표 III-33> NFT 아트 거래 사업이 국내 미술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_NFT 아트 종사자 의견 .....	121
<표 III-34> NFT 아트 거래 사업이 국내 미술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	122
<표 III-35> 블록체인 기술(NFT 아트 거래 사업 포함)이 미술품 거래에 온/오프라인에 끼치는 영향_작가 의견 .....	123
<표 III-36> 블록체인 기술(NFT 아트 거래 사업 포함)이 미술품 거래에 온/오프라인에 끼치는 영향_NFT 아트 종사자 의견 .....	124
<표 III-37> 블록체인 기술(NFT 아트 거래 사업 포함)이 미술품 거래에 온/오프라인에 끼치는 영향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	125
<표 III-38> 우리나라에서 현재 NFT 아트 거래 사업이 열기를 띠고 있는 이유_작가 의견 .....	126
<표 III-39> 우리나라에서 현재 NFT 아트 거래 사업이 열기를 띠고 있는 이유_NFT 아트 종사자 의견 .....	126
<표 III-40> 우리나라에서 현재 NFT 아트 거래 사업이 열기를 띠고 있는 이유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	127
<표 III-41> NFT 아트 거래가 해외 구매자를 확장시키는 데에 미치는 영향_작가 의견 .....	128
<표 III-42> NFT 아트 거래가 해외 구매자를 확장시키는 데에 미치는	

영향_NFT 아트 종사자 의견 .....	129
<표 III-43> NFT 아트 거래가 해외 구매자를 확장시키는데 미치는 영향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	130
<표 III-44> 국내 NFT 아트 거래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 및 변화_작가 의견 .....	131
<표 III-45> 국내 NFT 아트 거래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 및 변화_NFT 아트 종사자 의견 .....	132
<표 III-46> 국내 NFT 아트 거래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 및 변화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	133
<표 III-47> 현행 NFT 아트 거래 사업이 미술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대처 방법_작가 의견 .....	134
<표 III-48> 현행 NFT 아트 거래 사업이 미술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대처 방법_NFT 아트 종사자 의견 .....	135
<표 III-49> 현행 NFT 아트 거래 사업이 미술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대처 방법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	136
<표 III-50> NFT 아트가 확장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제도적 방향_작가 의견 .....	137
<표 III-51> NFT 아트가 확장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제도적 방향_NFT 아트 종사자 의견 .....	138
<표 III-52> NFT 아트가 확장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제도적 방향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	139
<표 VI-1>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평가 사례(사례1) .....	215
<표 VI-2>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평가 사례(사례2) .....	216
<표 VI-3>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비교 .....	217

# 그림 목 차

<그림 III-1> ERC-20, ERC-721, ERC-1155 기술 발전 과정 .....	20
<그림 III-2> 해시 함수 작동 방식 .....	21
<그림 III-3> NFT tech stack layer .....	23
<그림 III-4> Total NFT Secondary Sales of NFTs .....	144
<그림 III-5> 블록체인별 NFT 시장 점유율 (All-Time), Cyrptoslam .....	145
<그림 IV-1> 잭 도시 트위터 공동 창업자의 첫 트윗 .....	159
<그림 VII-1> ESG의 세부 요소 .....	224
<그림 VII-2> NFT 플랫폼의 탄소 배출량 .....	226

# I. 서론

## 1. 본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NFT시장의 새로운 거래구조 및 그에 대한 연구 필요성

- 국내외에서 NFT 시장 규모가 2020년 하반기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메타버스, 인공지능 등 IT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에 힘입어 NFT를 포함한 각종 문화예술 아이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됨에 따라 NFT 및 관련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 수년간 국내외 매체에서 NFT가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새롭게 등장한 현상인 만큼 아직 NFT의 기본 개념을 포함하여 NFT 아트에 대한 정의, 현황,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 및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저작권 침해, 내부거래, ESG(환경) 등 문제에 노출되어 지속가능성이 결여된 채 건강하지 못한 시장 환경이 형성되고 있음
- 특히, 2022년초 루나 사태를 포함하여 가상화폐시장의 불안정에 따라 국내외 NFT 시장도 흔들리는 상황을 겪으면서, 국내외 NFT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 및 각종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이에 지식재산권 및 금융법 등 NFT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인 쟁점을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NFT 미술시장에 대한 기초 조사를 통해 현황 파악 및 주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면서, 창작자와 소비자, 유통업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NFT 시장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함.

나. 연구의 목표

- NFT 시장에 대한 조사 및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NFT 아트 거래에 대한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함
- 국내의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NFT 등 가상자산 과세의 시행에 따른 과장, 과세 행정상 준비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연구하고, 나아가 순기능과 부작용을 예측함
- 이와 함께, NFT 시장에 대한 입법적, 제도적 정책 제안을 통해 유통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나라 NFT 산업의 선진화, 국제화에 기여하고자 함

## 다. 연구 범위

### 1) 연구 범위 개관

#### 가) NFT와 NFT 아트의 개념 정의 및 성질

- 개념 정의 및 제작 과정, 적용 기술 및 산업 생태계 분석
- 실무적/법률적 특성 (가상자산, 시각예술 등 다른 아이템의 성질 및 상이점 등)

#### 나) NFT 시장 및 거래 현황 조사(국내외)

- NFT 시장 규모 및 주요 현황(주요 기술 및 산업 등)
- NFT 미술시장 규모 및 주요 현황(플랫폼, 작가, 마켓 플레이어, 컬렉터, 작품 유형, 거래유형, 미술시장 내 인식 등 기초조사) \* 업계 관계자 및 창작자 대상 설문 및 인터뷰 조사
- NFT 시장의 전망 (메타버스 등 신기술과 연계 확장 가능성 및 유형)

#### 다) NFT 관련 이슈 및 정책적/법률적 쟁점 검토

- NFT 아트의 기회 및 위험 요인,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
- NFT 관련 법률 및 각종 규정, 정책에 대한 검토 (저작권법, 세법 등)
- NFT 아트 거래 플랫폼 약관 비교 및 플랫폼의 책임 범위 (약관규제법 등)
- ESG 환경 및 윤리 문제

#### 라) NFT 거래/약관 가이드라인 및 분쟁 해결 방안 제시

- NFT 거래 및 플랫폼 약관 가이드라인 마련
- NFT 창작자 및 판매/구매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 제시
- NFT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유형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 제시

#### 마) 정책 제안

- NFT 사업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입법, 정책 제안
- NFT 사업자, 창작자를 위한 필요 지원 정책
- NFT 관련 법률 및 각종 규정, 정책에 대한 제안
- 디지털 아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공공의 역할 제시
- NFT 플랫폼, 이익단체(협회, 관계자 모임)의 역할 제시 및 지원 방안

## 2. 본건 연구의 방법

### 가. 연구 계획

- 본 연구는 효과적인 연구 추진을 위하여, 크게 NFT 아트시장, 저작권, 플랫폼 (약관 등), 과세, 기타 쟁점(윤리, 환경) 등 5개의 부분으로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상호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 책임연구원은 본 연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연구원들은 자신의 전담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되 각 쟁점들에 대하여 상호 논의함으로써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으로 흐르거나 법률 규정에만 묶이는 단점을 보완함.

### 나.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경과

- 국내외 문헌 조사를 통하여 NFT 아트 시장 현황, 관련 사업체의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법령 및 각종 논문 등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규율/지원 상황,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 입법론 및 향후 과제까지 제시함.
- NFT 사업체 운영자 및 제작사, 작가 등 실무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하여 NFT 사업/시장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사업적/법률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다. 인력 투입 및 사업 운영 계획

- 1인의 책임연구원, 2인의 공동연구원, 다수 연구보조원을 활용하여 짧은 기간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하며, 세부적인 추진 일정은 예술경영지원센터와 수시로 협의하되, 2022년 9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함
- 추진 과정 중에서 개시, 중간보고회 등 총 2-3차례 보고회를 진행함.
- 최종보고회는 해당 시점까지 연구 결과물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예술경영지원센터 등과 협의하면서 최종 검수 후, 인쇄물 등을 납품함.

## II. NFT의 의의 및 유형

### 1. NFT의 등장 배경

세계적인 영어사전 출판사 영국 콜린스가 ‘올해의 단어’로 NFT를 선정했을 정도로 2021년은 단연 NFT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각 토큰마다 고유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한 암호 토큰을 말한다. 토큰은 유형·무형 자산이나 디지털 정보를 블록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이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토큰의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는 다른 비트코인과 1대1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토큰(Fungible Token)이다. 반면 NFT는 각각의 토큰이 모두 다르며, 블록체인 기술로 자산에 일련번호를 부여해 복제나 위변조를 막을 수 있다. 특히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통해 출처, 발생시간 및 횟수, 소유자 내역과 기타 정보까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품 인증서’와도 같은 기능 덕에 진위 여부나 소유권 입증에 중요한 미술품 같은 분야에 NFT 적용이 활발해졌다. 나아가 잭 도시의 최초의 트윗 캡처 파일 같이 예술품은 아니나 희소성을 가진 디지털 파일도 소장가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sup>1)</sup>

NFT는 2015년 이더리움 개발자 회의인 데브콘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최초의 NFT 서비스는 2년 뒤인 2017년에 이더리움 기반 블록체인 게임 ‘크립토키티’를 통해 등장하였다. 최초의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도 한 이 게임은 고양이를 키우는 게임인데, 다양한 고양이 캐릭터를 모으고 교배를 통해 희소성 있는 새끼를 키워서 시장에 판매하는 게임 특성상 대체가능 토큰이 도입될 수 없었다. 저마다 고유한 특성을 가진 고양이를 동일한 토큰으로 취급하면, 각 고양이의 가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크립토키티 개발사인 댕퍼랩스(DapperLabs)는 당시 막 형성된 토큰 발행 표준 ERC-721을 적용해 증서 방식의 토큰을 발행했다. 각기 다른 디지털 자산임을 인정하는 NFT 방식이 도입되면서 크립토키티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었고, 이후 NFT는 디지털상에서 소유권을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게임뿐만 아니라 미술품 시장, 커뮤니티, 메타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로 범위를 확대해나갔다.<sup>2)</sup>

1) 매일경제, NFT 광풍 부는데... “디지털 경제 만능열쇠” vs “옥석 가려야”, 2022. 1. 6.

2) 월간중앙, [문화 트렌드] NFT(대체 불가능한 암호화폐) 바람 타고 블루오션 뛰어드는 미술계, 2021.

## 2. NFT의 개념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 토큰 (Non Fungible Token)’의 약자이다. 반대말인 대체 가능 토큰 (Fungible Token)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같은 수량만큼 서로 맞교환할 수 있는 암호화폐이다. 그러나 대체 불가능 토큰은 각 토큰마다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받아 다른 토큰과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sup>3)</sup> NFT는 디지털 자산의 원본성, 진본성, 유일성을 증빙하며, 창작자 및 소유자 정보와 거래 내역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한다.<sup>4)</sup> 그러나 NFT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본 NFT의 3가지 구조의 특성을 파악하여 세분화해 분석해야 한다.

NFT의 3가지 구조는 ① NFT 콘텐츠 데이터 (Contents Data), ② NFT 메타데이터 (Metadata), ③ 스마트 컨트랙트 (Smart Contract)이다.<sup>5)</sup>

첫째, NFT 콘텐츠 데이터는 원본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데이터로서 블록체인 외부의 저장매체인 오프체인(off-chain)에 저장된다. 오프체인의 종류로는 탈중앙화 분산형 파일 시스템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나 중앙 집중형 저장 매체인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AWS) 등이 있다. 반면 온체인은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로서 코인 전송이나 트랜잭션 등을 말한다. NFT 콘텐츠 데이터를 온체인에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고용량 데이터는 블록체인 거래 지연 등의 사용성 불편을 일으키기에 대다수의 NFT 거래소들은 NFT 콘텐츠 데이터를 오프체인에 저장한다.

둘째, NFT 메타데이터는 NFT 콘텐츠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로서 작품 제목, 형태 및 크기 정보, 속성, 생성자 정보, 로열티 비율, 실제 NFT 콘텐츠 데이터의 원천 주소인 인터넷상의 위치를 포함한다. NFT 메타데이터도 IPFS나 중앙 집중형 저장 매체에 저장된다. 세계 최대 NFT 거래소인 오픈씨(OpenSea)는 NFT 생성자가 별도로 ‘프리즈 메타데이터(Freeze Metadata)’ 기능을 실행해야 NFT 메타데이터를 IPFS에 저장할 수 있으며 오픈씨는 이를 ‘레이지 민팅(Lazy Minting)’ 시스템이라 일컫는다.<sup>6)</sup>

셋째,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스마트 계약으로 소유권 확인

---

4. 17.

3) Ante, Lennart, "The non-fungible token (NFT) market and its relationship with Bitcoin and Ethereum", 2021.

4) 권혁준, 임민수, 김협, "NFT의 거래 가능성 및 확장성에 대한 고찰", 지급결제학회지, 13권1호, 2021, 258면.

5) 김승주, "NFT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50", 메이트북스, 2022, 98면.

6) 김민지, "NFT Art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예술", 아트북프레스, 2022, 71면.



및 양도, 로열티 지급 등의 기능 및 NFT 메타데이터가 보관된 인터넷 주소가 코딩 돼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상인 온체인(on-chain)에 저장되어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 3. NFT의 유형

#### 가. 가상자산형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하는 가상자산에 포함되면 투자자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이다. 현행법령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한 것이나 분산원장이라는 방식을 활용했다는 것만으로는 가상자산이라 일컫지 않는다.<sup>7)</sup> 그러나 NFT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이기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단순하게 판단하면 NFT도 가상자산이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를 열거해두었다. 먼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이 있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일정한 범용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선불전자지급수단 역시 가상자산이 아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게임물 이용을 통한 유·무형의 결과물도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이 정의하는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는 포인트 사업자 등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마지막 가상자산에 관한 예외 조항으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두었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사목).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특정금융정보법 제1조).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만을 기준으로 하여 NFT의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 전우정, “맑고 투명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71권3호, 2022, 227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업데이트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 가이드라인(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은 NFT의 가상자산 여부에 관하여 조금 더 구체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NFT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결제(payment) 또는 투자(investment) 목적일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금융연구원이 2021년 12월에 제출한 금융위원회의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NFT를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NFT의 유형은 ① 게임형 NFT, ② 결제수단형 NFT, ③ NFT 아트, ④ 실물형 NFT, ⑤ 증권형 NFT이며, 이 중 게임형 NFT와 결제수단형 NFT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NFT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해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게임산업법상 게임물의 이용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NFT가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며 NFT 발행량이 많고 실질적 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소장품을 넘어 가상자산으로 규제받을 수 있다. 반면, NFT 아트는 투자성이나 결제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가상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물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디지털화한 실물형 NFT는 수집품에 가깝고 NFT를 진품 인증 및 소유권 이전의 기능으로 활용하는 것이기에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증권형 NFT는 가상자산보다는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의 속성을 지닐 경우에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의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의 의의는 NFT의 다양한 유형에 관한 분류를 시도하고, NFT의 시각적 형태가 아닌 실질 기능을 기준으로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를 NFT의 유형을 판단하는데 일괄 적용하는 것은 다변화하며 성장 중인 초기 NFT 시장의 현 상황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 형태는 NFT 아트인데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게임형 NFT로 확장하는 경우가 있다. 제너러티브 아트 방식으로 각각 서로 다른 시각적 속성의 차이를 지닌 1만개의 NFT를 발행한 NFT 프로젝트의 경우 특정 작가의 아트 작품을 NFT 초기 생성의 모델로 도입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여러 속성의 층위를 조합해 무작위 생성하는 방식으로 NFT를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NFT 아트의 경제적 가치인 최저가(low price)를 상승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운영팀에서 다양한 사업계획안을 실행해나가기에 하위테스트 기준에 의해 증권형 NFT로 분류될 수도 있다. 또한 탈중앙화금융인 디파이(DeFi)를 NFT

아트에 접목하기도 한다.

이처럼 하나의 NFT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기에 NFT의 유형을 구분할 때 단일 분류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각 NFT의 발행 형태와 실질 기능 및 활용처를 세세히 살피는 다양한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 나. 증권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을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분류한다. 금융투자상품은 ①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②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 위해 ③ 계약서의 권리로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④ 투자성을 지닌 것을 말한다. 디지털자산인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경우 각종 인허가 및 등록제도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규제가 적용되는데,<sup>8)</sup> 금융위원회에서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단독으로서는 수집품의 기능이 전혀 없는 NFT로서 특정 자산을 다수의 사람이 분할 매수할 수 있도록 NFT화한 집합투자상품과 같은 성격을 가진 NFT를 의미할 것이다.<sup>9)</sup>

한국금융연구원의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는 ‘기능적으로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의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형 NFT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달리 말하면 NFT에 ‘증권성’이 있을 경우 해당 NFT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집품이나 예술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실물형 NFT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증권성’이 없으므로 투자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2. 4. 2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물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조각투자와는 달리,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에 관하여는 금융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sup>10)</sup> 이에 따르면 실물형 NFT 자체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것이 아닌, 실물형 NFT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다.

NFT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하위테스트(Howey Test)<sup>11)</sup>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SEC는 하위테스트<sup>12)</sup>의 4개

8) 전우정, “맑고 투명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71권3호, 2022, 215면.

9) 한국경제신문,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아니다”는 금융위의 입장, 무슨 의미일까? [한경 코알라], 2021. 12. 23.

10) 법무법인 디라이트, NFT 증권성 인정 여부, 2022. 8. 19.

11) SEC v. Howey Co., 328 U.S. 293, 301 (1946).

조항에 따라 “① 자금을 투자했는지 여부, ② 투자 수익 기대 여부, ③ 투자금이 공동 사업에 있는지 여부, ④ 수익이 받기인이나 제3자로부터 나오는지 여부”에 부합하는지를 조사한다.<sup>13)</sup>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하위컴퍼니의 농장 분양 사건은 투자계약의 성격이 있어 증권거래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하위컴퍼니는 농장 지분 구매자들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했음에도 당국에 사전 등록하지 않아 증권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946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위컴퍼니의 거래는 투자계약이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다. 실물형

실물형 NFT는 실제 유형물로 존재하는 미술품, 유형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디지털 아트, 희귀품 등을 NFT로 발행한 것이다. 실물형 NFT는 결제수단이나 투자수단으로 쓰이기 어려우며, 해당 NFT의 대상이 무엇인지와 해당 NFT가 진정한 진품증명서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핵심으로 한다. 유명 NFT 아티스트인 비플(Beeples)이나 뱅크시(Banksy)의 작품, 영국의 유명 화가인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가 자신의 그림을 NFT로 발행한 것, 러시아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2021년에 다빈치, 모네, 고흐, 칸딘스키 등 소장품 5개를 NFT로 발행한 것<sup>14)</sup>,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의 첫 트윗을 NFT로 발행한 것 등이 실물형 NFT에 포함될 수 있다.

실물형 NFT는 대부분 희소가치를 상품성으로 하며, 수집 및 소장품으로서 소비된다. 실물형 NFT는 예술품에 해당하는 NFT 아트와, 예술품은 아니지만 희소가치가 높은 NFT(가령 잭 도시의 첫 트윗)로 분류해볼 수 있는데, 예술품이 아니어도 희소성만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NFT가 다수 등장하면서 엄격한 의미의 ‘예술성’과 ‘희소성’의 개념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실물형 NFT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NFT 구매자가 갖는 권리의 성격인 것이다.

NFT를 거래한다는 것은, 오프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품인증서(메타데이터)’를 거래하는 것이라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언뜻보면 이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부동산 매수인에게 이전되게 되는데, 이와 달리 NFT 구매의 경우 NFT 구매자가 취득하는 법적 권리가 무

12) 하위테스트는 1933년 미국 정부가 플로리다에서 오렌지 농장을 운영한 하위컴퍼니(Howey Company)라는 회사의 농장 분양 사건의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IT WORLD, “이더, 증권 아니다” 미 증권위 임원 첫 입장 표명, 2018.6.18.

13) 코인데스크코리아, SEC, NFT 규제 나선다..증권성 여부 조사, 2022. 3. 3.

14) 블록체인월드, 에르미타주 박물관, 바이낸스와 고흐·다빈치·모네 NFTs 경매, 2021. 8. 31.

엇인지 불명료한 측면이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NFT 구매자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며, NFT의 대상인 디지털 자산 등에 관한 계약상 권리(라이선스)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sup>15)</sup>

## 라. 기타형

기타형 NFT는 NFT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자산이나 유형물 그 자체보다, NFT의 이용처나 목적이 더 중요시되는 것들로 분류해볼 수 있다. 가령 각종 프로젝트성 NFT, 커뮤니티나 게임에서 활용되는 NFT, 메타버스 NFT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희소성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는 점은 기타형 NFT와 실물형 NFT와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프로젝트성 NFT 중 가장 유명한 것은 ‘BAYC(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이다. 세계 최대 NFT 행사를 주관하는 ‘NFT NYC’ 사무국은 2022년 6월 23일 세계 최대 NFT 거래소인 오픈씨와 공동으로 ‘NFT 2022 어워드’를 열었는데, 오픈씨에서 거래 내역, 행사 참가자 투표 등으로 분야별 NFT를 선정한 결과 BAYC가 가장 판매량이 많은 컬렉션, 가장 혁신적인 NFT 프로젝트, 최고 NFT 사업 모델 등 다섯 개 부문에서 상을 받아 최다 부문 수상의 주인공이 되었다.<sup>16)</sup> ‘BAYC’ 외에 ‘더 메타콩즈’라는 국내의 NFT 프로젝트도 주목을 받는다. 메타콩즈는 다양한 고릴라 캐릭터를 앞세운 NFT로, 현대자동차, GS25 등 다양한 국내 기업과 협업하고 있다.

유명 게임 NFT로는 크립토키티, 엑시 인피니티 등이 있으며, 국내 게임회사인 위메이드가 MMORPG에 NFT를 적용한 미르4라는 게임도 ‘P2E(Play to Earn)’ 게임들의 급격한 성장세들과 함께 유명세를 구가하였다.<sup>17)</sup> 국내에서는 NFT 게임이 게임산업법상 게임물로 분류되어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실제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sup>18)</sup>,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 등의 P2E 게임은 등급분류가 취소되었었고, 이와 관련해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NFT는 다양한 목적과 상황에 따라 이용되고 있는데, 일부 환경단체들이 NFT를 활용해 멸종 위기종 보호 기금을 조성하는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NFT가 활

15) 문화체육관광부 외 2인,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2022, 12~13면.

16) 한국경제신문, 유망 NFT 1위는 BAYC, 2022. 6. 24.

17) 서울경제, 놀면서 돈 번다는 NFT 게임, P2E는 어떻게 가능할까?, 2021. 11. 21.

18)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가 NFT 기능으로 인한 사행성이 우려돼 등급분류를 거부했으며, 이에 운영사인 스카이프플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스카이프플은 2021년 6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해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으며, 본안 소송인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용되기도 한다.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 영국 지부는 지난 2월 ‘자연을 위한 토큰(Tokens For Nature)’ 이란 이름의 NFT를 공개했는데, 판매 수익금은 멸종 위기종 동물과 서식지 보호에 쓰인다. 남아공 야생동물 스트리밍 채널인 ‘와일드어스(WildEarth)’ 는 보호구역의 표범·사자·하이에나 25마리를 NFT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수익의 40%는 이들 동물의 서식지 관리인에 전달된다. 브라질 기업 네무스(Nemus)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열대우림을 지키고 있는데, 이미 아마존 열대우림 4만1000헥타르(ha)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NFT 판매 수익금으로 소유지를 추가하고, 지역 원주민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sup>19)</sup> 이와 같은 NFT들이 모두 기타형 NFT에 포함될 수 있다.

---

19) 테크42, 떠오르는 디지털 자산 NFT, 그런데 환경을 파괴한다고?, 2022. 4. 20.

### Ⅲ. NFT 시장 및 거래 현황 조사

#### 1. NFT 시장 규모 및 주요 현황

##### 가. NFT 시장 규모 분석

###### 1) NFT 시장 규모

시장조사기관 마켓앤마켓(MarketsandMarkets)이 발표한 ‘2027년까지 NFT 시장 전망(Non-Fungible Tokens Market - Global forecast to 2027)’ 보고서에 따르면, NFT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30억 달러에서 2027년 136억 달러로 연간 3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sup>20)</sup>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시장의 기하급수적인 증가가 NFT의 채택과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보았다.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Jefferies)는 2019년 240만 달러(28억8000만원)이었던 전세계 NFT 시장 규모가 오는 2025년 800억 달러(96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sup>21)</sup> 제프리스는 NFT를 이용한 디지털 세계 및 물리적 세계의 융합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을 신흥기술이자 신규 투자처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VMR(Verified Market Research)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NFT 시장 가치는 2030년까지 2,3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NFT 시장 가치는 약 113억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NFT 산업은 연평균 33.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음악, 영화, 스포츠를 포함한 여러 산업에 NFT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sup>22)</sup>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2030년까지 NFT 시장 규모는 3000억 달러로 추산하여 이중 560억 달러는 명품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21년에는 명품 시장 전체 매출의 1% 미만이 NFT로 추정되지만 2030년에는 10%로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sup>23)</sup> 트렌드 변화 속도가 빠른 패션 업계에서는 진품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나

20) ciokorea, NFT 시장 2027년까지 연간 35% 성장... 2027년 시장 규모 136억 달러 추정, 2022. 8. 10.

21) 코인데스크(CoinDesk), Jefferies Sees the NFT Market Reaching More Than \$80B in Value by 2025, 2021. 1. 21.

22)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NFT market worth \$231B by 2030? Report projects big growth for sector>, 2022. 7. 14.

23) 어패럴뉴스, “패션업계, ‘NFT’ 시장 잇따라 진출”, 2022. 7. 14.

명품 브랜드의 경우 해당 디자인을 또 다른 업체에서 복제해서 판매해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그런데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서 정품을 판별하는 인증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활발한 리셀 시장에서도 NFT는 유용하다. NFT로 인해 어떤 제품이 진품이며 누가 누구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가격 변동이 이루어졌는지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명품 럭셔리 패션 브랜드는 NFT 시장에 발 빠르게 진입했다.

미국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메사리(Messari)는 ‘가상자산 산업전망 2022(Crypto Theses 2022)’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NFT 아트 시가총액이 10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실제 미술품 시가총액 규모가 1조7000억달러로 추산되고 미술품 NFT 시가총액은 140억달러로 1%에 불과하지만 미술품 NFT 시가총액이 1조4000억달러 이상 늘어나 실제 미술품 시장 규모와 맞먹게 된다는 설명이다.<sup>24)</sup> 다만 투자자로서는 개별 NFT 아트보다는 NFT 아트 거래소 투자를 권고했다. 그 이유로는 향후 출시될 신규 NFT 아트가 시가총액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클 것이라 지금 구매한 NFT 아트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미래 수익률이 높은 NFT 아트를 선별하고 매수할 성공률이 높지 않기에 NFT 아트 작품보다는 거래를 지원하는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안정적이라 보았다.

NFT 데이터 분석 플랫폼 ‘논펀저블닷컴(NonFungible.com)’에 따르면 NFT 자산 규모는 2019년 6,200만 달러에서 2020년 약 2억5,000만 달러로 4배이상 증가하였으며, 2021년 3분기에는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논펀저블닷컴은 NFT 거래량과 평균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에 대해 NFT 시장 붕괴가 아니라 그간 과열되었던 NFT 시장이 진정세에 돌입하는 거라 판단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논펀저블닷컴의 2022년 1분기 NFT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NFT 구매자 수가 판매자 수에 비해 많아 NFT 구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존재한다. 보고서는 “NFT 구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며 “2022년 1분기에는 약 80억 달러 치가 거래되면서 NFT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분석했다.

과열되었던 NFT 시장이 이제 진정세에 돌입했으며 장기적으로 시장의 안정성에도 모해야 할 때임을 자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NFT 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세가 이어지는 등 거시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받을뿐더러 초창기 기술의 불확실성을 내포한 불안정한 시장이다.

24) 코빗 리서치, ‘2022년 가상자산 투자 테마 - Crypto Theses for 2022’, 2021. 12.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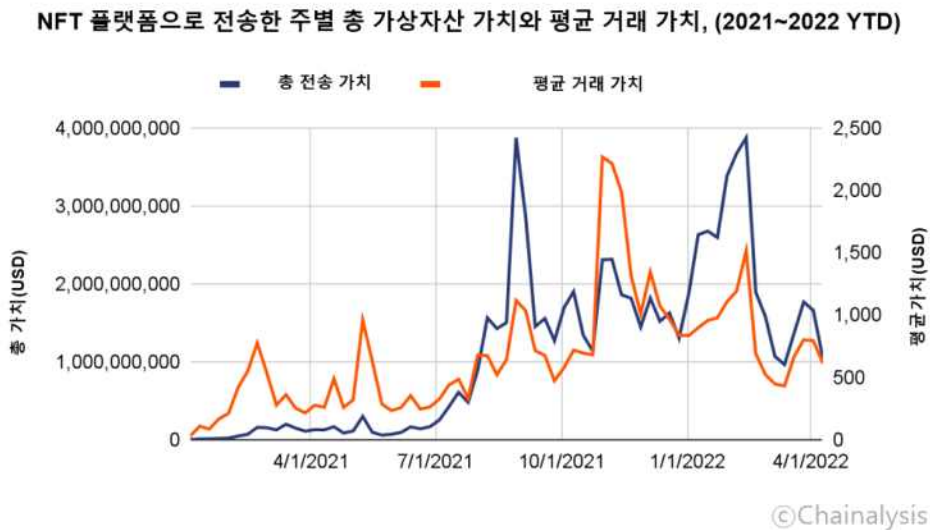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미국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메사리(Messari)의 2022년 가상자산업계 전망을 담은 'Crypto Theses 2022' 리포트 한글 번역본을 발간했다.



2022년 6월 19일 블록체인 분석 사이트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글로벌 NFT 시장의 5월 거래액은 4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거래액이 사상 최대였던 2022년 1월(165억7000만 달러)에 비해 76% 줄어든 규모다. 거래액은 2월(114억 달러), 3월(59억1000만 달러), 4월(71억8000만 달러)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sup>25)</sup>

NFT 주요 컬렉션들의 가격도 하락세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플랫폼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2022년 6월 19일 글로벌 시가총액 1위 NFT 컬렉션인 ‘크립토펙크’의 최저가인 바닥가(floor price)는 6만1351달러로 한 달 전(9만9940달러)에 비해 38.61% 떨어졌다. 이어 시가총액 상위 NFT 컬렉션인 ‘미비츠(Meebits)’와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BAYC)’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61%, 53% 폭락했다. 그러나 이러한 NFT 시장의 거래량 감소가 NFT 기술의 몰락이나 시장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표 III-1> NFT 플랫폼 전송 주별 총 전송 가치와 평균 거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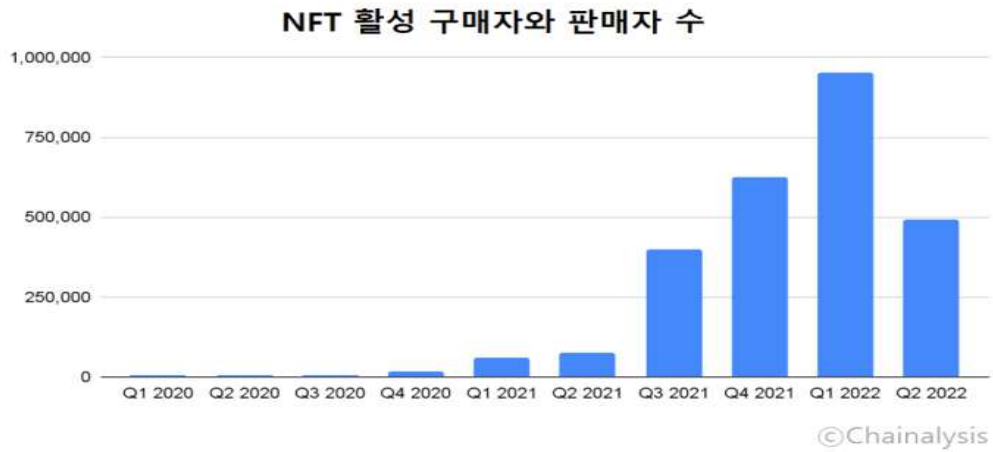
출처 : 체이널리시스, 코인데스크코리아<sup>26)</sup>

체이널리시스는 온체인 데이터를 활용해 NFT 판매와 구매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NFT 거래량 성장기는 2021년 늦여름과 2022년 1월 말~2월 초다. 이후 NFT 거래량은 2월 중순부터 현저하게 감소했다가 4월 중순부터 회복됐고 거래량 변동에도 불구하고 NFT 구매자와 판매자의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4분기에는 62만7000개의 고유 주소(unique address)가 NFT를 사고팔았지만, 2022년 1분기에 95만개로 증가했다.

25) 동아일보, <NFT도 죽어간다"... 울들어 거래 76% 급감>, 2022. 6. 20.

26) 코인데스크코리아, <체이널리시스 "NFT 거래량은 줄었지만, 투자자는 증가세">, 2022. 5. 6.

<표 III-2> NFT 활성 구매자와 판매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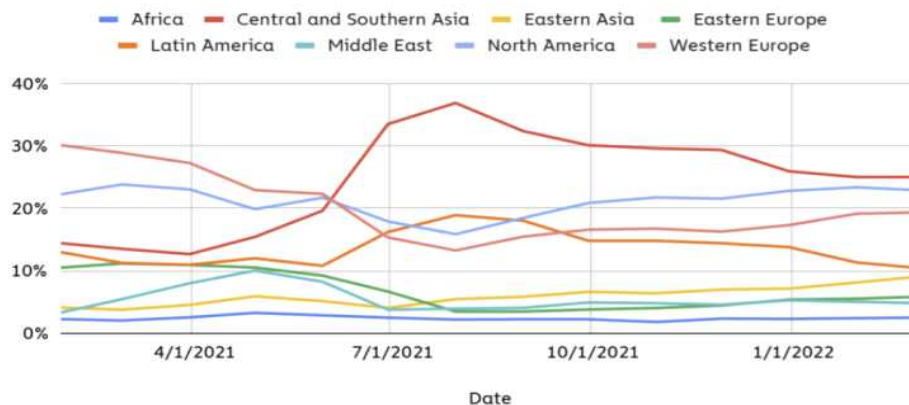


출처 : 체이널리시스, 코인데스크코리아<sup>27)</sup>

시장을 이끄는 NFT 플랫폼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면 NFT 이용자는 전 세계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중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NFT 투자자 수가 가장 많았고 북미와 서유럽이 뒤를 이었다. 2021년 초 이후 NFT 플랫폼에 대한 전 세계 웹트래픽량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이 40% 이상을 차지한 적이 없다. 이는 NFT가 국경을 초월해 거래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이며 메타버스 신기술과 융합한 글로벌 시장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표 III-3> 주요 NFT 시장의 지역 월간 웹 트래픽

Monthly share of web traffic to NFT marketplaces by region, 2021 - 2022 YTD



출처 : 체이널리시스, 블록미디어<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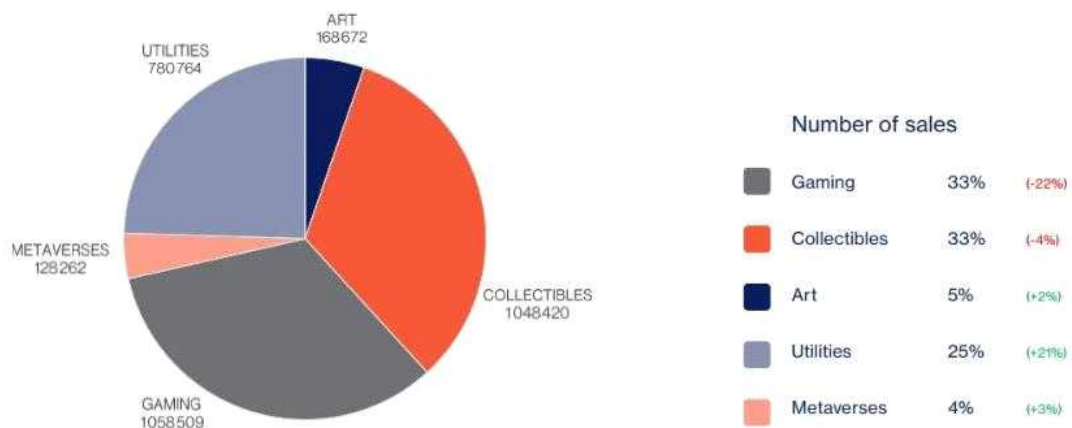
27) 코인데스크코리아, <체이널리시스 "NFT 거래량은 줄었지만, 투자자는 증가세">, 2022. 5. 6.

## 2) NFT 유형별 시장 현황

NFT의 유형은 콜렉터블, 아트, 게임, 메타버스 등 다양하며 이러한 유형화는 불변의 정의로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다변화하고 있다.<sup>29)</sup> 이는 NFT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초창기 시장의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정 NFT 프로젝트는 여러 유형의 경계에 놓여있기도 하다. 실제 콜렉터블 NFT로 유명한 크립토펑크는 크리스티와 소더비 등 전통 미술시장의 대표 옥션이 예술로 인식하고 있기에 콜렉터블과 아트의 경계에 놓여있거나 양쪽 다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다채로운 NFT의 양상이 시장에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구분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NFT 유형화는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NFT 데이터분석 플랫폼 논펀저블닷컴은 분야별 실적에 관하여 콜렉터블, 게임, 아트, 메타버스, 유틸리티로 NFT를 유형화한 2022년도 2분기 NFT 시장 보고서를 발행했다. 전 세계 NFT 거래량은 지난 2022년도 1분기 107억 달러에서 2분기 80억 달러로 24.82% 감소했으며 판매량은 1260만건에서 1010만 건으로 20.05% 감소했다.<sup>30)</sup>

<표 III-4> NFT 유형별 판매량 비중



출처 : 논펀저블닷컴, Quarterly NFT Market Report · Q2 2022

2022년 2분기 NFT 유형별 판매량을 기준으로 그 비중에 따라 나열하면 게임(33%), 콜렉터블(33%), 아트(5%), 유틸리티(25%), 메타버스(4%) 이다. 여전히 NFT 시장의 상당수는 개별 작가의 디지털 아트 작품보다는 게임과 콜렉터블이 대다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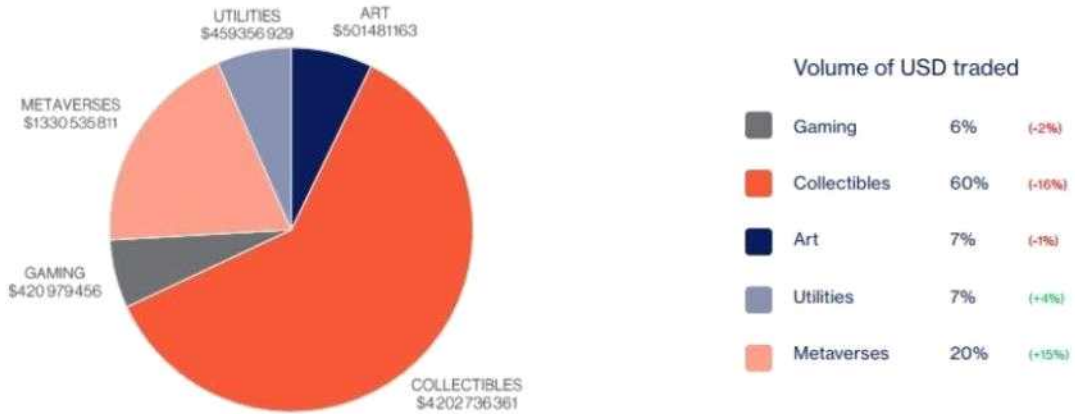
28) 블록미디어, <[보고서] NFT, 누가 투자하고 있을까?>, 2022. 5. 7.

29) 김민지, "NFT Art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예술", 아트북프레스, 2022, 66면.

30) 토큰포스트, 올 2분기 NFT 판매량 80억 달러...메타버스, 유틸리티만 강세, 2022. 7. 27.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게임 NFT는 자산 특성상 높은 유동성을 지니고 있고 해당 게임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커뮤니티가 광범위하다.

<표 III-5> NFT 유형별 거래량 비중



출처 : 논펀저블닷컴, Quarterly NFT Market Report · Q2 2022

NFT 유형별 거래량 비중은 콜렉터블(60%), 게임(6%), 아트(7%), 메타버스(20%), 유틸리티(7%) 이다. 논펀저블닷컴은 제너러티브 아트(Generative art)<sup>31)</sup> 방식으로 1만 개 가량 생성한 크립토펙크, BAYC 등의 PFP NFT 프로젝트를 콜렉터블로 분류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NFT 거래량의 대다수는 콜렉터블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콜렉터블은 초기 희소성과 소장 가치, 부를 과시하기 위한 사치재로서의 기능을 했지만 점차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성격을 갖추어 나갔다. 즉, NFT를 소지한 이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NFT 발행 운영팀에서 구체적인 사업 로드맵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여 해당 NFT의 투자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대기업과의 협업, 홍보 마케팅, 토크노믹스(Tokenomics)<sup>32)</sup> 설계 등의 전략을 만들어가는 식이다. 결국 NFT 구매자들은 예술 작품 소장으로서의 가치를 우위에 둔 아트 컬렉터라기보다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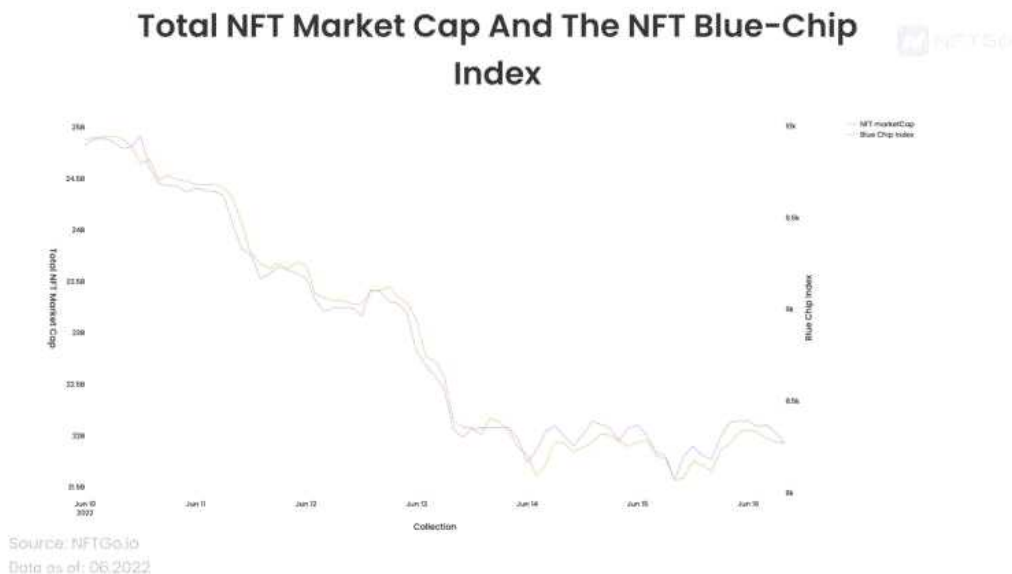
31) 제너러티브 아트는 생성예술 또는 발생예술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특정 방법을 반복 사용해서 얻는 결과물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 제너러티브 아트는 컴퓨터가 없어도 반복 수작업으로 행하는 창작 작업이다. 협의의 의미로서 NFT에 관련한 제너러티브 아트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와 같은 자율 시스템을 활용하여 패턴과 색상 등 조형요소의 크고 작은 변화를 무작위성으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김민지, “NFT Art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예술”, 아트북프레스, 2022, 152면)

32) 토크노믹스는 토큰 경제(Token Economics)로 토큰(Token)과 경제학(Economics)의 합성어다. 토크노믹스는 토큰을 활용하여 다양한 참여자들이 가치를 주고 받는 경제를 말한다. (Eddy Song, <https://medium.com/@isp1195/%ED%86%A0%ED%81%B0-%EB%94%94%EC%9E%90%EC%9D%B8-%ED%8C%A8%ED%84%B4-%EC%8B%9C%EB%A6%AC%EC%A6%88-1-%ED%86%A0%ED%81%B0-%EC%9D%B4%EC%BD%94%EB%85%B8%EB%AF%B8%EC%9D%98-%EC%A4%91%EC%9A%94%EC%84%B1%EA%B3%BC-%ED%86%A0%ED%81%B0-%EB%94%94%EC%9E%90%EC%9D%B8-%ED%8C%A8%ED%84%B4-token-design-pattern-725a637ee74a>, (2022. 9. 19. 방문)

기간 수익 창출을 기대하는 투자자로서 컬렉터블을 중심으로 NFT를 구매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NFT 통합 데이터 분석 플랫폼 NFTGo는 전 디지털 세계의 NFT 관련 데이터를 집계하여 제공하는 NFT 전문 애널리틱스 플랫폼이다.<sup>33)</sup> NFTGo는 NFT에 관한 시장 데이터와 시가총액(Market Cap), 희소성, 컬렉션 등 다차원 데이터와 그래프를 제공하며 가치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있다.<sup>34)</sup> 이를 바탕으로 NFTGo에서는 유망 NFT 컬렉션에 블루칩(Blue Chip)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높은 보유 가치와 인지도를 지닌 글로벌 NFT 프로젝트를 지수화한다. 대표적으로 BAYC, Meebits, Cryptopunks, Otherdeed 등이 있다.

<표 III-6> NFT 시가총액과 블루칩 NFT 프로젝트의 우량지수



출처 : NFTGo<sup>35)</sup>

블루칩 NFT 지수는 NFT 시가총액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NFT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 블루칩 NFT 프로젝트의 거래량 데이터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블루칩 NFT가 NFT 생태계의 주요 성장 요인일지라 하더라도 급등락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을 받으며 구매가 대비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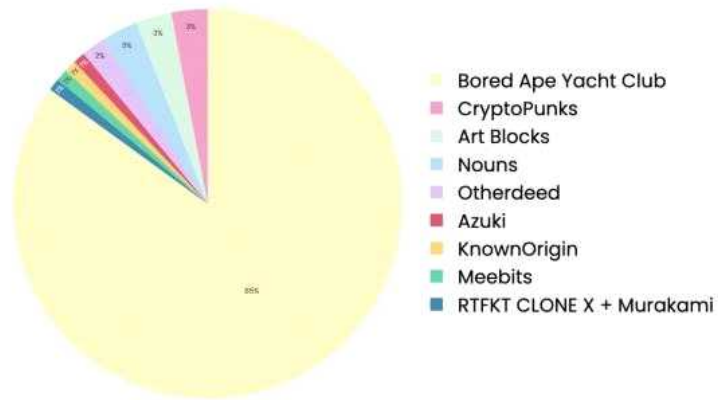
33) NFTGo, <https://nftgo.io/>, (2022. 9. 19. 방문)

34) NFTGo, <https://blog.naver.com/nftgo>, (2022. 9. 19. 방문)

35) NFTGo, <https://blog.naver.com/nftgo/222820575709>, (2022. 9. 19. 방문)

<표 III-7> 지난 1주간 가장 고가에 판매된 NFT 컬렉션의 비중 (2022. 6.)

**Collections With The Most Expensive NFTs Sold In The Past Wee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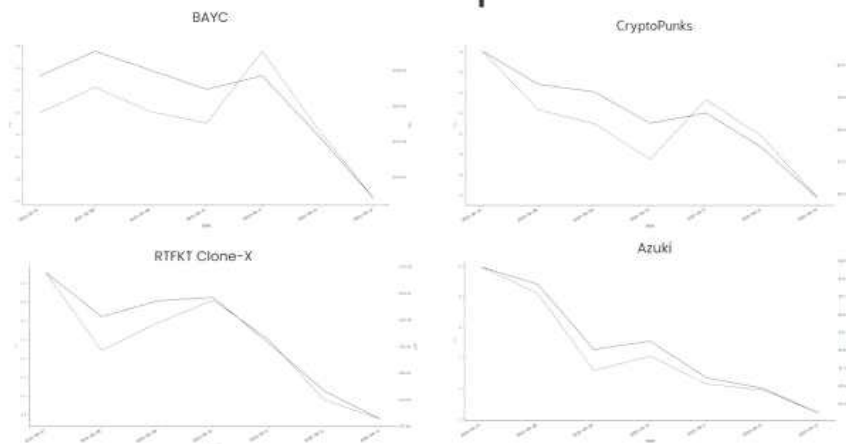
Source: NFTGo.io  
Data as of: 06.2022

출처 : NFTGo<sup>36)</sup>

2022년 6월경 한 주 동안 가장 비싸게 팔린 NFT 컬렉션 매출 중 85% 이상이 BAYC에서 나왔으며 그다음으로는 크립토펡크이다.

<표 III-8> 주간 블루칩 NFT의 평균 ETH 및 USD 가격

**Average ETH and USD Price For High-Value NFTs In the past week**



Source: NFTGo.io  
Data as of: 06.2022

출처 : NFTGo

36) NFTGo, <https://blog.naver.com/nftgo/222820575709>. (2022. 9. 19. 방문)

블루칩 컬렉션의 USD 가격은 ETH 가격과 동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ETH 및 USD 기준 NFT의 평균 판매 가격 하락은 위의 데이터 차트에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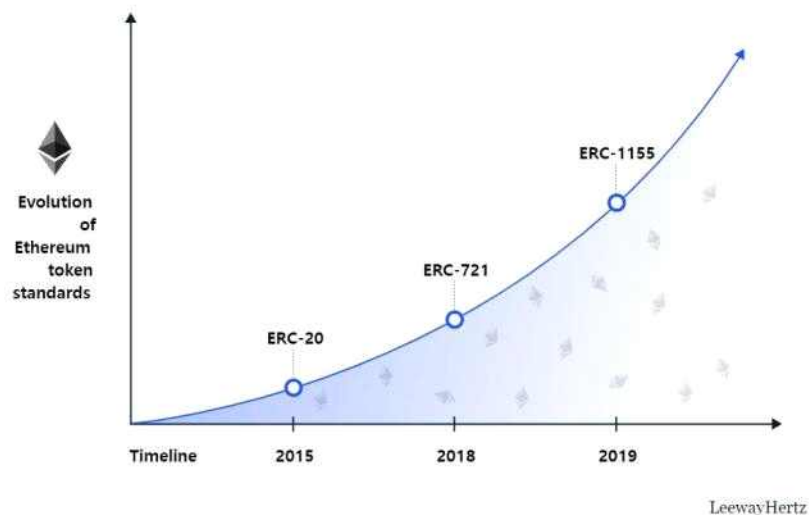
## 나. NFT 주요 기술과 산업 동향

### 1) NFT 주요기술

#### 가) ERC-721

블록체인(Blockchain)은 “서로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통제하는 다수의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동일한 거래원장 사본이 보관되는 디지털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의 한 형태이다.<sup>37)</sup> 거래 기록을 담은 원장이 블록 단위로 저장되고 동일한 원장이 모든 노드들의 컴퓨터에 분산되어 보관된다.<sup>38)</sup> 블록체인 기술 중 하나인 NFT의 이더리움 프로토콜은 ERC-721이다. ERC는 Ethereum Request for Comment의 약자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토큰을 만들 때 따라야 하는 일종의 약속이자 표준인 프로토콜을 의미한다. 즉, ERC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토큰의 표준이다. 이때, 토큰이란 블록체인 메인넷의 기본 규약을 지키면서 종속되어 돌아가는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sup>39)</sup>

<그림 III -1> ERC-20, ERC-721, ERC-1155 기술 발전 과정



출처 : LeewayHertz<sup>40)</sup>

37) David Schatsky and Craig Muraskin, “Beyond Bitcoin: Blockchain is Coming to Disrupt your Industry”, Deloitte University Press, 2015, p.2.

38) 윤종수, 표시영, “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법조 70권6호, 2021, 21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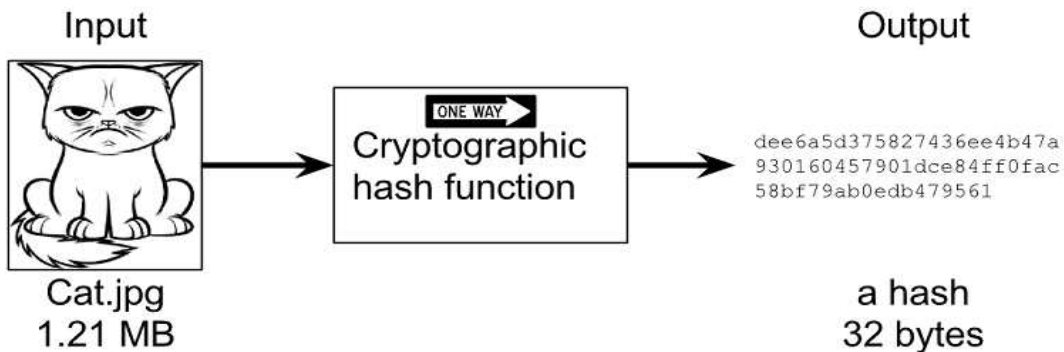
39)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www.upbitcare.com/acaddemy/education/nft/182](http://www.upbitcare.com/acaddemy/education/nft/182). (2022. 9. 19. 방문)

40) LeewayHerz, <https://www.leewayhertz.com/erc-20-vs-erc-721-vs-erc-1155/>, (2022. 9. 19.)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대체 가능한 토큰에 관한 프로토콜인 ERC-20을 기술 표준인 프로토콜로 채택했다. ERC-20은 상호 대체가 가능하여 특정 생태계에서 거래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토큰으로 암호화폐 작동을 위한 기술적 표준이며, 2015년에 처음 제안되어 2017년에 완성되었다.<sup>41)</sup> ERC-721은 크립토키티(CryptoKitties)의 설립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디터 셸리(Dieter Shirley)가 처음 제안하였고, 2018년 6월에 최종 채택되었다.<sup>42)</sup> ERC-721은 대체 불가능하여 거래가 아닌 다른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ERC-20은 토큰의 개수(amount)를 파라미터로 삼고 전송(transfer) 시 송신주소에서 수신주소로 지정 수량만큼의 토큰을 보낼 수 있다. 반면 ERC-721은 토큰의 소유권을 주요 파라미터로 삼는다. ERC-721 코드 중 ownerOf 함수는 파라미터에 tokenId를 넣으면 토큰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해당 디지털 자산의 세부 정보가 메타데이터 형태로 NFT에 담기게 된다.

<그림 III-2> 해시 함수 작동 방식



출처 : The cpress<sup>43)</sup>

ERC-1155는 2018년 엔진(Enjin)의 최고기술책임자(CTO) 비텍 라돔스키(Witek Radomski)가 캐나다에서 열린 도지콘(Dogecon)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처음 제시한 이더리움 토큰 아이템 표준안으로 2019년 6월에 이더리움 공식 토큰 표준으로 최종 채택되었다.<sup>44)</sup> ERC-1155는 ERC-20과 ERC-721의 특징을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에 결합한 것이다. 따라서 거래소를 경유하지 않아도 ERC-20 방식으로 발행된 토큰과 ERC-721 방식의 서로 다른 토큰을 서로 교환하며 거래할 수 있다.<sup>45)</sup> ERC-1155로

방문)

41) 김승주, “NFT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50”, 메이트박스, 2022, 150면.

42) 디크립트(Decrypt), What is ERC-721? The Ethereum NFT Token Standard, 2022. 5. 18.

43) The cpress, All About Hashing Algorithms and How They Work, 2020. 1. 8.

44) 엔진(Enjin), <https://enjin.io/erc-1155>, (2022. 9. 19. 방문)

45) 한국경제, 엔진, 새 이더리움 표준코드 'ERC-1155' 제시, 2018. 6. 25.



인해 단일 계약으로 대체 가능 토큰과 대체 불가능 토큰의 다양한 조합을 혼합 거래할 수 있으며 일종의 블록체인 수수료인 ‘가스피(Gas Fee)’를 이전보다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나) 스마트 컨트랙트

NFT는 블록체인에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인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라는 계약 방식을 통해 거래가 성사된다. 스마트 컨트랙트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해진 절차대로 실행되는 알고리즘을 통해 계약이 실행되므로 계약 수행 주체가 컴퓨터라 할 수 있다.<sup>46)</sup> 스마트 컨트랙트는 1997년 개발되었으나 블록체인을 만나 활용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2015년에 첫 번째 블록을 만들며 등장하고 발전한 이후로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결합이 일어난 것이다. 블록체인은 저장 기록을 지우거나 코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전 세계의 수많은 노드(nod)들이 참여해 24시간 내내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리면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NFT는 토큰마다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해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특정 자산을 나타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다. 블록체인은 해시 함수(hash function)를 사용하여 데이터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해시 함수는 임의의 길이를 갖는 임의의 데이터를 고정 길이의 데이터로 매핑하는 함수이며 X의 해시 함수 결과값 계산은 단방향으로는 용이하나 역으로 계산하려면 일일이 대입하여야 하기에 어렵다. 입력값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아예 다른 결과값이 산출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블록체인에서 해시 함수는 암호화의 역할을 한다.<sup>47)</sup> 또한 해시함수는 디지털자산의 전자지갑 주소에도 사용하여 개인 키에 대칭되는 공개키를 해시화하여 지갑 주소로 활용한다. 이는 사적 정보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블록체인에서 익명의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

## 2) NFT 산업 동향

### 가) NFT 산업의 기술 스택 총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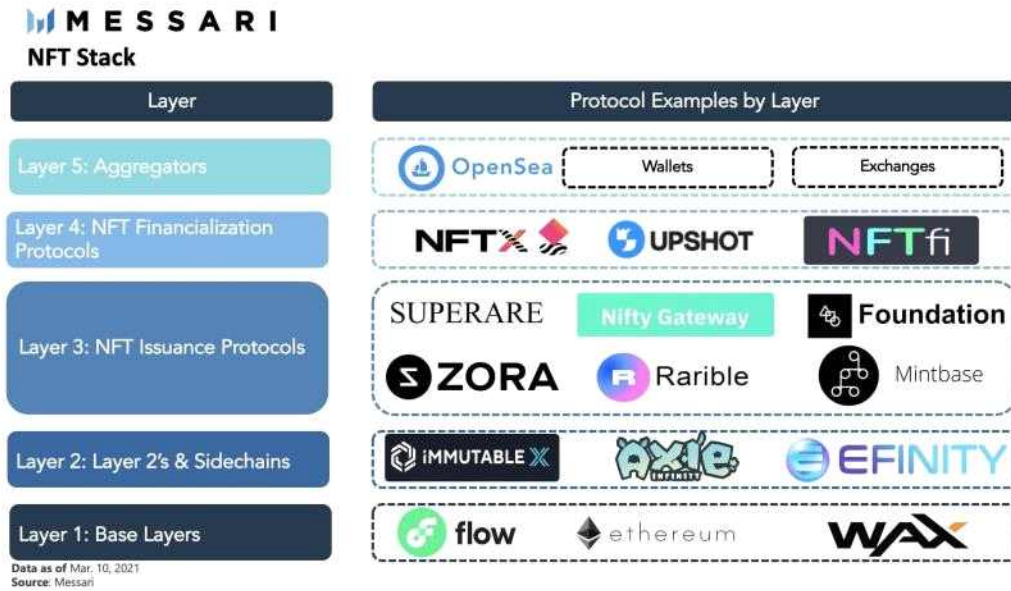
NFT 산업은 초기에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준으로 ERC-721 토큰을 활용

46) 코인 트레이더, 『비트코인에 가려진 세상 이더리움』, 지식오름, 2022, 36면.

47)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https://upbitcare.com/academy/education/blockchian/52>, (2022. 9. 19. 방문)

하는 데에서 시작하였으나 이후 다채로운 파생 플랫폼과 응용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생겨났으며 지금도 산업은 확장되고 있다.<sup>48)</sup>

<그림 III-3> NFT tech stack layer



출처 : Mason Nystrom twitter<sup>49)</sup>

Layer 1: Base Layer는 이더리움, 플로우(Flow), 왁스(Wax)가 고유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다. Layer 2: Layer 2's & Sidechains는 블록체인 메인넷에서 성능과 수수료를 개선한 별도 플랫폼으로 Immutable X, 엑시인피니티, Efinity가 있다. Layer 3: NFT Issuance Protocol은 NFT를 발행할 수 있는 디앱(DApp)이자 NFT 마켓인 Superrare, Nifty Gateway, Rarible 등이 해당된다. Layer 4: NFT Financialization Protocols는 NFT 기반 대출과 같은 금융서비스 생태계이다. Layer 5: Aggregators는 NFT 거래 가능 마켓이나 보유 지갑 등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sup>50)</sup>

### 나) NFT 시장의 발전 과정

48) 박지원, "NFT 블록체인 기반 사업화 사례연구 -디지털 자산 영역 확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과학기술원, 2021, 16면.

49) Mason Nystrom twitter, <https://twitter.com/masonnystrom/status/1369665993706995717/photo/1>, (2022. 9. 19. 방문)

50) 박지원, "NFT 블록체인 기반 사업화 사례연구 -디지털 자산 영역 확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국과학기술원, 2021, 16~17면.

NFT는 디지털 콘텐츠와 가상자산(virtual asset)에 원본이라는 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sup>51)</sup> NFT 시장은 아트 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패션, 금융, 유통 등 산업 각 분야에 접목되며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NFT 시장은 2017년 크립토펙크와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2020년 NBA Top Shot과 2021년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BAYC; Bored Ape Yacht Club) 등의 프로젝트로 화제를 모았다. 초기 시장의 NFT는 희소성으로 인한 소장 가치를 자극하며 자아 정체성 표현을 위한 매개체이자 NFT 소유자들만 입장 가능한 차별화된 커뮤니티 진입을 위한 멤버십 카드로 기능했다. 크립토펙크 소유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 자산 업계에 초창기에 진입한 경력자를 나타내는 징표가 되었다. BAYC는 NFT를 보유한 커뮤니티 구성원의 상당수가 스테판 커리, 포스트 말론, 지미 팰런, 스티브 아오키 등 유명 인사들과 초창기 크립토 자산가들로 구성되어 있다.<sup>52)</sup> 이때 NFT는 커뮤니티에 입장할 수 있는 멤버십 티켓으로 기능한다. NFT가 국내외 주요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며 인기 돌풍을 일으키게 된 것은 2021년 3월 세계 최대 경매사 크리스티가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NFT 아트 작품을 선보인 시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22년에는 NFT 소유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NFT 소유자들에게 저작권과 라이선스를 양도하는 CCO licensed NFT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다.<sup>53)</sup> 또한 디지털 환경에만 머물 뿐 아니라 실생활과 결합해 유용한 가치를 결합하는 NFT 유틸리티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IRL(In Real Life) 트렌드가 부상했다. NFT라는 디지털 자산을 현실 세계에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한 유틸리티를 탑재한 NFT의 양상 중 하나는 Physital (Physical + Digital) 굿즈로 해당 NFT를 구매했을 때 실제 제품을 증정하는 경우가 있다.

NFT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NFT를 자산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파이(DeFi)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sup>54)</sup> 디파이는 탈중앙화 금융(Decentralized Finance)의 약자로서, 중앙화된 금융 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 합의에 따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디지털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차용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로 한 NFT가 대출금 대신 대여인의

51) 곽상빈,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지급결제학회지 13권2호, 2021., 172면.

52) 쟁글(Xangle), <https://xangle.io/insight/research/62174762596d563c9e0c4b10>, (2022. 9. 19. 방문)

53)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 <Here is all you need to know about creative commons licenses and how they affect NFTs>, 2022. 5. 27.

54) 최재식, 고유흠, 박소영, 이재훈, "NFT 기술 및 정책 동향과 법률적 쟁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Focus, 2021. 12. 30. 13면.

지갑으로 전송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P2P 방식의 NFT 담보 대출 플랫폼 NFTfi는 NFT를 담보로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sup>55)</sup> 담보 가능한 NFT는 현재 인기 NFT 프로젝트인 ‘크립토키티(CryptoKitties)’의 고양이 캐릭터,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 ‘더샌드박스(The Sandbox)’의 가상 부동산 ‘랜드’ 등 10개가 넘고 향후 확대될 예정이다. 차입자가 자신이 소유한 NFT를 담보로 설정하고 희망하는 대출 금액, 상환 기간, 이자 등을 입력하면 대여자는 대출 조건을 비교해 차입자에게 랩핑 이더리움(wETH)을 빌려줄 수 있다. wETH는 암호화폐인 이더리움(ETH)을 이더리움 토큰 발행 표준인 ERC-20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 ETH와 가격이 동일하지만 ERC-20 토큰 형태로 주고받을 수 있다.<sup>56)</sup> NFTfi에서는 NFT 담보 대출에 따른 약속어음도 NFT 형태로 발행한다. NFT 약속어음은 다른 사람과 거래할 수 있어 대여자가 약속어음을 매도해 투자금을 도중에 회수할 수 있다.

2022년 상반기에는 전반적으로 가상 자산 시장이 침체되어 NFT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의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가 이어지고 있지만 빅테크, 럭셔리 브랜드, 국내외 대기업 등은 NFT TF를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NFT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투자와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sup>57)</sup> 특히 브랜드의 경우 NFT를 강력한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매개체로 인식하며 MZ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충성 및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NFT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싱가포르, 중국, 일본, 홍콩 등 글로벌 단위로 전개되고 있고 여전히 초기 단계의 시장이라 국내 NFT 시장의 현황만을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족하다. 블록체인은 국경 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를 형성하기에 NFT 시장 분석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 역시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국내 NFT 시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2021년 3월 비플 NFT 뉴스 보도 이후로 코인데스크, 디크립트, 코인텔레그래프, 블록미디어, 토큰포스트 등 국내외 블록체인 전문매체를 비롯하여 체이널리시스, 논펀저블닷컴, 댄레이더, NFTGo, 쟁글 등 NFT 데이터분석 플랫폼에서 NFT 시장에 관한 유의미한 보도기사와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업비트, 빗썸, 코빗 등 국내 주요 거래소 및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에서도 NFT 및 디지털 자산 분기별 리포트를 출판하고 있다. 이외에 가장 빠르게 NFT 주요 프로젝트와 시장 동향에 관한 뉴스를 실어나르는 매체는 텔레그램, 트위터를 중심으로 하는 소셜미디어와 미디움, 노션과 같은 오픈 플랫폼 블로그이므로 이에 관하여도 면밀히

55) NFTfi, <https://www.nftfi.com/>, (2022. 9. 19. 방문)

56) 매일경제, NFTfi, NFT 담보 대출 어음도 NFT로 발행...투자금 중도 회수 길 열려, 2021. 2. 16.

57) 파이낸셜뉴스, <크립토 윈터' 속 NFT로 눈 돌리는 빅테크...왜?>, 2022. 7. 14.

살펴볼 필요가 있다.

NFT가 속한 크립토 및 가상자산 업계는 국경을 초월한 시장이라 산업의 확장과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급격하다. 또한 NFT는 초기 시장이라 시장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기 전에 발생하는 거품과 투기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국내 NFT 시장만 구별해 규모 추이를 정량 데이터로 파악하는 것은 NFT 시장의 현황을 반영하는 것에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국내 NFT 시장 관련 산업의 발전상황이 디지털 아티스트의 NFT 아트 차원을 뛰어넘어 기업 주도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022년 상반기에는 국내 상위 5개 기업인 삼성·SK·현대·LG·롯데를 비롯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주요 방송사 MBC·JTBC·SBS·MBN,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하여 옥션, 게임사, 금융사 등 산업 전반의 주요 대기업들이 NFT 시장에 진출해 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sup>58)</sup>

## 다) 주요 NFT 현황

NFT 역사와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픈씨, 라리블 등의 NFT 마켓으로서의 플랫폼에서 어떠한 주요 NFT 작품 및 프로젝트가 거래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해외 주요 NFT 프로젝트

#### ① NBA Top Shot

NBA Top Shot은 크립토키티 개발사이자 블록체인 전문기업인 대퍼랩스(Dapper Labs)가 2019년 7월 NBA와 협력해 농구 경기 주요 장면을 15초 비디오 영상의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NFT 카드 트레이딩 플랫폼이다.<sup>59)</sup> NBA Top Shot은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을 수집하고 타인에게 되팔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수집한 카드를 모아 고유한 팀을 구축하여 게임에서 다른 사용자 팀과 경쟁할 수도 있다.<sup>60)</sup> 2021년 1월 26일 NFT 데이터 플랫폼 크립토슬램에 의하면 NBA Top Shot 누적 거래량은 2942만 달러를 기록하며 당시 인기 프로젝트인 크립토키티를 이기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으며, NFT 수집 이용자는 1만 8000명 정도로 크립토키티의 20%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1인당 큰 거래액 수치를 기

58) 국민일보, 온라인 프로파일·스마트폰 할인... 기업들 너도나도 NFT, 2022. 9. 17.

59) NBA Top Shot, <https://nbatopshot.com/>, (2022. 9. 19. 방문)

60) 파이낸셜뉴스, NBA리그 명장면 암호화폐로 바꿔 사고파는 게임 나온다, 2019. 8. 1.

록했다.<sup>61)</sup>

## ②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크립토키티는 디지털 희귀 고양이 육성 게임으로서 세계 최초로 이더리움 ERC-721 토큰 방식을 적용하여 디앱(DApp, Decentralized Application)인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했다.<sup>62)</sup> 크립토키티의 고양이들은 종과 색깔 등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 희소하다. 이처럼 각각의 고양이의 고유한 특징을 부여하기 위해 ERC-721 토큰 기술 표준안을 적용한 것이다. 게임 이용자들은 NFT 디지털 고양이를 수집하고 키우고 심지어 고양이끼리 교배해 가장 희귀한 고양이를 번식시킬 수도 있다. NFT는 디지털 희소성을 입증해주는 기술로 활용되어 크립토키티 이용자들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희귀한 고양이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 ③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

3차원 탈중앙화 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작동한다.<sup>63)</sup> 이곳에서는 이용자가 아바타로 입장해 자신의 서비스, 상품,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랜드(LAND, 디센트럴랜드 내 구획된 토지)나 획득 가능한 가상 세계의 에스테이트(estate, 여러 개의 파셀들로 형성된 구역)가 필요하다.<sup>64)</sup> 에스테이트 NFT는 자체 거버넌스 토큰이자 ERC-20 기반으로 발행된 MANA(마나)를 소각해 구매할 수 있다. 디센트럴랜드에는 총 9만 개의 고정적인 토지 블록인 랜드가 존재하며 이를 구매하기 위해 마나가 필요하다. 이용자가 마나를 랜드로 교환할 때 교환된 모든 마나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비를 통해 마나의 공급이 점차 줄어들면 가격 상승을 일으키게 된다.<sup>65)</sup>

디센트럴랜드 내 한 파셀(parcel, 디센트럴랜드 내 땅 한 칸 16m\*16m)은 2022년 8월 기준 최저가 1.67이더(약 360만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최고가는 2000이더(약 43억원)에 달한다.<sup>66)</sup> 디센트럴랜드에서 랜드의 소유권과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디센트럴랜드는 다오(DAO, 탈중앙화자율조직) 형태로 운영하며, 다오가 주체가 되어 프로젝트의 재무를 관리한다.<sup>67)</sup>

61) 권혁준, 임민수, 김협, “NFT의 거래 가능성 및 확장성에 대한 고찰 -대체거래소 연계를 중심으로-”, 지급결제학회지 13권1호, 2021, 262면.

62)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https://www.cryptokitties.co/>, (2022. 9. 19. 방문)

63) 디센트럴랜드(Decentraland), <https://decentraland.org/>, (2022. 9. 19. 방문)

64) 코인데스크코리아, 코인마켓캡이 주목한 메타버스 프로젝트 TOP 7, 2022. 4. 3.

65) 김승주, “NFT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50”, 메이트북스, 2022, 194면.

66) 디센트럴랜드 오픈씨, <https://opensea.io/collection/decentraland>, (2022. 9. 19. 방문)

67) 디센트럴랜드, <https://dao.decentraland.org/en/>, (2022. 9. 19. 방문)

#### ④ 크립토펅크(CryptoPunks)

크립토펅크는 2017년 6월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라바랩스(Larva Labs)에서 ERC-20 기반의 24 X 24, 8비트의 픽셀 아바타 형태 1만 개를 만든 것이다.<sup>68)</sup> 크립토펅크는 향후 ERC-721인 NFT가 탄생하는데 영감을 준 최초의 프로젝트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sup>69)</sup> 크립토펅크 캐릭터는 남자 6039개, 여자 3840개, 외계인 9개, 유인원 24개, 좀비 88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체 희귀도 표에 의해 희소성이 결정된다.<sup>70)</sup> 1만 개 퍅크는 성격,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의 특성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무작위 조합되어 고유의 희소성을 갖게 되며 이러한 희소성의 차이는 거래 가격의 차이로 직결된다.<sup>71)</sup>

2022년 크립토펅크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크립토펅크 NFT 보유자에게 지식재산권(IP) 활용 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sup>72)</sup> 그러나 앞서 BAYC 개발사 유가랩스가 라바랩스로부터 크립토펅크, 미비츠(Meebits) 컬렉션 IP(지식재산권)를 인수하였기에, 크립토펅크 NFT 보유자에게 IP 활용 권한이 부여되더라도 유가랩스가 최종적인 변경 권한을 갖는다.

#### ⑤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BAYC, Bored Apes Yacht Club)

2021년 4월 유가랩스가 이더리움에서 선보인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AYC)은 1만 마리 원숭이 일러스트레이션 형태의 PFP 아바타 NFT 프로젝트이다. 출시 당시만 해도 0.08이더(약 200달러)에 구입 가능했으나 크립토클럽에 따르면 출시 이후 2차 거래량이 13억달러에 달하며, 2022년 8월 BAYC의 최저가는 69.42이더이다.<sup>73)</sup> BAYC를 이더리움에서 최초로 민팅된 시점에 j1mmyeth와 Pranksy와 같은 가상자산 부호이자 메가 컬렉터들을 비롯하여 스티브 아오키(Steve Aoki)와 조쉬 하트(Josh Hart)와 같은 셀럽들이 BAYC를 구매하며 명품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sup>74)</sup> 이후 BAYC는 NFT 소유자가 입장 가능한 오프라인 커뮤니티 행사를 개최하며 멤버십 NFT의 새 장을 열었다. 유가랩스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및 엔터테인먼트 브랜드로 도약하고자 BAYC 관련 컬렉션 및 자체 코인 출시, 랜드 제작 등 다양한 시도를 감행하고 있다.

BAYC는 초창기 크립토펅크와 달리 NFT 구매자에게 NFT IP를 이용해 상업적인

68) 크립토펅크, <https://www.larvalabs.com/cryptopunks>, (2022. 9. 19. 방문)

69) 김민지, “NFT Art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예술”, 아트북프레스, 2022, 97면.

70) 크립토펅크, <https://cryptopunks.app/cryptopunks/attributes>, (2022. 9. 19. 방문)

71) 성소라, 룰프 회퍼, 스콧 맥러플린, “NFT 레볼루션”, 더퀘스트, 2022, 165면

72) 크립토펅크 트위터, <https://twitter.com/cryptopunksnfts/status/1559284220442320897>, (2022. 9. 19. 방문)

73) BAYC 오픈씨, <https://opensea.io/collection/boredapeyachtclub>, (2022. 9. 19. 방문)

74) 코빗 리서치, “BAYC 체인 출시와 아더사이드 NFT의 가치 창출”, 2022. 5. 25.

활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BAYC NFT 보유자는 자신의 원숭이 캐릭터를 티셔츠나 머그컵에 복제해 판매하거나 맥주나 커피 원두, 와인 브랜드로 출시해 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가랩스는 BAYC 캐릭터로 구성된 힙합 그룹과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고, BAYC 캐릭터가 출연하는 애니메이션과 뮤직 비디오를 제작하는 등 NFT IP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확장해나갔다.<sup>75)</sup>

2022년 3월 유가랩스는 라바랩스로부터 크립토펙크와 미비츠 NFT 컬렉션의 ‘브랜드, 예술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권리’를 인수했다.<sup>76)</sup> 이를 통해 유가랩스는 423개의 크립토펙크와 1711개의 미비츠와 함께 두 컬렉션의 브랜드, 예술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IP)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유가랩스는 모든 크립토펙크와 미비츠 이미지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각각의 소유자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 (2) 국내 주요 NFT 프로젝트

### ① 선미야클럽

가수 선미의 초상권을 기반으로 PFP 스타일의 아바타 형태로 재창작한 NFT 프로젝트 ‘선미야클럽’은 코스닥 상장사 FSN과 자회사 핸드스튜디오가 운영하는 PFP NFT 프로젝트이다.<sup>77)</sup> FSN은 선미 IP(지식재산권)를 활용해 제작한 NFT 1만개를 개당 50만원에 판매했는데, 불과 0.3초 만에 완판됐다. NFT를 아티스트 팬덤과 커뮤니티 조성에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NFT 커뮤니티에서는 NFT를 소지한 홀더(Holder)가 실질적인 혜택을 얻는 구조를 설계하고, NFT의 가치를 상승시켜나가기 위해 타 기업과 활발히 협업하며, NFT 이용자 경험을 혁신시키는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선미야클럽은 초록뱀미디어, G마켓 스마일페이, 열혈강호 등 국내 오프라인 기업들과 다양한 연계를 통해 엔터테인먼트, 캐릭터, 커머스, 게임 등으로 NFT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있다.

선미야클럽의 NFT는 다양한 활용 가치를 갖는데 그중 하나가 거버넌스 투표권이 다. 홀더들은 보유한 NFT 개수만큼 투표를 수행할 수 있고, 항목별로 원하는 만큼만 분배해서 복수 항목 투표도 가능하다. 이때 NFT를 투표에 사용해도 보유 NFT가 사라지거나 소모되지 않는다. 이미 투표를 완료한 상태에서 사용된 NFT를 판매하실 경우, 해당 NFT는 적용된 투표 개수에서 빠지게 된다. 이처럼 NFT 투표권 행사에 관한 규칙을 정한 후 거버넌스 의제와 관련한 투표를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진행할

75) IT 조선, [DKL의 IT전문법률] IP 기반 NFT 비즈니스 모델과 웹3.0 ①, 2022. 3. 26.

76) 유가랩스 블로그,

[https://mirror.xyz/0xEc9f53fA69682833FBd760C104B5D61aE29221E0/Km81y6Mc3O5LzS0wnrg hVIV0HnZgLOd4wsnfcGw3\\_2I](https://mirror.xyz/0xEc9f53fA69682833FBd760C104B5D61aE29221E0/Km81y6Mc3O5LzS0wnrg hVIV0HnZgLOd4wsnfcGw3_2I), (2022. 9. 19. 방문)

77) 선미야클럽, <https://sunmiya.club/>, (2022. 9. 19. 방문)



수 있다. 첫 투표 의제는 “선미야클럽 NFT의 공식 명칭을 만들자” 로, 커뮤니티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는 명칭을 가수 선미가 선출한 후보군 중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다. 2022년 3월 31일 23:00부터 4월 4일 23:59까지 투표를 진행한 결과, 선미야클럽의 공식 명칭은 83% 득표율(1366표)이 나온 ‘미야(MIYA)’ 로 변경되었다.<sup>78)</sup>

NFT 커뮤니티는 온라인에서만 조성하여 활동할 뿐 아니라, 커뮤니티 브랜드 차별화 및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사 및 NFT 홀더들을 초대해 VIP 오프라인 파티를 개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선미야클럽도 2022년 7월 오프라인 NFT 파티인 ‘시키리오의 비밀 파티’ 를 개최했다.<sup>79)</sup> 파티는 클레이튼 재단이 메인 스폰서로 참여하여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웨이브에서 진행했다. 행사에는 40여 기업의 관계자 180명과 280명의 선미야클럽 홀더를 포함하여 약 500명이 참석했으며, 가수 선미를 비롯해 박산다라, 뽀빠이 등 공동 주관사 어비스컴퍼니의 소속 아티스트들도 자리했다. 파티 입장은 자사 플랫폼인 ‘페이보렛(FAVORLET)’ 을 이용한 NFT 홀더 인증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NFT 커뮤니티 파티에서는 새로운 협력사 및 향후 프로젝트를 공개하는 특별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 FSN과 핸드스튜디오도 이번 행사를 통해 벨리곰, 이마트24, 그램퍼스와의 파트너십을 최초 공개하고, 선미야클럽의 확장된 세계관을 발표하며 성장 비전을 공유했다. 또한 선미야클럽의 NFT 캐릭터인 ‘미야’ 를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OTT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시켜 웹(Web) 3.0 시대의 한 축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② 푸빌라 소사이어티

신세계백화점은 자체 제작한 캐릭터 ‘푸빌라’ 를 NFT로 발행하여 1초에 1만개가 완판됐다.<sup>80)</sup> 푸빌라 NFT는 클레이튼(Klaytn)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발행했으며 2차 판매 로열티는 7.5%이다. 푸빌라와 관련된 작품에 대하여 임의 변형, 2차 창작 그리고 상업적 이용을 불허하며, NFT 소지자는 각 작품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받을 수 있다.<sup>81)</sup> 푸빌라 NFT 소유자는 신세계 백화점과 연계한 실물 연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체적인 혜택은 NFT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NFT 등급은 최초 발행시 무작위로 선정되며 총 6개로 분류된다. 이중 20개만 존재하는 미스틱이 최상위이며 레전더리(100개), 에픽(500개), 레어(1000개), 언커먼(2500개), 커먼(5880개)으로 나뉜다.<sup>82)</sup> 미스틱 등급 소유자는 매달 퍼스트라운지 입장 5회, 발레파킹, 20% 사은 참여권 3매, 멤버스바 커피 쿠폰 3매, F&B 3만원 식사권 2매 등을 제공받게 된다.<sup>83)</sup>

78) 선미야클럽, <https://sunmiya.club/voting>, (2022. 9. 19. 방문)

79) 이데일리, “FSN-핸드스튜디오, 국내 최대 규모 NFT VIP 파티 개최”, 2022. 7. 11.

80) 한경비즈니스, 신세계백화점 푸빌라 NFT, 1초 만에 1만 개 완판, 2022. 6. 24.

81) 푸빌라소사이어티, <https://www.puuvillasociety.com/faq/faq>, (2022. 9. 19. 방문)

82) 푸빌라소사이어티, <https://www.puuvillasociety.com/>, (2022. 9. 19. 방문)

### ③ 닥터그루트 유니버스

LG생활건강은 NFT를 고객과의 연결고리로 인식하여 각 브랜드 고유 스토리인 세계관을 NFT와 접목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2022년 3월 멀티체인 NFT 메타버스 전문 기업 트레저랩스와 협업하여 뷰티 업계 최초로 빌리프 유니버스 NFT를 출시했다.<sup>84)</sup> 2022년 7월에는 국내 1세대 PFP 프로젝트인 도지사운드클럽(DSC Label)과 협업해 ‘닥터그루트 유니버스 NFT’ 2000개를 발행했고 하루 만에 완판했다.<sup>85)</sup> NFT 구매자는 닥터그루트에서 판매중인 탈모 샴푸를 배송 받을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 샴푸와 앰플이 포함된 일명 ‘탈모인류 구원 희망 KIT’를 증정받는다. DSC Label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인 ‘디스코드’에서는 닥터그루트를 소재로 한 유저들의 놀이문화가 형성되며 팬아트, 이행시, 제목학원 등의 형식으로 약 700건의 사용자 창작 콘텐츠가 생성되었다.

### ④ 벨리곰

롯데홈쇼핑은 메타버스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유통업계 최초로 NFT 마켓을 론칭했다. 이후 NFT 프로젝트 ‘선미야 클럽’을 출시한 디지털 마케팅 기업 FSN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벨리곰 멤버십 NFT 총 1만 개를 발행했다.<sup>86)</sup> 벨리곰 멤버십 NFT는 총 6개 등급인 벨리·홀릭·메가·슈퍼·서프라이즈·프렌즈로 나뉜다.<sup>87)</sup> 벨리곰 NFT 소유자는 롯데 계열 호텔 숙박 할인, 전용 라이브커머스 할인쿠폰, 한정판 피규어 선물 등의 실물 연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중 최상위 등급인 벨리 소유자의 경우 롯데 시그니엘 숙박권 및 조식 이용권이 포함된 시그니엘 플래티넘 패키지와 롯데호텔월드 숙박권, 샵롯데씨어터 관람권 등이 제공된다.<sup>88)</sup> 벨리곰 NFT는 8월 17일 사전 예약 고객을 대상으로 6000개를 우선 판매하고 18일에 3천 500개를 일반 고객에게 판매했다. 사전 예약 고객 판매분은 1초만에, 일반 고객 판매분은 0.5초만에 전부 판매했다.<sup>89)</sup>

### ⑤ 슈퍼워크(SuperWalk)

83) 푸빌라소사이어티, <https://www.puuvillasociety.com/about/utility>, (2022. 9. 19. 방문)

84) 빌리프,

[https://belifmeetsvdl.com/shopinfo/belif\\_universe\\_nft.html/belif\\_universe\\_nft.html#nft\\_goods](https://belifmeetsvdl.com/shopinfo/belif_universe_nft.html/belif_universe_nft.html#nft_goods), (2022. 9. 19. 방문)

85) 닥터그루트 NFT 민팅 사이트, <https://drgroot.dogesound.club/minting>, (2022. 9. 19. 방문)

86) 전자신문, 롯데홈쇼핑, 벨리곰 멤버십 NFT 출시…숙박권 등 혜택 제공, 2022. 8. 18.

87) 벨리곰, <https://www.bellygom.world/>, (2022.9. 19. 방문)

88) 벨리곰, <https://www.bellygom.world/#level-belly>, (2022. 9. 19. 방문)

89) 머니투데이, 롯데홈쇼핑 벨리곰 NFT, 발행 즉시 완판…"0.5초만에", (2022. 9. 19. 방문)

클레이튼 기반의 국내 M2E (무브투언·Move to Earn) 프로젝트인 슈퍼워크는 2022년 7월 1일 민팅 이후 45여일 만에 누적 거래량 971만 KLAY를 달성하며 8월 가격 기준 거래액 약 38억 원, 거래 수수료 수익 2억6000만원 가량을 확보했다.<sup>90)</sup> 슈퍼워크는 걷기만 해도 토큰을 받는 블록체인 기반 리워드 앱으로서 각각의 신발마다 레벨과 등급이 구분되며 퍼포먼스, 내구도, 착용감, 행운 점수가 다르게 부여된다.<sup>91)</sup> 슈퍼워크를 개발 및 운영하는 Proground는 9개월간 달리기 커뮤니티 앱을 운영해온 스포츠테크 스타트업으로 그간의 피트니스 데이터 측정 노하우와 부정행위 필터링 기술을 도입해 슈퍼워크를 선보였다.

슈퍼워크는 자체 구축 토큰 이코노미에서 듀얼 토큰 모델(Dual Token Model)을 채택했다. 듀얼 토큰은 슈퍼워크의 앱 이용에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인 ‘워크 토큰(\$WALK)’ 과 프로젝트 운영 전반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거버넌스 토큰(Governance Token)인 ‘그라운드 토큰(\$GRND)’ 으로 분리되어 있다. 워크 토큰은 무제한 발행되지만 매일 총 발행량이 한정되어 이용자 활성화 지표에 따라 알고리즘에 의해 발행량이 조정된다.<sup>92)</sup>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토큰 공급량이 늘어나고 활성도가 줄어들면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걸음은 하루에 최대 1만보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3000보, 7000보, 1만보를 달성할 때마다 각각 소량의 워크 토큰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일정 수량 이상이 모이면 이를 출금해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클레이튼으로 교환한 후 현금화할 수 있다. 그라운드 토큰은 총 10억개만 발행되며 그라운드 토큰 보유자는 슈퍼워크의 사업적 의사결정을 함께 하고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받을 수 있다.<sup>93)</sup>

## 2. NFT 미술시장 기초조사

### 가. NFT 미술시장 사례 연구 개요

#### 1) 조사방법 및 절차

##### 가) 조사방법

90) 한국경제, 김태완 대표 "슈퍼워크, M2E 넘어 웹3 헬스 플랫폼 될 것", 2022. 8. 18.

91) 슈퍼워크, <https://superwalk.io/>, (2022. 9. 19. 방문)

92) 슈퍼워크, <https://docs.superwalk.io/undefined/undefined-3/usdwalk-utility-token> (2022. 9. 19. 방문)

93) 슈퍼워크, <https://docs.superwalk.io/undefined/undefined-3/usdgrnd-governance-token> (2022. 9. 19. 방문)

NFT 미술시장 기초 조사 연구를 위하여, 연구진은 국내 NFT 거래소, 창작자, 미술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설계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국내 NFT 거래소 중 주요 거래소 5개소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주요 설문 문항에 따라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기법을 적용하였다.

연구진은 사전에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하였다.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질문지를 미리 이메일로 전달하여 이해관계자가 해당 질문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당일 구체적인 내용을 구술을 통해 녹취하여 차후 녹취록으로 작성하고, 주요 세부 사항을 정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인터뷰 조사 실시 후, 2차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되묻고, 해당 내용을 추가로 수집하고 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직접 인터뷰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NFT 거래소와 인터뷰를 진행했으나 답변을 거부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의 문헌 자료 및 온라인 자료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NFT 미술을 직접 창작하고 거래하는 창작자와 미술시장 관계자들의 NFT 미술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하여 창작자와 미술시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국외 NFT 미술시장 기초조사를 위해서는 온라인 및 문헌 자료를 통하여 국내 NFT와 비교분석할 수 있는 카테고리에 따라 기초적인 내용들을 조사하였다.

## 나) 조사대상 및 일정

연구진은 NFT 미술로 거래하는 국내업체 가운데 4개 업체, 클립드롭스, 에트나, 업비트(NFT), 메타 갤러시아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우호적이지 않은 NFT거래소에는 서면 인터뷰를 요청하고, 공개가능한 자료를 확보하여 가능한 범위까지의 기초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초조사자료를 토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관해 해당 거래소의 관련 부서에 2차적인 인터뷰 조사를 요청하였다.

NFT 미술시장 기초 조사 연구 조사 진행일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9> NFT 미술시장 기초 조사 연구 조사 일정

구분	조사 대상	조사방법	조사 일시	
사업자 집단 (10)	국내 업체 (5)	두나무	심층인터뷰	2022.8.
		메타 갤러시아	심층인터뷰	2022.7
		아트토큰	심층인터뷰	2022.7.
		에트나	심층인터뷰	2022.9
		클럽드롭스	온라인 및 문헌 자료	2022.7.
	해외 업체 (6)	오픈씨(OpenSea)	온라인 및 문헌 자료	2022.6.~7.
		파운데이션 (Foundation)	온라인 및 문헌 자료	2022.6.~7.
		노운 오리진	온라인 및 문헌 자료	2022.6.~7.
		슈퍼레이	온라인 및 문헌 자료	2022.6.~7.
		니프티게이트웨이	온라인 및 문헌 자료	2022.6.~7.
		매직에텐	온라인 및 문헌 자료	2022.6.~7.
	미술계 집단 (12)	국가기관 종사자(1)	서면 인터뷰	2022.6.~7.
미술관 종사자(1)		서면 인터뷰	2022.6.~7.	
갤러리 종사자(3)		서면 인터뷰	2022.6.~7.	
미술감정기관 종사자(1)		서면 인터뷰	2022.6.~7.	
대기업 종사자(1)		서면 인터뷰	2022.6.~7.	
전시기획자(1)		서면 인터뷰	2022.6.~7.	
작가(4)		서면 인터뷰	2022.6.~7.	

## 2) 조사내용 및 자료분석

국내 NFT 거래소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하기 위해 활용된 기초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1) NFT 미술 거래 온라인 자료 및 문헌 자료 분석, 2) ICO 현황과 규제방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제6조 제4항, 제5항)과 4)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등이다. 국내 NFT 거래소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는 위의 네 가지 주요 카테고리로 분류된 내용을 토대로, 조사영역은 크게 사업 개요 및 현황, 사업운용방식, 법률 및 제도적 쟁점으로 구성하였다. 이

가운데 사업운용 방식에 대한 질문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사할 수 있도록 1) 거래 절차 및 조건, 2) NFT 거래과정, 3) NFT기술 현황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NFT 미술 거래 기초 조사에 관한 질문지의 전체 구조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10> NFT 미술 거래 기초 조사 인터뷰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대상	질문 내용	
1-1. 사업 개요	NFT 미술 거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 연도</li> <li>- 조직 구성</li> <li>- 수익 구조 및 결과</li> <li>- 거래계약 및 약관</li> </ul>	
1-2. 사업 운용방식	NFT 미술 거래소	거래 절차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FT 거래 참여기준 및 절차</li> <li>- NFT 미술 관리 사업체의 신탁/위임여부</li> <li>- NFT 미술소유권의 확정일자</li> <li>- NFT 거래시 환불규정</li> </ul>
		NFT 거래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FT 미술 판매자의 경우(창작자가 작가)</li> <li>- NFT 미술 컬렉터의 경우</li> <li>- NFT 미술 관리 및 매매에 대하여</li> </ul>
		NFT 기술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FT 미술소유권증명방법</li> <li>- NFT 미술소유권 정보의 가상화폐 등록여부</li> <li>- 관련 외부 업체와의 제휴에 대하여</li> </ul>
1-3. 법·세제 관련	NFT 미술 거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 및 법률적 쟁점</li> <li>- NFT 법적·제도적 전망</li> </ul>	

위의 표와 같이, 이해관계자를 위한 인터뷰 조사는 향후의 자료의 범주화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조사 영역별로 유목화하고 아래의 국내 사례 연구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미술계 반응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은 거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미술관, 갤러리, 미술감정기관 종사자 및 관련 업계, 전시기획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창작자들을 위주로 심도있는 의견들을 조사, 취합하여 설문조사 결과 내용에 개별적으로 반영하였다. 미술계집단을 위한 설문 설계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III-11> NFT 미술 거래 기초 조사 미술계 집단 서면 인터뷰 내용

조사 영역	조사 대상	질문 내용
2. 미술계 집단	미술계 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아트 NFT 대상 작품의 범위에 대한 의견</li> <li>- NFT 미술품 장르별 거래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의견</li> <li>- NFT 미술품 거래가 미술계(컬렉터)에 미치는 영향</li> <li>- NFT 미술품 거래가 작가 작품활동에 미치는 영향</li> </ul>

## 나. 국내 NFT 미술시장 대상별 기초조사(포커스 그룹 인터뷰)

### 1) 국내 NFT 거래소

#### 가) 업비트 NFT (두나무주식회사)

##### (1) 회사개요

###### - 설립개요

법인형태로 사업을 시작한 두나무주식회사의 업비트 NFT(이하 업비트 NFT)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2021년 11월 오픈해 베타서비스 중인 IT 가상자산거래소이다.<sup>94)</sup> 업비트 NFT는 순수미술작품부터 케이팝 스타, 스포츠 관련 250여종의 NFT를 선보였고, 2022년 3월 김환기 작품 <우주> NFT 3개가 총 194이더리움(약 7억 3,700만원)에 낙찰되면서 NFT 미술시장의 가능성을 국내에 입증하였다.<sup>95)</sup> 그리고 지난 9월 NFT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블록을 마련하면서, NFT 아트 오프라인 전시 형태로 고객체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sup>96)</sup> 그러나 업비트 NFT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직접 토큰을 발행하지 않는다. 업비트 NFT는 큐레이티드 마켓(curated marketplace)을 표방하며, 드롭스(Drops)와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 두 가지 플랫폼 기능을 제공한다. 업비트 NFT는 서울옥션블루와 업무협약체결을 체결하여 NFT 콘텐츠 발굴 및 확보, 블록체인 기반 기술 제공, NFT 공동 사업 추진 등에서 적극 협력하고 있다. 특히 양사는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선다. NFT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옥션 및 서울옥션 블루가 보유한 미술 콘텐츠 및 인프라, 업비트 NFT의 블록체인 기반 기술,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sup>97)</sup> 이처럼 업비트 서비스 내에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와 ‘업비트 NFT 거래소’가 존재한다. 그간 업비트가 가상자산인 NFT에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의무조항들을 이행해 왔기 때문에 NFT 거래 라이선스 취득이 용이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업비트 유저 900만명 및 트래픽과 유동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NFT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다른 업체와의 변별점을 갖는다.

###### - 인력구성

94) 업비트, <https://upbit.com/nft> (2022. 9. 19. 방문)

95) 서울신문, “NFT사업, 하이브와 함께 美 진출… 두나무, 글로벌 거래 플랫폼 될 것”, 2022. 3. 31.

96) ZDNET Korea, 갤러리아百, 두나무 메타버스 플랫폼서 NFT 전시관 운영, 2022. 9. 28.

97) EBN 산업경제, <https://www.ebn.co.kr/news/view/1485894/?sc=Naver> (2022. 9. 19. 방문)

업비트 NFT는 개발팀, 기획팀, 운영팀, 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비트 본사는 총 4-500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비트 NFT를 위해 금융이나 미술전문가가 상주하는 형태가 아니라, 외부 갤러리, 옥션 등과의 미술관련 업무를 협업으로 진행하고, 현재는 업비트 NFT는 주로 IT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 - 수익구조

업비트 NFT는 토큰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기존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업비트 NFT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비상장증권을 통한 수입원 등 기존의 업비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2022년 7월 현재 NFT 아트 판매현황에 대한 수치는 데이터상으로 공시하여 판매 추이는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지만, 전체 판매액의 공개의무는 없다. NFT 아트의 수익의 경우, NFT 아트의 원 저작자인 작가에게 할당되는 실질적인 수익률에 대해서 업비트 NFT는 관여하지 않는다. 업비트 NFT는 토큰 발행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취한다. 거래수수료 비율은 업비트 NFT 마켓플레이스 이용시 판매, 구매액의 2.5%를 거래수수료로 책정하고 있으며<sup>98)</sup>, 이는 클립드롭스나 다른 거래소와 동일한 수준이다.

#### - NFT 아트에 대해 업계에서 바라보는 전망

작년도 대비 미술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지만, 업비트 NFT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NFT 아트 판매는 꾸준한 정도라고 업계 관계자는 전한다. 미술시장의 부침에 따라 NFT 아트의 판매도 크게 영향을 받지만, 일정 부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비트 NFT를 비롯한 국내 NFT 업계는 전 세계는 물론 국내에서도 전체 미술품매매 비율상 유의미적인 수치로 그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향후 공공미술 NFT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공공미술에 미디어아트가 포함되었듯이, 업비트 NFT는 공공미술로 NFT 아트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 현재 주목하고 있다.

## (2) 거래유형

#### - NFT 아트 토큰 발행 FLOW

업비트 NFT는 NFT 아트에 대해 예술작품에 한정하지 않고, ‘창작물’의 영역으

---

98) 업비트 고객센터, “NFT 거래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https://upbitcs.zendesk.com/hc/ko/articles/4410136492441-NFT-%EA%B1%B0%EB%9E%98-%EC%88%98%EC%88%98%EB%A3%8C%EB%8A%94-%EC%96%B4%EB%96%BB%EA%B2%8C-%EB%90%98%EB%82%98%EC%9A%94-> (2022. 9. 19. 방문)



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업비트 NFT는 약관에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Non-Fungible Token)으로서, (i)이미지, 동영상, 음악, 서적 등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메타데이터 정보를 포함한 상태로 발행되어, (ii)해당 NFT 소유자에게 상기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특정 권리(이하 “NFT 소유자의 권리”)가 부여되는 블록체인의 기반의 디지털 자산”을 NFT로 정의한다.<sup>99)</sup> 즉 업비트 NFT에서 주로 거래하는 NFT는 저작권이 포함된 순수예술창작물의 형태를 띤 2차 저작물인 셈이다. 업비트 NFT에서 가장 최우선 이슈로 두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와 부속 합의에 대한 위임의 문제다. 이렇게 NFT 발행인의 권리를 위임받아 발행한 2차 저작물인 NFT의 거래가 가능해진다.

업비트 NFT는 갤러리와 계약으로 시작되며, 여기에서 발행인은 갤러리며, 갤러리가 발행하는 것이 토큰 즉 NFT이다.<sup>100)</sup> NFT 발행인은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는데, 그 핵심이 저작권이다. 이때 NFT 아트 발행시 저작권자와 발행인 사이에 체결한 저작권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다. 이 계약서에는 NFT 아트 발행인과 저작권을 확보한 권리자가 동일해야 한다. 업비트 NFT의 NFT 아트 거래에서 가장 핵심관리 대상은 저작권이다. 이때 저작권자는 작가일 수도 있고, 전속갤러리나 재단이 될 수도 있다. 업비트 NFT에서 관리하는 영역은 바로 ‘NFT를 찍는 발행인이 저작권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여부이다. 저작권에 대한 위임계약이 완료되면, 업비트 NFT의 NFT 아트 거래 업무가 시작된다. 업비트 NFT는 기존의 갤러리, 옥션과 협업을 통해 이러한 저작권문제를 해결한다. 이때 업비트 NFT가 갤러리와 협업을 결정하는 기준은 기존 미술시장에서의 인지도에 의존한다. 작가는 NFT 발행처인 마스터CP사와 NFT 아트로 토큰 발행 전에 RS계약(Recording Secretary 혹은 Revised Statutes)이나 미니멈 개런티 계약을 한 것에 따라, 원저작자인 작가는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 - 구매절차 및 방법

업비트 NFT 아트의 경우도, 주요 거래소의 구매자는 20-30대 남자 고객이 가장 많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신규고객을 확보가 더 중요한 이슈이지만, 일단 NFT 아트는 기본적으로 구매경험이 있는 이들의 재구매, 재판매율이 높다. 이들의 구매목적은 재테크이다. 소유권을 확보한 NFT를 판매하여 수익을 도모하는 방식의 구매와 재판매 비율이 높다. 구매자들은 오픈채팅과 같은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업비트 NFT는 관여하지 않는다. 소통채널의 운영주체는 NFT 아트 발행 때마다 커뮤니티 형식으로 자생적으로 개설된다. 종종 작가가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

99) 업비트 [https://static.upbit.com/terms/legacy/nft\\_terms\\_20211123.html](https://static.upbit.com/terms/legacy/nft_terms_20211123.html) (약관 제2조 1)

100) 업비트 [https://static.upbit.com/terms/legacy/nft\\_terms\\_20211123.html](https://static.upbit.com/terms/legacy/nft_terms_20211123.html) (약관 제2조 6)

만, 대부분 거래를 희망하는 이들이 주체가 된다. 참여자 대부분은 국내이용자이다. 해외이용자는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NFT 거래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KYC 인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는 국내 거주 외국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출시 거래할 수 있다. 업비트 NFT에서의 NFT 아트 구매 및 판매의 경우 현재는 코인거래만 가능하다. 사실 업계측의 입장에서는 코인 거래 외에 신용카드결제, 계좌이체나 예치금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결제수단이 거래에 사용되는 것이 판매에 용이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거래상 실명인증 KYC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때까지 업비트 NFT는 Drops는 ETH 또는 BTC로,마켓플레이스는 ETH로 거래하도록 하고 있다.<sup>101)</sup>

NFT 아트의 경우는 구매란 소유권(민법상 소유권의 의미가 아님에 주의)의 이전과 동일한 것이다.<sup>102)</sup> NFT 아트의 구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서울옥션에서 어떤 작가의 NFT 아트를 100개 민팅하면, 100개의 NFT가 발행된다. 이 발행된 NFT는 서울옥션의 지갑에 입금되고 이때부터 소유권은 서울옥션과 체결되면 NFT 아트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이동한다. 그리고 구매자의 지갑에 있던 낙찰 대금이 지급된다. 이때 업비트 NFT의 거래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서울옥션의 지갑으로 이동한다. 매출인식이 완료된 이 시점에서 소유권은 구매자의 것임이 확정되고, 서울옥션에는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다.

NFT 소유자는 소유권과 함께 재판매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구매를 통해 소유권을 가진 자는 시장원리에 따라 재판매에 나설 수 있다. 재판매를 위한 지분 소유기한을 설정하는 등의 판매 제한은 없다. 재판매에 대해 거래소의 입장에서 어떠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혹은 제어장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물 미술 작품과 같이 소유 이후의 신탁이라든가 위임의 의무는 NFT 아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NFT 아트는 구입과 동시에 소유권이 구입자에게로 넘어간다. 구입자, 즉 소유권자에게 어떤 제약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 신탁이란 개념은 불필요하다. 종종 NFT 아트의 공급이 비탄력적이라 활성화가 어려운 경우 NFT 갯수를 줄이거나 늘리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갤러리에서 활성화를 위해 발행수를 조절할 수는 있

---

101) 업비트  
<https://upbitcs.zendesk.com/hc/ko/articles/4410137826457-NFT%EB%A5%BC-%EA%B1%B0%EB%9E%98%ED%95%A0-%EC%88%98-%EC%9E%88%EB%8A%94-%EA%B2%B0%EC%A0%9C-%EC%88%98%EB%8B%A8%EC%9D%80-%EB%AC%B4%EC%97%87%EC%9D%B8%EA%B0%80%EC%9A%94-> (2022. 9. 19. 방문)

102) 업비트  
<https://upbitcs.zendesk.com/hc/ko/articles/4410151460121-NFT-%EC%86%8C%EC%9C%A0%EC%9E%90%EB%8A%94-%EB%AC%B4%EC%97%87%EC%9D%84-%ED%95%A0-%EC%88%98-%EC%9E%88%EB%82%98%EC%9A%94-> (2022. 9. 19. 방문)

지만, 원칙적으로 거래소인 업비트 NFT에서 이를 통제하지는 않는다. 소유권자들의 재구매, 재판매의 경우는 소유권자가 주문을 내서 이뤄지기도 하고, 구매자가 나서서 가격을 제시하고 구매하기도 한다. 업비트 NFT는 회사 방침상 NFT를 직접 구매하거나 회수하지 않는다. 그것은 NFT 아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NFT 아트 구매자의 환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상자산인 NFT 아트는 낙찰과 동시에 마켓플레이스에서 바로 거래되기 때문에, 세컨더리에서 어떤 가격으로 거래되는지를 거래소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구매 후 철회 역시 불가능하다.

#### - 거래상의 위험제어 장치

업비트 NFT도 기존 가상자산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수위로, NFT 아트 거래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종의 장치들을 마련해 두고 있다.

#### - 서버다운 문제

거래시 가장 우려되는 위험은 동시접속자수로 인한 과부화, 서버 다운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트래픽 트랜잭션이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40조의 거래에 동시접속자가 200만명이 넘는 경우에도 서버의 과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

#### - 보안 문제

업비트 NFT는 업비트와 같은 구조로 해킹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NFT 역시 해킹대상이 될 수 있다. 중앙화된 거래소일 경우, DB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DB나 블록체인이 해킹될 수 있다. 블록체인에서 솔리디디라고 하는 스마트컨트롤에 취약점이 발견된 사례도 있고, PK(Private Key, 개인키)라는 계정의 완전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비밀번호키를 주는 과정에서 탈취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 탈취는 물론 피싱을 대비한 보완에 주력한다. 업비트 NFT는 NFT 아트를 위한 관리 서버의 유지 보수에 5-60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 - 투기, 과잉구매의 문제

업비트 NFT는 소유권자에게는 구매한 NFT 아트의 재판매, 외부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제약은 일체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발행인에게는 NFT 발행 시 제약조건이 있다. 업비트 NFT에서 발행한 동일 작품의 NFT를 외부업체에서 추가 발행할 경우 가격폭락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업비트 NFT에서 구매한 소유권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으므로 동일작품의 발행에 제약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마련된 것일 뿐이다. 업비트 NFT는 실명거래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판

매자와 구매자 등에 관한 기록이 남겨지게 된다. 또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

### (3) 주요거래작품유형

#### - 주요거래작가군

주요 거래작가는 이미 미술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은 작가들이 많다. 서울옥션에서 발행한 NFT 아트 작가로는 장승효, 권오상, 강형구, 김남표, 이이남, 김선우 그리고 하정우, 장광, 하태임, 지용호, 멀티아트 구준엽, 유나얼, 이이남, 주태석, 황선태 등이 있다. 이처럼 회화, 디자인, 일러스트, 영상, 게임, 스포츠, 디지털아트, K-POP 등 다양한 장르가 거래되고 있다. 외국작가의 경우는 권리해결 즉 저작권 관련 계약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NFT 아트 발행이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까지 7-80명의 작가들의 NFT 아트가 발행되었다.

업비트 NFT 에디션 정보에서는 다음 기능이 제공되며 전체 에디션에 대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다. 에디션 별 소유자 정보, 판매가 및 최고 제안가 현황 조회, 에디션 번호순 정렬, 판매가 높은/낮은 순 정렬, 에디션 별 최고 제안가 높은/낮은 순 정렬 등이다. 또한 드롭스(Drops)와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에서 거래된 이력을 거래 금액과 함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판매자/소유자 항목에 노출되는 닉네임은 업비트 계정의 닉네임으로, 창작자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가 마스킹되어 노출된다.<sup>103)</sup>

#### - 작가발굴

업비트 NFT에서는 작가선정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그러한 작가를 선정하고 추천하고 NFT 발행이 가능한 갤러리와 협의로 진행한다. 작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은 마스터CP사가 전담하고, 간혹 IP홀더나 지명도가 높은 작가의 경우는 업비트 NFT에서 개인적으로 NFT 발행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수는 아직까지는 한정적이다. 현재 매매되는 일반적인 큐레이어드 마켓의 경우, 기존 작품, 영상물 등의 도용, 저작권 남용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NFT는 일반 창작자들의 NFT의 발행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초기에는 작가발굴을 위해 업비트 NFT가 서울 옥션과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한

103)업비트,<https://upbitcs.zendesk.com/hc/ko/articles/4409935110937-%ED%95%B4%EB%8B%B9-%EC%97%90%EB%94%94%EC%85%98%EC%9D%98-%EA%B1%B0%EB%9E%98-%EC%9D%B4%EB%A0%A5%EC%9D%80-%EB%AC%B4%EC%97%87%EC%9D%B8%EA%B0%80%EC%9A%94->  
(2022. 9. 19. 방문)

적은 있었으나, 현재는 공모전의 진행, 선정은 전적으로 갤러리인 서울 옥션이 담당하고 업비트 NFT는 당선자에게 상금포상, 당선 공모작의 NFT 거래 지원하는 등의 협업형식으로 진행한다. 업비트 NFT의 기업성과지표를 위해 신진작가 발굴을 활용하는 것이 기업측에서는 용이하지만, 현재로는 미술의 전문성을 갖춘 갤러리, 옥션에게 신진작가발굴을 전담토록 하고 있다. 업비트 NFT는 학교 청소년 작품지원, 발달장애인 그림으로 발행한 NFT 아트거래 지원, 판매수수료 기부, 유통업체와의 협업 등을 진행한다.

#### (4) 법률쟁점

##### - 개인정보 이용 관련

NFT 거래를 위해서 업비트 NFT는 모든 사용자들은 KYC를 채우고 인증을 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즉 실명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실명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의 인증을 거쳐야만 거래가능하다. NFT는 블록체인에서 ERC7를 기반으로 민팅된 것이다. 즉 NFT가 블록체인을 통해 성립되는 셈이다. 사실 NFT 아트 외에도 NFT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초상권, 방송, 게임 등의 라이선스까지 포괄한다.

##### - 소비자 이용편의 관련

NFT 구매에 관한 소비자 및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약관으로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아직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 이와 같은 소비자의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해 CS인력을 배치하여 대응하고 있다. 주로 돈과 관련된 사항은 실시간으로 응대하고 있으며, 그 외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은 24시간 3교대로 인력을 배치하여 처리하고 있다<sup>104)</sup>.

##### - 추급권

NFT 아트의 추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추급권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업비트 NFT는 갤러리와 계약 시 브랜드 사용권의 형태로 거래 대금의 일정 퍼센트를 환급해주는 로열티 형태로 수익배분을 하고 있다. 세컨더리의 경우는 로열티가 높으면 거래가 어려워진다.

---

104) 업비트

<https://upbitcs.zendesk.com/hc/ko/articles/900006527463--%EC%83%81%EB%8B%B4-1-1%EB%AC%B8%EC%9D%98-%EB%B0%8F-%EC%B9%B4%EC%B9%B4%EC%98%A4%ED%86%A1-%EC%83%81%EB%8B%B4-%EB%B0%A9%EB%B2%95> (2022. 9. 19. 방문)

#### - 저작권

앞서 언급했던 바처럼, 업비트 NFT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저작권이다. 업비트 NFT는 원저작자인 작가와의 직접계약이 아닌 그들과 계약한 갤러리를 NFT 발행인으로 하는 계약을 맺는다. 이때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발행인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대한 계약을 맺고 있다. 작가와 갤러리가 저작권에 대해 맺은 계약, 그리고 그 갤러리와 업비트 NFT가 맺은 계약으로 이중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인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작고한 작가의 경우 유가족이 고인의 저작권리를 사용, 위임하는 것에 관한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외부법무법인을 통해 계약을 맺고 NFT 아트 발행을 허가한다. 업비트 NFT는 발행인의 권리만을 확보하면 저작권의 확보와 동일한 수준의 효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업비트 NFT는 NFT에 관해서는 조폐공사 측 블록체인에 저작권인증을 위한 장치를 마련 중이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정책과제로 올해 3월부터 진행된 실증사업에 업비트 NFT도 참여의향을 밝혔고, 향후 조폐공사의 권위를 통해 업비트 NFT의 저작권 실증장치를 마련하고자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조폐공사 블록체인에서 NFT의 저작권이 인증될 수 있도록 조폐공사, 업비트 NFT, 원저작자 3자 계약을 실증해주는 형태이다<sup>105)</sup>. NFT 아트에서도 핵심은 저작권의 인증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저작권인증에 대한 불신으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일은 현재까지는 없지만, 향후를 대비한 장치는 마련하고 있다.

#### - 세금

NFT 아트의 구매는 기록이 모두 남는 거래이기 때문에 세제 규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우선 매출로 인식되는 부분에 대해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부가세 및 연말정산 시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1차 판매, 2차 판매에 대한 세금부과에 대한 원칙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매로 인한 차액발생분에 대한 과세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셈이다. 사실 NFT 아트의 경우 미술품이기 때문에 면세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현재 언급되는 소득세 22% 역시 국세청에서 시행령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sup>106)</sup>.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의 매출에 대한 기록은 업비트 NFT 측에서 모두 갖고 있지만, 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NFT 아트에서 관건은 양도소득세보다는 증여세에 맞춰져 있다. 현재 원칙적으로 해외 이용자의 NFT 아트 거래는 불가능하지만 만약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해외이용자의 경우의 세금과세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거

105)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 조폐공사, NFT 신뢰검증 나서... 애플 '메이드 인 인디아', 2022. 10. 6.

106) 한경코리아마켓, '한국블록체인협회, 특금법 시행령 TFT 구성', 2020. 4. 28.

주 외국인은 국내거주인증서류 제출시 거래가 가능한데 그 경우 세금을 어떻게 부과할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다. 작년도(2022년 현재)의 경우 원천징수의 여부가 미확정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세금 부분을 거래시 선제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현행법령에서 NFT 아트 관련 이슈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일단 가상자산에 대한 문제이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본다면 세제를 개편,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디지털콘텐츠라고 본다면, 세금부과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NFT 아트의 정체를 무엇으로 볼지가 세금부과에 있어 선행된 과제일 것이다. 업계의 입장은 NFT 아트의 정체를 정부 차원에서 확정해주길 원한다. 현재 업비트 NFT는 NFT 아트를 가상자산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는 NFT를 가상자산으로 보고 있다.<sup>107)</sup> 유럽은 FATF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국 규제기관들이 실제적인 규제안을 만들어 적용한다. 작년 10월 FATF 권고안에 따라 투자성이 있는 가상자산으로 본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에서는 주로 증권성으로 NFT를 판단하고,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up>108)</sup>같은 데서 거래중단에 대한 규제 등을 행사하기도 한다.

## 나) 아트토큰

### (1) 회사개요

#### - 설립개요

아트토큰은 2021년 4월 미술에 포커스를 맞춘 법인으로 출발을 했다. 아트토큰은 기존의 거래소 형식이나 NFT 토큰과 관련된 투자목적의 NFT 아트가 아닌, 실물 작품의 예술성과의 연관성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NFT거래업계와는 차별화된다. 현재 아트토큰은 다국어(중국어, 일본어, 영어, 불어, 한국어) 지원을 통해 NFT 아트 거래가 많은 해외시장과 경쟁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현재 아트토큰을 통해 NFT 아트를 거래하는 고객수는 4,000명에 달한다.<sup>109)</sup> 아트토큰은 “단순히 원화를 NFT로 발행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아트에 히스토리를 입혀 현실 세계의 원화를 능가하는 작품을 만드는 것”<sup>110)</sup>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트토큰은 기존 실물

107) 한겨레, ‘NFT, 가상자산에 속할까?’, 2021. 10. 13.

108)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출처: 네이버

<https://en.dict.naver.com/#/entry/enko/d8a57129754f4d1f8adeb8d55edf8e48> (2022. 9. 19. 방문)

109) <https://nft-art101.arttoken.ai/#story> (2022. 9. 19. 방문)

110) 올댓아트, “‘NFT 아트’가 궁금하다면…지금 바로 노들섬에 가야 한다?”, 2021. 12. 16.

작업을 해온 작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NFT 아트를 발행한다. 이를 통해 창작자인 작가와 구매자 간의 투명하고 건전한 디지털 아트 생태계<sup>111)</sup>를 지향한다. 현재 아트코인은 자체개발을 통한 NFT 아트 발행 및 거래를 주 업무로 하고 있다.

- 인력구성

아트토큰은 대표 1인, 이사 3인 그리고 디렉터, 수석 큐레이터, 큐레이터, 디자이너, 회계, 홍보, 마케팅, 개발 담당 등 총 18명 규모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홍보를 담당하는 팀에서 블록체인을 담당한다.

- 수익구조

아트토큰은 대출없이 지분투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조성하였다. 아트토큰은 현재까지 베타버전을 테스트하고 있다. 초기 베타버전에서 수수료는 12.5%였다. 그러나 정식 버전에서는 수수료를 2.5% 정도로 낮출 예정으로 있다고 한다. 보통 작가들이 디지털시스템을 통해 NFT 아트를 민팅하는 것까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회사와 이 작업을 협업할 경우 크리에이트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트토큰의 주 수입원은 NFT 아트 판매와 실물작품을 거래수익이다. 그 외에도 아트 굿즈 판매 수익, 이벤트나 행사를 통한 티켓 판매금이 아트토큰의 수입원이다. 아트토큰은 아직 자사를 알리기 위한 광고 홍보에 주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광고홍보수익보다 광고지출이 큰 상황이다. 아트토큰은 경쟁력있는 우리나라 작가들의 NFT 아트로 K-ART로 홍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컨퍼런스, 오프라인 전시도 개최하고 있다. 아트토큰은 현재 블록체인회사 및 MBC, 샌드박스과 같은 콘텐츠 제작 기업들과의 다양한 업무제휴를 통해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 NFT 아트에 대해 업계에서 바라보는 전망

아트토큰은 NFT 아트의 영역과 가능성을 무한대로 본다. 예술적 재능이 있다면 전공이나 경력 심지어 학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작품을 공개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이다. 아트토큰에게 NFT 아트란 모든 이에게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를 열어줄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길, ‘가능성’이다. NFT 아트는 이제 발돋움하는 단계지만, 아트토큰은 앞으로 NFT 아트를 통해 디지털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영화와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어딘가의 투자자나 제작자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작품을 공개하고 전시할 수 있는 세계를 열어줄 수 있다고 본다. 아트토큰은 그러한 생태계가 NFT 아트를 통해 실현되리라 믿고 선제적인 플랫폼을

---

111) 올댓아트, 위의 기사, 2021. 12. 16.



만들어어나가고 있다. 어떤 영역이든지 창작자는 플랫폼을 통해서 스스로 작품판매, 금융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작가에게는 미술관이나 갤러리와 작품판매 계약을 할 경우 통상적으로 50:50으로 수익을 분배한다. 하지만, NFT 아트 수수료는 판매가의 2.5%인 점도 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큰 장점이다.

아트토큰은 현재 “NFT 아트 사업이 작년 고점을 찍고 다시 하향세를 보인다.”는 업계 평가에 대해,<sup>112)</sup> 다시 상승 웨이브가 올 것이라고 예측한다. 2021년도에는 국내외적으로 모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PFP 프로젝트가 강세였다. 아트토큰은 앞으로도 PFP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 (2) 거래유형

### - NFT 아트 토큰 발행 FLOW

아트토큰의 플랫폼에서는 판매자, 구매자, 회사가 부과하는 수수료 비율에 대한 언급이 담긴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를 체결한 후에 NFT 아트와 관련된 업무가 시작된다. 이때 이 계약서는 작품마다 생성되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부과되는 수수료 비율 역시 작품에 따라 다르다. 작가가 작품제작부터 민팅까지를 전담하면 작가비만 책정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의 수입료(크리에이트 수수료)가 반영된다. 이는 재판매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저작권료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즉 하나의 저작물 안에서, 각각 담당할 역할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된다는 의미이다. 예시를 들자면, 가수의 경우 본인이 작사, 작곡, 노래까지 부른 경우 가수가 받는 저작권료에 작곡, 작사가의 저작권료가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작사와 작곡을 다른 이가 했다면 그 사람들에게 저작권료가 돌아가듯이, 이렇게 작가와 별도의 업무로 들어가는 비용을 크리에이트 수수료라고 부른다.

### - 구매절차 및 방법

주요 거래소의 구매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트토큰은 베타버전으로 테스트버전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런칭 이후에 주요 구매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아트토큰에서 밝히고 있는 4,000여 명의 고객통계를 살펴보면, 거래 연령층은 30-40대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들은 코인으로 수익을 올린 경험이 있는 MZ세대들이다. 아트토큰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MZ

112)

<https://upbitcs.zendesk.com/hc/ko/articles/900006527463--%EC%83%81%EB%8B%B4-1-1%EB%AC%B8%EC%9D%98-%EB%B0%8F-%EC%B9%B4%EC%B9%B4%EC%98%A4%ED%86%A1-%EC%83%81%EB%8B%B4-%EB%B0%A9%EB%B2%95> (2022. 9. 19. 방문)

세대들의 NFT 아트 구매 선호도는 상당히 주목할만 하다. 주로 고객들의 구매추이를 살펴보면, 호기심으로 단순히 회원가입을 한 후 NFT 아트에 관심이 생겨 구매하기보다, 한 번이라도 기존 구매 경험이 있는 고객이 새로운 작품을 재구매하는 확률이 높다. 현재의 아트토큰에서 NFT 아트 구매자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재테크의 목적보다는, 나와 비슷한 취향, 비슷한 구매능력이 있는 이들과의 커뮤니티, 글로벌한 커뮤니티에 편입되고자 하는 욕구로 구매하는 경향이 높게 나온다.

아트토큰은 코인거래로 이뤄지며, 크립토티비(Crypto-Be)로 거래한다.<sup>113)</sup> 런칭한 이후 초기 베타버전에서는 가스비 등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암호화폐인 클레이로 NFT 아트 판매를 해 왔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 정식버전을 안착시킨 이후에는 이더리움으로 결제하도록 변경되었다. 사실 코인월렛(지갑)은 진입장벽이 높고, 업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발전이 늦다는 푸념이 늘 있어 왔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면 활성화는 쉬울 것으로 보이나, 법적문제가 풀기 어려운데 현실이다. 현재 현금을 암호화폐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가 제도화해놓은 가상자산거래업자로 등록된 것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서비스업체에서 신용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다. NFT나 암호화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거부감의 단계는 상당 부분 벗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 기술적 발전 덕분이 아니라 문화적인 발전에 기인한다. 인식이 바뀐 것이다. 기술생태계가 점점 웹 3.0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갑을 통해 NFT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아트토큰에서 NFT 아트의 구매는 회사에 NFT대금을 입금한 시점부터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민팅이 성사된 순간부터 소유로 본다. 소유와 관련된 기록 즉 어떤 NFT 아트 작품이 어떤 사용자에게 구매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에 공개된다. 이것은 아트토큰 내부가 아닌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기록된다는 의미이다. NFT 아트 구매, 판매의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일반인 창작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은 모두 오픈되어 있다. 구매자가 있으면 판매할 수 있다. 그 작품가격에 대해서도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에 맡긴다. 시장의 자율적 원리에 따라 필요에 의해 작품판매 금액은 상승,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다른 플랫폼에서 유사한 작품의 매매에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면, 아트토큰은 회사차원에서 그런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하는 판매자, 즉 창작자에게 조언해줄 수 있다. 신진작가의 경우 자신이 처음 책정한 금액이 판매와 연결되지 않을 경우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작품 판매가 결정방식은 실물작품에서 작품에 호당가격을 책정하는 것과 거의 유

113) 아트토큰, <https://nft-art101.arttoken.ai/#story> (2022. 9. 19. 방문)

사하다. 미술시장에서 실물작업을 해온 작가의 경우라면, 1천 만원의 실물작품을 10개의 NFT 아트로 발행시 개당 1백 만원씩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NFT 아트 전문 작가의 경우의 작품가격 결정시에는 작가의 의견을 존중한다. 현재까지 아트토큰에서도 지정가격제 외에 옥션을 시도해본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거의 지정가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에디션의 여부는 작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가격도 일률적으로 설명하긴 어려운 점이 있다.

아트토큰에서는 NFT미술을 판매하는 자를 아트토큰에서는 크리에이터나 작가라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아트토큰은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아트토큰 플랫폼에 올릴 수 있는 오픈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다. 아트토큰은 작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한다. 따라서 NFT 아트의 관리에는 신탁이나 위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블록체인 상에서 민팅을 할 경우, 모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신탁이나 위임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트토큰에서 구매한 NFT 아트의 경우 재판매가 자유롭다. 구매기간의 결정은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달려있다. 물론 재판매에도 회사 차원에서의 개입은 없다. 전적으로 구매자가 설정한다. 뿐만 아니라 구매시 상한선도 설정하지 않으며 판매가 역시 판매자인 작가가 설정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민팅 후에 환불은 불가능하다. 즉 민팅이 성립된 순간부터 구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한 유효기간과 같은 계약철회에 따른 규정은 없다. 이는 아트토큰 뿐 아니라 어떤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현금거래나 카드거래가 가능하다면 결제 취소, 혹은 환불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아트토큰은 현금 및 카드결제가 불가능하다. 오직 코인으로만 거래된다.

코인거래의 경우 약관에 고지여부와 상관없이, 민팅이 되었다는 것은 내 지갑에 이미 주소가 고지된 상황 즉 구매완료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다. 이것을 되돌리는 것은 블록체인 원칙상 불가능하다. 코인으로 거래되는 NFT 아트의 경우에는 현금거래시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은 현재로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NFT 아트 구매시 신용카드를 통한 거래를 통해 NFT 대중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트코인은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본다. 아트토큰은 NFT 아트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의 한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갑과 코인이 필수적이다. 현금거래나 신용카드보다는 가상자산거래의 지갑을 편의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트토큰은 네이버의 라인처럼 ‘월렛 + NFT 플랫폼’의 형식으로, 플랫폼에서 바로 지갑으로 연결되도록 협업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 거래상의 위험제어 장치

아직 NFT 아트 시장이 태동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트토크에서도 NFT 아트를 구매한 사람들의 불만사항은 다양하다.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구매한 NFT 아트의 가격상승이 언제쯤 가능한 것인지, 왜 오르지 않는지에 대한 불만이다. 사실 그것은 전적으로 구매자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지만, 작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구매한 이들의 팬덤을 지켜야할 경우가 더러 있다. 마지막엔 작품을 소각하는 (이것은 작품가격을 되돌려준다는 의미임) 일도 상정해볼 수 있지만, 회사차원에서는 그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에어드롭을 통해 NFT를 뿌려주는 홍보 방식을 더 선호한다. 지금은 아직 가치가 발생하지 않은 NFT이지만, 회사가 나중에 크게 되면 그 가치도 함께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 서버 다운 문제

NFT 아트 작품들의 관리를 위해서 아트토크에서는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고정비로 나가는 서버유지 보수를 위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가장 큰 비용 중 하나가 트래픽 관리비용이다. 수 백만 명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할 경우에는 상당한 액수의 관리비용이 지출된다. 이러한 관리비용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측정되는 방식으로, 정해진 구간비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 해킹 문제

NFT 관련 해외 도난사태 등의 발생으로 인해 NFT 아트의 보안문제는 중요한 이슈이다. 아트토크 역시 보안시스템의 정비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보안이슈가 발생한 사례가 드물지만, 해외 NFT거래 플랫폼 회사인 오픈씨(Opensea)에서 NFT 도난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보안이 뚫린 NFT는 탈취된 이후 재판매도 다수 이루어졌다. 물론 블록체인에 기록이 남으므로, NFT 자체는 되찾을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벌어진 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는 되찾을 수 없다. 오픈씨에서는 24시간 내 도난신고를 할 경우, 거래가 불가능하도록 보완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NFT를 다수 보유한 구매자의 경우, 자신이 소유한 NFT의 도난여부를 그렇게 빨리 인지하기 쉽지 않다. 즉 24시간 안에 신고되지 못할 경우, 도난당한 NFT는 재판매되어 구매자는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도난된 NFT가 탈취자에 의해서 재판매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구매자가 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NFT 그 자체가 증서로, 모든 거래 히스토리가 기록되어 작품의 진위감정에 있어서 강점을 지닌 블록체인일지라도, 그 자체의 도난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NFT 아트 거래업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NFT는 일반적으로 자산관리를 구매자인 사용자가 직접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보안이 취약한 시스템에서 하는 거래는 위험이 따른다. 현재 아트토큰은 Smart Contract를 통한 거래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면 시스템이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이 Contract 자체의 보안에 대한 문제로 해킹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트토큰에서 책임을 진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아트토큰은 우선 커뮤니티에 해킹 사실에 대한 정보를 고지하고, 피해액을 추산해서 보상대상자와 금액을 신청한 후에 보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구매자의 개인 지갑이 해킹될 경우는 아트토큰 측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은 타인에게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노출한 경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듯이 아트토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트토큰에서는 외부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즉 NFT 아트의 판매자인 크리에이티브 작가가 아트토큰 플랫폼 외에 다른 회사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제약이 없으며, 계약상으로도 그러한 제약에 대한 언급이나 이용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 - 과잉구매의 문제

현재로는 과잉구매에 대한 위기관리 방식보다는 NFT 아트의 가격이 정체되었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더 많이 고려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소각의 방식이 자주 사용된다. 소각을 하는 정해진 기준이나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소각을 ‘작가의 권한’ 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소각을 통해 작품의 희소성을 높여 유통을 원활히 하는 방식으로 아트토큰에서도 판단한다. 따라서 거래소인 아트토큰에서 그 판단을 내리거나 조언하는 경우도 있다.

### (3) 주요거래작품유형

#### - 주요거래작가군

아트토큰은 K-ART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국성을 두드러지게 표출하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작가선정을 해나가고 있다. 아트토큰은 다양한 글로벌 NFT 프로젝트를 이끄는 CRYPTO-BE와 KOREAN NFT를 통해 국내외 최고의 NFT 아티스트들을 초대하고 그들의 NFT 작품과 함께 오프라인 작품을 함께 소개한다. 주로 베니스 비엔날레 작가, 아트스타 코리아 우승 작가 등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거래한다.<sup>114)</sup>

아트토큰의 주요 작가군은, 구광모, 권오상, 김지혜, 김관영, 모준석, 신제현, 성병

114) 아트토큰, <https://nft-art101.arttoken.ai/#story> (2022. 9. 19. 방문)

회, 성태진, 이인, 이성근, 전예진, 조현서, 하태임, 한성진, 한호, 홍성용, 최승윤 등이다. 또한 NFT 아트로 디지털 작업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작가들을 지원해 왔다. 베타버전이 끝나고 정식 런칭이 되는 이후부터는 오픈플랫폼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트토큰은 NFT 아트 작가들의 발굴 및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작가선정에 있어서 정형화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현행 미술시장에서 발전가능성이 보이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아트토큰 큐레이터와 디렉터가 발굴한다. 직접 섭외해서 작가를 선정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공모의 형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받는 것은 아니다. 작가의 선정 이후에도 작품 선정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작가의 모든 작품을 NFT 아트로 만드는 식으로 작업하지는 않지만, 참여하는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NFT화하고 싶다면 미술전공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 - 작가발굴

아트토큰에서는 다양한 공모전을 통해 신진작가를 발굴한다. 예술이라는 것에 기준이 없듯이, 아트토큰에서 제시하는 공모작가의 기준이나 제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모시 출품작의 수량에 대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공모나 인큐베이팅 사업은 없다.

### (4) 법률쟁점

아직 국내에는 NFT 아트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이지만, 아트토큰은 국내 NFT 아트 및 관련 기술적 측면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 개인정보이용관련

개인정보 이용 및 이용자 약관과 관련하여 현재 아트토큰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 또한 아트토큰은 약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의 개인정보이용이나 약관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실명, 이메일 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블록체인에 기입되지 않는다.

#### - 소비자불만접수

소비자 불만 접수나 편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아트토큰은 커뮤니티, 오픈채팅방,

블록, 소모임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 불만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NFT 아트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진다. 현재까지 게시판이나 Q&A와 같은 채널은 아트토큰에는 없다. 아트토큰의 NFT 아트에 대한 로드맵, NFT 아트의 사업성이나 주요작가군의 방향성에 대한 소통을 위해 소규모 미니방을 운영하고 있다.

#### - 추급권

아트토큰은 NFT 아트 재판매시 추급권에 따라 수익을 배분한다. Smart Contract 를 오픈할 때마다 플랫폼사용료로 아트토큰에 수익이 돌아가는 형태이다. 이때 수익배분비율은 NFT 아트 소유권자의 자율에 따른다. 어떤 계약의 경우는 판매시 마다 추가되기도 하고, 1회만 추가되기도 한다.

#### - 저작권

원칙적으로 NFT 아트의 대상은 순수창작물이다. 아트토큰은 작품을 작가가 직접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갤러리가 등록하는 경우는 작가와의 저작권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아트토큰에서는 작가, 갤러리와 작업하기 때문에, 다시 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 뿐만 아니라 아트토큰에서 발행한 NFT 아트를 아트토큰에서 구매했다면, 창작자인 저작권자 혹은 그와 저작권문제가 해결된 갤러리가 발행한 것이므로 안전하다. NFT 아트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증서나 증권의 발행은 아트토큰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투명하게 블록체인 상에서만 기록될 뿐이다. 블록체인상에서 어떤 법적,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블록체인을 보증해줄 제 3의 기관을 설정하지는 않는다. 현재까지 블록체인 상에서의 시스템 오류에 대한 염려도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작품에 대한 NFT인가” 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것이 아트토큰의 역할이다. 이것은 블록체인으로 증명되는 부분과는 별개의 외적인 요소이지만, 회사가 사용하는 서버에 물리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만약 저작권의 이용에 대한 합의 시에, ‘2차적 저작물 작성을 제한한다’ 는 식으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현재 아트토큰에서는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는 있다. 이것은 구매자가 구매 버튼을 누를 때 확인절차를 거친다. 즉 ‘2차적 저작물 작성’ 에 제한이 설정된 NFT 아트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이를 확인하고 동의한다는 절차를 거친후 판매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정한 이용약관을 위반하고 타인의 작품을 도용하는 저작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아트토큰도 일차적으로 구매자, 사용자들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발된 경우,

NFT 아트에 대한 불법 행위를 추적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NFT 아트 콘텐츠의 업로드가 다량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이것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고시스템은 콘텐츠 기반 IT 플랫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여전히 도난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는 만큼, 아트토큰도 기술적, 제도적 방법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아트토큰에서 Verified 인증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다. 플랫폼에서 직접 인증하는 크리에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부여되는 인증은 거래를 건전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참고를 위한 회사 차원의 표시이다. 이 표시를 참고할지 여부는 구매자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 제3자의 저작물을 통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트토큰은 약관에 해당 조항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사전 동의를 거친다. 도난, 해킹, 저작권도용에 대한 적발시 아트토큰 플랫폼에서의 모든 거래는 중지되며, 거래 완료 후라고 할지라도 해당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NFT 아트 거래소인 아트토큰은 안전한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기에, 정교한 필터링과 안전장치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대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고 있다.

아트토큰은 작가와 직접 접촉하여 실물작품을 NFT 아트로 주로 발행하고 있어 현재까지 도난, 해킹, 저작권 도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한 적은 없다. 2022년 8월까지 베타 시스템으로 테스트 버전을 마무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런칭되는 정식 시스템에서는 앞서 언급한 법률검토를 마무리한 약관에 구매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이용자들이 직접 불법, 위반사례를 리포트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갖춘 버전으로 스타트업하게 된다. 아트토큰은 제 3자의 저작권 침해로 적발된 경우, 게시 중단 및 삭제까지 가능하도록 방침을 마련해 둔 상태이다. 하지만 원천적으로 그것을 소멸시키는 ‘소각’은 불가능하다. 소각은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회사에서의 대응책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아트토큰 서버를 통해 해당 NFT 아트와 연결된 이미지나 영상을 중단시킬 수는 있다. 이러한 침해의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원천봉쇄에 관한 기술은 아직 미비하다. 현재의 저작권 모니터링 시스템은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는 콘텐츠가 업데이트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는 없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서 활용한 바있는 정품진위 증명시스템이 저작권모니터링에도 이용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NFT 아트에 적용하는데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아트토큰은 저작권을 침해한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 이후에 저작권 침해사실이 발견된 경우,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즉 아트토큰은 OPC를 통해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내용이 공지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한다. 하지만 배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모든 거래에는 위험이 따르고, 그 위험에 대한 부담은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거래소나 플랫폼의 명백한 결함이 없는 한 회사 측에서의 보상은 없다.

- 세금

NFT 아트의 소유권을 위임, 신탁받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자식에게 증여하려는 목적인 경우가 있다.

## 다) 갤럭시아메타버스

### (1) 회사개요

- 설립개요

갤럭시아메타버스는 효성의 계열사이다. 모회사인 효성그룹은 효성티앤씨(섬유&무역), 효성중공업(중공업&건설), 효성첨단소재(산업자재), 효성화학(화학)<sup>115)</sup> 외에 다양한 자회사가 존재하는데, 갤럭시아메타버스는 NFT 마켓 등을 운영하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다. 효성그룹이 20여 년 전에 인수한 국내 대표 핀테크기업인 갤럭시아 머니트리(GSM, Galaxia Moneytree, 결제시스템회사)는 전자상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통합전자결제 솔루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모든 디지털 자산이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는 간편결제 플랫폼 머니트리 서비스를 제공한다.<sup>116)</sup> 즉 온/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라고 분류될 수 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자회사인 갤럭시아메타버스는 자본금 30억을 출자하여 2021년 11월 1일 런칭한 블록체인 전문 법인이다.<sup>117)</sup> 갤럭시아메타버스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NFT로 발행, 판매, 유통, 관리하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다.<sup>118)</sup> 갤럭시아메타버스에서 유통되는 NFT 아트를 발행하는 거래플랫폼이 메타갤럭시아(Metagalaxia)이다. 또한 갤럭시아 머니트리 기반으로 코인결제가, 갤럭시아메타버스 넥스트에서 현금결제가 가능하다. NFT사업이 현재 시시각각 변하며, 다양한 유동적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구조로 모기업 효성그룹은 NFT 플랫폼 사

---

115) 효성블로그, <https://blog.hyosung.com/5388> (2022. 9. 19. 방문)

116) 효성블로그, <https://blog.hyosung.com/5388> (2022. 9. 19. 방문)

117) 매일경제, '메타갤럭시아, 미술품·스포츠·엔터...국내 NFT 다양화', 2021. 12. 10.

118) 효성블로그, <https://blog.hyosung.com/5388> (2022. 9. 19. 방문)

업을 진행하고 있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투자가치가 높은 고품질 NFT 아트를 모아 큐레이션하는 차별화된 마켓을 지향한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전략적으로 시장 확장성을 고려하여 미술작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 분야를 망라한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스포츠, 디지털아트, 방송,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NFT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고 있으며, 스포츠 분야의 국내 NFT 관련 서비스 중 최다 IP를 확보하고 있다.<sup>119)</sup>

#### - 인력구성

갤럭시아메타버스의 인력구성은 총 20-25명이다. 먼저 대표이사는 1명으로 로 금융권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이다. IT업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인 상무 1명 외에 미술계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를 포함한 마케팅 2명, 재무 및 법무검토 2명, 상근 및 비상근 IP 소싱 5명 등, 총 10~15명이 유기적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여기서 비상근이라는 의미는 효성 그룹 내부에서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우를 말한다. 갤럭시아메타버스 런칭 초반에는 효성그룹과는 무관한 외부 갤러리 근무경험이 있는 큐레이터가 참여하기도 했고, IT 개발의 경우도 개발난이도에 따라 외부 전문가에게 외주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 - 수익구조

갤럭시아메타버스의 수익은 NFT상품의 위탁판매를 통한 수수료 10%(판매금 총액의 10%)가 전부이다. 또한 재판매가 이뤄질 경우 작가비(Artist fee)는 약 3%로 원작가(작가 또는 에이전시)에게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구조이다. 현재까지의 구매현황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 - NFT 아트에 대해 업계에서 바라보는 전망

NFT 아트의 가장 큰 장점은 시장확대 가능성이다. 현재 시장 성장이 다소 둔해졌지만, 이 역시 전반적인 성장 단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현재 NFT 아트도 정체기를 맞았다고 보는 이들도 많지만, 갤럭시아메타버스는 모든 시장이 그렇듯 NFT 아트 시장도 성장과 둔화를 반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NFT 아트 사업 시작 전에 사업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고, 지금도 여전히 NFT시장 자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미 NFT 아트는 미술사조의 한 축으로 자리잡기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다. 성숙해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시간을

---

119) 효성블로그, <https://blog.hyosung.com/5388> (2022. 9. 19. 방문)

단축하기 위해서는 시장 활성화와 건전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우선 NFT 아트에 대한 정의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NFT 아트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NFT 아트라고 협소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많지만, NFT 존재 양태로 정의한다면 그 협소한 정의도 적합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NFT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매매방식을 띠고, 복제불가능한 디지털 아트를 가상화폐로 구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갤럭시아메타버스 넥스트에서는 현금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로만 구입하는 것으로는 정의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NFT 아트는 디지털미디어아트라고도 규정하기 어렵다. 디지털매체인 디지털아트는 USB에 파일화된 작품을 전자세금거래서가 발행되므로 NFT 아트의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론 결제방식이 NFT 아트를 정의하는 주안점은 아니다. 현재 NFT 아트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물론 개념적으로도 NFT 아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내려져 있지 않다. 이처럼 NFT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갤럭시아메타버스에서는 모회사인 효성의 방침에 따라 최대한 포괄적인 범주로 정의한다. 즉 구매한 상품이 실물 작품이나, NFT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통용될 수 있는 범주로 분류한다.

## (2) 거래유형

### - NFT 아트 토큰 발행 FLOW

갤럭시아메타버스에서의 판매자는 작가, 갤러리, 연예기획사 등을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직접 NFT 아트로 만드는 기술적 작업(디지털화)을 못할 경우에는 판매자와 작품의 크리에이터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작가와 그 작품을 NFT 아트로 디지털라이징작업을 한 기술자도 모두 크리에이터라고 본다. 이때 수익의 배분은 회사가 개입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n분의 1로 비율을 결정한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갤러리와 협업을 통해 저작권 즉 판매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아 토큰을 발행한다. 즉 작가 혹은 갤러리와 갤럭시아메타버스 간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NFT 아트를 발행한다.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진위감정 절차는 없다. 블록체인 기술로 판매자의 모든 거래 기록이 투명하게 증명되기 때문이다.

플랫폼을 런칭한 후 4개월간은 판매를 희망하는 작가와 갤러리들이 많아서 작품 성과 창의성에 대해 자체 논의하고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최근에는 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따라 최근에는 별도의 선정과정 없이 판매를 진행한다. 그러나 마켓 플레이스에서는 효성그룹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필터링, 즉 심사를 거친다. 마켓 플레이스는 일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으로 누구나 검증없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렇다고 별도의 엄격한 심사기준을 정립하고 적용하는 방식 이라기 보다는 최소한의 필터링을 위한 내부적 기준이다. 자체심사제도는 주 1회 직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통해서 선정한다. 이렇게 심사를 통과한 NFT 아트를 구입한 구매자는 재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재판매에 관한 별도 제한규정은 따로 없다. 뿐만 아니라 갤럭시아메타버스에서 발행한 작품을 외부 플랫폼이나 거래소에서 거래하는데 있어 제약은 없다.

NFT 아트 판매가의 결정은 작가나 갤러리에 맡기지만, 최종적으로 효성그룹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판매방식으로 경매(Bidding)과 고정가 두 가지를 제안하고, 판매자에게 결정권을 준다. 플랫폼 런칭 초반에는 테스트 버전으로 5회의 옥션을 개최했었으나, 현재는 시장이 둔화되어 매매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옥션보다는 고정가로 가격을 결정한다.

#### - 구매절차 및 방법

갤럭시아메타버스의 회원 수는 현재 38,000-40,000여 명이다. 갤럭시아메타버스에서 실제 구매에 참여한 고객은 전체의 3-5%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구매자의 성비를 보면 아직까지는 남성의 비율이 높다. 갤럭시아메타버스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어떠한 매매 수량, 개인별 구매 한도,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을 설정두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누구나 구매하고 재판매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긴다. 대신 NFT 아트 구매자는 작품구매를 결정한 이상 투자 후 가격하락 등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이때 NFT 아트의 구매 및 재판매에는 이더리움, 클레이, 현금결제가 가능하다. 이때 현금결제란 계좌이체를 말한다. 갤럭시아메타버스 런칭 초반에는 코인 즉 암호화 가상화폐로만 결제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구매절차가 어렵고 지갑사용이 용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접수가 많았다. 그래서 원화 결제를 붙이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갤럭시아 넥스트로 사업체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후로는 고객이 바로 입금하면 자동 정산되도록 시스템화되었다. 자동으로 10% 수수료가 제해져서 판매자에게는 90%의 원화가 7일 후 판매자의 지갑으로 자동정산 즉 입금된다. 신용카드 결제는 아직은 안 된다. 신용카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는 있지만 수수료 문제로 타협이 쉽지 않다. 플랫폼에서의 수수료 이익이 판매가의 10%이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카드사의 수수료 3%는 적지 않은 손실이다. 사업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카드사에서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측의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제를 위한 개발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원화결제시스템의 개발비도 상당히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NFT 아트 거래 후 구매자가 구매금액을 입금하는 동시에 구매자가 해당 NFT 아트의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본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가상화폐인 코인거래와 현금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구매한 자의 변심에 의한 환불(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등)은 7일간 가능하다.

#### - 거래상의 위험제어 장치

아직까지 갤럭시아메타버스에서 해킹이나 저작권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블록체인 기술로 소유권 정보를 기록하고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정성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갤럭시아메타버스는 별도의 NFT 아트 보안을 위한 시스템이나 해킹에 대한 보상 책임은 없다. 갤럭시아메타버스는 판매자의 작품을 자사 플랫폼 외에 외부업체와의 거래에 대한 제약은 일체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발행인에게는 토큰 발행시 제약조건은 설정할 수 있다.

### (3) 주요거래작품유형

#### - 주요거래작가군

갤럭시아메타버스는 사진, 캐릭터 및 일러스트, 동양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사진작가 임채욱, 아티스트그룹 ManeCrew(메인크루), 어도비가 선택한 국내 일러스트레이터 CJroBlue(최정현), 동양화 프로젝트 그룹 오색빛담과 그래픽 아티스트 &(박준식)작가의 NFT 작품들을 소개해왔다. 현재까지 갤럭시아메타버스 전속작가는 없다. 그러나 판매자가 동일한 작품을 여러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모두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확장되면, 전속작가 대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작가발굴

갤럭시아메타버스는 공모전, 지원 형태로 신진작가들을 발굴하고 있다. 향후 하나은행, 하나카드와의 협업으로 대학생 공모전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에 있다. 학과 제한없이 대학 혹은 대학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의 형태로, 신진작가의 진입장벽을 낮춰서 시장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모전의 심사는 플랫폼 회원들이나 전국민 심사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다.

#### (4) 법률쟁점

##### - 개인정보 이용관련

현재까지 NFT 아트 구매자, 이용자의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분쟁이 없었고, 앞으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NFT 아트 구매자가 제기하는 불만사항에 대해서 갤럭시아메타버스는 주로 게시판, 문의전화를 통해 소통한다. 주로 코인거래를 위한 지급개설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많고, 그 외에는 환불에 대한 문의다. 원칙적으로 구매 7일까지는 가능하지만, 근래에는 플랫폼사에서의 환불이 불가능한 추세에 따라 거의 환불이 진행되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 - 추급권

갤럭시아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재거래시 작가비(Artist fee)는 3~5%로 원작가(작가 또는 에이전시)에게 자동 배분되도록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다.

##### - 저작권

불법, 불량, 비윤리적 NFT 아트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은 게시판을 통해서 접수 혹은 문의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 담당부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 3자가 저작권을 침해가 판명된 경우에는 법무팀에서 해당 적발사태에 대한 법률검토를 한 후에 거래취소 혹은 소각의 형태로 처리된다. 그러나 자신의 저작권을 제 3자가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진위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구축되어 있지는 않다.<sup>120)</sup>

#### 라) 에트나(ETNAH)

##### (1) 회사개요

##### - 설립개요

에트나(ETNAH)는 디지털아트 NFT 발행 및 거래와 NFT 플랫폼 운영을 주요 사업 영역으로 하는 주식회사 에이트(AIT Inc.)가 담당하고 있다. 2021년 8월 법인을 설립하고, 2022년 5월 베타버전을 오픈하고 클레이튼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6월 서비스 개시를 시작하였고 정식버전은 11월 말부터 시작된다. 클럽토와

120) 올댓아트, '김환기 ·이중섭 작품을 nft로...갤러리현대 대표 뛰어난 '에트나' 5월 공개', 2022.02.10

이더리움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인 에이트는 갤러리현대의 도형태 대표와 가상현실, 3D 모델링 관련 기술력을 갖춘 알타바 그룹의 구준희 대표가 함께 설립한 회사이다. NFT 아트 거래를 하는 사업체명은 에트나이다. 에트나는 디지털 아트뿐만 아니라 실물 작업을 해 온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새로운 실험들을 NFT로 선보이는 디지털아트 NFT 플랫폼이다. 에트나는 코인 발행은 하지 않는다.

에트나는 자사의 플랫폼에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개업자로서의 역할과 작품 제작적 측면에서는 작가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제작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특히 에트나는 NFT를 매개로 3S를 추구하는 컬렉터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한다. 작가의 메시지(Story)를 함께 만들고, NFT와 미술 시장에 대해 공부(Study)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행사를 통한 교류(Salon)를 추구한다. 이렇게 에트나는 디지털 아트뿐만 아니라 실물 작업을 해 온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새로운 실험들을 NFT로 선보이는 디지털아트 NFT 플랫폼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각각의 작품 거래에서 발행하는 추급권 기반의 수익 공유를 통해 아티스트의 작품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sup>121)</sup>

#### - 인력구성

전체 사업 가운데서 NFT 아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10여 명이다. 기획과 마케팅 홍보가 주요 인력이며, 기술적인 지원은 외부 인력의 지원을 받는다.

#### - NFT 아트에 대해 업계에서 바라보는 전망

가상화폐로 거래하다 보니, 경기를 탈 수밖에 없지만, 미술이 하나의 장르, 세일즈의 한 종류로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어떤 차별점을 갖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NFT 시장은 10-30대의 놀이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놀 수 있는 유틸리티가 있기 때문에 감상과 투자와 놀이의 요소가 포함된 PLAY의 느낌이 강하다. MZ 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기존과 다르게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감상의 비중이 적고 이것을 매개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그들에게 크게 어필하고 있다고 본다. Nonfungible(대체 불가능)이라는 개념을 온전히 알고 그걸 왜 만드는지 알면 NFT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 있다. NFT 분야는 규모 면에서 솔직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새로운 장치가 나오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그런 경우 오프라인의 성장성은 둔화될 수 있지만, 집중도는 오히려 증폭된다. NFT로 오프라인 시장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할 정도라면, 반대로 오프라인 작품의 가격이 일반인들은 쉽게 구매할 수 없을 만큼 폭등하여 대중들이 켄

121) 에트나, <https://etnah.com/about> (2022. 9. 19. 방문)

렉션을 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도 있다.<sup>122)</sup>

NFT는 종종 디지털 소유권의 개념으로 해석된다. 소유권은 이전에 독점의 의미로 대체된 개념이었지만 디지털 소유권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그 가치를 드러낸다. 현재 NFT는 디지털 세계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을 나타내는 상징이자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된다. 특정 조직과 커뮤니티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의 가치는 NFT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같은 권한으로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sup>123)</sup> NFT를 통해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능해진 가장 놀라운 기술이다. 유일하고 다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의 소유, 그리고 그 소유권의 확인을 통해, NFT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게 되었고 미래를 위한 투자 수단으로도 각광받게 되었다. NFT 프로젝트에 따라 특정 NFT를 보유하면 개인 파티 입장, 상품 할인 등 실생활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sup>124)</sup>

## (2) 거래유형

### - 구매절차 및 방법

에트나는 회원가입을 받지 않고, 지갑을 통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에 이용자 수보다는 데이터 클릭 수로 이용자수를 체크한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백여 명이 클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작품이 민팅될 때 클릭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구매자들의 연령대에 대한 정보를 에트나가 가지고 있지 않다. 암호화폐 거래 시에 만들어지는 지갑에는 국적, 사용자 정보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 스마트콘택트를 통해서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지의 지갑 주인과 금액을 알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정보를 알지 않는다. 원하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이메일을 모으기는 하지만 기존의 회원가입의 형태는 NFT 아트 거래 시엔 필요 없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에트나는 2022년 9월부터 이더리움과 클레이튼 블록체인을 모두 지원하여 메타마스크와 카이카스 지갑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디지털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위해 이메일 주소만으로 지갑 생성이 가능한 Fortmatic 지갑도 지원하고 있다. NFT 작품 구매 방법의 원칙은 전자 지갑을 연결해 구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물 미술 컬렉터 혹은 NFT 거래가 생소한 대다수의 이들에게 NFT 아트 컬렉터로의 진

122) 노블레스, '갤러리 현대가 준비한 미래', 2022. 4. 7.

123) 에트나, <https://medium.com/@ETNAH/etna-hs-values-cdd820f94947> (2022. 9. 19. 방문)

124) 에트나, <https://etnah.com/ko/help> (2022. 9. 19. 방문)



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에트나는 대안을 제시한다. 즉, 전자지갑에 잔액이 없거나 암호화폐의 구입이 힘들 경우 에트나에 연락을 취하면 에트나 측에서 신용카드 구매나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매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다. 에트나는 전자지갑 연결만으로 계정 생성이 가능하다.

구매자들에게는 <아티스트 홀더 커뮤니티>를 통해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오프라인 전시나 아트페어에 초대하는 형식으로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해외 구매자들의 에트나 NFT 아트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한글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향후 영문으로만 서비스될 예정이다. 아티스트가 최초로 판매하는 NFT 작품의 경우, 에트나는 판매자인 아티스트로부터 플랫폼 수수료를 취하고 있다. 이 경우 구매자가 따로 지불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없다. 에트나에는 2차 거래를 위한 마켓플레이스는 없다.

디지털 아트워크 플랫폼 초기 판매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아티스트는 초기 판매 가격의 85%를 받고, 에트나는 1차 마켓의 플랫폼 수수료로 15%를 취한다. 2차 판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콘택트가 오픈씨 표준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마켓플레이스에서 원활히 거래되도록 에트나 자체 내에는 2차 거래시장은 구성하지 않았다. 오픈씨 기준으로 판매자는 총 판매 가격의 85%를 받고 원작자 아티스트는 10%, 에트나는 5%를 취한다.<sup>125)</sup> 에트나의 서비스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에 대한 단독 재량을 제외하고 관련된 모든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sup>126)</sup> 현재는 플랫폼 내에서 판매될 때에는 클레이트로 결제되지만, 다양한 판매루트, 즉 계좌이체 거래나 오프라인 세일즈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 - 거래상의 위험제어 장치

데이터는 분산보관 되고 있기 때문에 에트나는 원천적으로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메타데이터는 아무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해킹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중앙화된 서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에트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NFT 아트이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이다. 주요 정보인 NFT 아트에 대한 해킹은 정보를 분산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중앙서버까지 해킹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갑에 대한 해킹은 일반 회사와 동일하게 개인들이 관리하도록 한다.

### (3) 주요거래작품유형

125) 에트나, <https://etnah.com/terms> (2022. 9. 19. 방문)

126) 에트나, <https://etnah.com/ko/terms> (2022. 9. 19. 방문)

#### - 주요거래작가군

에트나 플랫폼에서는 모든 작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1차 거래 위주로, 큐레이팅 한 작품을 주로 거래작가군으로 삼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미술 세계를 확립한 작가들의 디지털 아트 도전을 함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직접 작가와 다이렉트로 계약 후 진행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외부협력을 위한 위탁 기획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바는 없다. 에트나는 갤러리 현대의 조인트 벤처이기 때문에, 모회사의 전속작가 이건용 작가를 첫 NFT 아트화했다. 앞으로도 중견작가이자, 알려진 작가를 중심으로 NFT 아트를 발행할 예정이다. 주요 작가군은 김환기, 이중섭, 이건용, 라이언 갠더, 로버트 인디아나, 곽인식, 이승택, 강익중, 문경원, 전준호, 케니샤프 등이 있으며 평면, 입체,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거래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전시 공간 운영할 계획이다.<sup>127)</sup>

에트나가 선보이는 첫 NFT 작품은 실험미술계의 거장 이건용(1942년 생)작가의 <디지털 바디스케이프(Digital Bodyscape) 76-3> 으로, 총 1976개를 NFT로 발행하며 2022년 6월에 런칭한 것이다. NFT 작품 구매자는 작가의 신체를 그대로 본 단 아바타가 이건용의 대표적인 퍼포먼스 <바디스케이프(Bodyscape)>를 선보이는 과정을 경험하고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sup>128)</sup> 현재 차기 프로젝트로 케니 샤프를 기획하고 있다. 글로벌 아트플랫폼의 형태기 때문에 외국 작가와의 협업도 진행하고 있다.

#### - 작가발굴

갤러리 비즈니스와 똑같이 에트나에서도 작가발굴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한다. 2022년 9월 22일 - 12월 22일 기존 미술계에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적인 작가뿐만 아니라 이머징 디지털 아티스트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다.<sup>129)</sup> 아직까지 유망작가 발굴을 위한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다.

#### - 홍보

에트나의 작가군은 실물 판매로 인정받은 거장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판매와 전시를 함께 진행한다. 올해까지의 전시는 NFT와 연계된 것은 아니었지만, 향후는 그렇게 연계되어 프로모션해 나갈 계획이다. 작가별로 타겟 프로모팅을 한다.

127) 올댓아트, '김환기 ·이중섭 작품을 nft로...갤러리현대 대표 뛰어난 '에트나' 5월 공개', 2022.02.10

128) 에트나, <https://etnah.com/ko/drops/bodyscape>, (2022. 9. 19. 방문)

129) 에트나, <https://medium.com/@ETNAH/etnahs-roadmap-862d36bbd160> (2022. 9. 19. 방문)

#### (4) 법률쟁점

##### - 개인정보 이용관련

에트나는 고객에게 이름, 이메일 주소, 디지털 지갑 주소와 기타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다. 지갑 하나로만 확인하는 형태여서 에트나는 지갑 주소 밖에 알 수 없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불가능하다. 또한 인스타그램, 트위터 및 디스코드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에트나와 접속할 때도 개인정보를 에트나가 취급할 수 없다.

에트나는 고객이 플랫폼을 사용하여 탐색, 판매 또는 구매한 디지털 아트 작품 또는 예술 콘텐츠의 이력을 보유할 수 있다. 고객이 플랫폼을 방문, 사용 및 상호작용할 때 온라인 식별자, 장치 작동, 사용 데이터 및 위치 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다. 또한 쿠키 및 로컬 저장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넷 활동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sup>130)</sup> 에트나는 온라인 커뮤니티로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운영하며, 질문과 응답을 제공하고 있다. 이 커뮤니티를 통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대응하고 있다. 건의사항의 대부분은 에트나의 넥스트 로드맵에 대한 문의나 오프라인 이벤트나 차기 작품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 추급권

에트나는 각각의 작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추급권 기반의 수익 공유를 통해 아티스트의 작품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대 지원하고 있다.<sup>131)</sup> 작가를 위한 플랫폼을 지향하고 NFT작품의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작가가 온전히 소유하는 것으로 계약의 형태로 보장하고 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NFT의 스마트 계약서에 따라 모든 2차 시장에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작가에게 10% 로열티가 책정된다.<sup>132)</sup> 그러나 현재로서는 2차 시장 거래는 에트나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 - 저작권

작가가 직접 NFT 아트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작가와 진위보증과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NFT 아트에서는 진위보다는 저작권, IP의 문제가 중요하다. IP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김환기’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NFT 아트를 만들 수 없다. 에트나에서는 진위 및 저작권에 대한 법적 구속력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130) 에트나, <https://etnah.com/ko/policy> (2022. 9. 19. 방문)

131) 에트나, <https://etnah.com/about> (2022. 9. 19. 방문)

132) 올댓아트, ‘김환기 ·이중섭 작품을 nft로...갤러리현대 대표 뛰어난 ‘에트나’ 5월 공개’, 2022.02.10

구매자는 예술 콘텐츠를 자산으로 나타내는 암호화 토큰을 받지만 예술 콘텐츠 자체 또는 그 안에 있는 지적 재산권을 소유할 수 없다. 구매자는 예술 콘텐츠를 표시하고 공유할 수 있지만, 구매자는 예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상표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 소유권, 권리 또는 소유권을 가지지 않는다.<sup>133)</sup>

## 마) 클립드롭스

### (1) 회사개요

#### - 설립개요

2021년 7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대표 한재선)에서 한정판 디지털 작품 유통 서비스를 표방하는 ‘클립드롭스(Klip Drops)’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정식버전은 2021년 12월 17일에 오픈했다. 클립드롭스는 큐레이션형 NFT 아트 거래소이다. 카카오가 개발한 블록체인 메인넷 클레이튼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거래 역시 클레이튼의 기축통화인 클레이(KLAY)로 가능하다. 2021년 12월 클립드롭스는 NFT 거래소로서 자리매김하며 정식 버전을 출시했다. 클립드롭스는 1D1D(One Day One Drop), 디팩토리(dFactory), 마켓(Market)으로 구성되어 있다. ‘1D1D’는 1Day 1Drops의 약칭으로, 하루에 한 명의 아티스트만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NFT 작품을 선보인다는 뜻이다. 장르는 회화, 조각을 비롯해 미디어 아트와 서브컬처까지 포함하며, 옥션이나 선착순 에디션 형태로 판매한다. ‘디팩토리(dFactory)’는 디지털 컬렉터블(collectibles·수집품) NFT를 다루며 미술 이외에 다양한 장르에서의 창작자들의 굿즈(goods·기획 상품)와 영화, 패션, 브랜드 등 다양한 영역을 지원한다. ‘마켓(Market)’은 판매자가 자신이 팔고 싶은 가격을 등록해서 NFT를 마켓에 올려 두면 구매 희망자가 입급해 거래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판매액 중 일부는 일종의 로열티 개념으로 창작자 보상 차원으로 지급된다. 이를 통해, 창작자가 꾸준한 작품 활동 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작품의 가치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sup>134)</sup>

### (2) 거래유형

#### - 구매절차 및 방법

133) 에트나, <https://etnah.com/ko/terms>, (2022. 9. 19. 방문)

134) 클립드롭스, <https://klipdrops.com/terms/FeePolicy> (2022. 9. 19. 방문)

카카오 그라운드X는 블록체인방식으로 옥션이나 선착순 에디션 형태로 판매하며, 디지털 아트/컬렉터블스를 판매할 경우 판매자에게 체결금액의 5%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구매자에게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sup>135)</sup> 1D1D, dFactory에서 판매되는 각 디지털 아트, 디지털 컬렉터블스는 위탁자에 의하여 옥션 또는 에디션 중 한 가지 방식으로 판매방식이 지정되며, 회원은 이에 따라 디지털 아트, 디지털 컬렉터블스를 옥션 또는 에디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sup>136)</sup> 클립드롭스는 가상자산 클레이(KLAY)와 카드결제(신용카드, 체크카드)가 가능하며 카드결제는 클립드롭스 내 '1D1D'의 에디션 작품과 '디팩토리'에 2022년 4월부터 각각 적용됐다. 단, 옥션과 마켓은 제외된다.<sup>137)</sup>

구매자는 1D1D, dFactory, 마켓에서 디지털 아트, 디지털 컬렉터블스의 소유권을 구매한 회원을 말한다. 회원은 1D1D 또는 dFactory에서 구매한 디지털 아트, 디지털 컬렉터블스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청약철회를 희망하는 경우 회사에 철회 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옥션을 통한 낙찰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낙찰가의 일정 부분이 낙찰 철회 수수료로서 제외된 후 반환될 수 있다. 구체적인 청약철회 기준 및 방법은 약관 및 별도 운영정책을 따른다. 단, 마켓은 판매를 업으로 하지 않는 개인간의 사적인 거래만이 이루어지므로, 회원은 마켓에서 구매한 디지털 아트, 디지털 컬렉터블스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할 수 없다.<sup>138)</sup> 이밖에 순간적인 서비스 접속 증가 등으로 인한 서버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sup>139)</sup>

### (3) 주요거래작품유형

#### - 주요거래작가군

주요 작가군은 나얼, 노상호, 노준, 돈선필, 방앤리, 신건우, 인세인박, 우국원, 이상원, 이승애, 장종완, 전영근, 하정우, 하태범, SUBSUB 등 있으며 회화, 조각, 미디어 아트, 서브컬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거래되고 있다.<sup>140)</sup>

#### - 작가발굴

135) 클립드롭스, <https://klipdrops.com/terms/FeePolicy> (2022. 9. 19. 방문)

136) 클립드롭스, <https://klipdrops.com/terms/conditions> (2022. 9. 19. 방문)

137) ZDNET Korea, "클립 드롭스'서 원화로 NFT 산다", 2022.04.12

138) 클립드롭스, <https://klipdrops.com/terms/conditions> (2022. 9. 19. 방문)

139) 클립드롭스, <https://klipdrops.com/terms/conditions> (2022. 9. 19. 방문)

140) 클립드롭스, <https://klipdrops.com/> (2022. 9. 19. 방문)

1D1D는 1Day 1Drop의 약자에 해당하며, 국내외 최정상 작가를 발굴하는 한정판 디지털 아트 큐레이션 갤러리로서 전문가들이 작가들을 선별한다.<sup>141)</sup>

#### (4) 법률쟁점

##### - 개인정보 이용관련

이용계약 해지가 완료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회사가 법령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회원의 모든 정보가 7일 후 삭제된다.

##### - 지급권

크리에이터 보상은 구간마다 보상률이 다르며, 이 값들은 구간별로 각각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12,000KLAY(재판매 금액)체결 가정시 총3개 구간의 보상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610 KLAY(1+2+3구간의 합계액)가 크리에이터 보상이 된다.<sup>142)</sup>

1구간: 1,000 KLAY\*10% = 100 KLAY

2구간: 9,000 KLAY\*5% = 450 KLAY

3구간: 2,000 KLAY\*3% = 60 KLAY

##### - 저작권

1D1D, dFactory에서 판매되는 디지털아트, 디지털 콜렉터블스는 위탁자가 회사와 별도의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위탁한 것으로서, 창작 후 최초 판매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아트, 디지털 콜렉터블스이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회사는 위탁자의 판매 위탁을 제한 또는 주장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 아트, 디지털, 콜렉터블스 제작에 별도 원저작물이 존재하는 기존 이미지 등이 사용되었을 시, 해당 원저작물의 원저작자가 위탁자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또는 해당 원저작물의 원저작권자와 위탁자 간 저작권 사용 허가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둘째, 위탁자가 판매 위탁하는 디지털 아트, 디지털 콜렉터블스에 위탁자가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sup>143)</sup>

클럽은 카카오톡과 연동된 모바일 지갑으로 클레이 및 클레이튼 계열 토큰 모바일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됐다. 현재 카카오톡 내에 탑재되어 있어 국내 이용

141) 클럽드롭스, <https://klipdrops.com/1d1d> (2022. 9. 19. 방문)

142) 클럽드롭스, <https://klipdrops.com/terms/FeePolicy> (2022. 9. 19. 방문)

143) 클럽드롭스, <https://klipdrops.com/terms/conditions> (2022. 9. 19. 방문)

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수월하지만 해외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sup>144)</sup>

- 1D1D, dFactory 법률 책임

회사는 디지털 아트, 디지털 콜렉터블스 거래 중개자에 불과할 뿐 거래 당사자가 아니며, 거래 대상물 및 거래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위탁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는 거래 중개에 대한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sup>145)</sup>

바) 소결

-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 개요

심층인터뷰로 진행한 5개 업체의 사업 개요 비교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업비트 가상화폐거래소로 시작한 두나무를 제외한 4개 업체는 설립된 지 4년 미만의 회사로, NFT 아트 거래를 시작한 지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신생업체들이다. 국내 업체 5개사의 NFT 아트 수익은 거래 수수료이며, 다른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트토큰은 NFT 아트와 함께 아트상품을 함께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144) 핀포인트뉴스, '카이카스 손 떴고 클럽 올인 택한 그라운드X...사업 청사진은?', 2022.06.28

145) 클립드롭스, <https://klipdrops.com/terms/conditions> (2022. 9. 19. 방문)

<표 III-12>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개요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두나무	갤럭시아넥스트(주)	(주)아트토큰	주식회사 에이트(AIT Inc.)	(주)그라운엑스
사업기간	설립시기	2012년 4월	2022년 3월	2021년 3월	2021년 8월	2018년 3월
	폐업시기	-	-	-	-	-
서비스 개시시기		2021년 11월	2021년 11월	2021년 4월(베타)	2022년 6월(베타)	2021년 12월
서비스 명칭		업비트NFT	메타갤럭시아	아트토큰 (ARTTOKEN)	에트나 (ETNAH)	클립 드롭스 (Klip Drops)
직원수		약 4-500명	약 20-25명	18명	10명	약 114명
운영자금		정보 미제공	30억원	정보 미제공	정보 미제공	-
이용자수		정보 미제공	회원수의 3-5%	정보 미제공	1일 100명이상	-
회원수		900,000,000명	38,000~40,000명	정보 미제공	회원확보안함	200,000,000명
온라인 활성 사용자수		900,000,000명	38,000~40,000명	정보 미제공	1일 100명이상	200,000,000명
회사 수익 구조	거래수수료	○	○	○	○	○
	아트상품 판매	×	×	○	×	×
홍보 /업 무 제 휴	컨퍼런스	×	×	○	×	-
	전시공간	×	×	○	○	-
	업무제휴	○	○	○	○	○



-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운용 방식

국내 업체별 사업운용방식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5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1차 마켓인 드롭스와 세컨더리(2차) 마켓인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에트나는 1차 마켓만 운영한다.

4개 업체의 세컨더리 마켓거래 수수료는 판매총액의 10%미만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2.5~5% 정도가 평균적이다. ‘거래후청약철회규정’은 없으며(환불불가), 고객불만 및 고객이용편의를 위한 서비스 응대에 적극나서고 있으나, 해킹이나 저작권 침해와 같은 위기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은 업계에 따라 민감도에 차이가 있었다.

<표 III-13>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운용 방식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두나무	갤럭시아넥스트(주)	(주)아트토큰	주식회사 에이트(AIT Inc.)	(주)그라운엑스
사업 방식	거래 서비스	○	○	○	○	○
사업 범위	1차 마켓 (Drops)	○	○	○	○	○
	2차 마켓 (Marketplace)	○	○	○	×	○
Drops 입찰 거래 수수료율		×	-	미정	15%	5%
Marketplace 거래 수수료율		2.5%	10%	2.5%예정	×	5%
거래후 7일 이후 환불(청약철회규정) 여부		×	×	×	×	×
고객대응 서비스 유무		○	○	○	○	○
해킹방어 시스템 유무		○	-	○	×	-

-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결제 방식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결제방식 비교분석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NFT 아트 거래는 원칙적으로 암호화폐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재 갤럭시아넥스트(주)는 유일하게 현금(계좌이체)거래가 가능하다. 아직까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국내 업체는 없다. 국내 NFT 아트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플랫폼으로 이더리움과 클레이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14>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결제 방식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두나무	갤럭시아넥스트㈜	(주)아트토큰	주식회사 에이트(AIT Inc.)	(주)그라운엑스
거래 결제 방식	암호화폐	○	○	○	○	○
	현금 (계좌이체)	×	○	×	×	○
	신용카드	×	×	×	×	○
	휴대폰 소액결제	×	×	×	×	○
암호화폐 플랫폼	Drops	이더(ETHE), 비트코인	이더(ETHE), 클레이(KLAY)	이더(ETHE)에 정	클레이(KLAY)	클레이(KLAY)
	Marketpalce	이더(ETHE)	이더(ETHE), 클레이(KLAY)	이더(ETHE)에 정	×	클레이(KLAY)

-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작품운용 방식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작품운용 방식 비교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NFT 아트 발행은 갤러리, 작가, 일반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조사 결과 미술전문업체인 갤러리, 옥션, 대안공간과의 협업을 통한 NFT 발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업체가 작가가 직접 민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기술적인 서포트를 위해 NFT 아트 발행 작업을 기획부터 참여하는 업체는 에트나가 유일하다. 나머지 업체는 에이전트사(CP)나 작가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거래작가의 국적은 국내/국외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약관에 밝히고 있지만, 저작권의 문제로 국외 작가의 NFT 발행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에트나의 경우 올해 말 케니샤프(미국)의 NFT 아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NFT 아트 거래 장르는 회화, 디자인, 조각, 미디어아트 등 현대미술 장르를 기본으로 업체에 따라 서브컬처, 기획상품 패션, 브랜드, 캐릭터, K-POP, 스포츠, 게임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 거래는 현재 국내인,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받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표 III-15>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작품운용방식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두나무	갤럭시아베스트 (주)	(주)아트토큰	주식회사 에이트(AIT Inc.)	(주)그라운엑스
NFT 발행자 대상	갤러리 (미술전문 업체)	○	○	○	×	정보미제공
	작가(크리 에이터 포함)	×	○	○	○	○
	일반인	×	○	×	×	×
거래 작가 국적	국내	○	○	○	○	○
	국외	○	○	×	○	○
거래 작가수		약 80명	정보미제공	4,000명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거래 장르		회화, 디자인, 일러스트, 영상, 게임, 스포츠, 디지털아트, K-pop 등	사진, 캐릭터 및 일러스트, 동양화 등	국외,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작가 작품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적인 작가뿐만 아니라 이머징 디지털 작품	회화, 조각, 미디어 아트, 서브컬처, 기획상품, 영화, 패션, 브랜드 등
거래이용 자 국적	국내	○	○	○	○	○
	국외	×	×	×	○	×

-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법·세제 관련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법·세제와 관련된 항목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국내 5개 업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저작권과 추급권이다. 모든 업체는 저작권 위임에 대한 법률적 절차와 계약이 완료되어야만 NFT 아트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세제의 측면에서는 우선 부가세와 법인세의 부분은 투명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세부적 내용의 공개를 꺼린다. 향후 NFT 아트 시장이 확대되면 증여세, 양도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16> 국내 업체별 NFT 아트 거래 법·세제 관련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두나무	갤럭시아비스트(주)	(주)아트토큰	주식회사 에이트(AIT Inc.)	(주)그라운엑스
저작권 계약 유무	○	○	○	○	○
추급권 유사 발생 여부	○	○	○	○	○
실명거래 인증 여부	○	○	○	x	○
특금법상에서 규정장치 여부	○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x	-
증여세 발생 여부	○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
부가세 발생 여부	○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
법인세 발생 여부	○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x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정보미제공	-

## 다. 국외 NFT 미술시장 대상별 기초조사

### 1) 국외 NFT 거래소

#### 가) 오픈씨(OpenSea)

##### (1) 회사개요

###### - 설립개요

오픈씨는 2017년 1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거점으로 설립된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NFT 거래소다. 개방형 디지털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오픈씨에서는 디지털 아트뿐 아니라 가상 부동산의 땅 형태인 랜드(LAND), 음악, 도메인 네임(Domain Names), 트레이딩 카드(Trading Cards), 수집품 형태의 컬렉터블(Collectors), 유틸리티(Utility), 게임 아이템 등 모든 종류의 NFT를 매매할 수 있다. 회사는 큐레이션 된 형태보다 범용 오픈 마켓을 지향하여 광범위한 개방형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기업과 콘텐츠 창작자, 그리고 수집가 사이에 블록체인을 통한 수익 창출 기회를 제공한다. 회사의 차별점으로 신규 NFT가 발매되어 이더리움에 기록되면 오픈씨에 이를 전시하는 웹페이지가 자동 형성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용자는 오픈씨 페이지를 공유하고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 사진을 보유 NFT로 변경할 수도 있다.<sup>146)</sup> 이밖에 회사가 이용자의 자산 지갑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구조 역시 눈에 띄는 특징이다.

###### - 수익구조

오픈씨는 2022년 1월 가상자산 투자운용사 패러다임과 해지펀드 코트매니지먼트 등에서 3억 달러(약 3,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회사 설립 4년 만에 기업가치 133억 달러(약 16조 원)로 평가받았다.<sup>147)</sup> 이는 2021년 7월 앤드리슨 호로비츠가 주관한 투자 라운드에서 1억 달러 투자 유치 때 인정받은 15억 달러(약 1조8,000억 원)보다 10배 이상 치솟은 가격이다. 매출도 2021년 NFT 열풍이 불며 2월 9,500만 달러에서 9월 27억5,000만 달러로 급상승했다.<sup>148)</sup> 오픈씨는 회당 2.5%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한다.

한편 오픈씨도 2018년 가상자산의 암흑기(크립토 윈터)를 피해 가지 못하면서 가

146) 포브스(Forbes),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알아야 할 NFT 마켓 ‘오픈씨’의 모든 것”, 2021.11.23.

147) 조선일보, “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씨, 몸값 16조원”, 2022.1.7.

148) 더구루(THE GURU),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 공동설립자 '알렉스 아탈라', 이달 말 경영서 물러난다”, 2022.7.6.

상자산 시세가 폭락함에 따라 오픈씨에서 발생하는 거래 규모도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이후 2021년 상반기 시장이 회복되면서 오픈씨는 제품 개발과 조직 확장, 보안, 커뮤니티 향상에 자본을 투자했으며 2022년 1월에는 암호화폐 지갑 스타트업인 달마 랩스도 인수했으나,<sup>149)</sup> 다시 암호화폐의 시세가 급락하며 NFT에 대한 수요도 동반 감소했다. 뉴욕타임스는 2022년 6월 6일 “지난달 오픈씨 매출이 지난해 9월과 비교해 약 9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보도했다.<sup>150)</sup> 결국 2022년 7월 14일 오픈씨는 전체 인력의 20%를 감축할 것을 발표했다.

#### - 인력구성

핀터레스트 출신 데빈 핀저(Devin Finzer)와 알렉스 아탈라(Alex Atallah)가 공동창업했으며 2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경영철학에 맞게 아트시(Artsy), 라임(Lime) 등의 신생기업부터 구글, 페이스북 등의 대기업 출신까지 골고루 채용하면서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했다.<sup>151)</sup>

#### - NFT 아트에 대해 업계에서 바라보는 전망

오픈씨 공동창업자 알렉스는 “NFT 발행 진입장벽 낮춘 게 업계 1위 비결”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오픈씨는 NFT 발행 도구를 쉽게 설계하여 초기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제작자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고 가장 다양한 종류의 NFT를 확보할 수 있었다. NFT 발행 시에도 판매를 위해 작품을 등록할 때만 가스비(이더리움 블록체인상 거래 수수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아 제작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오픈씨에서는 파운데이션 등 타 NFT 마켓 플레이스에 올려진 작품들도 함께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는 지난 2022년 6월 최초의 아시아 파트너로서 카카오의 블록체인 클레이튼과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아시아 NFT 생태계 성장을 위한 투자에도 적극 나설 것을 발표했다.<sup>152)</sup>

## (2) 거래유형

#### - NFT 아트 토큰 발행 FLOW

오픈씨의 지원 블록체인 네트워크로는 이더리움(ETH), 폴리곤(MATIC), 클레이튼(KLAY), 솔라나(Solana)가 있으며, 각 네트워크 토큰은 이더(ETH), 매틱(MATIC), 클레

149) 더구루(THE GURU), “글로벌 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씨' CEO 데빈 핀저는?”, 2022.1.30.

150) 경향신문, “가상화폐 가치 폭락과 함께 시름 깊어가는 NFT시장”, 2022.6.14.

151) 오픈씨(OpenSea), <https://opensea.io/about>. (2022. 9. 19. 방문)

152) 해럴드경제, “‘오픈씨’ 손잡은 클레이튼…아시아 최초 파트너십 체결”, 2022.6.24

이(KLAY), 솔(SOL)다. 이중 시장이 가장 크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더리움의 가스비<sup>153)</sup>가 가장 비싸다. 이에 따라 오픈씨는 창작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기존 이더리움과 연결할 수 있는 클레이튼과 폴리곤을 동시에 지원해왔으며, 2022년 4월 솔라나를 새로 도입했다. 솔라나는 트랜잭션 속도와 비용면에서 이더리움보다 빠르고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sup>154)</sup> 오픈씨의 경우 최초 리스팅 시에만 가스비를 지불하면 되며 이후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가스비는 고정가가 아니라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구매자는 시간대별 가스비를 살필 수 있는 사이트를 참고하여 NFT를 구입한다.

오픈씨가 주로 권장하는 지갑은 크롬 브라우저용 확장 프로그램인 이더리움 기반의 메타마스크(MetaMask)지만, 클레이튼 거래가 가능한 카이카스(Kaikas) 등 이외에도 15개의 지갑과 연동된다. 거래 수수료는 회당 2.5%이다. 수수료는 거래가 완료되는 시점에 판매금액에 자동 포함되며, 이용자가 연동한 지갑에서 지불된다.<sup>155)</sup> 추가 수수료인 로열티(Royalty)는 처음 NFT를 만든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으로, 작품이 거래될 때마다 제작자가 책정한 수수료(0~7.5%)가 부과된다. 이외에 구매자의 가격 제안을 수락하거나, NFT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NFT 리스팅이나 비딩을 취소할 때, 경매를 신청할 때 등에도 수수료가 발생한다. 한편 리스팅한 NFT의 가격을 단순 인하하거나, 고정 가격으로 리스팅할 경우, 또는 구매자의 구매 시점에 가스비가 청구되는 레이저 민팅(Lazy Minting)을 할 경우 등에는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sup>156)</sup>

오픈씨에서는 지원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문페이(MoonPay)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 카드로 NFT를 구매할 수 있다. 문페이를 사용하면 명목 화폐를 NFT 구매에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변환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신용카드 구매에는 신용카드 처리 수수료가 부과된다.<sup>157)</sup>

#### - 구매절차 및 방법

오픈씨에서는 멀티 에디션 판매가 가능하며, 작품 거래 형태는 3가지이다.<sup>158)</sup>

첫째, 고정 가격 리스팅(Fixed-price listings)이다. 리스팅은 나의 NFT 작품을 얼마로 팔기를 원하는지 가격을 설정해 올려두는 행위를 말한다. 가격 설정은 한 작품만 판매하는 원 오브 원(1 Of 1)의 경우 처음 리스팅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하다가

---

153) 작품을 등록(리스팅)하기 위해서는 각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을 일으켜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가스비이다. 가스비는 시세에 따라 변경되고 네트워크가 혼잡할수록 그 비용이 상승한다.

154) 이코노미스트, “NFT 시장 ‘1인자’ 노리는 솔라나, 어디서 거래하면 좋을까”, 2022.4.27.

155) 코인연구소, “오픈씨 거래소 가이드”, 2022.7.7.

156) 오픈씨(OpenSea), <https://opensea.io/about>. (2022. 9. 19. 방문)

157) 오픈씨(OpenSea), <https://opensea.io/about>. (2022. 9. 19. 방문)

158) 오픈씨, <https://opensea.io/blog/guides/the-beginners-guide-to-creating-selling-digital-art-nfts/>, (2022. 9. 19. 방문)

시장의 반응을 보고 리스팅 가격을 수정하기도 한다. 에디션(edition)으로 NFT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5개 정도의 에디션을 발행해 희소성을 유지하는데, 5작품의 가격을 한 번에 동일 가격으로 리스팅하지 않고 동일 형태의 작품임에도 시차를 두고 시장의 반응을 살피면서 가격을 조절하며 다양화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 처음 리스팅한 작품의 가격을 낮게 설정해서 빨리 구입하는 컬렉터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NFT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둘째, 감소 가격 리스팅(Declining-price listings)이다. 이는 거래 종료 기간을 설정하여 종료 기간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방식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종료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구입해야 더 저렴한 가격으로 NFT를 살 수 있다.

셋째, 최고가 경매(Highest-bid auctions)이다. 이는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이 NFT를 낙찰받는 경매 방식이다. 오픈씨에서 경매를 하려면 암호화폐인 이더(ETH)를 랩이더(Wrapped EHT; WETH)로 스왑(swap, 변환)해야 하는데 가스피가 들고 번거로워 대다수의 개별 작가들은 오픈씨 경매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편이다.

오픈씨 홈페이지에는 이용 방법, 구매 및 판매 방법, 민팅 방법 등을 안내하는 ‘지원 센터(Help Center)’가 존재하며, 이용자가 가질 만한 핵심 질문을 나열하고 이에 오픈씨가 답변한 것을 나란히 배치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 지원 센터에서는 회사의 정책 및 그 외에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답변, 오픈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갑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경우 1:1 문의를 등록할 수도 있다. 한편 오픈씨에서는 공식적인 환불 정책이 존재하지 않으며,<sup>159)</sup> 거래 시 실명 인증이 요구되지 않는다.<sup>160)</sup>

### (3) 주요거래작품유형

#### - 주요거래작가군

오픈씨는 ‘열린 바다’를 의미하는 만큼 제한 없이 다양한 작가군을 가지고 있다. 2022년 7월 15일 기준 주요 거래 작가와 총판매액은 다음과 같다.

1. CryptoPunks (총 판매액 969,724ETH, 아트)
2. OthersideMeta (총 판매액 321,124ETH, 아트)
3. YugaLabs (총 판매액 142,136ETH, 아트)
4. kingofthegoblin (총 판매액 43,956ETH, 아트)

159) TOKENIZED, “OpenSea Refunds: What Can You Do?”, <https://tokenizedhq.com/opensea-refund/>, 2022.9.29.

160) 오픈씨(OpenSea), <https://opensea.io/about>. (2022. 9. 19. 방문)



5. 911143 (총 판매액 31,996ETH), ENS(Ethereum Name Service))
6. YOLO-Official (총 판매액 2,323ETH, 아트)
7. The\_Goda (총 판매액 1,822ETH, 아트)

#### (4) 법률쟁점

##### - 저작권

NFT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특정 캐릭터나 그림을 원작자의 검토 없이 NFT화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NFT가 거래된다면 원작자가 존재하는 작품을 합의 없이 상업화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 특히 오픈씨가 선택한 오픈마켓 사업 방식은 더욱 위조나 신용사기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아탈라 창업자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안전한 플랫폼이 되기 위해 보안·컴플라이언스팀 인원을 충원했다” 고 밝혔다.<sup>161)</sup>

자유로운 NFT 발행 허가는 슈퍼레이 등 자체 엄선한 NFT를 발행하는 플랫폼과는 극명히 상반되는 행보로서 오픈씨를 세계 최대 규모 NFT 마켓플레이스로 성장하게 했지만 동시에 NFT 불법 복제 문제가 기승을 부리게 하기도 했다. 오픈씨는 그간 발행된 NFT 80% 이상이 불법 복제 작품과 가짜 수집품, 스팸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등록 취소, 계정 차단 등의 방법으로 불법 NFT 발행 및 유통을 막기 위한 규정을 주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불법 복제 NFT를 제거한다고 해도, 이미 불법 NFT를 구매한 소비자는 결국 구매한 NFT나 오픈씨의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소외될 수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sup>162)</sup>

실제로 오픈씨는 미국 연방법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에 따라 저작권 침해 혐의에 대한 공지 및 등록 취소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 오픈씨에서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콘텐츠를 신고할 수 있다. 회사가 신고 내용이 DMCA 범위에 충족된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에서 저작권이 침해된 것으로 알려진 콘텐츠는 삭제된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로 인해 NFT가 삭제되면 해당 NFT의 사용자에게도 알려진다.<sup>163)</sup>

또한, 오픈씨는 약관을 통해 이용자는 오픈씨에서 구매하는 자산의 아이덴티티, 적법성 혹은 진본성을 확인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오픈씨는 플랫폼에 있는 자산의 아이덴티티와 적법성 혹은 진본성에 대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

161) 디지털데일리, “세계 최대 NFT 거래 플랫폼 ‘오픈씨’가 바라보는 NFT 시장은? [NFT 인터뷰②]”, 2021.5.8.

162) 와이어드 코리아, “오픈씨 NFT 마켓플레이스, 저작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왜?”, 2022.2.10.

163) 오픈씨(OpenSea), <https://opensea.io/about>. (2022. 9. 19. 방문)

을 돕으로써 암호자산의 저작권 침해 등이나 진본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각 이용자들에게 암호자산거래의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약관에서는 오픈씨와 이용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구속력 있고 최종적인 중재에 따라 해결을 한다는 중재계약도 포함되어 있다. 이용자가 중재계약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는 개인별로만 오픈씨에 대해 청구 및 배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집단소송이나 절차에서의 원고가 될 수 없다. 또한, 이용자는 분쟁해결에 있어서 강제 개인 중재조항 및 청구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오픈씨는 이용자들이 별도로 위 조항 배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중재조항을 통해 중재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이용자들이 소송, 특히 집단소송의 원고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위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나 이용, 암호자산을 구매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오픈씨는 동 약관을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할 권리를 가진다. 회사가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면, 약관 업데이트나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한 통지를 할 것이다. 오픈씨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정된 약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확인한다. 만약 개정 규범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sup>164)</sup>

#### - 추급권

NFT 자산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자산으로, 구매자는 디지털 영상에 대한 소유권을 구매했지만 실제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구매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구매한 영상을 통한 2차 3차 비즈니스를 일으킬 권리를 소유했다고 볼 수 없다는 문제 역시 발생한다. 이는 그림, 음악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다. 이와 동시에 구매자가 소유한 디지털영상을 타인이 복사할 수 있어 복사로 인한 동일 원본의 무한증식을 막을 수 없게 된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만약 해당 디지털영상이 최신영화라면 불법복제를 통해 퍼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구매자가 본래 소유자라는 것은 증명할 수는 있는 것과 관련 없이 가치가 하락한 디지털자산으로 전락하게 된다. 향후 이 문제와 관련해 저작권 및 추급권까지 연계된 NFT 구매체계가 완비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가치는 없는 디지털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sup>165)</sup>

#### - 개인정보 이용관련

2022년 2월 외부 해킹 공격으로 오픈씨 내 NFT 수백개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

164) 디센터(Decenter), “[이지은 변호사의 Easy NFT] 법의 사각지대 NFT, 거래 플랫폼 약관부터 살펴라”, 2021.10.1.

165) 세이프타임즈, “[시큐리티] '오픈씨 20억 도난' NFT 성배인가 독인가”, 2022.2.24.

생하여 170만 달러(약 22억4,145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sup>166)</sup> 같은 해 1월 해커들이 오픈씨에서 일부 NFT를 시장가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탈취한 뒤 제값에 팔아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던 사건에 이어 오픈씨가 해커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등장하게 됐다. 피해자들은 해커들이 보낸 가짜 이메일을 통해 중요한 부분이 공백으로 된 일종의 '빈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해커들은 계약서의 빈칸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꾸며 NFT를 탈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핀저 CEO는 해당 피싱 사고가 오픈씨 웹사이트와는 연결된 것이 아니며, 오픈씨의 보안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발표했다.<sup>167)</sup>

오픈씨는 같은 해 6월 30일 회사 메일링 목록에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 식별 정보(PII) 관련 데이터 유출이 발생했음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공식 발표에서 오픈씨는 해당 사건에서의 데이터 유실이 회사의 과실이 아님을 주장하며 회사의 소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는 외주사 Customer.io의 직원이 고객 정보를 훔친 것으로 추정됨을 설명하고 이용자들에게 각별히 경계할 것을 권고할 뿐이었다.<sup>168)</sup> 연이은 사건으로 오픈씨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지적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구매한 디지털영상을 저장·관리하는 거래소 침해로 인해 원본 자체가 유출되면 해당 NFT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해당 디지털자산 원본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는 있으나 그뿐으로, 탈취돼 무한 복제되거나 누군가에게 팔려 은닉되면 피해자의 NFT는 가치가 하락하거나 무용지물의 디지털자산으로 전락할 수 있다.<sup>169)</sup> 홈페이지에서는 지갑 앱이나 확장 프로그램을 공식 버전으로 사용할 것, 알 수 없거나 손상된 링크에 접근하지 않을 것, 암호 관리자를 사용할 것, 2단계 인증(Two-Factor Authentication, 2FA) 시스템을 이용할 것 등의 권고만을 하고 있다.<sup>170)</sup>

#### - 세금

오픈씨에서는 NFT의 구입, 판매 및 양도에 세금이 적용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한다. 관련 문제는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길 권장하면서 세금에 관한 질문 사항 역시 받지 않고 있다. 어떤 세금이 적용될지에 대한 내용은 타사 서비스인 코인트래커(CoinTracker)를 통해 도움을 받기를 권장하며, 오픈씨 홈

166) 블로터(BLOTER), "NFT 거품 빠지나...글로벌거래소 '오픈씨', 직원 20% 해고", 2022.7.15.

167) 뉴크웨스트(NewsQuest), "해커에게도 '오픈'?...세계 최대 NFT 거래소 오픈씨, 또 털렸다", 2022.2.21.

168) 블록체인투데이(BLOCKCHAIN TODAY), "오픈씨, 이용자 데이터 유출 사고 발생... "피싱 메일 주의" 당부", 2022.7.1.

169) 세이프타임즈, "[시큐리티] '오픈씨 20억 도난' NFT 성배인가 독인가", 2022.2.24.

170) 오픈씨(OpenSea), <https://opensea.io/about>. (2022. 9. 19. 방문)

페이지에서는 세금과 관련하여 오픈씨와 코인트래커와의 파트너십에 관한 내용이 업로드되었다. 그러나 코인트래커의 서비스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할 수 없다는 것 역시 명시돼 있다.<sup>171)</sup>

NFT도 가상화폐거래소처럼 중앙화거래소(CEX)가 존재한다. 만약 NFT 발행 및 거래를 CEX에서 진행한다면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어 과세근거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오픈씨에서의 거래내역은 모두 활동에 기입하게 돼 있다. 다만, CEX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거래하지 않고, 개인이 별도의 홈페이지에서 민팅을 진행하거나 마켓을 만들어버리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이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다. 트랜잭션 해쉬값(고유ID)을 통해 거래가 존재했다는 정보는 알 수 있으나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에 거래내역 제출의무가 없는 거래소, 특히 해외거래소들을 통해 NFT를 거래한 경우도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외에 지급의 실소유자를 알기 어렵기도 하지만, 거래내역에 대해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는 사람이 없으니 과세가 어려운 점도 있다.<sup>172)</sup>

미국 국세청은 일명 ‘자산 배치’ 원칙의 일환으로, “자산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상품이나 다른 가상화폐를 포함한 물품과 거래할 시 자본 이득이나 손실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이더리움은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자산을 다른 자산과 거래하는 행위는 매각이나 처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NFT 매입으로 인한 세금을 내야 하게 된다. 또, NFT는 수집가능한 자산으로 간주되면서 소득에 따라 최고 28%의 비율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오픈씨로 대표되는 대형 NFT 거래 플랫폼은 판매량만 보고하고, 구매자가 암호화폐로 얼마나 구입했는지는 보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 국세청이 총 소득이나 납부하지 않은 세금 총액을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한편 이 규정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유저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자신의 미술 작품을 NFT로 판매한 판매자에게는 세금이 매겨진다.<sup>173)</sup>

## 나) 파운데이션(Foundation)

### (1) 회사개요

- 설립개요

---

171) 오픈씨(OpenSea), <https://opensea.io/about>. (2022. 9. 19. 방문)

172) 텍스워치(Tax watch), “NFT 투자해 본 세금전문가들에게 물었다”, 2022.1.12.

173) 블록미디어(BLOACK MEDIA), “CNBC “NFT 구매자들, 생각 못한 양도소득세 낼 수 있다””, 2021.3.18.

2021년 2월 설립된 파운데이션은 에디션이 아닌 한 작품만 판매 가능한 경매 시스템을 지닌 플랫폼이다. 파운데이션에서 NFT는 24시간 동안 지속되는 경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컬렉터는 비딩(bidding)을 건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 또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으로 가격을 호가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 작품을 구매할 수 있다. 비딩이 시작되면 작품이 메인 페이지에 먼저 보이도록 업로드되고, 비딩이 한 번 더 들어오면 첫 페이지에 노출되어 비딩이 활성화된다.

파운데이션은 오픈씨 등 누구나 활동 가능한 타 플랫폼과 달리 인비테이션(초대장) 기능을 통해 운영된다. 초대 기반으로 폐쇄적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작품의 시세나 판매 가능성을 높인 마켓 플레이스라 할 수 있다. 파운데이션에서 작품을 판매하면 3장의 초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창작자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창작자에게 받은 초대장을 통해서만 NFT를 발행할 수 있다. 수집가는 창작자와 달리 제한 없이 활동 가능하다. 뉴스칼럼 NFT, 시 NFT 등 특색있는 NFT들이 존재하며 특히 유명 애니메이터들이 다수 포진돼있으며 타 마켓 플레이스와 달리 증강현실(AR)이 구현되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 수익구조

파운데이션은 NFT 초기 판매 시 15%, 2차 판매 시 5%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한다. 파운데이션은 출시 1년도 되지 않아 누적 매출액 1억 달러(약 1,178억 원)를 달성하며 시장성을 알렸다.<sup>174)</sup>

#### - 인력구성

2022년 10월 23일 기준, dealroom(app.dealroom.co)에 따르면 51-200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sup>175)</sup>

#### - NFT 아트에 대해 업계에서 바라보는 전망

파운데이션을 창업한 케이본 테흐라니안(Kayvon Tehranian)은 “파운데이션의 초점은 순수한 거래적 가치를 넘어 사람 간의 진정한 연결을 구축하고 창작자와 컬렉터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데 있다” 고 말했다. 실제로 파운데이션은 스스로를 ‘예술가, 큐레이터, 수집가를 위한 놀이터’ 라고 부르면서 플랫폼 내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 이용자들의 파운데이션 계정을 각자의 소셜미디어에 연동할 것을 권장하기도 한다. ‘스플릿’ 제도는 공동 창작을 한 NFT일 경우 판매 시 각 창작자에게 몇 퍼센트의 수익을 배분할 것인지도 설정할 수 있게 하는데,<sup>176)</sup> 최대 4명까지

174) 이투데이, “[창간기획] "물리·디지털 영역의 융합...크리에이터에게 경제권 맡겨야"”, 2021. 10. 5.

175) dealroom, [https://app.dealroom.co/companies/foundation\\_labs\\_inc\\_](https://app.dealroom.co/companies/foundation_labs_inc_). (2022. 9. 19. 방문)

로열티 분배를 가능하게 하여 작가들과의 협력을 도모한다.

파운데이션은 장차 모든 종류의 수직적 영역에서 문화적인 창조를 지원하는 것을 꿈꾼다. NFT는 가상자산을 단순한 금융 수단을 넘어 문화로 만들었으며, 모든 산업, 특히 로열티를 전제로 하는 산업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NFT를 통해 예술가와 제작자들은 그들이 수없이 보여준 창작물에 대한 가치와, 그들이 문화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파운데이션의 초점은 순수한 거래적 가치를 넘어 사람 간의 진정한 연결을 구축하고 창작자와 컬렉터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등 블록체인을 예술가와 제작자의 경험에 접목해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것에 있다.<sup>177)</sup>

## (2) 거래유형

### - NFT 아트 토큰 발행 FLOW

파운데이션은 이더리움(ETH)을 사용하며 지갑으로는 메타마스크(MetaMask)를 지원한다. 이외에는 레인보우 월렛(Rainbow Wallet), 트러스트 월렛(Trust Wallet), imToken(임토큰) 등 월렛커넥트(WalletConnect)가 지원되는 지갑도 가능하다. 2022년 5월부터는 코인베이스 월렛(Coinbase Wallet)을 통해서도 파운데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sup>178)</sup> 파운데이션에서는 신용카드로도 거래가 되고 있다.<sup>179)</sup>

플랫폼 작품을 민팅, 리스팅할 때마다 작가의 비용 부담이 있으며 이용 수수료가 15%로 높은 편이다. 창작자는 NFT 초기 판매 시 파운데이션에 15% 수수료를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받으며, 이때 로열티 지급은 없다. NFT가 2차 판매되면 파운데이션에 5%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작자에게 로열티 10%를 지급하며 판매자는 판매가의 85% 수익을 얻는다. 즉, 판매자는 매번 총 판매 가격의 85%를 받게 된다. 파운데이션은 창작자의 선택으로 메타데이터를 IPFS에 저장하는 오픈씨와 달리, 모든 과정의 데이터를 IPFS에 저장한다. 따라서 작가는 작품을 매번 민팅하고 리스팅할 때마다 소정의 가스피를 내야 한다.<sup>180)</sup> 거래 시 이용자의 실명 인증은 요구되지 않는다.<sup>181)</sup>

---

176) 파운데이션, <https://foundation.app/how-to-create>, (2022. 9. 19. 방문)

177) 이투데이, “[창간기획] "물리·디지털 영역의 융합...크리에이터에게 경제권 맡겨야"”, 2021.10.5.

178) 파운데이션(Foundation), <https://foundation.app/>, (2022. 9. 19. 방문)

179) branding in asia, “The First NFT Credit Card Launched by Thailand’s Krungsri First Choice Working with Artist PUCK”, 2022.1.19.

180) 파운데이션(Foundation), <https://foundation.app/>, (2022. 9. 19. 방문)

181) 파운데이션(Foundation), <https://foundation.app/>, (2022. 9. 19. 방문)

- 구매절차 및 방법

파운데이션에서는 단일 에디션(1 of 1)만 취급하며, 파운데이션에서 NFT를 거래하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가 있다.

첫째, ‘즉시 구매 가격(Buy Now price)’ 을 설정하여 누구나 즉시 NFT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구매자가 나타나면 바로 판매가 이루어지며 NFT에 대한 ETH 역시 즉시 획득할 수 있다.

둘째, 구매자가 제작자나 판매자에게 ‘오퍼(Offer)’ 를 함으로써 거래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파운데이션에서 오퍼를 할 경우 경매와 유사하게 24시간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며, 오퍼를 받을 경우 이 기간 내에 수락해야 한다. 이때 경매 중이거나 이미 판매 가격이 설정된 경우에도 오퍼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리저브 옥션(Reserve Auctions)’ 의 방법이 있다. 판매자가 최소 금액을 입력하고 필요 가스피를 지불하면 24시간 동안 진행될 경매가 시작된다. 이때 종료 전 15분 이내에 이루어진 각 입찰에 있어서는 추가 입찰을 받지 않을 때까지 남은 시간이 15분으로 재설정된다. 카운트다운이 최종 종료되면 경매도 종료된다.<sup>182)</sup>

회사는 환불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밝히고 있지 않다. 고객 대응 서비스로는 홈페이지에 지원 센터 ‘Help Center’ 를 운영하고 있으며, Web 3.0에 대한 기본 지식과, 파운데이션 입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업로드 되어 있다. 이외에 저작권, 커뮤니티 지침, 지갑 보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등록돼있다. 또한 지원 센터에서는 문의 시 24시간 이내로 답변해주는 공식 트위터 계정으로 연결되기도 한다.<sup>183)</sup>

### (3) 주요거래작품유형

- 주요거래작가군

2022년 7월 15일 기준 주요 거래 작가와 총판매액은 다음과 같다.

1. nguyenhut (총 판매액 365.25ETH, 팔로워 6,593, 모션그래픽)
2. coffindance (총 판매액 327ETH, 팔로워 260, 사진/영상)
3. yatredda (총 판매액 250.65 ETH, 팔로워 6,788, 사진/영상)
4. GHARLIERA (총 판매액 241.76ETH, 팔로워 8,137, 아트)
5. JenStark\_Vault (총 판매액 229.51ETH, 팔로워 1,494, 아트)
6. Cmttat (총 판매액 115.46ETH, 팔로워 2,682, 모션그래픽)

182) 파운데이션(Foundation), <https://foundation.app/>. (2022. 9. 19. 방문)

183) 파운데이션(Foundation), <https://foundation.app/>. (2022. 9. 19. 방문)

7. yatrede (총 판매액 109.11ETH, 팔로워 6,789, 사진/영상)

#### (4) 법률쟁점

##### - 개인정보 이용관련

파운데이션은 가입 시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 파운데이션 개인 정보 보호 정책(Foundation Privacy Policy)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개인 또는 단체를 사칭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와의 관계를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 플랫폼을 통해 의도적으로 허용되거나 제공되지 않은 수단을 통해 자료나 정보를 얻거나 접근하는 것, 이외 플랫폼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정책 또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 이외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개인 정보 보호 또는 보안 위협을 제기하거나 발생시키는 것 등을 모두 금지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파운데이션은 사용자들이 약관을 통해 스마트 계약 및 블록체인 기술이 실험적이고 추측적이며 본질적으로 위협하고, 버그, 오작동, 타이밍 오류, 해킹 및 도난 또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프로토콜 규칙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마트 계약에 악영향과 총 손실 위험, 디지털 통화 또는 디지털 예술작품의 도난 또는 디지털 아트웍의 구매 또는 판매 기회 손실 등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고 명시한다. 파운데이션 플랫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의 위험 부담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용자는 약관에서 (A) 이용자의 자격 증명을 찾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B) 디지털 예술작품, 아트 콘텐츠 또는 컬렉션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가 종료되거나 (c) 이용자의 모든 예술품 또는 컬렉션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제3자의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지적 재산권 또는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주장을 포함해 어떠한 책임이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sup>184)</sup>

파운데이션은 해킹에 대한 방어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당신의 보안에 대한 영웅은 당신이다(You are the hero of your security).” 라는 문장을 앞세워 이용자는 사기나 해킹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해야 함을 명시한다. 회사는 이용자가 스스로 보안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을 안내하면서 이용자가 프로필 삭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185)</sup>

##### - 저작권

파운데이션은 홈페이지에서 위조 NFT 또는 위조 자산을 만들고 리스팅하는 것에

184) 파운데이션(Foundation), <https://foundation.app/>. (2022. 9. 19. 방문)

185) 파운데이션(Foundation), <https://foundation.app/>. (2022. 9. 19. 방문)



서 나아가 모든 당사자의 지적 재산권 또는 기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작자와 구매자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될 경우 회사에 통보할 것을 권고하며, 회사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및 기타 해당 지적 재산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한다. 또한, 회사의 지침에 따라 제작자는 DMCA에 따라 플랫폼에서 제거된 NFT의 판매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전부를 구매자나 파운데이션에 환급해주어야 함 역시 언급하고 있다.

파운데이션 홈페이지에는 DMCA 가이드가 제공되고 있다. 파운데이션은 또한 DMCA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반복 침해자로 판단되는 사용자에게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회사는 독자적인 재량으로 (i) 플랫폼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사용자의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매자 자격(Collector License)을 탈환할 수 있다.<sup>186)</sup>

#### - 세금

파운데이션은 사용자에게 플랫폼 사용과 관련하여 소유, 이전, 구매, 판매 또는 예술작품의 제작으로 인해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세금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sup>187)</sup>

## 다) 노운 오리진

### (1) 회사개요

#### - 설립개요

노운오리진은 2018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설립된 이더리움 기반 NFT 거래소이다. 노운오리진은 플랫폼 내에 신규 NFT를 취급하는 1차 마켓(Primary marketplace)과 수집가들이 서로의 NFT를 거래하는 2차 마켓(Secondary Marketplace)을 구축했다. 또한 커뮤니티 탭을 구성하고 이 중 명예의 전당(Hall of fame)을 마련하여 이더리움에서 거래량이 높은 아티스트, 작품, 컬렉터 순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sup>188)</sup> 노운오리진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심사를 통해 예술가를 선정한다. 노운오리진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싶다면 가능한 기간에 신청하여 기준에 통과되어야 한다.

NFT는 원 오브 원과 멀티 에디션 두 형태 다 거래 가능하며, 작품 형태는 이미지

186) 파운데이션(Foundation), <https://foundation.app/>. (2022. 9. 19. 방문)

187) 파운데이션(Foundation), <https://foundation.app/>. (2022. 9. 19. 방문)

188) 노운오리진(KnownOrigin), <https://knownorigin.io/halloffame>, (2022. 9. 19. 방문)

와 비디오뿐만 아니라 3D 모델과 360도 이미지도 가능하다. 품질이 높은 NFT 아트 작품들이 많이 있으나 판매수수료가 15%로 높은 편이다.

- 수익구조

노운오리진의 전체 NFT 거래량은 2022년 6월 약 780만 달러(약 101억3천만 원)로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1위인 오픈씨의 거래량은 약 304억3천만 달러(약 39조5천억 원)인 데 비해 많지 않으나, 2022년 6월 전자상거래 기업 최초로 NFT 사업 확장을 위해 시장에 뛰어든 이베이가 노운오리진을 인수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sup>189)</sup> 상기 판매 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한다.

- 인력구성

2018년 앤디 그레이, 데이비드 무어, 제임스 모건의 3인 공동창업자가 설립했다. 2022년 3월부터는 앰배서더 프로그램(Ambassador Programme)을 시행하여 큐레이팅 특권을 가짐으로써 웹사이트나 플랫폼에서 별도 조명될 사람을 선정할 수 있는 앰배서더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노운오리진은 “앰배서더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이용자에게 더 큰 권력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큐레이팅 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플랫폼을 강화하기 중요한 첫 걸음” 이라고 설명한다.<sup>190)</sup> 2022년 10월 23일 기준, dealroom(app.dealroom.co)에 따르면 노운오리진에는 11~50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sup>191)</sup>

## (2) 거래유형

- NFT 아트 토큰 발행 FLOW

노운오리진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가스피가 비싼 편이다. 지급으로는 메타마스크(MetaMask), 월렛커넥트(WalletConnect), 포티스(Portis), 또는 포트매틱(Fortmatic)을 지원한다. 수수료의 경우 노운오리진에서 진행 중인 모든 2차 판매에 있어 아티스트는 해당 거래 총 가치의 12.5%를, 회사는 2.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거래 시 총 15%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노운오리진에서는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sup>192)</sup>

189) 이베이, “eBay Acquires Leading NFT Marketplace, KnownOrigin”, <https://www.ebayinc.com/stories/news/ebay-acquires-leading-nft-marketplace-knownorigin/>, (2022. 9. 19. 방문)

190) 노운오리진(KnownOrigin), <https://knownorigin.io/halloffame>, (2022. 9. 19. 방문)

191) dealroom, <https://app.dealroom.co/companies/knownorigin>, (2022. 9. 19. 방문)

192) 노운오리진(KnownOrigin), <https://knownorigin.io/journal/platformupdate/card-purchases>, (2022. 9. 19. 방문)

- 구매절차 및 방법

노운오리진에서의 거래 방법은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있다.

첫째, ‘즉시 구매(Buy Now)’ 하는 방법으로, 구매자가 판매자가 설정해놓은 정가에 즉시 구매하여 거래할 수 있다.

둘째, ‘가격 제시(Bids)’의 방법이 있다. 노운오리진에서는 먼저 가격을 제시해 볼 수 있으며 제시된 가격은 제작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 시점부터 12시간 동안 잠겨진다. 이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구매자가 나타나면 기존 제시된 금액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24시간 리저브 옥션(24hr reserve auction)’의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제작자가 설정한 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초과하는 입찰이 들어오면 그때 24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입찰이 들어와서 낙찰될 때까지 경매는 잠겨있다. 카운트다운의 마지막 15분 이내에 추가 입찰이 이루어진 경우 타이머에 다시 15분이 추가된다. 이 경매는 단일 에디션에서만 진행된다.<sup>193)</sup>

고객 대응 서비스로는 노운오리진 디스코드(Discord)를 통해 문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링크 주소를 제공하고 있다. 환불과 관련한 정책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없다. 거래 시 이용자의 실명 인증은 요구되지 않는다.<sup>194)</sup>

### (3) 주요거래작품유형

- 주요거래작가군

노운오리진에서는 까다로운 수준의 심사를 통과한 작가만 활동할 수 있어 주요 거래 작가군의 작품 퀄리티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2022년 7월 15일 기준 주요 거래 작가와 판매액은 다음과 같다.

(최근 2주, “Trending” 선정 작가 목록)

1. NFT Murder (총 판매액 2.91ETH, 아트)
2. Bryan Freudeman (총 판매액 0.505ETH, 아트)
3. Cyber Shakti (총 판매액 7.25ETH, 아트)
4. Starr Factor (총 판매액 0.44ETH, 아트)
5. soulplayclay nfts (총 판매액 0.35ETH, 아트)
6. Arcanum Creative (총 판매액 0.48ETH, 아트)
7. Schoolsstillout (총 판매액 2.535ETH, 아트)

193) 노운오리진(KnownOrigin), <https://knownorigin.io/halloffame>, (2022. 9. 19. 방문)

194) 노운오리진(KnownOrigin), <https://knownorigin.io/halloffame>, (2022. 9. 19. 방문)

#### (4) 법률쟁점

##### - 저작권

사용자는 현재 또는 미래에 알려진 모든 미디어에서 콘텐츠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저작권, 상표, 초상권, 데이터베이스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행사할 권한을 노운오리진에 부여하게 된다. 또한 약관에 동의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법률의 허용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권을 포기하며, 사용자가 콘텐츠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권리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회사에 주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용자는 (i) 사용자의 약관 위반, (ii) 사용자의 서비스 또는 앱 오용, (iii) 사용자의 해당 법률, 규칙, 규정 또는 제3자의 권리 위반 및 (iv) (사용자의 앱 사용 및 접근과 관련하여) 초상권과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의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행위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종류의 청구, 책임, 손실, 손해(심각하고 결과적인), 소송, 판결,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에 있어 회사에 배상해주며 회사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존재한다.<sup>195)</sup>

##### - 개인정보 이용관련

노운오리진은 회사가 사용자의 정보를 위한 데이터 관리자로서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회사는 사용자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지, 그 정보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누구와 공유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sup>196)</sup> 한편 회사는 해킹으로부터 이용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이용자의 계정 및 지갑에 대한 무단 접근과 사용에 있어 회사는 책임지지 않음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스스로 자신의 계정 보안을 유지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용자가 거래 시 처하게 되는 보안 위협에 있어 회사는 기술적/조직적인 보호장치를 실행할 것이라는 언급은 있지만,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다.<sup>197)</sup>

##### - 세금

노운오리진에서는 플랫폼에서의 NFT 판매 및 구매와 관련된 모든 세금에 대한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이용자는 이용자가 유효한 VAT 등록 번호를 제공하지 않거나 세금, 위약금 또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아 이를 관할 세무 당국이 부과함으로써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다면 이용자가 이 역시 지불해주어야

195) 노운오리진(KnownOrigin), <https://knownorigin.io/halloffame>, (2022. 9. 19. 방문)

196) 노운오리진(KnownOrigin), <https://knownorigin.io/halloffame>, (2022. 9. 19. 방문)

197) 노운오리진(KnownOrigin), <https://knownorigin.io/halloffame>, (2022. 9. 19. 방문)

한다.<sup>198)</sup>

사용자 또는 기타 개인 또는 법인이 입은 직간접적 손실(수익, 사업 또는 기회의 손실 포함),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본 약관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 역시 명시돼 있다.<sup>199)</sup>

## 라) 슈퍼레이(SuperRare)

### (1) 회사개요

#### - 설립개요

2018년 4월 설립한 슈퍼레이는 디지털 아트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NFT 아트 거래소이다. 슈퍼레이의 본사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이며, 슈퍼레이의 공동설립자는 존 크레인(John Crain), 찰스 크레인(Charles Crain), 조나단 퍼킨스(Jonathan Perkins)이다. 세 명의 공동설립자는 크립토 수집품을 창작 및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픽서라(Pixura)’을 공동 창업하기도 했다.<sup>200)</sup> 픽서라는 크리에이터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인터넷 라이프의 핵심인 디지털 콘텐츠를 분산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 자산 소유권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회사이다.<sup>201)</sup> 슈퍼레이 플랫폼 초기 구동은 픽서라 기술층을 통해서 이뤄졌다. 2021년 3월 픽서라는 2018년 슈퍼레이를 통해 암호화폐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스테이터스 인큐베이터에 합류했다. 슈퍼레이 최고경영자(CEO)인 존 크레인은 인터뷰에서 디지털 아티스트와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현대 미술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디지털 아트 예술품을 수집하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발견했다고 한다.<sup>202)</sup> 그는 예전에 전도유망한 이더리움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컨센서스(ConsenSys)’에서 근무했다.<sup>203)</sup>

2021년 3월 슈퍼레이는 삼성전자의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의 투자를 받았다. 삼

---

198) 노운오리진(KnownOrigin), <https://knownorigin.io/halloffame>, (2022. 9. 19. 방문)

199) SuperRare Terms of Service,

<https://www.notion.so/SuperRare-Terms-of-Service-075a82773af34aab99dde323f5aa044e>. (2022. 9. 19. 방문)

200) 페맥스 블로그, <https://blog.naver.com/phemex2019/222596788059>, (2022. 9. 19. 방문)

201)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공식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tatus\\_korea&logNo=221340366089](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status_korea&logNo=221340366089). (2022. 9. 19. 방문)

202) 코인데스크코리아, [인터뷰] NFT 큐레이션으로 뜬 슈퍼레이 "다음 목표는 탈중앙화", 2021. 12. 25.

203) 삼성넥스트,

<https://www.samsungnext.com/blog/why-we-invested-in-superrare-a-digital-art-marketplace>, (2022. 9. 19. 방문)

성넥스트는 콜라보레이티브 펀드 등 해외 벤처투자사와 함께 슈퍼레어가 모집한 900만달러(약 101억원) 규모의 시리즈A 펀딩에 참여했다. 이번 투자에는 벤처투자사나 기업 외에 세일즈포스 창업자 겸 CEO(최고경영자)인 마크 베니오프와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마크 쿠반 등도 이름을 올렸다.

#### - 인력구성

슈퍼레어는 슈퍼레어 플랫폼을 운영하는 슈퍼레어 랩스(SuperRare Labs), 슈퍼레어 커뮤니티(SuperRare Community), 슈퍼레어 다오 위원회(SuperRare DAO Council), 슈퍼레어 토큰인 레어토큰(\$RARE Token) 보유자, 작품 출품을 신청한 일종의 독립 갤러리인 슈퍼레어 스페이스(SuperRare Spaces)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 규모는 직원 51명~200명 사이로 링크드인에 가입한 직원을 기준으로 하면 91명이며 미국, 멕시코,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다.<sup>204)</sup> 2022년 하반기 슈퍼레어는 슈퍼레어 2.0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며 백서를 통해 슈퍼레어 다오(SuperRare DAO)의 구조와 역할을 구체화했다. 슈퍼레어 다오는 이더리움(Superredao.eth)에 멀티 시그<sup>205)</sup> 스마트 계약(multi-sig smart contract)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ETH 주소<sup>206)</sup>이다.<sup>207)</sup>

슈퍼레어는 큐레이션 토큰인 레어토큰을 발행하여 모든 크리에이터가 슈퍼레어 다오가 관리하는 커뮤니티 운영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레어토큰 보유자는 주요 플랫폼 매개 변수를 감독하고, 커뮤니티 재무부에서 자금을 할당한다. 또한 네트워크 및 프로토콜 개선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거버넌스를 통과된 제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분산형 조직인 슈퍼레어 다오를 집합적으로 관리한다. 슈퍼레어 다오는 출시 시점에 수많은 핵심 구성 요소로 구성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투명한 자율 거버넌스를 통해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7명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위원회는 7명 중 4명의 다중 서명 지갑을 통해 슈퍼레어 DAO 커뮤니티 재무부를 관리한다. 거버넌스 위원회의 구성원은 슈퍼레어랩스 팀 구성원 1명, 슈퍼레어 랩스 투자자 2명, 독립 커뮤니티 구성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명단은 존 크레인(John Crain, SuperRare Labs의 CEO 겸 공동 설립자), 닉 토마니오(Nick Tomaino), 데릭 슬로스(Derek Schloss), 세레나 타바치(Serena

204) 링크드인, <https://www.linkedin.com/company/superrarelabs/about/>, (2022. 9. 19. 방문)

205) 멀티시그(Multi-sig, 다중서명)란 디지털자산을 보관하는 전자지갑의 개인 암호키를 3개로 나눠 만들고, 이 중 2개 이상의 열쇠를 이용하면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출금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해당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부 해킹당하지 않는 한 전자지갑을 열 수 없는 구조라 안전하다. (팍스넷뉴스, 중소형 거래소만 갖춘 '멀티시그', 2021. 3. 30.)

206) 0x860a80d33e85e9788f1f0c75c6e5bd60b48da9

207) 슈퍼레어 백서, <https://docs.superrare.com/whitepapers/master/the-superrare-dao>, (2022. 9. 19. 방문)

Tabacchi), 시모나 팝(Simona Pop), 슈퍼레어 초기 아티스트 핀다르 반 아르만(Pindar Van Arman)이며 7번째 좌석은 현재 비어 있다.<sup>208)</sup> 이들의 역할은 다오가 통제하는 기본 자산의 안전과 보안을 감독하는 것으로 자금을 일방적으로 배분할 능력은 없다. 초기 위원회 구성원들은 출시를 위해 사전 선발되었지만, 향후 거버넌스를 통해 교체될 수도 있다.

- 수익구조

슈퍼레어의 시가총액은 2022년 10월 4일 기준 1,611만 9,693 달러 (230억 280만 1,911 원)이다.<sup>209)</sup> 슈퍼레어는 수익은 주로 1차 판매에서 창출되며, 일부 수익은 SuperRare의 2차 시장에서 발행한다.<sup>210)</sup> 슈퍼레어는 1차 판매에서 작품 판매 시 15% 플랫폼 수수료를 받는다. 아티스트 갤러리는 1차 판매에서 판매 금액의 15%를 커미션으로 받고 나머지 85%는 원작자인 아티스트에게 전달한다. 원작자는 재판매가 발생할 때마다 10%의 고정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컬렉터인 매수자가 지불하는 구매 금액의 3%가 슈퍼레어의 수수료이다.<sup>211)</sup>

슈퍼레어는 심사를 통과한 아티스트만 NFT 발행과 판매가 가능한 하이엔드 큐레이팅 시스템을 고수한다. 심사 승인을 받은 작품들은 상대적으로 고가에 판매 가능하며,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이더를 지불하고 NFT 아트 작품을 구매할 의향을 지닌 컬렉터층이 형성되어 있다. 덤레이더에 따르면 평균 거래가가 2022년 7월 16일 기준 오픈씨 94달러, 파운데이션은 738달러인 데 비해 슈퍼레어는 9,000달러로 확인된다.<sup>212)</sup> 2018년 설립 첫 해 슈퍼레어의 아티스트들은 월평균 약 8000달러의 매출을 올렸으나 2021년 3월 경 2500만달러로 급증했다. 당시 아티스트들은 1차 판매 및 2차 시장 로열티를 통해 300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sup>213)</sup>

슈퍼레어 사이트의 커뮤니티 탭에는 뉴욕에 위치한 NFT 아트 갤러리 NYC Gallery와 스페이스(Spaces), Trending artists, Top collectors, \$RARE Token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중 스페이스는 슈퍼레어의 거버넌스 카운슬과 토큰 보유자 커뮤니티의 검토를 거친 큐레이터가 직접 운영하는 독립적인 갤러리이다.<sup>214)</sup> 엄선된 아티스트의 예술품만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슈퍼레어의 큐레이션 시스템은 거래되는

208) 슈퍼레어 백서,

<https://docs.superrare.com/whitepapers/master/the-superrare-dao#governance-council>.

(2022. 9. 19. 방문)

209) 코인마켓캡, <https://coinmarketcap.com/currencies/superrare/>, (2022. 9. 19. 방문)

210) 제미니, <https://www.gemini.com/prices/superrare>, (2022. 9. 19. 방문)

211) 슈퍼레어, <https://superrare.com/about>, (2022. 9. 19. 방문)

212) 덤레이더(DappRadar), <https://dappradar.com/nft>, (2022. 9. 19. 방문)

213) 뉴스웨이, 삼성넥스트, 美 NFT 예술 플랫폼 '슈퍼레어'에 투자, 2021. 3. 31.

214) 코인데스크코리아, "[인터뷰] NFT 큐레이션으로 뜬 슈퍼레어 "다음 목표는 탈중앙화", 2021. 12.

25.

NFT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 (2) 거래유형

### - NFT 아트 토큰 발행 FLOW

슈퍼레이어는 엄격한 큐레이션을 거친 아티스트만 진입 가능하며, 에디션 없이 오직 한 작품만 NFT로 발행 가능하다. 슈퍼레이어 아티스트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슈퍼레이어 홈페이지를 통해 연결된 구글폼에 아티스트 프로필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이름, 아티스트 웹사이트 및 포트폴리오 주소, 인스타그램과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링크, 이메일, 작가 및 작품 이야기를 담은 1분 이내의 자기 소개 지원 비디오 영상, 대표 작품이 저장되어 있는 구글 드라이브 주소, 작품에 담긴 스토리와 이 작품이 슈퍼레이어에 올라와야 하는 이유, 슈퍼레이어에 대해 알게 된 경위 등을 작성해야 한다.<sup>215)</sup>

슈퍼레이어의 특징은 플랫폼상에서 판매되는 모든 작품이 유일무이하다는 점이다. 오픈씨와 같은 타 NFT 플랫폼에서는 크리에이터가 같은 작품을 여러 번 구조할 수 있지만 슈퍼레이어는 단일 에디션 작품만 취급한다. 슈퍼레이어의 유저들은 최근 거래건을 확인하여 개인 맞춤형 피드를 지정할 수 있으며 타 NFT 크리에이터 및 수집가와 좋아요, 댓글, 팔로우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 슈퍼레이어에서 발행 및 판매되는 NFT는 시각 작품, 시청각 작품, 애니메이션, 오디오, 사진, 3D 작품, GIFS 및 기타 디지털 작품을 모두 포함하면서도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sup>216)</sup>

### - 구매절차 및 방법

슈퍼레이어에서 NFT 구매를 원한다면 슈퍼레이어 사이트에 메타마스크와 같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사용 가능한 지갑을 연결해 컬렉터 계정을 생성하고 원하는 작품을 클릭해 구매를 시작하면 된다. <sup>217)</sup> 처음에는 사용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슈퍼레이어 계정을 만들어야 이후 지갑 연결도 가능하다. 국내 거주 컬렉터일지라도 메타마스크 지갑을 사용하는 경우 슈퍼레이어에서 NFT 아트 컬렉팅을 시작할 수 있다.

215) 슈퍼레이어 아티스트 프로필,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TZhB9On31j-uoFzMD3hg0gGNf3hgjVyBz1xwCHsOBSydvPw/viewform>, (2022. 9. 19. 방문)

216) SuperRare Terms of Service,

<https://www.notion.so/SuperRare-Terms-of-Service-075a82773af34aab99dde323f5aa044e>, (2022. 9. 19. 방문)

217) 슈퍼레이어, <https://superrare.com/sign-in>, (2022. 9. 19. 방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 관리되며, 지갑으로는 메타마스크(MetaMask), 포매틱(Formatic), 월렛커넥트(Wallet Connect)를 지원한다. 슈퍼레이어에서 거래 수수료는 2가지로 존재한다. 하나는 거래 횟수와 관계없이 플랫폼에서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수수료로, 매 거래 가격의 3%가 마켓 플레이스 수수료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1.00 ETH의 NFT를 구매했을 경우 실제로는 1.03 ETH를 지불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해당 거래가 마켓에서 몇 번째로 이루어진 거래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1차 판매인 경우 제작자는 판매 총액의 85%를 가질 수 있고 나머지 15%는 거래 수수료로 부과된다. 이후 2차 이상의 후속 판매에서는 최종 거래 가격의 10%가 제작자에게 로열티로 돌아가게 된다.

슈퍼레이어는 단일 에디션만을 취급하며, 거래 방법은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

첫째, ‘정가(List Price)’에 구매하는 방법이다. 제작자가 정한 정가(ETH)를 즉시 수용하여 구매하는 방법이다.

둘째, ‘오퍼(Offer)’ 슈퍼레이어에서는 리스팅된 모든 작품에 오퍼할 수 있다. 오퍼를 할 경우 구매자는 제안한 금액을 임시 전송하고 이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되는데 동의한 것이며, 판매자는 자신이 오퍼를 수락하거나, 더 높은 가격의 오퍼를 받거나, 오퍼가 취소될 때까지 해당 금액을 일시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셋째, 경매의 방법으로 슈퍼레이어에서는 다음의 2가지 경매 형태가 존재한다. 먼저 ‘스케줄 옥션(Scheduled Auctions)’이 있다. 스케줄 옥션에서는 경매의 특정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설정한다. 판매자는 선택적으로 시작 가격(Starting Price)을 설정할 수 있으며, 경매 참가자가 그 가격을 충족하기만 하면 작품은 판매된다. 반면, 시작 가격이 설정되지 않은 작품은 입찰가에 상관없이 최고 입찰자에게 판매된다. 스케줄 옥션은 경매 시작 전에만 취소할 수 있으며, 경매가 시작된 후에는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경매는 1시간에서 최대 7일 사이로 진행될 수 있다. 다음으로 ‘리저브 옥션(Reserve Auctions)’이 있다. 리저브 옥션에서는 입찰가가 판매자가 설정한 금액(Reserve Price)과 같거나 그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경매가 실행된다. 이때 가격은 24시간 동안 지속되며 경매 종료 시점까지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한 사람이 낙찰받게 된다. 두 경매 모두 경매 종료 15분 이내에 새로운 입찰이 이루어지면 입찰 시점을 기준으로 경매 시간을 15분 연장하게 된다.<sup>218)</sup>

NFT 구매는 이더리움으로 가능하며, 바이 나우의 경우 사전에 판매자가 레어토큰으로도 구매 가능하도록 설정해두었을 경우 레어토큰으로 NFT 아트를 구매할 수 있다. 슈퍼레이어의 주 구매자의 연령과 성별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모든 구매자의 구

---

218) SuperRare Terms of Service,

<https://www.notion.so/SuperRare-Terms-of-Service-075a82773af34aab99dde323f5aa044e>.  
(2022. 9. 19. 방문)

체적인 신상을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슈퍼레어 사이트 내에 가장 많은 거래금을 투자한 탑 컬렉터(Top Collectors) 순위를 파악할 수 있다. 219)탑컬렉터들의 구매작품 수, 소유작품 수, 평균 구매가, 총 구매가, 최고가 구매가, 재판매 작품 수, 평균 재판매가, 총 재판매를 파악할 수 있다. 이때 각 컬렉터의 계정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트위터, 디스코드, 유튜브 등 컬렉터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일일이 각 컬렉터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다. 개인 컬렉터도 있지만 크립토타트 뮤지엄과 같은 단체나 기관이 슈퍼레어 컬렉터 계정을 만들어 구매를 하기도 한다.220)

#### - 거래상의 위험제어 장치

슈퍼레어는 디지털자산 지갑이 해킹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을 홈페이지에 명시해 두었다.221) 지갑 해킹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컬렉터는 “Hacked wallet - SuperRare username - Collector” 라는 제목으로 daniel@superrare.com에 이메일을 보내서 알려야 한다. 슈퍼레어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의 경우에도 “Hacked wallet - SuperRare username - Artist” 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 이때 슈퍼레어 계정에 등록된 전자 메일을 사용해 메일 본문에 슈퍼레어 프로필과 연결된 공용 지갑 주소 링크를 제공해야 하며, 해킹당한 작품이 무엇인지도 적어야 한다. 그러면 슈퍼레어에서 보안 방법을 알려주고 해킹 계정을 플랫폼에서 제거하며 기존 창작물을 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아티스트 계정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지갑이 해킹당한 컬렉터는 계정에 남아있는 작품을 안전한 새 지갑으로 옮겨야 한다. 만약 슈퍼레어에서 계정만 만들어놓고 아직 작품을 올리거나 수집하지 않은 미사용 계정인데 해킹당했을 경우, privacy@superrare.com으로 이메일을 보내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슈퍼레어 계정과 연결된 전자 메일을 사용해 제목 줄에 “Delete my account” 라고 쓰고 전자 메일 본문에 사용자 이름을 포함하면 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새 지갑으로 새로운 프로필을 시작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원래 사용자 이름을 되찾을 수도 있다.

### (3) 주요거래작품유형

#### - 주요거래작가군

---

219) 슈퍼레어, <https://superrare.com/top-collectors>, (2022. 9. 19. 방문)

220) 슈퍼레어, <https://superrare.com/colborn>, (2022. 9. 19. 방문)

221) 슈퍼레어,

<https://help.superrare.com/en/articles/5662032-my-wallet-was-hacked-what-can-i-do>, (2022. 9. 19. 방문)

주요 거래 작가와 판매액은 다음과 같다.

1. XCOPY (총 판매액 16023.02ETH, 팔로워 3,062, 아트)
2. Hackatao (총 판매액 3788.03ETH, 팔로워 2,002, 아트)
3. Robbie Barrat (Christina) (총 판매액 3699.81ETH, 팔로워 899, 아트)
4. Pak (총 판매액 2156.91ETH, 팔로워 2,084, 아트)
5. Coldie (총 판매액 2058.03ETH, 팔로워 1,454, 아트)
6. Dmitri Cherniak (총 판매액 1794.95ETH, 팔로워 6333, 아트)
7. Free Ross (총 판매액 1446ETH, 팔로워 157, 아트)

#### - 작가발굴

슈퍼레이의 스페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일련의 갤러리 간 홍보 및 경쟁 과정을 거친 최종 선정 작품을 슈퍼레이에서 토큰화할 수도 있다. 슈퍼레이 스페이스(spaces)는 슈퍼레이의 거버넌스 위원회와 토큰 보유자 커뮤니티의 검토를 거친 큐레이터가 직접 운영하는 독립적인 갤러리다.<sup>222)</sup> 슈퍼레이 2.0은 Web3 생태계에 걸맞는 탈중앙화 큐레이션을 지향하며, 그 진행 과정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sup>223)</sup>슈퍼레이 커뮤니티에서 갤러리를 만들기 원하는 신청자가 슈퍼레이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고, 일종의 독립 갤러리와 같은 스페이스에서 자체 큐레이터가 작가와 협력해 작품을 출품한다 -> 슈퍼레이 커뮤니티와 슈퍼레이 랩스와의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최종최종 출품 작품을 완성한다 -> 슈퍼레이 다오 카운슬(위원회)에서 스페이스 출품작을 검토한 후 최종 통과팀을 선정해 스페이스 레이스 공식 참가자 명단을 결정한다 -> 개별 스페이스에서 작품 홍보를 통해 다수의 표를 모은다 -> 레어토큰 보유자는 48시간 이내 선호작품에 투표한다 -> 투표 집계 결과로 최종 우승자를 선정한다 -> 우승자는 슈퍼레이 플랫폼에 작품을 공식 출시한다.<sup>224)</sup>

#### (4) 법률쟁점

##### - 저작권

슈퍼레이 플랫폼에서 제작된 모든 저작물은 약관에 따라 슈퍼레이 라이선스(SuperRare License)의 적용을 받으며, 모든 사용자는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해당 항목을 수락하거나 구입하는 데 동의한다. 구매자는 약관에 의해 부여된 소유권과

222) 슈퍼레이, <https://superrare.com/spaces>, (2022. 9. 19. 방문)

223) 스페이스 백서, <https://docs.superrare.com/whitepapers/master/space-race>, (2022. 9. 19. 방문)

224) 슈퍼레이 백서, <https://docs.superrare.com/whitepapers/master/space-race>, (2022. 9. 19. 방문)

제한된 라이선스를 제외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상표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 소유권, 권리 또는 자격은 가지지 않는다고 밝혀있다. 회사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Community Guidelines)은 구매자가 저작권자(예: 제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슈퍼레어는 또한 구매자에게 자신이 구매한 NFT를 판매, 거래, 양도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어도,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작품의 사본 판매, 작품에 대한 접근권 판매, 작품의 파생 작품의 판매 또는 기타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등의 방법 등).

슈퍼레어는 또한 모든 개인의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을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침해 또는 해지된 계정에 대한 접근 및 사이트 접근을 제거 또는 비활성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및 본 약관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한다. 또한 약관에 따라 제작자는 DMCA 요청에 따라 사이트에서 제거된 NFT의 판매로부터 받은 이더리움(ETH)의 전부를 구매자 또는 슈퍼레어에 환불하는 데 명시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회사는 플랫폼에서 침해된 것으로 알려진 작품을 제거하거나 DMCA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해 수집가 또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외에 회사는 타인의 저작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든 콘텐츠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며, 반복 침해자의 주소 권한을 제한하고 계정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도 명시돼 있다.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당사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 서비스 약관을 위반한 사용자의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sup>225)</sup>

#### - 거래상의 위험제어 장치

슈퍼레어는 약관에서 사용자의 계정에 로그인한 사람이 사용자 본인이 아님이 의심되거나 계정이 불법, 사기 또는 무단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사용자의 계정에 대한 접근을 종료, 일시 중단 또는 제한할 권리를 보유하고 밝힌다. 슈퍼레어 또는 보상받은 개인은 이러한 계정 접근 종료, 중단 또는 제한으로 인해 사용자 또는 기타 개인 또는 법인이 입은 직간접적 손실(수익, 사업 또는 기회의 손실 포함),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 본 약관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 역시 명시돼 있다.<sup>226)</sup>

225) SuperRare Terms of Service,

<https://www.notion.so/SuperRare-Terms-of-Service-075a82773af34aab99dde323f5aa044e>.  
(2022. 9. 19. 방문)

226) SuperRare Terms of Service,

<https://www.notion.so/SuperRare-Terms-of-Service-075a82773af34aab99dde323f5aa044e>.(2022. 9. 19. 방문)

- 세제

슈퍼레어 약관에서는 플랫폼 사용과 관련하여 청구되거나 부과되는 모든 판매, 사용,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 관세 및 평가액을 지불 할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명시한다(작품 소유, 양도, 구매, 판매 또는 창작의 결과로 납부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제한 없이 포함).<sup>227)</sup>

## 마) 니프티게이트웨이 (Nifty Gateway)

### (1) 회사개요

- 설립개요

2018년 던컨 코크 포스터(Duncan Cock Foster)와 쌍둥이 형제 그리핀 코크 포스터(Griffin Cock Foster)가 니프티게이트웨이를 공동 창업했다.<sup>228)</sup> 이 스타트업은 처음에 캘리포니아 투자 회사 Boost VC로부터 자금을 받았다. 니프티게이트웨이는 원래 젊은 아티스트들이 더 많은 기회와 더 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수용하기 위해 고안되었다.<sup>229)</sup> 콕 포스터는 일관성 쌍둥이 던컨과 함께 2021년 포춘(Fortune)에 의해 NFT 시장에서 29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sup>230)</sup> 그리핀은 NFT가 디지털 세계에서 개인에게 소유권을 주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여는 열쇠라고 본다. 그는 메타버스가 메타가 생각하는 만큼 커지면 NFT가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한다.<sup>231)</sup>

2019년 11월에 암호화폐 투자자인 윈클보스 형제가 이 플랫폼을 구매했다.<sup>232)</sup> 따라서 니프티게이트웨이는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감독 하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가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sup>233)</sup> 제미니는 고객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에테르, 라이트코인, Z캐시 등 3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저장하고,

---

227) SuperRare Terms of Service,

<https://www.notion.so/SuperRare-Terms-of-Service-075a82773af34aab99dde323f5aa044e>.  
(2022. 9. 19. 방문)

228) 아크인베스트, <https://ark-invest.com/podcast/ep104-nifty-gateway/>, (2022. 9. 19. 방문)

229) <https://beincrypto.com/learn/nifty-gateway-review/>, (2022. 9. 19. 방문)

230) 포춘, <https://fortune.com/nft-50/2021/duncan-griffin-cock-foster/>, (2022. 9. 19. 방문)

231) 인사이드, If the metaverse is the next big thing, then NFTs are the ground floor, says creator of Winklevoss-owned Nifty Gateway, 2021. 12. 26.

232) <https://www.crunchbase.com/acquisition/gemini-99b2-acquires-nifty-gateway--09f61a62>,  
(2022. 9. 19. 방문)

233) NFT EVENING,

<https://nftevening.com/nft-marketplace-nifty-gateway-what-it-is-and-why-you-should-care/>,  
(2022. 9. 19. 방문)

별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관리인이다.<sup>234)</sup> 제미니는 뉴욕주 금융서비스부와 뉴욕은행법이 정한 자본준비금 요건, 사이버보안 요건, 은행법 준수 기준을 따르는 뉴욕 신탁회사다. 제미니는 2014년 쌍둥이 형제 카메론과 타일러 윙클보스가 암호화폐를 통해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설립했다. 개인과 기관이 암호화폐를 사고 팔고 저장하는 것을 돕기 원하는 동기로 설립한 제미니는 암호자산을 의미하는 크립토(Crypto)가 개인에게 더 큰 선택과 독립성,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는다. 크립토를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일종의 움직임(Movement)이라 보는 것이다.<sup>235)</sup>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니프티게이트웨이는 NFT 아트 작품을 니프티스(Nifties)라고 지칭한다. 니프티게이트웨이는 니프티스인 디지털 미술품과 수집품을 쉽게 사고 팔고 저장할 수 있는 최초의 올인원 플랫폼이다. 설립 이념은 암호화폐 네트워크와 블록체인이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컬렉터들에게 더 큰 선택과 독립성, 기회를 만들어 예술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믿음에 기반한다.<sup>236)</sup> 슈퍼레이처럼 니프티게이트웨이도 고급 디지털 아트와 큐레이티드 컬렉션을 강조한다.

#### - 인력구성

니프티게이트웨이의 회사 규모는 직원 11명~50명 사이로 링크드인에 가입한 직원을 기준으로 하면 52명이며 실제 근무 인원은 62명이다.<sup>237)</sup> 미국, 인도, 영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근무 직종은 CEO, CTO, CPO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프로젝트 프로듀서, 마케터, 큐레이션 디렉터, 프로듀서, 소셜 미디어 매니저, 컬렉터 서비스 디렉터 등 다양하다.<sup>238)</sup> 니프티게이트웨이를 운영하는 제미니의 회사 규모는 직원 501명~1000명 사이로 링크드인에 가입한 직원을 기준으로 하면 942명이며,<sup>239)</sup> 미국에 677명이 거주하며, 이외에 인도, 영국, 싱가포르 등 다양한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

234) 제미니,

[https://www.gemini.com/jobs/senior-software-engineering-manager-nifty-gateway?gh\\_jid=4352625](https://www.gemini.com/jobs/senior-software-engineering-manager-nifty-gateway?gh_jid=4352625), (2022. 9. 19. 방문)

235) 제미니,

[https://www.gemini.com/jobs/senior-software-engineering-manager-nifty-gateway?gh\\_jid=4352625](https://www.gemini.com/jobs/senior-software-engineering-manager-nifty-gateway?gh_jid=4352625), (2022. 9. 19. 방문)

236) 제미니,

[https://www.gemini.com/jobs/senior-software-engineering-manager-nifty-gateway?gh\\_jid=4352625](https://www.gemini.com/jobs/senior-software-engineering-manager-nifty-gateway?gh_jid=4352625), (2022. 9. 19. 방문)

237) [https://growjo.com/company/Nifty\\_Gateway](https://growjo.com/company/Nifty_Gateway), (2022. 9. 19. 방문)

238) 링크드인, <https://www.linkedin.com/company/nifty-gateway/people/>, (2022. 9. 19. 방문)

239) 링크드인, <https://www.linkedin.com/company/geminitrust/people/>, (2022. 9. 19. 방문)

- 수익구조

니프티게이트웨이의 연간 예상 수익은 현재 연간 700만 달러이며, 직원 1인당 예상 수익은 113,100달러이다.<sup>240)</sup>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2차 판매를 포함하여 각 판매에서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수익을 올린다. NFT가 판매되면 플랫폼은 수수료와 세금에서 판매 가격의 5%를 가져간다. 2차 판매 시 판매가의 10%는 원작자인 NFT 아티스트에게 돌아간다.

## (2) 거래유형

- NFT 아트 토큰 발행 FLOW<sup>241)</sup>

MetaMask를 사용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NFT를 Nifty Gateway Omnibus Wallet에 업로드할 수 있다. 먼저 MetaMask 지갑을 사용하여 “Deposit Nifties“ 섹션으로 이동해야 해 입금 섹션에서 소유권 확인을 클릭한다. 이후 메타마스크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로그인한다. 외부 지갑 주소는 Nifty Gateway 계정 하나에 해당한다. 외부 지갑을 여러 Nifty Gateway 계정에 연결할 수 없다. 외부 지갑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Nifty Gateway 계정에 연결하면 지갑 주소에서 Nifty Gateway Omnibus 지갑으로 적격 NFT를 이전할 수 있다.

- 구매절차 및 방법<sup>242)</sup>

니프티게이트웨이에서 NFT 구매를 원한다면 먼저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가입/로그인' 버튼을 클릭하고 세부 정보를 입력한 후 사용자 이름을 생성한다. 계정에 자금을 지원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결제 옵션이 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이더리움으로 ETH 선결제 잔액을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하다. 로그인한 후 계정 섹션으로 이동하여 카드 또는 ETH를 연결한다. NFT가 다음의 4가지 방식 중 어떠한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첫째, 온라인 사일런트 옥션 (Online Silent Auction) - 수집가들은 블라인드 입찰을 하고 낙찰 여부를 지켜본다.

둘째, 추첨(Drawing) - 당첨자가 원하는 NFT를 가치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추첨(raffle) 또는 복권(lottery) 방식이다.

셋째, 오픈 에디션(Open Edition) - 짧은 시간(일반적으로 5~15분) 동안 무제한의 NFT를 구매할 수 있다. 이때, 수천 개가 판매되거나 한두 개만 판매될 수도 있다.

240) [https://growjo.com/company/Nifty\\_Gateway](https://growjo.com/company/Nifty_Gateway), (2022. 9. 19. 방문)

241) <https://beincrypto.com/learn/nifty-gateway-review/>, (2022. 9. 19. 방문)

242) <https://www.daytrading.com/nifty-gateway>, (2022. 9. 19. 방문)

넷째, 글로벌 오퍼(Global Offer) - 오퍼를 제출하면 모든 NFT 소유자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만약 NFT 아티스트가 제안받은 가격에 판매를 원한다면 오퍼를 받아들여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컬렉터는 카드 또는 계좌 잔액을 사용하여 NiftyGateway.com에서 NFT를 구매하는 경우 일종의 블록체인 사용 수수료인 가스피(Gas Fee)를 내지 않는다. NFT를 블록체인에 발행하는 민팅 시에도 가스피가 발생하나 이 비용은 니프티게이트웨이에서 100% 전액 지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컬렉터도 가스피를 내야 한다.<sup>243)</sup>

- 1) 선불 ETH 출금 시
- 2) Google 페이, Apple 페이, 링크 및 지금 구매 후 나중에 결제 방법을 통해 NFT를 먼저 인출할 경우
- 3) 선불 ETH가 포함된 NFT 구매 시
- 4) 니프티게이트웨이 계정 지갑에 NFT를 입금할 경우

- 거래상의 위험제어 장치

니프티게이트웨이의 NFT는 거래소 제미니의 최첨단 보관 기술로 구동되는 안전한 지갑에 저장된다. 컬렉터들은 가스 요금(Gas Fee) 지불이라는 번거로움 없이 구매, 판매, 선물 기능이 가능한 NFT 플랫폼으로 구매 작품을 이동할 수 있다.<sup>244)</sup> 계정 비밀번호 분실 시에도 니프티게이트웨이 플랫폼 측에서 이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플랫폼에 저장된 NFT는 ‘콜드 스토리지’로 알려진 안전한 오프라인 시스템에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제미니의 보관용 제품을 사용한다. 니프티 게이트웨이는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를 처리할 필요 없이 플랫폼 주변에서 NFT를 이동하기 위해 ‘오른버스 지갑’, 즉 마스터 보유 계좌를 사용한다. 이 옵션은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모든 거래에 필요한 NFT의 이전을 포함한 가스 수수료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옵션 기능으로 인해 사용자가 계정이나 암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할 경우 니프티게이트웨이가 개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 (3) 주요거래작품유형

- 주요거래작가군<sup>245)</sup>

2021년 4월, 니프티게이트웨이는 소더비와 협력하여 디지털 아티스트 팩(PAK)의

---

243) 니프티게이트웨이.

<https://help.niftygateway.com/hc/en-us/articles/4406921319699-When-do-don-t-I-pay-gas-fees-on-Nifty-Gateway->, (2022. 9. 19. 방문)

244) 니프티게이트웨이, <https://www.niftygateway.com/about>, (2022. 9. 19. 방문)

245) nftstreet, How Does Nifty Gateway Make Money?, 2021. 3. 27.



NFT 작품을 선보였고, 1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니프티게이트웨이는 100명의 전속 아티스트와 함께 2,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성장했다. 2020년 12월에 비플은 니프티 게이트웨이에 35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20개의 작품 ‘The Complete MF Collection’ 을 경매에 부쳤고, 총 777,777달러에 판매했다. 2021년 3월 스티브 아오키(Steve Aoki)의 NFT 작품 ‘Haury’ 가 88만8888.88달러에 판매되었다. 이 작품은 스티브 아오키의 음악 스타일을 대표하는 애니메이션과 혼합된 짧은 클립 형태의 영상이다.

- 작가발굴<sup>246)</sup>

니프티게이트웨이에서 아티스트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온라인으로 지원해 인터뷰 뿐만 아니라 8부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니프티게이트웨이는 설립 이후 Nifty Gateway Curated Drops 일정을 통해 큐레이터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를 통해 400명 이상의 아티스트들이 니프티게이트웨이에서 5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다. 이러한 Nifty Gateway Curated Drops 시스템은 이전과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다. 니프티게이트웨이는 현재 NFT 공간에 큐레이터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도구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았는데, 기존의 NFT 플랫폼은 주로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NFT를 수집가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에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2022년 9월 니프티게이트웨이는 NFT 큐레이션을 위한 Nifty Gateway Publishers라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더 많은 큐레이터들에게 플랫폼을 개방함으로써 NFT를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큐레이터와 아티스트의 수가 크게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 (4) 법률쟁점

오픈씨 등 다른 플랫폼과 비교하여 특기할 사항이 없음

---

246) 니프티게이트웨이 미디어.

<https://medium.com/nifty-gateway/introducing-nifty-gateway-publishers-e6576710a234>,

(2022. 9. 19. 방문)

## 바) 매직에덴(Magic Eden)

### (1) 회사개요

#### - 설립개요

2021년 9월 설립한 매직에덴은 솔라나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반의 NFT 마켓플레이스다. 사용자는 디지털 수집품 및 게임 자산을 포함하여 NFT를 생성, 구매, 판매 및 거래할 수 있다.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매직 에덴은 2021년 10월1일 시드 라운드에서 250만달러(약 34억8825만원)를 유치했고, 2022년 3월 14일 시리즈A 투자 라운드에선 2700만달러(약 376억7310만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sup>247)</sup> 또한 2022년 6월 21일 시리즈 B 라운드 편당에서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투자 유치를 통해 16억 달러(약 2조원)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크립토 유니콘’ (Crypto unicorn ·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암호자산 스타트업)이 되었다.<sup>248)</sup>

#### - 인력구성

매직에덴은 CTO Sidney Zhang, CEO Jack Lu, COO Zhuoxun Yin 및 수석 엔지니어 Zhuojie Zhou가 설립했다. 이들 4명의 공동 창업자는 암호화폐, DeFi, 소비자 인터넷 기업, 경영컨설팅 관련 분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Uber, Facebook, Google, FTX 및 Coinbase와 같은 빅테크 및 대기업과 협력한 바 있다.<sup>249)</sup> 매직에덴의 회사 규모는 직원 51명~200명 사이로 링크드인에 가입한 직원을 기준으로 하면 122명이며 대면재택혼합이 가능하다. 미국 거주 근무자가 가장 많으며 호주, 캐나다, 홍콩, 영국, 브라질 등 다양한 나라에 거주지를 둔 직원들이 분포되어 있다.

#### - 수익구조

솔라나 NFT시장은 현재 매직에덴이 독점하고 있다. 2022년 5월 25일 기준 매직에덴의 시장 점유율은 96% 수준이다.<sup>250)</sup> 데이터에 따르면, 매직에덴은 NFT 거래량 15억7000만달러(약 2조608억원)로 솔라나 기반 최대 NFT 거래소다.<sup>251)</sup> 이더리움 기반 NFT 거래량 1위를 차지하는 거래소는 오픈씨다. 솔라나에서 NFT가 판매되면 플랫

247) 머니투데이, 오픈씨 위협하는 '매직에덴'..솔라나 NFT거래로 기업가치 2조원 평가, 2022. 6. 24.

248) NFT TREND REVIEW, 매직에덴(Magic Eden) NFT 마켓 플레이스에 대한 거의 모든 것 | 초보 가이드, 2022. 6. 23.

249) 링크드인,

<https://www.linkedin.com/company/magic-eden/life/a83f31e0-5cb1-4e41-ae76-57089ca89968/>, (2022. 9. 19. 방문)

250) 쟁글, <https://xangle.io/insight/research/6295c1b335baa996641ef564>, (2022. 9. 19. 방문)

251) 코인데스크코리아, 솔라나 NFT 거래소 매직에덴, 이더리움으로 확장, (2022. 9. 19. 방문)

품은 판매 가격의 2%를 가져간다. 아티스트가 NFT를 발행할 때 지불해야 하는 별도의 수수료도 없다. 매직에덴은 런치패드(Launchpad) 기능을 플랫폼 내에 보유하고 있다. 이 기능은 NFT 발행 지원, 플랫폼에서의 자동 배포 및 마케팅 지원을 제공한다.

## (2) 거래유형

### - NFT 아트 토큰 발행 FLOW<sup>252)</sup>

첫 번째 방법은 매직에덴 런치패드 사이트에 접속해 디지털자산 지갑을 연결하고 공공 민트 또는 사전 판매 민트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린다. 두 번째 방법은 NFT 컬렉션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NFT를 발행하는 것이다. 매직에덴은 런치패드에서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크리에이터를 선별한다. 런치패드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몇 주 이내에 회신이 없다면, 이는 우리가 신청을 거절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직에덴은 많은 지원자들로 인해 일일이 그러한 지원자들에 응답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했다. 재신청을 원할 경우 보충 자료(프로젝트 업데이트, 컬렉션 및 커뮤니티에 대한 자세한 정보 등)를 작성해 최대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능하다. 재신청자의 경우 첫 번째 필드 “프로젝트 이름”을 [RE-APPLY]로 입력하고 프로젝트 이름(예: “[RE-APPLY] 바나나”)을 입력하면 된다.<sup>253)</sup>

### - 구매절차 및 방법<sup>254)</sup>

매직에덴에 연결하여 사용하려면 팬텀(Phantom)과 같은 솔라나 지갑에 솔라나의 기축통화인 솔(SOL)이 있어야 한다. 또는 메타마스크와 같은 이더리움 지갑에 이더(ETH)가 있어야 한다. 일부 NFT 컬렉션의 경우 크로스민트를 통해 법정화폐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sup>255)</sup> 솔라나 지갑을 연결해 솔라나 NFT를 구매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팬텀(Phantom), 솔플레어(Solflare) 또는 솔렛(Sollet)과 같은 솔라나 지갑이 필요하다.
2. 솔라나(\$SOL) 거래가 지원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필요한 만큼의 \$SOL을 구

---

252) <https://beincrypto.com/learn/nifty-gateway-review/>, (2022. 9. 19. 방문)

253) 매직에덴,

<https://help.magiceden.io/en/articles/5858610-how-could-i-apply-to-launch-on-me-launchpad>, (2022. 9. 19. 방문)

254) NFT TREND REVIEW, 매직에덴(Magic Eden) NFT 마켓 플레이스에 대한 거의 모든 것 | 초보 가이드, 2022. 6. 23.

255) 매직에덴,

<https://help.magiceden.io/en/articles/6483913-what-currencies-can-i-use-on-magic-eden>, (2022. 9. 19. 방문)

매한다. 바이낸스(Binance), 코인베이스(Coinbase) 및 FTX에서 \$SOL 거래를 지원한다. 그 후 \$SOL을 지갑으로 보낸다.

3. 지갑에 충분한 \$SOL이 준비되면, 매직에텐에 지갑을 연결한다. 웹사이트 우측 상단의 'Select Wallet(지갑 선택)'을 클릭하고 지시에 따라 지갑을 연결하면 된다.

4. 구매를 원하는 NFT 컬렉션을 탐색하며 찾는다. NFT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새 컬렉션, 인기 컬렉션, 드롭 캘린더 및 경매의 네 가지 기본 섹션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최신 NFT 컬렉션을 제공하는 반면 두 번째는 인기 컬렉션을 보여준다. 인기 컬렉션 섹션에서 24시간, 7일 또는 30일 거래량을 기준으로 컬렉션을 필터링할 수 있다.

5. “Buy Now(지금 구매)” 를 클릭하여 원하는 NFT를 구매한다.

#### - 거래상의 위험제어 장치<sup>256)</sup>

디지털 지갑의 시드 문구와 개인 키는 비밀로 해야 한다. 매직에텐은 홈페이지에서 NFT는 매우 재미있지만 가치가 변동할 수 있고 변동성이 매우 큰 자산 등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NFT에 투자하기 전에 자체 조사( do your own research (DYOR)를 하기를 권하고 있다. 또한 Launchpad를 이용하지 않고 매직에텐 플랫폼에서 NFT를 발행할 때 버너지갑(Burner Wallet)을 사용하면 지갑 연결 시 자금을 훔치려는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를 제한할 수 있다. 버너 지갑은 주사 지갑(Main Wallet)과 달리 소량의 자산만 넣어 운용하는 일회성 지갑이라 볼 수 있다. 버너지갑은 주사용지갑과 시드구문까지 다른 별도 분리 지갑으로 NFT 민팅 전용 임시 지갑이며, 필요 시 지갑을 소각 및 제거할 수 있다. 한편 공식 링크인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이트의 URL을 항상 확인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이트를 북마크해둔다. 피싱 웹 사이트는 실제 웹 사이트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 정보를 훔치려는 동일한 가짜 사이트이다. 나아가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하드웨어 지갑을 구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드웨어 지갑은 개인 키를 보호하고 솔라나 블록체인에 서명하고 거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 (3) 주요거래작품유형

#### - 주요거래작가군<sup>257)</sup>

##### ① DeGods (디갯)

디갯은 이더리움 NFT 트레이더였던 Frank DeGod가 2021년 10월에 내놓은 솔라

256) <https://contenthub.magiceden.io/playbook>, (2022. 9. 19. 방문)

257) 쟁글, <https://xangle.io/insight/research/6295c1b335baa996641ef564>, (2022. 9. 19. 방문)

나 기반 PFP프로젝트이다. 2022년 9월 온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난센(Nansen)이 제공한 NFT 트렌드에 따르면, 7일 기준 솔라나 기반 NFT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NFT는 디갓 478번 작품으로, 632 SOL(8일 업비트 기준 약 2844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거래는 솔라나 기반 NFT 거래소 매직에덴에서 이뤄졌다. 두 번째로 비싼 NFT도 디갓 작품으로, 가격이 614 SOL(약 2763만원)로 책정됐다.<sup>258)</sup> 디갓 NFT 소유자가 NFT를 스테이킹하면 DUST 토큰을 보상으로 받는다. 하루에 10 \$DUST를 배당 받을 수 있다. 일정 수량의 DUST 토큰을 보유한 이용자는 디갓을 소각(burn)해서 데드 갓(Dead Gods) NFT로 변환할 수 있다. 데드 갓 NFT 스테이킹 시 그 보상은 기존 디갓의 3배에 달한다. 이외에 \$DUST이 지니고 있는 사용처로서의 유틸리티는 디갓 굿즈 구매, 디갓 메타버스 두 번째 컬렉션인 두피(Duppie) 래플 참여, 개발 중인 게임 내 사용 등이 있다.

## ② 웨이드 프렌즈 앤 패밀리

2022년 9월 IPX(옛 라인프렌즈)가 자사 버추얼 휴먼 ‘웨이드’를 기반으로 한 멤버십형 NFT를 선보였다.<sup>259)</sup> 웨이드는 남극을 탐험하던 한 부부가 빙하 속에서 발견한 물로 이뤄진 돌연변이 생명체이다. DJ, 프로듀서, 인플루언서로 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웨이드 프렌즈 앤 패밀리 NFT 보유자는 IPX가 곧 출시할 캐릭터 IP ‘오오즈 앤 메이츠’와 연계된 상품도 받아볼 수 있다. IPX는 2021년 6월 싱가포르 소재 블록체인 기업 크립코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웨이드 프렌즈 앤 패밀리 NFT 판매를 준비해왔다. 크립코는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FTX에서 자사 ‘IP3’ 토큰을 발행한 바 있다.

### - 작가발굴

매직에덴은 2022년 9월 21일 이더리움 애그리게이터 매직이든(Magic Eden)을 출시한다고 밝혔다.<sup>260)</sup> 애그리게이터는 유망 중소브랜드를 인수해 지원하고 육성하며 가치를 높이는 투자 기업을 말한다. 매직이든이 지원하는 NFT는 싸이키델릭 어나니머스, 프로버블리 낫씽, 퍼지 펙귄 등 10종류의 NFT 컬렉션이다. 매직이든 애그리게이터를 통해 이용자는 이더리움, 솔라나, 유로화를 통해 NFT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sup>261)</sup> 2022년 8월 매직에덴은 이더리움 기반의 NFT를 매직에덴에 통합하면서 멀티 체인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sup>262)</sup> 매직에덴은 기존 솔라나 NFT 창작자에게 제공했던 민팅 소프트웨어 도

258) 코인데스크코리아, 솔라나 NFT 대세로 부상한 '디갓'...최고가 2844만원에 팔려, 2022. 9. 8.

259) 조선비즈, IPX, 혜택 담은 ‘멤버십 NFT’ 출시… 자사 버추얼 휴먼 활용, 2022. 8.10.

260) 매직에덴 트위터.

<https://twitter.com/MagicEden/status/1572269456088244224?s=20&t=yUyw7SMtFETOSntNmauk0A>, (2022. 9. 19. 방문)

261) 토큰포스트, 매직에덴, 이더리움 애그리게이터 ‘매직이든’ 출시, 2022. 9. 21.

262) 코인데스크, NFT Exchange Magic Eden Expands to Ethereum, 2022. 9. 20.

구 세트와 화이트리스트(우선권) 도구를 비롯한 혜택을 이더리움 NFT 제작자에도 동일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이더(ETH)로 솔라나 NFT를 구매하고 솔(SOL)로 이더리움 NFT를 구매하는 ‘교차 통화 거래 상품(cross-currency trading product)’도 준비 중이다.

#### (4) 법률쟁점

오픈씨 등 다른 플랫폼과 비교하여 특기할 사항이 없음

#### 사) 소결

-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개요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의 개요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조사 대상이 된 주요 6개 업체 중 4개 업체는 2017-18년에 설립되었고, 2개 업체는 2021년 이후 설립되었다. 모두 거래수수료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업무제휴를 통해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7>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개요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오픈씨 (OpenSea)	파운데이션 (Foundation)	노운 오리진 (KnownOrigin)	슈퍼레이어 (SuperRare)	니프터게이트웨이 (NiftyGateway)	매직에덴 (MagicEden)
사업 기간	설립시기	2017년 12월	2021년 2월	2018년	2018년 4월	2018년	2021년 9월
	폐업시기	-	-	-		-	-
직원수		200명이상	51-200명	11-50명	51-200명	11-50명	51-200명
회사 수익 구조	거래수수료	○	○	○	○	○	○
	아트상품 판매	×	×	×	○	×	×
홍보 /업 무제 휴	컨퍼런스	○	○	○	×	×	×
	전시공간	×	×	×	×	×	○
	업무제휴	○	○	○	○	○	○

-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운용 방식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 운용 방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NFT 아트 거래를 위한 1차 마켓인 드롭스와 세컨더리(2차) 마켓인 플레이스 마켓을 모두 운영하고 있으며, 입찰거래 수수료는 2.5%-15% 내외이다. 5년 이상 NFT 아트 거래사업을 지속해온 업체일수록, 해킹위험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킹 방지를 위한 보완 시스템을 정비해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18>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사업운용 방식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오픈씨 (OpenSea)	파운데이션 (Foundation)	노운 오리진 (KnownOrigin)	슈퍼레어 (SuperRare)	니프티게이트웨이 (NiftyGateway)	매직에덴 (MagicEden)
사업 방식	거래 서비스	○	○	○	○	○	○
사업 운용 범위	1차 마켓 (Drops)	○	○	○	○	○	○
	2차 마켓 (Maketplace)	○	○	○	○	○	○
Drops 입찰 거래 수수료율		2.5%	15%	2.5%	15%	5%	×
Maketplace 거래 수수료율		2.5%	5%	2.5%	3%	5%	2%
거래후 7일 이후 환불(청약철회규정) 여부		×	×	×	×	×	×
고객대응 서비스 유무		○	○	○	×	×	×
해킹방어 시스템 유무		○	×	×	-	-	-

-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결제 방식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결제 방식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6개 업체 모두 암호화폐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현금(계좌이체)도 가능한 업체는 1개소이다. 암호화폐 플랫폼은 이더(EHTE)와 솔(SOL)이 가장 많이 이용되며 오픈씨는 그 외에도 매틱(MATIC), 클레이(KLAY)까지 사용가능하다.

<표 III-19>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결제 방식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오픈씨 (OpenSea)	파운데이션 (Foundation)	노운 오리진 (KnownOrigin)	슈퍼레어 (SuperRare)	니프티게이트웨이 (NiftyGateway)	매직에덴 (MagicEden)
거래 결제 방식	암호화폐	○	○	○	○	○	○
	현금 (계좌이체)	×	×	×	×	○	○
	신용카드	○	○	○	×	○	×
	휴대폰 소액결제	×	×	×	×	×	×
암호화폐 플랫폼	Drops	이더(ETHE) 매틱(MATIC) 클레이(KLAY) 솔(SOL)	이더(ETHE)	이더(ETHE)	이더(ETHE)	이더(ETHE)	이더(ETHE) 솔(SOL)
	Marketpalce	이더(ETHE) 매틱(MATIC) 클레이(KLAY) 솔(SOL)	이더(ETHE)	이더(ETHE)	이더(ETHE)	이더(ETHE)	이더(ETHE) 솔(SOL)

-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작품운용방식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작품운용 방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NFT발행에 있어서 국내 업체와 같이 갤러리와 같은 미술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하는 업체 보다는 작가나 크리에이터(디지털기술자)가 직접 발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의외로 일반인의 NFT 발행에 제한을 두고 전문창작자가 주로 발행하는 업체가 존재하며, 주요 NFT 아트 장르는 예술작품에 한정되지 않고 땅(LAND), 도메인, 음악, 유틸리티, 모션그래픽, 게임아이템 등으로 포괄적인 창작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0>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작품운용방식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오픈씨 (OpenSea)	파운데이션 (Foundation)	노운 오리진 (KnownOrigin)	슈퍼레어 (SuperRare)	니프티게이트웨이 (NiftyGateway)	매직에덴 (MagicEden)
NFT 발행자 대상	갤러리 (미술전문 업체)	○	×	×	-	-	-
	작가(크리 에이터 포함)	○	○	○	○	○	○
	일반인	○	×	×	-	×	×
거래 장르		땅(Land), 음악, 도메인 네임, 트레이딩 카드, 컬렉터블, 게임 아이템	사진, 영상, 모션그래픽 등	이미지, 비디오, 3D 모델, 360도 이미지	디지털아트	컬렉터블, 음악, 애니메이션 등	싸이키델릭 어나니머스, 프로버블리 닷넷, 퍼지 펑귄 등



-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법·세제 관련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시 법·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업체들과 달리 해외 NFT 아트 거래 업체들은 저작권에 대한 위임 계약이 크게 우선시되지 않는다. 대신 해외 NFT 아트 거래 업체들은 추급권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 항목이다. 세제와 관련하여 증여세, 부가세, 법인세 보다 양도세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1> 해외 업체별 NFT 아트 거래 법·세제 관련 비교분석표

구분	세부사항					
	오픈씨 (OpenSea)	파운데이션 (Foundation)	노운 오리진 (KnownOrigin)	슈퍼레어 (SuperRare)	니프터게이트웨이 (NiftyGateway)	매직에덴 (MagicEden)
저작권 책임 유무	×	×	×	×	×	×
추급권 유사 발생 여부	○	○	○	○	○	○
실명거래 인증 여부	×	×	×	×	×	×
특금법상에서 규정장치 여부	-	-	-	-	-	-
증여세 발생 여부	×	-	-	-	-	-
부가세 발생 여부	×	-	-	-	-	-
법인세 발생 여부	×	-	-	-	-	-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	○	○	○	-	-

라. 미술계 인식 조사

NFT 아트에 대한 미술계의 인식조사는 정책, 법률적 대응을 하기에 앞서, 어느 정도로 NFT 아트에 대해 미술계에서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의 영향력에 대해 고려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22년 9월 초에 미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으로는 작가(8), NFT 아트 디렉터(3), 갤러리 큐레이터(2), 미술관 변호사(1) 및 학예사(3), 미술이론가(1), 전시기획자(1), 옥션(3), 저널리스트(1) 총 미술계 23인으로 구성하였다.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진

행한 미술계에서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설문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III-22> NFT 아트에 대한 미술계의 인식조사 분석

구분	계	작가	NFT 아트 종사자	미술시장 종사자								
				갤러 리	미술 관	미술 이론 가	옥션	저널 리스 트	전시 기획 자	소계		
NFT 아트의 정의와 범위	주요의 견	(작가) 디지털, 가상공간, 온라인이라는 어떤 존재적 성격이 기존의 예술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NFT 아트종사자) 미디어아트, 디지털 포맷, 다양한 매체들이 새로운 매체의 플랫폼으로 '미술품 거래 방식'의 확장으로 이해하고 있음 (미술시장종사자) NFT 아트의 거래에 대해 단독적인 예술장르로 보기보다는 기존 예술의 확장된 형태의 거래로 바라보고 있음										
NFT 아트 거래가 새로운 미술품 거래방식에 미치는 영향	긍정	18 (82%)	5 (62.5%)	3 (100%)	2	2	1	3	1	1	10 (91%)	
	부정	2 (9%)	1 (12.5%)	0 (0%)	0	1	0	0	0	0	1 (9%)	
	유보	2 (9%)	2 (25%)	0 (0%)	0	0	0	0	0	0	0 (0%)	
	주요의 견	(작가) 기존 미술 시장에서의 매매는 일부 미술애호가들의 향유물로 여겨지는 방식이 아닌, 투자대상으로서의 미술을 바라본다는 점 (NFT 아트종사자) NFT 아트가 초래할 새로운 미술품 거래방식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임 (미술시장종사자) 미술시장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새로움 그리고 화제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반응										
NFT 아트 거래 사업의 특징	주요의 견	(작가) 작가들은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과 편이성이 높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보고 있지만,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술시장의 확장성임을 알 수 있었음 (NFT 아트종사자) 단순한 미술시장을 넘어서 새로운 확장으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 (미술시장종사자) 미술시장의 확장성, 진본성의 입증,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 등을 장점으로 여김										
NFT 아트 거래 사업이 국내 미술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주요의 견	(작가) NFT 아트 거래사업이 국내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각예술의 대중화를 통한 미술시장의 활성화 (NFT 아트종사자) 새로운 미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장르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NFT 아트가 국내 미술시장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고 있음 (미술시장종사자) 미술시장의 활성화에 NFT 아트 거래 사업이 국내 미술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										
블록체인 기술(NFT 아트 거래 사업 포함)이 미술품 거래에 온/오프라인에 끼치는 영향	긍정	14 (70%)	4 (50%)	2 (66.7%)	1	3	1	2	1	0	8 (66.6%)	
	부정	4 (20%)	1 (12.5%)	1 (33.3%)	0	0	0	1	0	1	2 (16.7%)	
	유보	2 (10%)	3 (37.5%)	0 (0%)	1	1	0	0	0	0	2 (16.7%)	
	주요의 견	(작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의 의견이 거의 동률 (NFT 아트종사자) 미술품의 거래의 온/오프라인 매매에 긍정적 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이 66.7%, 부정적 의견이 33.3%로 조사됨 (미술시장종사자) 미술품의 거래의 온/오프라인 매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이 66.6%,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의견이 33.4%로 조사됨										
NFT 아트 거래 사업이 열기를 띠고 있는 이유	주요의 견	(작가) 새로운 영역에 대한 흥미보다는 오히려 투자와 미술시장이 과열된 결과로 바라보고 있음 (NFT 아트종사자) 현재 미술거래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음 (미술시장종사자) 투자적인 목적으로 NFT 아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국내 NFT 아트 거래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임										

NFT 아트 거래가 해외 구매자를 확장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	긍정	18 (82%)	6 (75%)	3 (100%)	2	3	1	2	1	0	9 (82%)	
	부정	2 (9%)	1 (12.5%)	0 (0%)	0	0	0	1	0	0	1 (9%)	
	유보	2 (9%)	1 (12.5%)	0 (0%)	0	0	0	0	0	1	1 (9%)	
	주요의견	(작가) 온라인상에서의 거래란 것이 가지는 장점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았음 (NFT 아트종사자) 해외구매자를 확장시키는 NFT 아트 거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에 모두 긍정적 (미술시장종사자) 저가의 미술작품의 거래를 통해 구매자들이 유입되어 미술시장 자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										
국내 NFT 아트 거래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 및 변화	주요의견	(작가) NFT 아트 단독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미술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물판매와 NFT 판매가 병행되는 방식에 관심을 보임 (NFT 아트종사자) 실물판매와 NFT 아트 판매의 병행방안을 모색하고 변화의 방향을 맞추어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미술시장종사자) 실물시장과 NFT 아트 거래 시장을 조금은 다른 장르, 다른 시장으로 보고 모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의견										
현행 NFT 아트 거래 사업이 미술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대처 방법	주요의견	(작가) 아트로서의 가치나 미술비평적인 평가보다는 투기의 목적을 띤,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것들까지 NFT 아트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있어 예술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 (NFT 아트종사자) 전반적으로는 NFT 아트가 미술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자체보다는 미술 시장을 활성화하고, 작가층, 구매자층을 모두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미술시장종사자) 실물판매에 NFT 블록체인이 도입이나 암호화폐로 가상거래소에서 직거래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안전장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어 범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함										
NFT 아트가 확장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제도적 방향	주요의견	(작가) NFT 아트에 대한 개념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 (NFT 아트종사자) NFT 아트를 보다 더 잘 향유할 수 있는 고해상도 콘텐츠 송출과 같은 기술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에 대한 의견 (미술시장종사자) NFT 아트가 자리를 잡아가면 갈수록 미술시장에서 그것의 위치는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금융거래, 세금은 물론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기술 등에 대한 법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1) NFT 아트의 정의와 범위

NFT 아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아직 하나의 확정된 정의가 내려지기 이전이지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정의로 NFT 아트에 대한 실체가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설문 문항을 통해 작가, NFT 아트 종사자, 미술시장 종사자가 인지하고 있는 NFT 아트의 정의와 거래방식의 차별성, 그리고 그에 따른 부가적인 의견들을 살펴본다.

### ① 작가 의견

작가들은 NFT 아트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디지털’ 작품 혹은 이미지라는 존재적 특성과 그것의 복수성/원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두고 NFT 아트에 대한 정의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디지털, 가상공간, 온라인이라는 어떤 존재적 성격이 기존의 예술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NFT 아트가 새로운 시장, 기회의 확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

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표 III-23> NFT 아트의 정의와 범위\_작가 의견

구 분	내 용
온라인상, 가상공간에서 구현된 디지털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작품의 원본개념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디지털 원본이 지니는 가치에 따라 범위 확장이 된다.(B작가)</li> <li>- 회화나 조각처럼 물리적이 아닌 디지털이미지 형태로 블록체인에 존재하는 것이다.(D작가)</li> <li>- 디지털 이미지로 만들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범위는 한정 지을수 없을 것 같다.(E작가)</li> <li>- 가상화폐처럼 가상에서 소유하는 예술 작품이며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애그 범위는 거의 무제한적이다.(F작가)</li> <li>- 대체불가능한 토큰, 블록체인, 디지털 아트이다.(G작가)</li> <li>- 디지털, 블록체인 등을 특정 방식을 통해 가상공간에서 작품이 제작되고 판매되는 예술형식, 예술적 가치가 있고 온라인, 가상공간에서 구현될 수 있다면 범위의 제한은 없다.(H작가)</li> </ul>
기존 미술뿐만 아니라 다른 창작물, 미술품 거래 방식, 상품	없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미래예술분야의 하나로서 인간 주변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A작가)</li> <li>- 온라인 상의 이미지 저작권 및 소유권을 분할하여 판매할 수 있는 형태의 미술. 범위는 잘 모르겠다.(C작가)</li> </ul>

## ② NFT 아트 종사자 의견

NFT 아트 종사자들은 NFT 아트의 범주를 매체적 측면으로의 정의로 이해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미디어아트, 디지털 포맷, 다양한 매체들이 새로운 매체의 플랫폼으로 ‘미술품 거래 방식’의 확장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학적인, 존재론적인 정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매체와 장르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NFT 아트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4> NFT 아트의 정의와 범위\_NFT 아트 종사자 의견

구 분	내 용
온라인상, 가상공간에서 구현된 디지털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FT는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보장되는 디지털 작품이다. 범위는 모든 디지털 포맷 종류이다.(NFT 아트사 사원)</li> <li>- 미디어의 모든 아트가 NFT 아트의 범위이다. 나아가 모든 이미지 파일도 NFT에 속한다.(NFT 아트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li> <li>- 블록체인의 디지털자산으로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불가능 토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그 범위라고 한다면, 모든 디지털 창작물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아트라는 이름으로 뒤엎혀 거래되고있기에 아트의 경계가 확장되고있다는 혼란에 빠진다 하지만 이 확장은 창작자의 원본에 있지 그 창작물이추구하는 형식에 있지는 않다.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일반화,대중화 될수록 기술자체 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는 메시지와자 개념이 중요하다. 사진, 음악, 카드뉴스, 무빙이미지등 다양한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회소성있는 디지털 아트라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NFT 아트사 NFT디지털아트팀장)</li> </ul>
기존 미술뿐만 아니라 다른 창작물, 미술품 거래 방식, 상품	없음
기타	없음

### ③ 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미술시장 종사자들은 NFT 아트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선 작가, NFT 아트 종사자들과의 차이점을 보였다. 가상공간에서 이뤄지는 예술이라는 컨셉부터, 인터넷을 사용하는 혹은 AI 미술 전반을 아우르는 등의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현재 통용되는 NFT 아트의 확장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들은 거래와 관련하여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는데, 아직까지는 NFT 아트의 거래에 대해 단독적인 예술장르로 보기보다는 기존 예술의 확장된 형태의 거래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NFT 아트의 예술성, 그 예술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음도 살펴볼 수 있었다.

<표 III -25> NFT 아트의 정의와 범위\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구 분	내 용
온라인상, 가상공간에서 구현된 디지털아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본성이 입증될 수 있는, 복제불가능한 디지털 아트로,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A갤러리 큐레이터)</li> <li>- NFT 아트는 가상공간예술작품이다. 아직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말할 수 없다.(B갤러리 큐레이터)</li> <li>- NFT 아트는 비물질성을 가진 디지털 아트피스에 원본성을 부여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것이고, NFT를 통해 기존의 형식적 한계를 넘어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범위는 열려있다.(시립미술관 후원회 실장)</li> <li>- 인터넷 혹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예술작품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로 인지된다. NET 아트는 온라인 매체를 작품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작품을 알리거나 판매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괄적인 개념의 미술이다.(미술이론가)</li> <li>- 암호화 화폐를 이용한 신기술, 가상거래에 대한 AI미술을 포함한 전반적인 모든 미술이다.(옥션사 직원)</li> <li>- 블록체인을 이용해 디지털화한 예술작품을 NFT 아트로 알고 있다. 복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이용했기에 디지털 아트의 원본성을 증명할 수 있다. 범위 또한 이러한 '원본성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아트' 까지로 생각할 수 있다.(미술 저널리스트)</li> </ul>
기존 미술뿐만 아니라 다른 창작물, 미술품 거래 방식,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직까지 아트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작품이라기 보다는 아트 상품에 가까운 성격으로 보인다.(국립미술관 학예사)</li> <li>- NFT 아트가 기존 미술과 별개라기보다는 미술작품 거래 방식의 변화라고 본다.(미술관 변호사)</li> <li>-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창작물을 일컬으며, 기존 미술분야에서 사용되던 양식구분이 아닌 음악 미술 영상 등을 포괄한 모든 창작물이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옥션사 이사)</li> <li>- 가상공간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종류의 암호화폐이고 그 화폐를 통해 온/오프라인 작품과 보증서를 구매하는 상업행위이다.(옥션사 관리팀장)</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대체 불가능한 아트, 범위는 말 그대로 대체불가능하며 플랫폼 통해 거래되면서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모호하므로 작가로서 현재 미술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이다. 범위에 대해서는 작가 입장에서는 물론, 시장과 수요자 입장에서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시립미술관 학예사)</li> </ul>

### 2) NFT 아트 거래가 새로운 미술품 거래방식에 미치는 영향

NFT 아트 거래는 지금까지 미술시장이 통상적으로 해온 미술품 거래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띤다. 우선 더 이상 갤러리 없이도 작가와 구매자의 직거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저작권, 추급권이 보완된 새로운 형태의 거래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작가, NFT 아트 종사자, 그리고 미술시장 종사자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 ① 작가 의견

작가들은 NFT 아트의 새로운 매매방식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기존 미술 시장에서의 매매는 일부 미술애호가들의 향유물로 여겨지는 방식이 아닌, 투자대상으로서의 미술을 바라본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여전히 NFT 아트 시장의 침체, 암호화폐의 존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런 우려보다는 여전히 하나의 매매방식으로 자리잡을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또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구매자층이 등장할 수 있다는 점, 새로운 미술 애호가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6> NFT 아트 거래가 새로운 미술품 거래방식에 미치는 영향\_작가 의견

구 분	내 용
긍정적 (6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계에서 <b>NFT미술 거래를 새로운 매매방식</b>으로 주목할 만한 여지가 있다.(A작가)</li> <li>- <b>디지털 이미지(파일)가 원본의 개념으로 가치가</b> 있으면 새로운 미술품의 형식(NFT)과 매매방식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B작가)</li> <li>- 주목할 여지가 있다. 적어도 미술을 자기만족, 향유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달리, 투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NFT에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입한다. 작가는 구매자들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최근 많은 구매자들이 <b>투자목적으로 미술품을 구매하니 NFT는 충분히 주목할</b> 여지가 있다.(D작가)</li> <li>- 시장 논리에 따라선 있다. 트렌드로 지나가고 결국 <b>하나의 미술 거래 방식 정도로 안정화될</b> 것이다.(G작가)</li> <li>- 가상공간이 현실세계 못지않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b>주목할 가치</b>가 있다.(H작가)</li> </ul>
부정적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으로 지금은 그 시장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 생각하고, 지금은 거품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것이 <b>코인의 하락,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지켜</b>봐야 한다.(E작가)</li> </ul>
유보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품의 매매 가치를 높이고 시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진다. 매체에서 투자를 이끌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해서 노출시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목을 끌게 만들고 있고,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C작가)</li> <li>- 새로운 기술이자 이전에 없던 거래 방식이어서 흥미롭고 신기하며 대중의 이목을 끈다. 이에 대한 혁신성이나 실제 사용성에 대해서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li> <li>- 주변 미술가들(대개30대후반~40대)은 NFT를 통해 작품을 거래한 경우가 없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도 낮다. 미디어에 노출된 NFT작품들을 보면, 대중적 선호도가 높은 팝아트나 유명 작가의 작품이다. 20-30대 젊은 작가들은 흥미롭게 느끼는 것 같고 연령, 장르, 그리고 무엇보다 창작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NFT에 관심을 보이는 차이는 크다고 본다.(F작가)</li> </ul>

## ② NFT 아트 종사자 의견

NFT 아트 종사자들은 NFT 아트가 초래할 새로운 미술품 거래방식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현재 NFT 아트 시장이 침체기이고 어떤 새로운 이슈를 만들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 아트가 가지는 기술적인 측면, 새로운 가상 세계와의 접목을 위한 가능성의 부분을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전반적인 미술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NFT 아트의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NFT 아트 종사자들은 희망적인 지표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7> NFT 아트 거래가 새로운 미술품 거래방식에 미치는 영향\_NFT 아트 종사자 의견

구분	내용
긍정적(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물작품을 직접 보거나 구매하려 갈 수 없는 잠재적소비자가 원격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고개인간의 매매방식이기에 <b>거래량 자체도 늘어나고 다양</b>해질 수 있다.(NFT 아트사 사원)</li> <li>- 미술계에서는 <b>NFT의거래방식은혁신적인기술</b>이다. <b>작품의진위여부 기록</b>에서특히나장점이있다.(NFT 아트사크리에이티브디렉터)</li> <li>- 새로운 신문물의 도입은 당연한 흐름이다. 그림은 실물을 현금으로 주고바다 쉽게 거래가 되지만 토큰, 코인방식의 접근법이 생소하여 NFT소장의 묘미보다 투기성으로 접근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메타버스는 신기하다고 정부에서 지원금까지 주면서, 확장하면서 메타버스의 핵심이라고 하는 NFT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또는 사기다 또는 미술과 상관없다는 발언은 함부로 하는 사람이있다면 공부를 좀더 하기 바라는 마음이다. NFT는 가상의 미래세계이고 다가오는 WEB3.0시대의 메타버스와 함께 하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의미한다 돈으로만 다가갈 것이아니라 우리가 www웹을 접하고 신문물을 받아들였을 때처럼, 블록체인으로 일어나는 다양하고 방대한 미래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NFT 아트사 NFT디지털아트팀장)</li> </ul>
부정적 (0%)	없음
유보 (0%)	없음

## ③ 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미술시장 종사자들은 NFT 아트에 대해 90% 이상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미술 시장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새로움 그리고 화제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NFT 아트거래처럼 새로운 플랫폼이 열리고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슈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매자끼리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NFT 아트의 매매방식은 미술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술적 가치나 애호의 측면을 넘어서, 미술작품의 거래는 고가라는 인식을 너머 NFT 아트로 소액 거래로 진입장벽을 낮추어 준다는 점은 미술시장에 다양한 구매자층을 유입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시장확대의 측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투기목적으로 미술품 매매가 매도될 수 있다는 점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8> NFT 아트 거래가 새로운 미술품 거래방식에 미치는 영향\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구분	내용
<p>긍정적 (9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FT 관련 뉴스가 연일 나오는 상황에서 그 화제성만으로도 주목할 만한 여지가 있다.(A갤러리 큐레이터)</li> <li>-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는 것은 주목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의 탈출구이다.(B갤러리 큐레이터)</li> <li>- 시장이 형성되면, 주목할 만한 여지가 있다.(미술관 변호사)</li> <li>- 소액 투자자들이 미술에 투자할 수 있고, 디지털 플랫폼 통한 수월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매매 방식으로 주목할만하다.(시립미술관 학예사)</li> <li>- 오프라인에서의 활동보다 온라인에서의 활동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미술이론가)</li> <li>- 미디어 아트를 비롯한 회화, 조각 AI아트 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옥션사 직원)</li> <li>- “새로운 예술”의 매매라는 측면에서는 예술 영역의 확장을 “새로운 매매방식”의 측면에서는 시장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데서 주목할 만하다.(옥션사 이사)</li> <li>-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의 미술거래는 소수의 집단이 향유했었다면, 가상공간으로 확장됨에 따라 소액으로도 향유할 수 있다는 큰 장점에 주목해야 한다.(옥션사 관리팀장)</li> <li>- 지금까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특히 영상, 디지털화된 예술은 복제 가능성으로 인해 작품 판매에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원본성을 증명할 수 있는 디지털 예술의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한 다양한 디지털 아트에서 구매자에게 원본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즉 복제의 수량을 한정 지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력 충분하다.(미술 저널리스트)</li> <li>- 우선 굉장히 폐쇄적이고 진입장벽이 높은 기존의 아트시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아티스트나 구매자들이 훨씬 쉽게 진입할 수 있다. 처음에 회의적이었던 기존의 전통적인 아트계 기업들이나 종사자들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전시기획자)</li> </ul>
<p>부정적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인들은 아티스트 작품을 소유하여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무분별한 NFT 미술 거래로 가격을 매기는 방식은 투기를 조장하고 가격 변동성을 크게 하여 투자 리스크로 인해 오히려 NFT미술시장을 위축시킨다.(국립미술관 학예사)</li> </ul>
<p>유보 (0%)</p>	<p>없음</p>

### 3) NFT 아트 거래 사업의 특징점

NFT 아트 사업이 가지는 특징점에 대해 작가, NFT 아트 종사자, 미술시장 종사자 모두 미술시장의 확장에 많은 무게를 실어주었다. 작가와 미술시장은 여전히 진위여부, 저작권의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NFT 아트 종사자들은 NFT 아트의 기본은 저작권에 대한 확보와 거래의 투명성임을 기본으로 삼아 매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주목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① 작가 의견

작가들은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과 편이성이 높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보고 있지만,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술시장의 확장성임을 알 수 있었다.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매체적 확장, 새로운 형식실험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층의 구매자들의 유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일부 응답자 가운데 이미지의 복제나 남용에 대한 어떤 자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창작자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표 III-29> NFT 아트 거래 사업의 특징점\_작가 의견

구분	내용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 및 편이성	- 작업, 거래 등의 용이하다.(A작가) - 손가락 몇번 따닥으로 미술작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있는 것이다.(E작가)
미술 시장의 확장성	- 가상화폐를 사용한다는 점. 투명한 거래 내역, 판매구조의 권력에 대한 대안책 또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한다.(B작가) - 고가의 미술품을 가상의 토큰 형태로 소유한 다는 것이 구매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미술에 대한 관심과 구매에 대한 욕구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C작가) - 작가는 표현하는 매체의 확장, 그리고 생계에 필요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얻을 수 있다. 구매자는 디지털 형태의 미술품을 소유하면서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D작가) - 디지털 아트의 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미술 작품의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G작가)
미술품의 진본성 입증	- 예술가는 새로운 형식의 예술을 실험해 볼 수 있고,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는 것 같다. 도시, 공공의 영역도 전시 공간이 될 수 있고, 전시장을 찾아온 관객뿐만 아니라, 이런 공적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접할 수 있다. 또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작품 이미지나, 복제 등의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본다.(H작가)
기타	- 특별한 장점을 느낄 수 없다.(F작가)

## ② NFT 아트 종사자 의견

NFT 아트 종사자들은 미술품이 이제 갤러리나 에이전트의 도움없이 개인 간의 거래가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지만, 압도적인 NFT 아트의 장점은 미술시장의 확장성이라고 응답했다. 이것은 단순히 다양한 구매층의 유입뿐 아니라,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작가로서 활동할 있는 기회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 생태계가 함께 유입되어 새로운 이슈,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다. NFT 아트 종사자들은 어떤 단순한 미술시장을 넘어서 새로운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0> NFT 아트 거래 사업의 특징점\_NFT 아트 종사자 의견

구분	내용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 및 편이성	- 온라인 거래, 개인간 거래(NFT 아트사 사원)
미술 시장의 확장성	- 많은 신진 작가나 미디어 작가 일러스트 작가에게 새로운 아트 등용문이 된다.(NFT 아트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확장성이다. 무한 확장. 호기심과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또한 엄청난 제도권아래서, 다양한 생태계가 가동되는 사업이다. 실물과 NFT가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미술관에서도 도입해나가야한다. 저가의 가격으로 nft로 소지하고 싶을때작가를 서포트, 후원하고 본인이 소장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또다른 거대한 문화예술산업 시스템과, 또한 더 가치롭고 풍요로운 소통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다.(NFT 아트사 NFT디지털아트팀장)
미술품의 진본성 입증	없음
기타	없음

### ③ 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미술시장 종사자들 역시 미술시장의 확장성, 진본성의 입증, 새로운 사업으로의 확장 등을 장점으로 꼽으면서도, 다른 응답과 달리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과 접근 용이성의 측면에서 NFT 아트의 장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술시장의 문턱은 생각보다 낮지 않다. 자신이 그림에 대해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접근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일반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쉽게 플랫폼을 통해서 코인거래로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새로운 흐름이다. 이미 인터넷의 발달과 SNS의 활성화로 인해 미술시장 및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보다 빨리 전문적인 정보를 모을 수 있음에도 여전히 높았던 미술시장으로 구매자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명거래, 진위여부, 추급권등의 정비로 투명하게 거래되어질 수 있다는 점이 미술시장 종사자들이 꼽는 NFT 아트의 거래 사업의 장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31> NFT 아트 거래 사업의 특징점\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구 분	내 용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 및 편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B갤러리 큐레이터)</li> <li>- 거래방식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점이고 거래 플랫폼의 한계, 코인 기반이라는 것이 한계이다.(미술관 변호사)</li> <li>- 미술품을 직접 가서 보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본다. 거리 상의 이유 공간상의 이유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미술 작품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작품과 판매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미술 시장 자체에 대한 홍보 효과도 이전 보다는 쉽게 이루어진다고 보인다. 다만 옥션에서도 온라인 판매 이전 사전 전시를 하는 것은 사이즈나 재료 등 실제 작업을 접해야만 알 수 있는 작업의 아우라를 온라인으로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대면 해야만 느낄 수 있는 작품의 힘을 전달하는 방법은 아직 미흡하다.(미술이론가)</li> <li>- 불분명한 투자성 거래가 특징(옥션사 직원)</li> <li>- 낮은 진입장벽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전시기획자)</li> </ul>
미술 시장의 확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가의 작품을 오롯이 혼자 투자하기보다 NFT 미술 거래를 통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생각하며, 유기적인 작품 구매 시 보관이 어려울 수 있는데, NFT 미술 거래 시 따로 물리적으로 작품을 보관하거나 작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특징이다.(시립미술관 학예사)</li> <li>- 선점되지 않아 누구든 도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된다.(옥션사 관리팀장)</li> </ul>
미술품의 진본성 입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질성이 없는, 물질성이 필요없는 아트의 원본성에 대한 확인이 될 뿐 아니라, 물질성있는 전통적인 아트처럼 거래가 된다는 점이다.(A갤러리 큐레이터)</li> <li>-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사용 함으로써 미술품 이력 등등(국립미술관 학예사)</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FT 미술 거래 사업은 블록체인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가치중립 적인 사업모형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옥션사 이사)</li> <li>- 블록체인 코인과 연동되어 코인 가격 가치의 등락에 따라 작품 가격이 움직인다. 이는 작품 자체의 가치에 따른 작품가격이 아닌 또다른 요소, 변수들(코인가격 등락/새로운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가짐-플렉스)이 작용한다. 이것이 특징일 수 있지만, 장점인지는 잘 모르겠다.(미술 저널리스트)</li> </ul>

#### 4) NFT 아트 거래 사업이 국내 미술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NFT 아트 거래 사업이 국내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작가, NFT 아트 종사자, 미술시장 종사자는 크게 시각예술의 대중화로 인한 미술시장의 활성화, 작가들의 창작지원 확대, 새로운 장르 확장의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각 응답군에 따라 그 긍정적 영향에 대한 답변이 상당히 다른 성향을 보였으므로 아래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① 작가 의견

작가는 NFT 아트 거래사업이 국내 미술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각예술의 대중화를 통한 미술시장의 활성화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지금 미술품 거래에 새로운 흐름을 이끌고 있는 MZ세대들은 디지털에 기반한 세대들로 암호화폐거래라든가 디지털이미지에 이미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또한 기존 미술시장에서 거래되는 작품들에 비해 NFT 아트의 가격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실물거래보다는 소액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새로운 컬렉터 층이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보였다.

<표 III-32> NFT 아트 거래 사업이 국내 미술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_작가 의견

구 분	내 용
시각예술의 대중화로 인한 미술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에 기반한 세대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고, 매매, 매입에 어려운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진다.(A작가)</li> <li>- 시각예술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B작가)</li> <li>- 미술 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 냄(C작가)</li> <li>- NFT가 대중들의 관심을 끌수록, 자연스럽게 주변 미술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미술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시장이 살아나면 작가는 더 많은 기회를 받는다.(D작가)</li> <li>- 미술품을 구입하고싶은 자들에게 낮아진 진입 문턱으로 본다.(E작가)</li> <li>- 온라인 미술 시장의 활성화, 작가들의 매체 전환적 고민, 논의(G작가)</li> <li>- 컬렉터는 보다 쉽게, 부담스럽지 않는 금액으로 작품을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 될 것 같다. 평소 관심이 없었던 대중들도 미술에 관심을 가지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갤러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작품 구매가 가능한 점도 긍정적인 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H작가)</li> </ul>
작가들의 창작지원 확대	없음
새로운 장르 확장	없음
기타	- 잘 모르겠다.(F작가)

## ② NFT 아트 종사자 의견

NFT 아트 종사자들은 앞서 살펴본 작가들처럼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술시장의 활성화와 작가들이 직접 거래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 유의미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는 오히려 새로운 장르의 확장이라는 측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미술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장르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 NFT 아트가 국내 미술시장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3〉 NFT 아트 거래 사업이 국내 미술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_NFT 아트 종사자 의견

구 분	내 용
시각예술의 대중화로 인한 미술시장 활성화	- 온라인 거래, 개인간 거래(NFT 아트사 사원)
작가들의 창작지원 확대	- <b>창작자들에게</b>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알리고 <b>수익화</b> 할 수 있다.(NFT 아트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새로운 장르 확장	- <b>NFT</b> 는 마치 하이브리드 예술처럼 미술계에 들어왔지만 당장에 큰돈이 되지 않는다고해서 외면하기보다는 <b>새로운 미디어 장르</b> 그 이상의 신세계 도입의 눈으로 <b>새로운 미술장</b> 으로 보고 문화형성차원으로 다가갔으면 하는 입장이다.(NFT 아트사 NFT디지털아트팀장)
기타	없음

## ③ 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미술시장 종사자들은 조금 다양한 응답이 많았지만, 역시 작가와 마찬가지로 미술시장의 활성화에 NFT 아트 거래 사업이 국내 미술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시장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된 시장으로 확장된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인 영향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미술시장이 갖고 있던 보관의 문제, 재판매를 통한 투자수익의 문제 등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NFT 아트 거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4> NFT 아트 거래 사업이 국내 미술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구 분	내 용
시각예술의 대중화로 인한 미술시장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이 커졌다는 것이 긍정적이다.(B갤러리 큐레이터)</li> <li>- 미술시장에 참여하고 싶은 대중들을 참여를 늘리고 다양한 형식의 미술품을 시장에서 팔고 공유하고 있다.(국립미술관 학예사)</li> <li>- 작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고가의 작품도 여러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다는 점과, 물리적인 작품 보관 없이도 수월하게 미술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은 결국 미술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시장 규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시립미술관학예사)</li> <li>- 미술 시장 전반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효과이다. 이제까지 특정인을 위한 폐쇄된 시장으로 여겨졌던 것이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된 열린 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미술이론가)</li> <li>- 미술 시장에 대한 관심을 NFT 사업을 통해 환기시킬 수 있다.(미술 저널리스트)</li> <li>- 미술이 소수만 향유되는 것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시장으로 나온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옥션사 관리팀장)</li> </ul>
작가들의 창작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들이 거래시장에 쉽게 진출(미술관 변호사)</li> <li>- NFT 개발을 통해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예술작가들은 NFT를 활용해 작곡가처럼 저작권료를 받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시립미술관 후원회 실장)</li> <li>- 국내작가들이 해외 아트계에 이름/작품을 알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런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다.(전시기획자)</li> </ul>
새로운 장르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장르로서 받아들일 만한 장점이 많은 예술세계이다.(옥션사 직원)</li> <li>- 기술과 미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미술장르의 등장에 따른 현상으로 미술시장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옥션사 이사)</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군의 확장, 미술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면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다.(A갤러리 큐레이터)</li> </ul>

### 5) 블록체인 기술(NFT 아트 사업 포함)이 미술품 거래에 온/오프라인에 끼치는 영향

NFT 아트를 통해 이미 블록체인 기술이 미술품의 거래에 깊이 들어왔으며, 그 잇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계층에서 인정받고 있다. 그것이 현재는 NFT 아트와 같이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으나, 향후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에도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작가, NFT 아트 종사자, 미술시장 종사자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 ① 작가 의견

작가들은 우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의 의견이 거의 동률이었다. 우선 긍정적이라고 보는 작가군은 온라인에서 이뤄진 블록체인의 장점이 서서히 오프라인 거래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한 미술거래를 경험해본 구매자들이 오프라인에서의 거래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

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아직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이나 그 역할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여전히 낯선 영역으로 느껴지는 응답자의 경우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작가들은 아무리 NFT 아트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해도, NFT 아트가 오프라인의 작품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있었다. 오프라인의 실물작품으로부터 NFT 아트가 파생된 것이라고 보는 경우, 오프라인 거래를 위한 실물 작품이 NFT 아트 보다는 상위에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강했다.

<표 III-35> 블록체인 기술(NFT 아트 거래 사업 포함)이 미술품 거래에 온/오프라인에 끼치는 영향\_작가 의견

구분	내용
긍정적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은 다소 새로운 체계이지만, <b>온라인 먼저 이루어지고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 오프라인까지 이어질 것이다.</b>(A작가)</li> <li>- 오프라인으로 상업성있는 작품이 NFT에서도 잘 팔리는 경우 <b>서로 상호작용을 줄 것이다.</b>(B작가)</li> <li>- 미술품 거래가 일반적,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현찰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가상 화폐 시스템으로 결제방식이 다양해지고, 그만큼 <b>온,오프라인 거래량도 활발해질 것</b>이다.(D작가)</li> <li>- 온라인을 통해 nft작품을 구매한 경험이 긍정적인 컬렉터라면 작가나 작품에 대해 관심이 지속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작품 관람과 구매가 이어질 수 있다. <b>온라인과 오프라인 거래가 공존하면서 서로에서 긍정적 영향을</b> 줄 수 있다.(H작가)</li> </ul>
부정적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때 유행으로 지나갈 것이다. 또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겠지만 결국 시작 미술의 특정상 실물작품 거래가 주가 될 것이다. 각각의 차원에서 <b>온라인은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 없다.</b>(G작가)</li> </ul>
유보 (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 모르겠다.(C, E, F 작가)</li> </ul>

## ② NFT 아트 종사자 의견

NFT 아트 종사자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이 미술품의 거래의 온/오프라인 매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이 66.7%, 부정적 의견이 33.3%로 조사되었다.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자들은 점차 오프라인의 이벤트나 홍보 프로모션, 전시 등이 온라인과 연계하여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오프라인 거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향후 글로벌 거래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의 경우는 아직 그 전망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조금 신중한 의견이 많았다.

<표 III-36> 블록체인 기술(NFT 아트 거래 사업 포함)이 미술품 거래에 온/오프라인에 끼치는 영향\_NFT 아트 종사자 의견

구 분	내 용
긍정적 (6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 프로모션 등이 <b>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고</b>, 오프라인 이벤트 또한 디지털 요소와 함께 한다.(NFT 아트사 사원)</li> <li>- <b>온라인 거래를 활발하게</b> 하고 <b>글로벌 구매를 쉽게 변화</b>시킨다.(NFT 아트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li> <li>- <b>오프라인 거래가 공존하면서 서로에서 긍정적 영향</b>을 줄 수 있다.(H작가)</li> </ul>
부정적 (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FT가 기존 미술계에 <b>영향을 미칠거라고</b> 현재로서 <b>예측하기 어렵다</b>. 다만 온라인 영역에서 작가들은 sns에 좀 더 주력하고 있는 점에서는 온라인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확실하다.(NFT 아트사 NFT디지털아트팀장)</li> </ul>
유보 (0%)	없음

### ③ 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미술시장 종사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술품의 거래의 온/오프라인 매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의견이 66.6%, 부정적이거나 유보적 의견이 33.4%로 조사되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을 낸 이들은 대중적으로 시장이 확장될 때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술시장에 유입되기 어려운 어떤 이유 중의 하나가 투명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임을 감안할 때, 신뢰성을 위한 투자로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영입은 긍정적인 면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응답은 NFT 아트와 온라인상에서의 거래의 활발화가 기대된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으나, 아직은 그 향방을 예견하기 어렵고, 아직은 하나의 장르이지 큰 흐름으로 바라볼 만큼 유의미하지 않다고 보는 의견이 있었다.

〈표 III-37〉 블록체인 기술(NFT 아트 거래 사업 포함)이 미술품 거래에 온/오프라인에 끼치는 영향\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구 분	내 용
긍정적 (6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모두에 미술이 좀 더 환금성 있는 거래의 한 종류라는 인식을 <b>대중적으로 더욱 확장</b>시킬 수 있다는 점과 시장 전체의 거래량 증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A갤러리 큐레이터)</li> <li>- 미디어와 사진 등 일부 장르에 적용은 매우 긍정적이다.(국립미술관 학예사)</li> <li>- 보수수단으로서 신뢰성을 부여할 여지가 있다.(미술관 변호사)</li> <li>-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투명한 미술거래에도 기여하기 바란다. 현재 미술 시장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데, 블록체인 기술로 이 점이 개선되길 바란다.(시립미술관 학예사)</li> <li>-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잘 모르나 작업을 안전하고 신뢰도 높게 거래 할 수 있게 만든 <b>다는</b> 점에서 중요하다.(미술이론가)</li> <li>- 오프라인 미술까지 이미 많은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왔다.(옥션사 직원)</li> <li>- 블록체인 기술이 적절한 방식으로 미술품거래에 도입된다면 시장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옥션사 이사)</li> <li>- 미술품 거래 면에서 복제 가능한 디지털 작품의 원본성을 증빙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미술 저널리스트)</li> </ul>
부정적 (1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는 <b>가상과 현실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b> 것이다. 미술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에서 오는 변화의 고민이다.(옥션사 관리팀장)</li> <li>- 오프라인 거래는 <b>한동안은 기존의 형태와 틀을 유지할</b> 것이다. 옥션, 슈퍼갤러리들, 딜러들, 슈퍼클라이언트들 등 그들만의 세상이 한꺼번에 바뀌기는 힘들다. 그러나 온라인은 <b>NFT 아트시장을 통해 꾸준히 확장될</b> 것이다.(전시기획자)</li> </ul>
유보 (1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장르로 여겨질 것이다. 그것이 큰 파동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B갤러리 큐레이터)</li> <li>- 점차 온라인 시장이 활발해 질수록 대중 혹은 컬렉터들은 작가의 만남과 같은 오프라인 이벤트의 욕구와 필요성을 높아질 것이다.(시립미술관 후원회 실장)</li> </ul>

## 6) 우리나라에서 현재 NFT 아트 거래 사업이 열기를 띠고 있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NFT 아트 거래사업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NFT 아트의 침체리는 업계의 불멘 소리에도, 꾸준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왜 우리나라에서 NFT 아트 사업이 열기를 띠고 있는지에 대하여 작가, NFT 아트 종사자, 미술시장 종사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 ① 작가 의견

작가들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NFT 아트 거래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는지에 새로운 영역에 대한 흥미보다는 오히려 투자와 미술시장이 과열된 결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코인의 가치가 하락함에도 여전히 실물 미술시장의 활기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의견과 함께, 투자목적으로서의 미술작품의 가치상승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부동산, 금, 외화와 같은 투자대상에 미술작품이 포함되면서 미술 자체의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유의미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8> 우리나라에서 현재 NFT 아트 거래 사업이 열기를 띠고 있는 이유\_작가 의견

구분	내용
투자적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물거래의 비용이나 가치는 고부가 가치되어 있는 것에 비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A작가)</li> <li>- 현재 하향가인 부동산, 주식과는 다른 투자 형태로 여겨진다.(C작가)</li> <li>- 부동산, 주식, 금, 외화, 미술품처럼 투자를 통해 이익이 된다.(D작가)</li> <li>- 초기의 일시적인 유행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주식, 가상거래, 재테크 등에 대한 관심, 미술 자체에 대한 관심, 아트페어 등 미술품 구입에 대한 시도 등 복합적이다.(H작가)</li> </ul>
새로운 영역에 대한 흥미	없음
미술시장 과열에 따른 현상	- 코인가치의 하락으로 지금은 NFT 열기가 식었지만 미술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분위기와 더불어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B작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년에 비해 한국 nft시장의 열기가 식은 분위기이다.(E작가)</li> <li>-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이고 그 '열기'를 체감하는 미술인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스럽다.(F작가)</li> <li>- 온라인 마켓의 접근 용이성과 미술에 대한 주관적 예술적 가치 판단과 비평의 부재이다.(G작가)</li> </ul>

## ② NFT 아트 종사자 의견

NFT 아트 종사자들 역시 작가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미술거래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계층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 투자대상으로서의 NFT 아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 국내 NFT 아트 거래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가 많았다. 또한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NFT 아트를 자신의 홍보문화마케팅으로 활용해 나가는 시대적 흐름도 NFT 아트 시장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MZ세대들이 미술시장에 등장하면서, MZ세대의 문화적 특징인 새로운 영역에 대한 흥미를 NFT 아트가 잘 풀어나가고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표 III-39> 우리나라에서 현재 NFT 아트 거래 사업이 열기를 띠고 있는 이유\_NFT 아트 종사자 의견

구분	내용
투자적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거래 자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지고,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미술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NFT 아트사사원)</li> <li>- 구글이나 네이버 트래픽 등을 통해 기업은 자체 홍보문화마케팅을 위해 NFT 아트 커뮤니티가 돈이 되기도 한다. 결국 산업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활력을 떨 수 있는 것이다.(NFT 아트사 NFT디지털아트팀장)</li> </ul>
새로운 영역에 대한 흥미	- 기존의 미술 거래 방식에서 벗어나 메인 스트림에 참여할 수 없었던 많은 MZ 세대들의 새로운 문화의 장이다.(NFT 아트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미술시장 과열에 따른 현상	없음
기타	없음

### ③ 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미술시장 종사자들 역시 NFT 아트 종사들과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투자적인 목적으로 NFT 아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국내 NFT 아트 거래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코인시장과 연동되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익숙한 MZ세대들이 미술품 구매자로 유입되면서, 미술품을 또 하나의 투자대상으로 보려는 경향은 보다 강해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미술시장이 과열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하는 응답자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IT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어떤 국민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들이 반영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III-40> 우리나라에서 현재 NFT 아트 거래 사업이 열기를 띠고 있는 이유\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구 분	내 용
투자적인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움, 투자적 요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A갤러리 큐레이터)</li> <li>- 투자에 수익에 대한 일반인들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중 하나이다.(국립미술관 학예사)</li> <li>- 코인시장과 연동,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익숙한 세대에 어필(미술관 변호사)</li> <li>- 부동산 시장 및 주식, 코인 시장이 경색됨에 따라 미술 작품 자체는 물론 NFT 미술 거래에도 투자금이 몰린다.(시립미술관 학예사)</li> <li>- 작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오히려 한참 끌어올랐다가 식었다. 이유는 NFT의 가치를 돈으로만 보고 뛰어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NFT 미술 사업은 투자 대상이 아닌, 새로운 시도와 문화로써 접근해야 한다.(시립미술관 후원회 실장)</li> <li>- 지난 해 코인 시장의 활황, 미술 시장의 활황 등이 이러한 NFT 미술 거래에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최근 세계 정세와 경제의 흐름 속에서 NFT 미술 거래의 향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미술 저널리스트)</li> <li>- MZ세대의 특성,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꼽는다.(옥션사 관리팀장)</li> <li>- 코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이다. 코인은 아직까지도 사용처에 한계가 있다.(전시 기획자)</li> </ul>
새로운 영역에 대한 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와 코인의 호뭇도 한몫하고 있다.(B갤러리 큐레이터)</li> <li>- 현 시국에 실제로 다니는 것보다 온라인 상에서 작품을 접하고 거래 할 수 있다는 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미술이론가)</li> <li>- 사회 전반에 걸친 IT기술의 도입으로 NFT 미술 거래 사업을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옥션사 이사)</li> </ul>
미술시장 과열에 따른 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인 미술시장 과열에 따른 일시적 현상(옥션사 직원)</li> </ul>
기타	없음

### 7) NFT 아트 거래가 해외 구매자를 확장하는 데에 미치는 영향

NFT 아트 거래가 해외 구매자들을 유입하는 데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가, NFT 아트 종사자, 미술시장 종사자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각 응답자별로 살펴보았다.

### ① 작가 의견

작가들은 온라인상에서의 거래란 것이 가지는 장점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또한 해외 구매자들이 확대되면 홍보 효과도 있고, 다양한 구매자들의 취향이 예술의 다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여전히 작가들에게는 해외시장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잇점이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 중에는 그러한 해외시장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영향이 모든 작가에게 적용되지 않고, 여전히 많은 서포트를 받고 있는 일부 유명작가에 한정될 것이라는 자조적인 의견이 있었다.

<표 III-41> NFT 아트 거래가 해외 구매자를 확장시키는 데에 미치는 영향\_작가 의견

구분	내용
긍정적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작품에 대한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방법 자체는 고민해야 할 많은 부분이 있다.(A작가)</li> <li>- 국적에 상관없이 작품성 위주로 거래를 하게 된다면 해외자본 유입은 도움이 될 것이다.(B작가)</li> <li>- 이미지 자체가 시장성이 있다면 국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 이미 오프라인 작품도 국경 없이 거래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데 물리적인 형태가 없는 NFT 미술 거래가 시장을 넓히려는건 당연한 속성같다.(C작가)</li> <li>- 해외 구매자들이 늘어나면 작가 입장에서는 홍보가 되니 도움이 된다.(E작가)</li> <li>- NFT 미술이 해외 구매자와의 접근성과 구매에 용이하다. 작가의 입장에서 NFT 미술 뿐만 아니라 모든 매체의 미술 작품이 국내와 해외 구매자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작품 제작과 활동을 하고 있다.(G작가)</li> <li>- 제작과 판매 모두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당연히 해외 미술시장을 확장 하는데 도움이 된다.(H작가)</li> </ul>
부정적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구매자들이 생겨도 NFT 미술을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미적 측면에서도 완성도를 내는 작가들, 특히 이미 존재가 유명한 작가들로 한정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다. NFT 미술거래는 시장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다.(D작가)</li> </ul>
유보 (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 모르겠다.(F작가)</li> </ul>

### ② NFT 아트 종사자 의견

NFT 아트 종사자들은 해외구매자를 확장시키는 데에 NFT 아트 거래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에 모두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온라인이라는 매체의 장점은 거리의 제약이 사라진다는데 있고, 암호화폐는 어떤 나라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화폐로 통용되기 때문에 해외 구매자들의 국내 유입에 용이하다. 아직 국내에서 해외 구매자들의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NFT 아트 종사자들은 이미 SNS를 통한 정보취득이 용이하고, 작가와 구매자의 직거래 그리고 2차 거래시장이 더 확대된다면, 해외 구매자들의 유입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표 III-42> NFT 아트 거래가 해외 구매자를 확장시키는 데에 미치는 영향\_NFT 아트 종사자 의견

구분	내용
긍정적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거래로 거리의 문제를 없애고, 국가를 막론하고 가치를 보장받는 가상화폐로 거래하여 높은 신뢰도가 쌓인다.(NFT 아트사 사원)</li> <li>- 달러는 마켓플레이스가 늘어날수록 설 자리를 잃기 쉽지만 <b>구매자는</b> 언제 어디서나 적은 수수료로 작품을 구매하고 <b>작가와 직접적으로 소통</b>하며 친분을 쌓아 갈 수 있다. <b>작가는</b> 언제 어디서나 적은 수수료로 작품을 판매하고 <b>구매자와 직접적으로 소통</b>하며 친분을 쌓아 갈 수 있다.(NFT 아트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li> <li>- <b>달러, 즉 에이전시나 큐레이터 입장에서는</b> 국외 사이트인 오픈씨 등에서 <b>작가 프로모션 등 계약을 하고</b> 수수료를 나눠가지면 <b>이윤이 발생할 것이고, 구매자는</b> 국내 거래소 보다는 해외 구매가 가입이 되는 외국플랫폼에서 <b>구매할 영역이 넓어진다. 작가또한</b> 국내거래소외에도 다양한 해외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b>자신의 sns파워를 확장해나갈 것이다.</b> 모든 면에서 서로 시너지 형성이 되는 부분이다.(NFT 아트사 NFT디지털아트팀장)</li> </ul>
부정적 (0%)	없음
유보 (0%)	없음

### ③ 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미술시장 종사자들 역시 해외구매자를 확장시키는 데에 NFT 아트 거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물 거래를 주로 해온 현재의 미술시장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저가의 미술작품의 거래를 통해 구매자들이 유입되어 미술시장 자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표 III-43> NFT 아트 거래가 해외 구매자를 확장시키는데 미치는 영향\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구 분	내 용
<p>긍정적 (8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딜러에게 NFT 미술거래가 도움은 크게 되지 않을 것이다. 직접 투자적 요소와 access가 강하게 NFT이다. 구매자와 작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특히 새로운 미술 시장에 적합한 작가군이 있기에, 작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A갤러리 큐레이터)</li> <li>- 하나의 장르처럼 보고있다.(B갤러리 큐레이터)</li> <li>- NFT 미술투자의 가능성은 아직 안정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대부분임으로 낮은 가격의 사이버 미술거래 활성화는 미술시장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국립미술관 학예사)</li> <li>- 구매자 입장에서 작품 가격과 질의 신뢰성이 담보된다면 NFT 미술 거래가 도움이 될 수 있다.(미술관 변호사)</li> <li>- 딜러와 작가 입장에서는 국내 미술 시장 규모가 커지는 일이므로 환영할 만하며 물론 도움도 되며, 구매자 입장에서 또한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평가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시립미술관 학예사)</li> <li>- 작가와 구매자에게는 디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더 큰 시장으로 보다 쉽게 뺏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좋게 작용할 것 같다. 또한 작업도 신뢰도 높은 웹 사이트를 통해서 보는 게 안전하다고 여겨 질 수 있으니 딜러 입장에서 많은 고객 많은 작가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것이다.(미술이론가)</li> <li>- 구매자 입장에서는 실제 작품의 가격이나 시세, 작품 정보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구매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작가 입장에서는 시장의 활성화와 다변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옥션사 직원)</li> <li>- 현재 미술시장에서 거래되는 작품들을 온라인에서 유통가능한 형태로 변환한 것을 NFT 미술이라 정의할 수 없다. 이는 매우 초기적인 현상일 것이며, NFT 미술 개념이 구체화된다면 시장의 확장성은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NFT 작가와 NFT 작품 구매자의 입장에서도 딜러나 갤러리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옥션사 이사)</li> <li>- 해외 구매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는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미술 저널리스트)</li> </ul>
<p>부정적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작품이 거래되려면 첫째 작가, 둘째 딜러, 셋째 구매자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데 아직 문화적 갭이 멀다.(옥션사 관리팀장)</li> </ul>
<p>유보 (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 모르겠다. 몇몇 작가들이 해외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는 합니다만, 역으로 국내 플랫폼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전시기획자)</li> </ul>

## 8) 국내 NFT 아트 거래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 및 변화

이번 질문에서는 국내 NFT 아트 거래 사업이 지금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의 의견을 물었다. 즉 실물판매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보는지, 아니면 NFT 아트 판매 비중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작가, NFT 아트 종사자, 미술시장 종사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 ① 작가 의견

작가들은 NFT 아트 단독 판매 비중이 높아지는 것보다는 미술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물판매와 NFT 판매가 병행되는 방식에 관심을 보였다. 오히려

NFT 아트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물 작품을 보는 안목과 실물 작품을 온라인 상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확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여전히 작가의 입장에서 실물 예술작품의 거래가 기본이기 때문에 실물판매 비중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표 III-44> 국내 NFT 아트 거래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 및 변화\_작가 의견

구분	내용
실물판매 비중	- 실물이 가지는 힘이 더 커질 것이다 nft는 개념으로만 존재하고 손으로 만질수 있는 물성이 없기에 실물이 더 귀해질 것 같고 매매를 그쪽으로 더 모색해보는 것이다.(E작가)
NFT 판매 비중	없음
실물판매와 NFT 판매 병행	- NFT 미술거래를 적극 흡수하는 방향은 전문적인 작가들과 함께 <b>온오프라인 경계를 오가며 전시</b> , 마케팅, 암호화폐 활용을 적극 수용한다. 반대로 실물거래만으로 생존하는 입장은 화이트큐브를 더욱 견고하게 쌓으며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한다. 내가 NFT 작가라면 전자물, 회화나 조각을 하는 쪽이면 후자를 선택한다. 작가도, 구매자도 뚜렷한 개성과 방향성이 있는 시장을 선호할 것이다.(D작가) - 온라인 미술시장과 실물작품을 거래해온 미술시장이 서로 차별화를 두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작품의 가치와 작품성, 작품에 대한 비평을 활성화하는 등 차별화된 구매자 들을 위한 콘텐츠를 각 <b>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b> (G작가) - nft가 활성화되거나, 온라인 작품 전시 및 판매 등은 오프라인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낸다. 기존의 회화, 조각 등이 nft 작품과 연작, 시리즈, 세트 개념으로 함께 보여 지고 판매 될 수 있을 것이다. <b>실물작품과 온라인 작품을 함께 보여 주고 소개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b> (H작가)
기타	- <b>실물거래 미술시장이 NFT 미술 거래 사업시장과 같은 체제로 운영된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b>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부터 온라인 방식을 도입하여 그 체제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다).(A작가) - 실물판매와 NFT판매 병행. 실물판매가 NFT 판매에 영향을 주므로, 단 NFT는 실물의 사본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나 NFT작품을 제작하는 경우나 똑같은 노력과 시간 아이디어가 들어간다. 작가의 경우 상업성 기준 또는 작품의 특징에 따라 <b>실물로 갈 것인지, NFT를 병행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b> (B작가) - 실물 작품은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차지하는 아우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FT 거래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전시되고 공간적 이동을 해야한다. 실물작업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이미지의 소유권, 배포 등 제한된 부분만을 소유하게 된다면 빈껍데기 처럼 느껴질 수 있고 이는 실물 작품 구매 욕구를 저하시킬 수 있을 것이다. <b>실물 작품 구매 시장과 NFT 미술 시장은 분리하여 거래해야 한다.</b> (C작가)

## ② NFT 아트 종사자 의견

NFT 아트 종사자들 역시 실물판매와 NFT 아트 판매의 병행방안을 모색하고 변화의 방향을 맞추어 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존의 매체가 새로운 매체를 한순간에 대체하지 않듯이 여전히 실물 작품에 대한 수요는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했다. 또한 실물시장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쌍방을 모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과 장르, 거래수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실물 작품과는 별개로 NFT 아트 판매만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NFT 아트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월렛이나 암호화폐 거래에 익숙치 않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나 2차 거래를 위한 NFT 아트 관련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III-45> 국내 NFT 아트 거래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 및 변화\_NFT 아트 종사자 의견

구분	내용
실물판매 비중	없음
NFT 판매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물작품을 구매한 영수증 혹은 보증서, 또는 소유권증명서나 구매권 자체를 <b>NFT로 발행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b>(NFT 아트사 사원)</li> <li>- 진품 증명서 방식을 이용해 작품의 진위 여부와 거래 방식을 투명하게 보장할 수 있다. NFT거래에는 앞으로 더 이상 딜러가 할 수 있는 일 보다는 플랫폼 자체에서 큐레이션 방법으로 변화될 듯하다. 구매자와 작가는 <b>NFT 구매와 판매 방식을 익혀서 스스로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교육</b>이 필요하다.(NFT 아트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li> </ul>
실물판매와 NFT 판매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책이 나왔다고 해서 아날로그 책들이 저평가 되지않는 것처럼 기존의 실물작품 거래시장은 nft로 인해 위축되거나 나쁘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 오히려 크게 문화적인 면에서 <b>온오프라인의 예술시장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b> 딜러나 구매자는 공생 또는 협력관계로서, 현금만 가지고 바로 투자를 하고싶다면 자신이 약간의 코인, 공부 가 필요할 수도 있고(원화거래는 지금 미래가 불확실한 점을 유념해야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며 안전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작가 또한 설치 조각 미디어 작업을 하면서도 nft의 흐름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하나의 문화영역이자 또다른 붓 물감 다양한 매체가 주어져 왔던 역사처럼 미래의 예술도구로 인식해 갈 것이다. 이제는 수첩을 들고 메모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두 핸드폰을 손에 쥐고 그것으로 소통해 가는 시대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그림을 사는 시대는 이제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시각예술의 즐거움을 주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어 갈 것이다.(NFT 아트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li> </ul>
기타	없음

### ③ 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미술시장 종사자들은 실물시장과 NFT 아트 거래 시장을 조금은 다른 장르, 다른 시장으로 보고 모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현재 형성된 실물 거래 미술시장을 기반으로 확대해 나가면, 그것이 NFT 아트 거래가 이뤄지는 온라인 상의 거래로 확장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 또한 이미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실물거래 방식과 NFT 아트 거래방식을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하나의 작품을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처럼 단 하나의 작품, 유일한 작품이라는 컨셉보다는 많은 이들이 쉽게 접하고 편하게 작품을 구매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미술시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표 III -46> 국내 NFT 아트 거래 사업이 활성화하기 위한 방식 및 변화\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구분	내용
실물판매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실물 작품이 가지는 아우라는 분명 다르다.(A갤러리 큐레이터)</li> <li>- NFT 개발하면서 실물(실제)작품을 파괴해 버린다는 사례도 들어보았는데, 이것은 NFT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것이다. 실물작품을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NFT 시장도 함께 확장될 수 있다. 딜러, 구매자, 작가간 선순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시립미술관 후원회 실장)</li> <li>- 미술품이 위대한 특징은 그 정신에 있다고 본다. 시장에 저변은 넓어지겠지만, 가상의 세계에서 거래되는 작품도 인간의 창작물이고 하나는 복제가 되든 그 핵심은 인간이 창작한 창작품이다. 딜러의 입장에서 현재와 미래를 통찰할 수 있는 작가를 발굴해내는 것에 일차 목표를 가지고, 그 작가에게 맞는 시장을 찾아 거래하는 것이지 시장에 맞춰 작가를 끼워 넣는건 앞뒤가 뒤바뀐 것이다.(옥션사 관리팀장)</li> <li>- 탭티어 미술작품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계속 거래될 것이다. 그러나 젊은 컬렉터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작품을 즐기거나 소유하는 방식이 변화할 것이다. 이미 많은 갤러리들이 NFT시장이 결국은 한 분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NFT 사업을 추가하고 있다. 단순한 방식의 NFT 작품을 넘어서서 작가, 갤러리, 플랫폼들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작품감상 방법을 특별하게 해서 클라이언트들의 경험을 유니크하게 만들어야한다.(전시기획자)</li> </ul>
NFT 판매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프라인 위주의 시장이 점차 온라인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한 갤러리나 옥션, 판매처가 다변화 될 것이다. 다만 시장의 과열화나 정보의 일방적 전달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옥션사 직원)</li> </ul>
실물판매와 NFT 판매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작품은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해야 하며 통로의 일부다.(B갤러리 큐레이터)</li> <li>- 실물 작품을 고정시켜 설치하고 감상하는 경험과 NFT 미술의 감상 경험이 매우 다르므로 기존 실물작품 거래는 기존대로 유지될 것인데, 실물작품 거래미술시장이 NFT 미술 거래 시장과 분리되기 보다는(실제로는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분리될 여지가 있겠으나) 서로 협력하여 시장이 선순환이 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실물작품과 NFT 미술을 거래하는 수요자가 다를 수는 있으나, 실물작품의 가치가 결국 NFT 거래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존 시장과 새로운 시장이 분리되어서는 작가, 시장, 구매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 기존 옥션이나 갤러리 등에서 NFT 미술 거래에 관심을 갖고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시립미술관 학예사)</li> <li>- 아직은 온 오프라인 공동 운영 방식이 효과적일 것 같다. 온라인만으로 유지하기엔 작업을 실제 보는 감상의 영역이 아직은 중요하게 느껴진다.(미술이론가)</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기 다른 시장이다. NFT 작품들은 결국 모니터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시장과는 전혀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국립미술관 학예사)</li> <li>- 작품 가격과 질의 신뢰성 담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미술관 변호사)</li> <li>- NFT 작품과 실물 작품의 미술시장은 서로 다른 두 영역이므로 매매방식에 있어 상호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지 않을 것이다.(옥션사 이사)</li> </ul>

### 9) 현행 NFT 아트 거래 사업이 미술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대처 방법

현행 NFT 아트 거래사업이 미술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작가, NFT 아트 종사자, 미술시장 종사자의 의견을 구했다.

#### ① 작가 의견

작가들은 NFT 아트의 거래가 실물판매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영향 정도라고 보고 있었다. NFT 아트는 현재 디지털미디어 아트 정



도가 실물판매로 가능한 정도라고 보고 있었다. 아직 NFT 아트에 정의가 확고하지 않은 시점에서 작가들조차도 NFT 아트를 디지털미디어 혹은 온라인 미디어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NFT 아트가 미술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은 거래의 투명도나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었다. 미술작품으로서의, 아트로서의 가치나 미술비평적인 평가보다는 투기의 목적을 띠는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것들까지 NFT 아트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갖고 있었다. 미술시장에 많은 이들이 유입되는 것은 좋지만, 그 예술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III-47> 현행 NFT 아트 거래 사업이 미술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대처 방법\_작가 의견

구 분	내 용
실물판매 현행 NFT 아트 거래 사업이 미술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대처 방법 비중	- <b>NFT 미술이 디지털 아트에 주로 한정되어</b> 있기 때문에 작품과 작가 수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NFT 미술에 집중해 작업하는 작가들이 매체적 특수성과 한계를 고민하면서 작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이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미술사적 비평장치가 필요하다.(G작가)
NFT 판매 비중	- 컬렉티브 NFT의 경우 작품성과 거리가 먼 <b>투자 우선 목적의 NFT가 시장의 주류</b> 를 이루어 거품이 생길 우려가 있다. NFT는 캐릭터 이미지 위주의 가벼운 예술로 인식할 수 있는 부정적 시각이 있다. 다양한 미술분야의 가치 있는 작품을 NFT로 발행하는 시도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B작가) - <b>미술품을 투자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기준</b> 으로 평가하게 되고 예술 본연의 가치가 <b>훼손될 수 있다.</b>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다.(C작가) - 그간 미술 안에서(오프라인, 현실세계) 세밀하게 구분되어진 경계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융합되고, 각 영역들이 확장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또 그만큼 섬세하게 융합되지 못했을 때, 각각의 가치들이 뒤섞여 개성 없이 비슷해지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b>미술작품을 자본 가치로만 따지려는 태도도 경계</b> 해야 한다.(H작가)
실물판매와 NFT 판매 병행	- 최근 뜨거운 국내 경매시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 및 소장기록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b>NFT 거래 데이터 공개는 투명</b> 해야 하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새로운 제도와 정책은 구매자의 디지털 자산을 지키고, 저작권 관리에도 도움이 되어 기존 미술거래방식이 실패한 문제들을 시대 흐름에 맞게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D작가)
기타	- 잘 모르겠다.(A, F작가) - 어떤 뉴스에서 초등학교가 그려낸 이미지가 nft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단순하고 귀엽고 저렴하여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했었다. nft는 미술의 창작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 될지 새로운 장르가 될지 아니면 사라질지 궁금하다.(E작가)

## ② NFT 아트 종사자 의견

NFT 아트 종사자들은 어떤 작품으로서의 예술성, 미적 가치의 측면보다는 그것의 가치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이들은 NFT 아트를 실물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NFT 판매 비중이 높아질 경우 가장 우려하는 문제 중 하나인 투기와 자금세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

견이 있었다. 그리고 실물 판매와 NFT 아트 판매가 병행될 때는 사전에 NFT 아트의 거래방식 전반 즉 NFT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사전 지식을 교육받거나 쉽게 따라 시도해 볼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NFT 아트가 미술계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 자체보다는 미술 시장을 활성화하고, 작가층, 구매자층을 모두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III-48> 현행 NFT 아트 거래 사업이 미술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대처 방법\_NFT 아트 종사자 의견

구 분	내 용
실물판매 현행 NFT 아트 거래 사업이 미술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대처 방법 비중	없음
NFT 판매 비중	- 투기를 하는 자금세탁을 하려는 사람 즉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b>국내거래소 AML(자금세탁방지법)을 철저히 강화</b> 하고, 거래소의 파워가 대기업의 독식이 아닌, 다양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NFT 아트사 NFT디지털아트팀장)
실물판매와 NFT 판매 병행	- NFT시스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소비자는 도태되고 소외된다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는 타겟고객을 어디로 설정했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b>이해를 돕는 튜토리얼을 제작하여 소비를 유도</b> 할 수 있겠다.(NFT 아트사 사원)
기타	-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b>예술이 다각화되며 확장성을 가질 것이다.</b> 방지하기 보다는 적용해 나가는 편이 낫다.(NFT 아트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③ 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미술시장 종사자들은 아직까지 실물 예술작품에 익숙한 구매자들의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존재하지 않는 NFT 아트를 아직도 낯설어하기 때문에 여전히 NFT 아트가 실물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요즘 시도되고 있는 실물판매에 NFT 블록체인의 도입이나 암호화폐로 가상거래소에서 직거래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안전장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NFT 아트 거래가 대중화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본다면 아직 NFT 아트의 판매 가격을 형성하는 기준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금 더 시장의 논리로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다. 또한 실물 판매와 NFT 판매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물 작품을 NFT 아트로 변환할 경우에 따르는 저작권 문제, 소유권 문제 등이 아직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여전히 존재했다. 권리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NFT 아트로 발행되는 경우나, 그것이 어떻게 거래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되는 범위 등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III-49> 현행 NFT 아트 거래 사업이 미술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대처 방법\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구 분	내 용
실물판매 현행 NFT 아트 거래 사업이 미술계의 부정적인 영향과 대처 방법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선 하드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소유개념에서 컬렉터들이 괴리감을 느낄수 있으며, 해킹이나 분실(여러이유 등)으로 많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현재 암호화 화폐도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국립미술관 학예사)</li> </ul>
NFT 판매 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바라보게 될 것 같다.(A갤러리 큐레이터)</li> <li>- NFT 가격 폭락 시, 작가도 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미술관 변호사)</li> <li>- 아직은 NFT 시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가격이 거품이다, 고평가 되었다, 암호화폐에 기반한 파생상품이다 등의 의견이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특정 주제에 관심을 두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 발전 확대해나가야 한다. 컬렉터와 예술가의 커뮤니티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건강한 플랫폼의 역할도 중요하다.(시립미술관 후원회 실장)</li> <li>- 현재는 시행착오의 기간이다. 그것을 미술의 논리가 아니라 시장의 논리로 바라보고, 공정한 경쟁이 이어질 수 있게, 생산자(작가), 소비자(구매자), 판매자(딜러)로 인식하고 제도를 만들어내야 한다.(옥션사 관리팀장)</li> </ul>
실물판매와 NFT 판매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상에 공개되다 보니 아무래도 저작권 문제가 중요하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 복제 등 저작권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게 예술 작품 저작권 법을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 이다(미술이론가)</li> <li>- 기술의 안정화와 작가 지원 방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암호화 화폐를 위한 단순한 거래가 아닌 작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옥션사 직원)</li> <li>- 실물작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시에 NFT작품으로 변환시켜 거래하는 것은 소유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여지가 있다. 저작권 등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야기될 여지가 많다.(옥션사 이사)</li> <li>- NFT 미술 거래는 결국 미술작품의 유통방식에 대한 또다른 방식이다. 게다가 작품 자체의 가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미래에 대해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미술 저널리스트)</li> <li>- 새 분야인데다 플랫폼에는 국경이 없으니 규제나 통제 방법이 아직은 없다. 물론 그 점이 장점이지만 저작권 문제라던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려할 점이 있다.(전시기획자)</li> <li>- NFT 미술이 마치 실물 작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물작품이 갖는 특징과 NFT 미술 거래가 주는 효용을 각각 구분하여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이 정보는 작가, 딜러, 구매자(NFT에 대해 알고 있는 작가, 딜러, 구매자도 있겠지만 진입하기 어려워 하는 작가, 딜러, 구매자도 있으므로) 모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NFT 미술 거래의 효용과 문제점 등을 작가, 딜러, 구매자 각각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판단해 볼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키아프, 옥션 등에서 주최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NFT로 미술거래로 인한 사기나 범죄 피해도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NFT미술거래 관련 가이드라인 및 거래소 정보 등을 문제부에서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여 안내해야 한다.(시립미술관 학예사)</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B갤러리 큐레이터)</li> </ul>

10) NFT 아트가 확장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제도적 방향

NFT 아트가 조금 더 잘 정착되고, 미술시장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적, 정책적,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작가, NFT 아트 종사자, 미술시장 종사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 ① 작가 의견

작가들은 우선 NFT 아트에 대한 개념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디지털 아트의 범주 속에서 NFT 아트를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시각예술작가들이 NFT 아트를 제작하려 할 때 겪게 되는 기술적 문제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뿐만 아니라 NFT 아트의 거래서 해킹, 도용, 사기 등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컸다. 또한 저작권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프로세스나 프로토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III -50> NFT 아트가 확장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제도적 방향\_작가 의견

구 분	내 용
기술적 및 정책기반 확충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젊은 작가들에게 NFT 아트 시장이 주요하게 되면 그 시장을 목표로 두고 작업하게 되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전시 등을 통한 다른 예술적 가능성을 축소하고 온라인 마켓을 통한 성급한 판매에 집중하게 될까 우려된다. 단순히 실물 작품을 디지털 사진이나 영상으로 전환하여 NFT 아트로 통칭하는 것을 넘어 매체로서 <b>디지털 아트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뒷받침</b> 되어야 한다.(G작가)</li> <li>- 시각예술의 경우 회화, 조각, 설치 등을 매체를 다뤘었던 작가의 경우, 실제로 온라인상의 작품을 제작할시 기술상의 문제에 곧바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b>필요한 작가가 있다면 관련 교육 등의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b>(H작가)</li> </ul>
법적제도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FT는 예술의 형식이자 가상화폐의 형식이므로 일단은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b>원본복제의 문제, 해킹문제 등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b>되어야 한다.(B작가)</li> <li>- <b>투기 또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b>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C작가)</li> <li>- 무엇보다 <b>디지털 저작권, 소유권이 철저하게 정립되고, 그 개념들이 충분히 알려</b>져야한다. 엄정한 정책과 제도는 오히려 작가들이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고,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NFT미술세계의 자유가 되어준다. 그리고 NFT미술자산을 지키고 증대하는 기술, NFT미술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전시공간이 뒷받침되고, 인기 NFT미술을 근간으로 하는 상품시장 등이 순환되어야 할 것이다.(D작가)</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잘 모르겠다.(A,E작가)</li> <li>- 잘 모르겠다. 그러나 실물 작품 거래는 급격한 변화 없이 유지될 것이다.(F작가)</li> </ul>

## ② NFT 아트 종사자 의견

NFT 아트 종사자는 기술적으로는 NFT 아트를 보다 더 잘 향유할 수 있는 고해상도 콘텐츠 송출과 같은 기술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보완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범죄나 사기에 연루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금융거래, 세금 등의 법적인 정비를 먼저 갖추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표 III-51> NFT 아트가 확장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제도적 방향\_NFT 아트 종사자 의견

구 분	내 용
기술적 및 정책기반 확충에 대한 의견	- <b>고해상도 콘텐츠 송출</b> 에 대한 부분이 더욱 <b>발전</b> 해야한다.(NFT 아트사 사원)
법적제도에 대한 의견	- <b>법적인제도가 뒷받침</b> 되어 손해보는 일이나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NFT 아트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 해외 핀테크의 성장의 역사들을 리서치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블록체인 회사 등의 협력과 심포지엄 등을 통해 가상자산법, 거래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규제보다는 합법적인 거래를 통하여 문화예술영역이 보다 돈을 좇는 이미지나 투기성보다는 합법적으로 예술을 향유하고, 바람직한 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b>법적, 금융제도권, 국가차원에서 기반</b> 을 두어야 한다. (NFT 아트사 NFT디지털아트 팀장)
기타	없음

### ③ 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미술시장 종사자 역시 NFT 아트가 실물화 될 경우 혹은 실물작품이 NFT 아트가 될 경우 어떠한 구분을 둘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아직 부족함을 지적했다. NFT 아트의 정의, 미술개념적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NFT 아트가 자리를 잡아가면 갈수록 미술시장에서 그것의 위치는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금융거래, 세금은 물론 불법적인 소지가 있는 기술 등에 대한 법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불법적인 거래, 사기, 권리침해 등의 범죄에 예기치 않게 휘말릴 경우 어떠한 구제대책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술시장 종사자들은 정부가 지나친 간섭을 할 경우 다양성과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자율에 맡기자는 의견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 -52> NFT 아트가 확장되기 위한 기술적, 정책적, 제도적 방향\_미술시장 종사자 의견

구 분	내 용
기술적 및 정책기반 확충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좀 더 시장의 간편성을 띄어야 하고 간결화된 구매방법이 필요하다.(B갤러리 큐레이터)</li> <li>- NFT 아트 시장은 너무 좁은 개념이라 확장이 필요하다.(미술관 변호사)</li> <li>- 작품을 단순히 시장의 확대로만 보지 말고, 이것을 위해 <b>작품세계, 기술이 보완되어야 한다.</b> 더불어 작품으로서 인정받고자 노력해야 하며, <b>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b>(옥션사 직원)</li> <li>- 가치중립적 기술을 기반으로 형성된 시장을 통제하는 제도가 필요한지 반문할 필요가 있지만, 초기에는 <b>실물 시장과 개념이 혼돈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b>(옥션사 이사)</li> </ul>
법적제도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과 금융관련쪽 제도가 좀 더 뒷받침되어야 한다.(A갤러리 큐레이터)</li> <li>-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과 온라인 상에서 보더라도 <b>실제 작업을 마주한 것 같아 보일 수 있는 방식을 연구</b>해야 한다. 사이즈나 색감에 대해 정확히 알려야 구매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직은 작은 작품 위주로 구매할 것이다. <b>정책과 제도는 위의 저작권 문제 불법 유통 문제해결이 필요하다.</b>(미술이론가)</li> <li>- 확장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한 때 일 것이다. 가상의 공간에서 친구를 만나고, 쇼핑을 하고, 그림을 살 것이다. 솔직히 빠르게 개발되는 기술시대에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최고의 기술(블록체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기술이 현재 기준으로 그런거지 언제까지 최고의 기술일지 알 수 없다. <b>정부 제도는 이러한 구매자의 소유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피해를 당할 때 그에 따른 제도를 시급히 강구</b>해야 한다.(옥션사 관리팀장)</li> <li>- 이머시브한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감상경험) <b>제도적으로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률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b>(전시기획사)</li> <li>- NFT 미술 거래소에 대한 <b>투명성 확보와 이를 위한 검증 절차, 제도, 정책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b> 무엇보다도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유일무이한 정품임을 인증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과연 기존 <b>미술시장이나 문체부 등의 공공기관에서 이를 담당하고 해결할 만한 전문가가 있을지 의문이므로 전문가 양성 또는 확보가 필요하다.</b> 그리고 <b>NFT 미술 거래 시, 작가와 구매자가 인지해야 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육</b>을 제공하는 정책도 필요하다.(시립미술관 학예사)</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나친 정책개입이나 다양한 기술 적용은 오히려 시장에 악이될 것이다. 어느정도 <b>미술시장의 합의가 필요하다.</b>(국립미술관 학예사)</li> </ul>

### 3. NFT 시장의 전망

#### 가. NFT와 신기술 연계가능성

향후 NFT 시장은 메타버스 실감 기술인 VR, AR, MR, XR 등의 확장현실 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과 연계하여 확장될 것이다. 일례로, 메타버스가 본격화되었을 시기를 상정해보았을 때 NFT는 현실 경제와 가상 경제를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NFT는 메타버스에서 창작한 콘텐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를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투명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또 그것을 경제적 가치를

지불하고 거래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준다.

글로벌 통계 전문업체 ‘스태티스타(Statista)’는 메타버스 시장 규모를 2021년 307억 달러(약 36조7786억원)에서 2025년에는 2969억달러(355조6862억원)로 10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30년이 되면 시장 규모는 5000억달러(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sup>263)</sup>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속화된 메타버스 시장은 아직 일상에 파고든 상용화의 단계에 오지 않았다. 따라서 메타버스 실감 기술에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렌즈, 5G, 차세대 반도체, 퀀텀 컴퓨팅, 홀로그램 등과 같은 하드웨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 나. NFT 관련 신기술 유형

### 1) 웹3 기술

웹3(Web3)는 WWW의 창시자 팀 버너스 리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개인이 웹 생태계의 정보를 소비하고 콘텐츠를 창작할 뿐 아니라 직접 소유할 수 있다(Read-Write-Own).<sup>264)</sup>블록체인은 웹3의 이념을 현실화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웹1(Web1)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5년 무렵까지의 웹 생태계로서 사용자는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읽고 소비한다(Read). 아이폰 등장 이후 부상한 웹2(Web2)에서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정보를 읽고 콘텐츠를 직접 창작할 수 있다(Read-Write). 웹2에서는 웹 생태계에 개인의 참여가 늘어나 P2P(Peer to Peer, 개인 간 거래) 서비스가 성장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결되는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가 늘어났다. 그러나 웹2에서는 중앙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의 플랫폼 기업이 사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나 이것이 사용자의 이익으로 직결되지 않았고, 개인정보 침해 등 개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sup>265)</sup> 웹3는 개방과 소유를 주요한 가치로 삼으며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블록체인을 통해 보호한다. 웹3는 블록체인뿐 아니라 VR, AR, MR, 홀로그램 등 메타버스 실감 기술과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을 통해 개인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장시킬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데이터 주권의 중요성은 증폭될 것이며 이때 NFT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중앙화하지 않으면서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술도

263)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ET시론]메타버스와 NFT의 동반 성장”, 전자신문, 2022. 7. 14.

264) Forbes, “What Is Web3 All About? An Easy Explanation With Examples”, 2022. 1. 24. <https://www.forbes.com/sites/bernardmarr/2022/01/24/what-is-web3-all-about-an-easy-explanation-with-examples/?sh=2df247c42255>, (2022. 9. 19. 방문)

265) 김민지, 『NFT Art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예술』, 아트북프레스, 2022, 90~91면

있다. 하지만 웹3의 핵심 이념인 탈중앙화, 소유, 분산,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참여자의 컴퓨팅 자원을 활용하는 블록체인이 중요하다. 이때 참여자를 모으고 참여를 통한 가치 창출 기여도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이 필요하다. 266) 웹3에서는 NFT, DAO(탈중앙화조직),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과 다양한 첨단과학기술이 융합될 것이다.

웹3 시대에는 시공간의 제한을 넘어 다양한 DAO에 참여하며 디지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노동에 대한 보상은 NFT와 같은 토큰이나 암호화폐로 받아 이를 개인 가상자산 지갑에 저장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 소유권은 개인이 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금융권에 디지털자산 수탁을 의뢰하여 디지털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웹3 역시 초창기 개념이기에 관련 기술에 관한 투자와 개발이 선행되어야 확장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실리콘밸리에서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벤처캐피털(VC)을 비롯하여 주요 기업들이 웹3 시대를 대비하여 AR, NFT, 블록체인 인프라 등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2022년 7월 디즈니 엑셀러레이터로 선정된 6개 기업은 향후 디즈니의 웹3 미래전략을 짐작하게 한다. 디즈니 엑셀러레이터는 디즈니와 협력을 강화할 혁신 기업을 선정해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선정 기업의 다수가 웹3 기업이다.267) 디즈니는 Web 3.0 인프라, 콘텐츠, 하드웨어와 연관된 기업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 폴리곤, Web 3.0 기반의 콘텐츠 생산자 FlickPlay, Lockerverse, Inworld, AR 기반의 헤드셋 및 인터페이스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 Red 6를 선정했다. 268)

## 2) 블록체인

블록체인의 신기술 유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NFT의 기술적 특징과 동향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 발전의 흐름을 이해해야 현재 어떠한 기술 개발을 향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지와 향후 신기술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예측할 수 있다.

### 가) ERC-4907

이더리움 토큰 표준 기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는 NFT에 새로운 기능과 용도를 부가하며 관련 시장도 확장시킬 것이다. 일례로서 2022년 6월 이더리움 개발자 커

266) 동아일보, “블록체인-메타버스-NFT 활용 ‘웹3.0 플랫폼’ 가상자산 주목해야”, 2022. 6. 28.

267) 디크립트(Decrypt), Polygon Among Six Web3 Projects Selected for Disney Accelerator, 2022. 7. 14.

268) 쟁글(Xangle), <https://xangle.io/insight/research/62d13f2da7dc988b18f1330b>, (2022. 9. 19. 방문)



뮤니티는 ERC-4907을 새로운 이더리움 토큰 표준으로 채택하였는데, 이는 소유권을 입증하는 기존 NFT 기능에 사용자의 권리인 사용권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sup>269)</sup> 사용권은 일정 기간 경과 후 만료될 수도 있다. 이전의 NFT 대여는 별도 담보를 제공받은 후 해당 NFT를 전송하는 식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그러나 불안정한 가상자산의 가격 안정성으로 인해 담보 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높은 담보율을 책정할 수 밖에 없으며, 가격 하락의 대가로 청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NFT 소유권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렌탈 NFT(Rental NFT)인 ERC-4907은 해결할 수 있는데, 사용권이 있어 NFT를 전송하지 않고도 무담보 렌탈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자동 대여 만료도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ERC-4907이 상용화될 경우 NFT 소유자 외에 이용자를 공략한 시장이 확대될 수 있으며 시장 유동성이 활성화될 수 있다.<sup>270)</sup>

#### 나) 소울바운드토큰(SBT)

2022년 5월 이더리움 창시자이자 이더리움 재단의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원 글렌 웨일(Glen Weyl), 플래쉬붓 전략 고문 푸자울 하버(Puja Ohlhaver)와 함께 ‘탈중앙화 사회: Web3의 영혼을 찾아서(Decentralized Society: Finding Web3’s Soul)’ 라는 논문을 발표했다.<sup>271)</sup> 논문은 Web3 세상에는 사회 정체성이 없어 상호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울바운드토큰(SBTs: Soul Bound Tokens)을 제시했다. SBT는 NFT 2.0이라고도 불리는데, 양도할 수 없는 토큰(non-transferable token)으로 게임의 귀속 아이템이라는 명칭에서 유래했다. 지금까지의 NFT가 2차 거래로 재판매가 가능하며 제3자에게 전송할 수 있었다면 SBT는 한 번 받으면 본인의 지갑에 귀속되어 이후 제3자에게 거래와 전송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양도 불가능한 NFT이다.<sup>272)</sup> 따라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과 진위 여부를 입증하는 용도를 지닌 NFT와 달리 SBT는 졸업장과 각종 증명서 등 사회적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는 Web2의 중앙화 플랫폼에 기반하여 실제 신원을 기반으로 입증하는 디지털 신분증의 개념 그 이상이다. SBT는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Web3에서 해당 지갑을 통해 경력과 역량을 증명하며 신원 인증의 역할을 할 수 있다.<sup>273)</sup>

269) 깃허브, <https://github.com/ethereum/EIPs/blob/master/EIPS/eip-4907.md> (2022. 9. 19. 방문)

270) 디지털투데이, 시장 침체에도 넓어지는 NFT 활용처 문제 없나, 2022. 9.14.

271) SSRN,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105763](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4105763), (2022. 9. 19. 방문)

272) nft now, NFT 2.0: How Soulbound Tokens Could Change Your Life, 2022. 6. 24.

273) 쟁글(Xangle), SBT, 탈중앙화 세상에도 영혼이 있을까?, 2022. 8. 11.

예를 들어 NFT로 교육 수료증이나 졸업장을 발행할 경우 이는 양도 가능하며 거래할 수 있다. 해당 NFT를 보유한 사람이 진정 그 학교의 졸업생인지 보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SBT로 교육 기관의 학위나 인증서를 발행하면 거래가 불가능하기에 신원 인증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Web3에서 다오(DAO, 탈중앙화 조직) 생태계에 기여한 사람에게 SBT를 지급하여 기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도 있다. SBT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에도 신용 부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간의 디파이 대출 플랫폼은 거래자의 익명성으로 인한 위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대출금보다 높은 비중의 담보물을 요구했다. 이때 담보물 가치가 올라가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지만,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하면 해당 담보물이 청산될 수도 있다. 그런데 SBT로 신용 점수 시스템을 도입하고 차용자 보유자산을 식별할 수 있다면 지갑에 신용을 부여해 차등 담보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SBT 보유자에게 무담보 대출을 해줄 수도 있다.<sup>274)</sup> 또한 NFT는 소유자가 분실하거나 실수로 타인에게 양도하면 이를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SBT는 커뮤니티에 의한 복구 매커니즘을 갖추고 있다.

#### 다) 이더리움 2.0을 위한 머지(The Merge) 업데이트

분산 컴퓨팅 시스템인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트릴레마(Blockchain trilemma)’의 문제를 겪고 있다. 블록체인 트릴레마란 탈중앙성(decentralization), 보안성(security), 확장성(scalability) 중 2개의 요건만 충족할 수는 있지만, 이 3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블록체인의 삼중고 난제이다.<sup>275)</sup>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경우에도 탈중앙성과 보안성에 방점을 두어 여전히 높은 수수료와 느린 처리 속도와 같은 낮은 확장성 네트워크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탈릭 부테린은 2022년 8월 서울에서 열린 비틀 아시아 콘퍼런스에서 ‘이더리움의 기반 레이어로서의 미래’ (The future of the Ethereum base layer)라는 제목으로 한 기조연설에서 대대적인 이더리움 2.0을 향한 향후 업데이트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 말했다.<sup>276)</sup> 그는 더 머지(The Merge; 병합) 업데이트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22년 9월 중하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sup>277)</sup> 더머지란 기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새로운 체인인 비콘체인으로 병합하는 업데이트이다. 더머지가 완료되면 이더리움의 블록 증명 방식은 기존 채굴기 기반의 작

274) TEO, “SBT, 탈중앙화 세상에도 영혼이 있을까?”, 마마벤처스(MAMA Ventures) 스페셜 리포트, 2022, 5면

275) 렛저(Ledger), <https://www.ledger.com/academy/what-is-the-blockchain-trilemma>, (2022. 9. 19. 방문)

276) 코인데스크코리아,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더머지, 9월 중하순에 이뤄질 것”, 2022. 8.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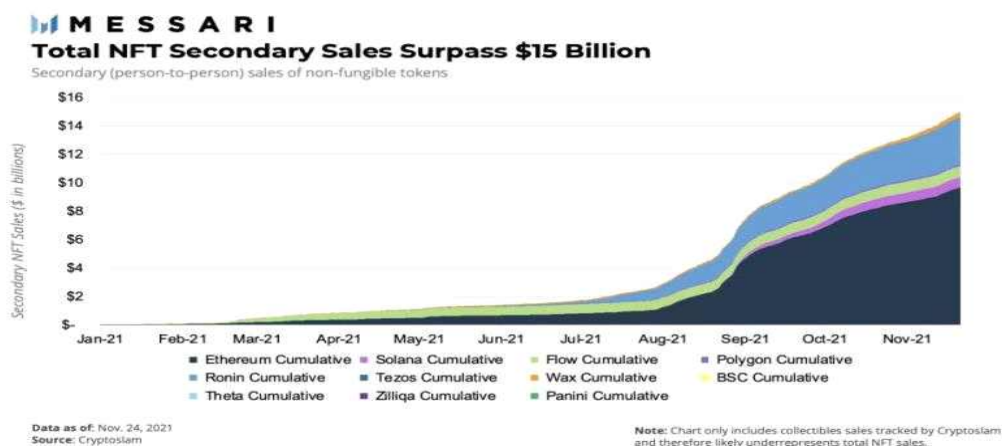
277) 블룸버그(Bloomberg), Ethereum Founder Buterin Forecasts Blockchain Merge on Sept. 15, 2022. 8. 12.

업증명(PoW · proof of work)에서 검증인의 지분을 기반으로 한 지분증명(PoS · proof of stake)으로 전환된다. 이는 블록체인 발전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이더리움 2.0 업데이트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면 지금까지 이더리움의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느린 거래 속도와 비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더리움 업데이트를 통해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가 개선된다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결제 시장이 확대될 수 있으며 사용성 개선으로 인해 NFT와 메타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비즈니스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또한 그간 채굴을 위해 불가피했던 탄소배출을 감소시켜 블록체인이 환경문제를 악화시킨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이더리움의 문제인 낮은 거래 처리량도 머지 업데이트 이후 여러 체인에 데이터를 분산하여 저장하는 샤딩단계를 거치면 개선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2년 8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orea Blockchain Week)에서 연설한 비탈릭 부테린은 머지 이후 롤업과 데이터 압축 기술을 통해 이더리움 초당거래속도(TPS)가 최대 6,000TPS까지 확대될 수 있고, 수수료도 0.25달러까지 인하될 것이라 보았다.<sup>278)</sup>

## 라) 이더리움 외의 블록체인

NFT라는 용어와 기술적 표준은 이더리움 개발자들에 의해 최초로 제안되었지만 이후 이더리움 외에 솔라나(Solana), 플로우(Flow), 테조스(Tezos), 클레이튼(Klaytn) 등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NFT가 동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sup>279)</sup>

<그림 III -4> Total NFT Secondary Sales of NFTs<sup>280)</sup>



278) 빙썸경제연구소, “이더리움, Merge 이후 이렇게 달라진다”, Crypto Insight 22년 8월 1호, 2022, 2면

279) 김승주, “NFT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50”, 메이트북스, 2022, 148면

280) blockchain.news, <https://cn.blockchain.news/analysis/NFT-Secondary-Sales-Surpass-15-Billion-amid-Monthly-Volume-Constantly-Topping-1-Billion-f29ea533-3ea9-4fad-8082-c14c0a1e2f89>, (2022. 9. 19. 방문)

NFT 시장에서 게임, PFP, 가상 세계, 스포츠, 수집품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2차 매출이 150억 달러를 돌파했다. 레이어1 블록체인인 이더리움, 플로우, 솔라나는 10억 달러에 가까운 2차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NFT 2차 매출이 거의 100억 달러에 달한다. 지금까지 NFT 시장을 이더리움이 주도해왔지만 미래에는 멀티체인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sup>281)</sup> 그러나 이더리움의 글로벌 시장 선점 효과와 비중을 추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블록체인별 거래량 지표를 나타내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볼 때, 국내에서 개발한 블록체인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은 가늠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그러나 국내 블록체인 시장의 대중화에 있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특징점을 강화하는 것은 시장 성장에 있어 중요한 시도이다. 국내에서 시작한 NFT 프로젝트일지라도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원한다면 가장 큰 이용자가 몰려있는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민팅을 시도하거나 혹은 해당 메인넷이 이더리움 메인넷과 연결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SK텔레콤이 개발한 NFT 마켓플레이스 '탑포트(TopPort)'의 경우, 이더리움의 사이드체인인 SKT Net(Ethereum Side Chain)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sup>282)</sup> 향후 글로벌 호환성을 고려해 이더리움과 폴리곤 메인넷에 민팅하여 확장성을 높일 계획이다.<sup>283)</sup>

<그림 III -5> 블록체인별 NFT 시장 점유율 (All-Time), Cyptoslam<sup>284)</sup>

**Blockchains by NFT Sales Volume (All-time) ?**

Blockchain	Sales	Buyers	Txns	Sellers
1  Ethereum	\$29,515,016,127	1,633,325	14,594,951	1,086,040
2  Ronin	\$4,088,370,282	1,788,025	17,529,098	1,332,708
3  Solana	\$2,638,088,347	732,881	12,543,887	806,823
4  Flow	\$1,109,467,624	463,104	23,451,793	454,079
5  Polygon	\$477,770,250	385,495	1,491,428	176,612
6  WAX	\$443,584,771	629,530	20,394,581	1,052,471
7  Avalanche	\$402,087,343	102,705	702,592	32,424
8  ImmutableX	\$246,098,360	104,780	9,404,717	121,214
9  BNB	\$118,957,904	145,917	568,468	89,004
10  Palm	\$57,827,503	69,801	563,953	13,980

281) 코빗리서치, “Chapter 1. 짧지만 대체불가능한 이야기”, 2022. 1. 19.

282) 탑포트, <https://www.topport.io/faq>, (2022. 9. 19. 방문)

283) 뉴스1, 야심차게 내놓은 SKT 탑포트의 '지갑'...NFT 시장 판도 바꿀까, 2022. 9. 18.

284) 크립토슬램(Cryptoslam), <https://cryptoslam.io/>, (2022. 9. 19. 방문)

## (1) 솔라나(Solana)

현존하는 가장 빠른 속도와 저렴한 수수료를 가진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 킬러라 불리는 솔라나(Solana)는 2017년 소프트웨어 개발자 아나톨리 야코벤코(Anatoly Yakovenko)와 그레그 피츠제럴드(Greg Fitzgerald)가 백서를 발행한 후 2018년 2월 내부 테스트넷을 발표했고, 2019년 3월 메인넷 개발을 시작해 2020년에 세상에 출시되었다.<sup>285)</sup> 솔라나는 일방향 해시함수(one-way hash function)이라는 암호기술을 이용한 역사증명(PoH: Proof of History) 기술로 중앙의 신뢰기관 없이 주어진 문서들이 특정 시간 순서대로 존재했음을 검증하며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준다.<sup>286)</sup> 이더리움 NFT는 ERC-721과 ERC-1155를 기술적 표준으로 따르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발행된 토큰이다. 발행자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커스터마이징하여 NFT에 새로운 기능들을 부여할 수 있으며 누구든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를 통해 NFT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솔라나 NFT는 발행량이 1로 고정되어 있는 SPL(Solana Program Library) 토큰이다.<sup>287)</sup> 이로 인해 솔라나는 발행자에게 민팅 리스트를 요청해 제공받지 않는 한 누구나 NFT 컬렉션 내의 각 NFT의 전송과 거래 등의 과정이 담긴 트랜잭션 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는 없다.

솔라나는 블록체인 기술과 하드웨어를 결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6월 24일 솔라나 블록체인 개발사 ‘솔라나 랩스(Solana Labs)’ 측은 자회사 솔라나모바일을 통해 2023년 1분기 자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Saga’ 출시를 밝혔다.<sup>288)</sup> 블록체인 기술과 하드웨어를 결합하고자 웹3 전용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이다. 솔라나 모바일 스택(SMS) 앱 개발 키트를 통해 모바일 생태계 지원을 시작해 원활한 디앱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모바일 장치에서 솔라나 월렛으로 연결가능한 모바일 월렛 어답터를 탑재하는 것이다. 또한 웹3 전용 스마트폰인 Saga에 안드로이드 모바일 결제를 지원하는 솔라나 페이와 같은 신규 기능을 도입한다. 시판 가격은 1,000달러로 책정되었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 (2) 폴리곤(Polygon)

폴리곤은 2017년 인도 뭄바이에서 4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시작한 스타트업으로 원래의 이름은 매틱 네트워크(Matic Network)였다.<sup>289)</sup> 폴리곤은 이더리움의

285) 코인데스크코리아,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바람들이 솔라나, 2021. 12. 20.

286) 김승주, "NFT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50", 메이트북스, 2022, 154~155면

287) 쟁글(Xangle), 솔라나 NFT 시장, 온체인 현황부터 리스크 요인까지, 2022. 5. 31.

288) Solana, "Solana Mobile debuts Saga, a flagship Android phone for web3", 2022. 6. 24, <https://solana.com/ko/news/saga-reveal>, (2022. 9. 19. 방문)

사이드체인을 만든 후에 블록의 요약본인 블록 루트(Block root)를 이더리움에 기록하는 플라즈마(Plasma)방식을 사용한다. 290) 2021년 2월 매틱 네트워크는 폴리곤으로 리브랜딩하며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탈중앙성과 보안성이라는 장점 위에 멀티체인을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선포했다.291) 폴리곤은 Polygon SDK(Software development kit)를 선보여 이더리움 생태계의 레이어2 멀티체인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292) 폴리곤의 미래 비전은 Web3 영역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AWS)가 되는 것이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웹사이트나 클라이언트의 응용 프로그램에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이다. 이처럼 폴리곤은 Web3 시대에 개발사를 위한 탈중앙화 멀티 솔루션 서비스 제공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293)

### 3) 인공지능

세계 최대 블록체인 행사 컨센서스(Consensus) 2022에서 블록체인 기반 AI개발사 ‘커먼컴퓨터(Common Computer)’는 AI를 적용한 NFT를 선보였다.294) 커먼컴퓨터가 직접 개발한 AI네트워크(AInetwork)를 활용하면 각각의 NFT에 챗봇, 보이스 봇 인공지능을 적용해 이용자가 NFT와 대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신이 보유한 NFT에 AI 기반 캐릭터를 부여해 메타버스에서 자신의 NFT와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295) 인공지능과 NFT가 결합한 디지털 휴먼 NFT가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창작 활동을 하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일례로, 유니큐(UneeQ)라는 스타트업의 ‘아임 소피(I’m Sophie)’ 프로젝트는 소피라는 디지털 휴먼 NFT를 판매하고, NFT 구매자를 메타버스 공간으로 초대한다.296) 소유자와 NFT 디지털 휴먼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NFT캐릭터는 소유자의 취향을

289) 폴리곤(Polygon), <https://polygon.technology/about/>, (2022. 9. 19. 방문)

290) Decipher a41,

<https://medium.com/a41-ventures/polygon-%EC%8B%9C%EB%A6%AC%EC%A6%88-1-polygon-pos-mass-adoption%EC%9D%84-%ED%96%A5%ED%95%9C-%EC%97%AC%EC%A0%95%EC%9D%98-%EC%8B%9C%EC%9E%91-b907d20fd84f>, (2022. 9. 19. 방문)

291) 폴리곤(Polygon),

<https://blog.polygon.technology/matic-network-becomes-polygon-ethereums-internet-of-blockchains-expands-mission-and-tech-scope/>, (2022. 9. 19. 방문)

292) Decipher a41,

<https://medium.com/a41-ventures/polygon-%EC%8B%9C%EB%A6%AC%EC%A6%88-1-polygon-pos-mass-adoption%EC%9D%84-%ED%96%A5%ED%95%9C-%EC%97%AC%EC%A0%95%EC%9D%98-%EC%8B%9C%EC%9E%91-b907d20fd84f>, (2022. 9. 19. 방문)

293) 코인데스크코리아(Coindeskorea), 폴리곤의 목표는 웹3의 AWS가 되는 것, 2022. 8. 8.

294) 한국경제, “NFT·P2E·AI까지 접목…美오스틴서 목격한 '가상자산의 진화' [종합]”, 2022. 6. 12.

295) 커먼컴퓨터, <https://comcom.ai/ko/>, (2022. 9. 19 방문)

296) UneeQ, “Media release: Sophie, the world’s most advanced AI digital human, to launch her own NFT video and art project”, 2022. 3. 17,

<https://digitalhumans.com/blog/sophie-uneeq-to-launch-digital-human-nft-art-project/>

과약해 맞춤형 미술품 NFT를 제작한다. 디지털휴먼 NFT가 창작한 NFT 미술품의 소유권은 기존 NFT 소유자가 동일하게 갖게 된다.<sup>297)</sup>

NFT 작품을 창작할 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도 있다. LG디스플레이는 미디어 아티스트 ‘레픽 아나돌’ (Refik Anadol)과 협업하여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 ‘인스퍼레이션4’ (Inspiration4)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재해석한 NFT 작품을 완성했다.<sup>298)</sup> 인스퍼레이션4는 2021년 9월 민간인 4명이 고도 575Km 지구 궤도를 탐험한 세계 최초 순수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다. 작품은 우주선의 오디오, 비디오, 탑승자 건강 정보 등 각종 비행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이 분석하고 재해석해 시각화한 것이다.

시에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조성하여 NFT 콘텐츠 제작의 대중화를 도모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광주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관한 ‘2022년도 연구개발(R&D) 혁신밸리 육성사업’ 공모에 ‘인공지능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능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 기술개발 및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선정돼 국비 83억5000만원을 확보했다.<sup>299)</sup> 이 사업에는 2024년까지 3년간 국비, 시비 등 총 128억원이 투입되어 향후 인공지능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을 조성할 전망이다. 블록체인, NFT, 빅데이터 등 AI 기반 플랫폼이 구축되면 웹툰 자동 캐릭터와 배경 생성은 물론 아바타 기반 실감 콘텐츠 제작 기술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NFT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된다.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출신 공학 박사들을 중심으로 미디어 아티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현역 뮤지션 등 다원적인 인력으로 구성된 AI 음악 기술 스타트업 ‘뉴튠(Neutune)’은 세계 최초 블록 뮤직(Block Music Eco-system) 기반 음악 NFT 플랫폼이자 인터랙티브 음악 서비스인 ‘믹스오디오(Mix.audio)’ 서비스를 선보였다.<sup>300)</sup> 믹스오디오는 청취자가 블록화된 음원들을 실시간으로 레고처럼 조합해 놀이하며 이를 2차 저작물로 만들어 창작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제공한다.<sup>301)</sup> NFT를 구매하면 아티스트와 NFT 소유자의 전용 커뮤니티가 형성되며 오프라인에서도 특별한 정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믹스오디오는 기존 음악이 아티스트에게서 유통사나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은 중간 매개자를 거쳐 청취자에게 전달되는 단방향 구조였던 것을 청취자가 지지하는 아티스트의 곡을 소유하고 공동 창작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NFT 판매 수익금은 온전히 아티스트에게 배분되어 창작자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웹 3.0 시대의 새

297) <https://iamsophie.io/>, (2022.9. 19. 방문)

298) LG디스플레이뉴스룸, “LG디스플레이 X 레픽 아나돌, 우주여행 기록을 우리 눈 앞에”, 2022. 5. 25.

299) 아시아투데이, “광주시, “인공지능과 함께 NFT 콘텐츠 쉽게 제작해요””, 2022. 4. 24.

300) 서울경제, 뉴튠 ‘믹스오디오(Mix audio)’ 쇼케이스 성료... 음악의 미래를 알리다, 2022. 7. 21.

301) 믹스오디오(mix.audio), <https://mix.audio/>, (2022. 9. 19. 방문)

로운 음악 표준을 만들고자 하고 있다.

#### 4) 메타버스

메타버스란 초월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상과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서,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공진화하는 가운데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뤄지며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다.<sup>302)</sup> 가상세계 내부에서 작동하는 경제 시스템이 중요하기에 그 세계 안에서 자체 통용되는 가상화폐가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 재화나 아이템을 거래 가능한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 하에 이뤄지는 모든 경제활동을 가상경제라 정의할 수 있다.<sup>303)</sup> 그런데 메타버스에서 창작한 콘텐츠나 아이템들은 복제가 용이하기에 디지털 자산의 진품과 소유권을 증명하며 거래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NFT의 역할이 중요하다. 메타버스의 수많은 자원들이 NFT로 토큰화되면 고유한 디지털 자산이 되며 이로 인해 거대한 가상경제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sup>304)</sup>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에 2022년 2월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이 입점해 오닉스 라운지(Onyx lounge)를 열었다.<sup>305)</sup> 오닉스는 실제 2020년 JP모건에서 출범한 세계 최초 은행이 이끄는 블록체인 플랫폼이자 사업부로 이더리움 기반 서비스 제품군을 기획하고 제작한다.<sup>306)</sup> 디센트럴랜드 오닉스 라운지는 JP모건의 메타버스 지점으로 향후 디지털 자산 관련 지급결제와 대출 등 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307)</sup> 이는 주류 은행이 메타버스 시대에 필요한 블록체인 관련 결제 기술 제공을 비롯하여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생태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302) 이승환, 메타버스비긴즈 인간X공간X시간의 혁명, 굿모닝미디어, 2021, 24면

303) 최형욱,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 한스미디어, 2021, 359면

304) 최형욱,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 한스미디어, 2021, 370면

305) 블룸버그(Bloomberg), There's a Portrait of Jamie Dimon Hanging in JPMorgan's Metaverse Lounge, 2022. 2. 16.

306) J.P.Morgan, <https://www.jpmorgan.com/onyx/index>, (2022. 9. 19. 방문)

307) 나스닥(Nasdaq),

<https://www.nasdaq.com/articles/jpmorgan-jpm-enters-metaverse-unveils-virtual-onyx-lounge>, (2022. 9. 19. 방문)



## IV. NFT 아트의 저작권법적 쟁점

### 1. 서론

일반적으로 ‘NFT’ 라고 하면 PFP(Profile Picture) 아트나 디지털 아트 작가의 특정 작품과 같이 “NFT로 발행된 콘텐츠 그 자체” 를 말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앞서서도 살펴본 것처럼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고유한 ID를 가진 디지털 파일로서, ① NFT 콘텐츠 데이터(Contents Data), ② NFT 메타데이터(Metadata), ③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콘텐츠 그 자체” 와 “해당 콘텐츠에 관한 각종 데이터와 계약이 포함된 디지털 파일” 은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디지털 파일인 ‘NFT’ 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NFT 발행의 대상이 된 콘텐츠 그 자체” 를 ‘NFT 아트 콘텐츠’ 라고 지칭한다.<sup>308)</sup>

‘NFT 아트 콘텐츠’ 는 다시 ① 디지털이 아닌 전통적 형태로 창작된 기존 콘텐츠를 원본 인증이나 거래 등의 목적으로 NFT로 발행한 경우와 ② 당초부터 NFT로 발행할 목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로 창작되어 NFT로 발행된 경우로 나뉘볼 수 있다. 두 가지 경우는 유사한 것 같으면서도 태생적 차이점으로 인하여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똑같이 NFT 아트 콘텐츠라고 표현하더라도 이를 구분한다. 다만 어떤 경우이든 NFT 아트 콘텐츠는 디지털 형태의 그림, 글, 음악, 사진, 영상 등과 같은 ‘콘텐츠’ 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법체계는 콘텐츠를 부동산이나 동산 등과 같은 유체물과 구분되는 무체물인 ‘지적재산(知的財産)’ 으로 보고 있다. 지적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지적재산권은 다시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저작권으로 나뉘는데,<sup>309)</sup>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영역에서 다루지고 있다. 이에 이번 장에서는 콘텐츠의 성격을 가지는 NFT 아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을 살피기로 한다.

물론 가상자산의 시대를 기존 법체계로 정의하거나 규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에 온전히 부합하는 법제를 만들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당장 직면한 현실과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법체계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하의 내용들을 살펴보

308) 본 연구에서, 미술품의 역할을 하는 실물형 NFT를 ‘NFT 아트’로 지칭하는 것과 구분함에 유의.

309) 첨단산업재산권(생명공학기술 등), 산업저작권(소프트웨어 등), 정보재산권(영업비밀 등), 인터넷 도메인 등을 ‘신지식재산권’이라는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면 알 수 있겠지만 기존 법제를 통해서도 정의하고 규율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NFT 아트 콘텐츠를 분석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아직 NFT 아트 콘텐츠에 관하여 판례나 확립된 견해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명백하고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이며, 특정 쟁점들을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고려하여 여러 쟁점을 짚음으로써 NFT 아트 콘텐츠 분야의 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유의가 필요함을 알리고, 향후 심층적 연구의 계기가 되도록 함에 중점을 두어 검토하고자 한다.

이번 장에서는 먼저 NFT가 저작물 생태계에 미친 과급력부터 살펴보기로 하고, 이어서 NFT 자체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NFT 아트 콘텐츠가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이 적용되는지를 살펴본 후 NFT 아트 콘텐츠의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검토한다. 이어서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과 저작재산권(복제권, 전송권, 전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저작인접권의 각 내용 중 NFT 아트 콘텐츠에 관한 쟁점들을 확인한다. 끝으로 무권리자의 NFT 발행(민팅)이나 표절 등 NFT 아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침해 발생 시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불법적 NFT 아트 거래에 관하여 NFT 플랫폼이 해야 할 역할도 살핀다. 끝으로 NFT 아트 콘텐츠 관련 저작권법 외의 다른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쟁점과 향후 NFT 아트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간단히 다루고자 한다.

## 2. NFT가 저작물 생태계에 미친 효과

NFT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저작물 생태계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거나 기대되고 있다. 가장 먼저 디지털 콘텐츠, 특히 미술작품의 유통 활성화에 혁신적인 역할을 해냈다. 이전까지 디지털 콘텐츠는 복제가 너무 쉽고 무한하게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원본과 복제본에 차이가 없다 보니 원본의 소장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다.<sup>310)</sup> 그런데 NFT의 등장으로 인터넷 역사상 처음으로 디지털 원본에 대한 증명 가능해지게 되었다.<sup>311)</sup>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성과 희소성이 부여되었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으며, 이에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도 활성화되어 창작자들이 수익도 얻을 수 있게 됐다.<sup>312)</sup>

310) 문화체육관광부 외 2인,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2022, 1면.

311) 성소라 외 2인, “NFT 레볼루션”, 더퀘스트, 2021, 32면.

312) 박경신, “NFT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계간 저작권 34권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10면.

더불어 NFT에 내재된 스마트 컨트랙트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형태의 계약과는 달리 거래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실행이 진행되어 거래 절차가 간소화되고, 그 실행은 자동으로 이루어져 신뢰도도 높으며, 계약서의 위·변조도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나타났다.<sup>313)</sup> 단순히 계약서뿐만 아니라 NFT는 그 거래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성과 투명성을 갖췄고, 이로 인해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술품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위작 문제 해결에도 진일보가 있었다.<sup>314)</sup> NFT는 앞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이나 분쟁 해결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저작물에 관한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정보들이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복제되거나 공유된 이력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315)</sup>

지금은 원본 혹은 진품의 인증을 주된 역할로 하고 있는 NFT이지만 향후 저작권의 증명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다보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록 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막상 저작권의 보유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할 경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인터넷에 유통되는 콘텐츠들 중에는 누가 저작자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른바 ‘고아저작물(orphan work)’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태생적으로 인증 기능을 갖춘 NFT가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기존의 저작권 등록이나 인증 제도를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316)</sup>

다만 뒤에서 살펴겠지만, 무권리자의 NFT 발행과 같이 NFT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한 저작권 침해와 분쟁의 양태도 존재하기에 반드시 긍정적 효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NFT가 저작물 생태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원본인지 여부의 인증이 가능해지고 그 거래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파급 효과라고 할 것인데, 이에 따라 거래의 전제가 되는 ‘소유’라는 개념이 디지털 영역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313) 신봉근, “NFT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 NFT의 사법적 성질과 권리의 대상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99면.

314) 박경신, 앞의 논문, 11면.

315) 박경신, 앞의 논문, 13면.

316) 박경신, 앞의 논문, 11면.

### 3. NFT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가. 물건의 ‘소유’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의 구분

NFT는 보통 콘텐츠의 거래 기록을 통해 원본을 ‘소유’함을 블록체인이라는 디지털 방식으로 인증하는 용도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어떠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 법체계상 원칙적으로 민법이 규율해야 할 영역이다. 그런데 앞서 우리 법체계상 콘텐츠는 무체물인 지적재산으로서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서 규율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단순히 보면 하나의 대상에 대해 두 가지 영역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기에서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과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구분됨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우선 디지털 방식의 NFT 거래와 무관하게, 전통적 형태의 콘텐츠 거래로서 조각상이 거래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작가가 창작을 완료하면 하나의 ‘콘텐츠(미술작품)’이자 ‘물건’이기도 한 조각상이 생긴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하므로(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작가는 그 순간 미술작품 창작에 따른 ‘저작권’을 가지고, 새롭게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도 가지게 된다. 이어서 작가가 그 조각상을 판매하여 이를 구매자에게 인도하면 구매자는 그로부터 그 조각상이라는 물건을 배타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듯이 구매자가 조각상을 소유한다고 하여 그 작품의 창작까지 구매자가 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조각상의 창작자는 여전히 작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조각상이라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있는데, 미술작품을 창작한 자로서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남는 분리 현상이 발생한다.<sup>317)</sup>

이처럼 미술작품, 즉, 콘텐츠에 관하여 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211조)인 ‘소유권’과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권법에 따라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이 주체를 달리하여 동시에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 나. NFT에 대한 소유권 개념의 인정 여부

이를 바탕으로 다시 NFT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는 NFT 플랫폼에서 NFT를 구매하는 순간 위의 전통적 형태의 콘텐츠 거래와 동일하게 당연히 ‘저작권’과

317) 미술작품을 거래하면서 저작권까지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소유권’이 동시에 따로 존재하고, 당연히 NFT의 구매자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NFT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인정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NFT를 현행법상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 제98조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유체물’이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고 사람의 감각에 의하여 지각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sup>318)</sup> 고체, 액체, 기체 등이 그 예이다. 앞서 살펴본 전통적 형태의 거래에서 조각상의 경우 유체물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디지털 파일에 해당하는 NFT는 유체물이 아니라는 점은 자명하다. 결국 NFT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다수설은 NFT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고 있다.<sup>319)</sup> 물건의 성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타적 지배가능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데 NFT는 이러한 성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와 달리 NFT는 그 특성상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고 중앙집중식 시스템의 디지털 토큰의 한계를 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독립하여 존속할 수 있는 것이며 ‘자연력’의 의미를 엄격하게 이해할 필요없다는 등의 근거로 NFT를 물건으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sup>320)</sup>

NFT의 물건성에 대해 아직 법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행법에서 NFT를 ‘물건’으로 인정하여 소유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sup>321)</sup> 특히 디지털 형태로 창작된 작품은 NFT 거래 시 대부분의 경우 원본 파일 자체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파일의 특성상 전송되는 순간 원본이 아닌 사본이 된다는 특징도 있겠지만, 이를 넘어 사본조차도 이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콘텐츠 원본 파일이 NFT에 포함되면 용량이 너무 커져 거래 비용도 폭증할 수 있고 거래 속도도 늘어지다 보니, 대부분의 NFT는 원본 파일을 블록체인 외부에 보관하고 NFT에는 원본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 등 메타데이터만 포함하는 이른바 ‘오프체인 저장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22)</sup> 즉, 구매자가 NFT 거래에 의해 어떠한 형태로든 NFT 아트 콘텐츠 원본을 가지게 됐다고 볼 행위 자체가 없는 것이다.<sup>323)</sup>

318) 네이버 사전(표준국어대사전)상 ‘유체물(有體物)’의 정의.

319) 신봉근, 앞의 논문, 102면.

320) 윤종수·표시영, “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법조 제70권 제6호, 2021, 230-231면.

321) 대법원도 최근 비트코인에 대해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322) 김민지, “NFT Art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예술”, 아트북프레스, 2022, 311면.

결국 NFT는 ‘물건’ 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NFT에 있어서는 ‘소유권’이라는 개념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인다.<sup>324)</sup> 다만 이 경우 이미 사실상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하는 상태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NFT 거래가 법적으로는 도대체 무엇을, 무엇에 관한 권리를 거래하고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지는 것인 바,<sup>325)</sup> 향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은 필요해 보인다. 우선 현재의 상황에서는 NFT 아트 거래 시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지는 NFT 거래에 내포된 스마트 컨트랙트(계약)에 의해 발생한 계약상 채권에 대한 해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는 NFT 거래 시 구매자가 계약상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해지지 않은 영역에 대한 규율은 법률이 해야 하고, NFT가 ‘물건’ 이 아니라고 본다면 결국 ‘지적재산’의 영역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지적재산권법, 그중에서도 저작권법이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NFT로 발행된 NFT 아트 콘텐츠라고 하여 당연히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NFT 아트 콘텐츠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 4. NFT 아트 콘텐츠의 저작물성

##### 가. ‘저작물’의 정의

NFT 아트 콘텐츠는 그 단어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예술 작품으로서 저작물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전통적 형태로 창작됐다가 NFT로 발행된 기존 콘텐츠의 경우 본 연구에서 특별히 저작물성을 검토할 이유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NFT로 발행할 목적으로 디지털 형태로 창작된 NFT 아트 콘텐츠의 경우 엄격히 판단하면 ‘저작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시장에 의해 NFT 아트로 발행되고 거래될 수 있는 가치는 인정받을지라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323) 다만 전통적인 형태로 창작된 기존 작품을 NFT로 발행한 경우 NFT 아트가 거래될 때 원본 작품인 유체물을 함께 인도하여 명확하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324) 따라서 이하에서 NFT 플랫폼에서 이를 구매한 사람을 지칭함에 있어서는 NFT 아트의 ‘소유자’라는 표현의 사용은 지양하고, ‘구매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325) 김병일, “NFT 아트와 저작권 이슈”, KISO저널 44호, 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1, 10면.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위 정의를 바탕으로 NFT 아트 콘텐츠가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하여 모두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① 인간이 자신의 사상 또는 감정을 담은 것이어야 하고, ② 표현된 것이어야 하며, ③ 독자적인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각 요건 별로 저작물로 인정될지 여부가 불명확한 NFT 아트 콘텐츠에 관하여 살펴본다.

## 나.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첫 번째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인간’이 자신의 사상 또는 감정을 담은 것이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인간’이 창작한 것만이 저작물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하여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재 NFT 아트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PFP(Profile Picture) NFT’이다. 크립토펙크(CryptoPunks),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BAYC; Bored Ape Yacht Club) 등 최근 NFT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주요한 프로젝트로서 거대한 커뮤니티를 형성한 PFP NFT는 일반적으로 개별 작가의 작품이 아니라 개발자, 아티스트, 커뮤니티 빌더, 프로젝트 매니저, 디파이 빌더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제너러티브 아트(Generative Art)’ 방식으로 만들어진다.<sup>326)</sup>

그런데 제너러티브 아트는 알고리즘이 설정된 컴퓨터 시스템에 의하여 결과물이 생성하는 것인 바 이러한 제작 방식의 특성상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인간이 창작한 것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이는 ‘인공지능(AI)에 의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직결되는데, 그 인정 여부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내에서는 관련 법체계의 공백 상태인 가운데, 해외에서도 인공지능 자체를 저작자로 인정하는 입법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컴퓨터 창작물(Computer Generated Works)’의 저작물성을 인정하는데, 이 또한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을 고려하여 입법된 것은 아니므로,<sup>327)</sup>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관련 법체계를 마련하고자 검토에 착수한 상태

326) 김민지, 앞의 책, 95면.

327)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 - 저작물성과 저작자 판단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9호, 한국언론법학회, 2020, 81면.

이며,<sup>328)</sup> 관련하여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던 바도 있다.<sup>329)</sup>

현행 저작권법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제너러티브 아트는 ‘인간’이 컴퓨터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단순한 도구로만 이용하여 직접 창작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 시스템’이 스스로 창작의 본질적 역할을 모두 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저작물성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이다. 이에 관하여 작가 또는 제작자가 제너러티브 아트의 여러 요소들에 관한 무작위성을 얼마나 통제하는지 혹은 이에 얼마나 의지하는지에 따라 저작물성을 판단하는 견해가 가장 유의미한 분석으로 보이나,<sup>330)</sup>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명확한 입법이나 법원의 판단 등에 의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제너러티브 아트 방식을 이용한 PFP NFT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담은 것’이어야 하므로, NFT로 발행된 대상이 특정 신발, 스포츠 선수 카드 등과 같은 제품이거나 NFT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불과하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래에 있어서도 저작권법이 적용될 수 없음은 자명할 것이다.

또한 NFT 아트 콘텐츠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NFT 자체를 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는데, NFT는 앞서서도 본 바와 같이 콘텐츠 그 자체가 아니라 “콘텐츠에 관한 각종 데이터와 계약이 포함된 디지털 파일”이고, 많은 경우에 콘텐츠 원본은 NFT 내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외부에 보관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NFT가 독립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sup>331)</sup>

## 다. 표현

저작권법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하여 ‘표현’된 것만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저작물로 보호하고, 이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소설 등에 있어서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혹은 어떤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등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sup>332)</sup>

3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2020.

32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2020. 12. 21. 발의, 의안번호 제2106785호).

330) 박지원, “NFT를 통해 유통되는 제너러티브아트의 저작물성 검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이슈리포트, 2022.

331) 문화체육관광부 외 2인, 앞의 자료, 3면.

332)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다14378 판결 등.



따라서 만약 작가가 기획 단계 수준의 아이디어나 자신만의 독자적 화풍, 연출 기법 등을 NFT로 발행하더라도 이는 저작물로는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 <짜> 포맷의 저작물성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영상물을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들은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미 사용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그 자체로만 보면 창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방송사 측의 축적된 방송 제작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소들만을 선택하여 나름대로의 편집 방침에 따라 배열한 영상물은 이를 이루는 개별요소들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구성요소의 선택이나 배열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우러져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과는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던 사례를 고려할 때,<sup>333)</sup> 방송 프로그램 포맷과 같이 여러 아이디어의 선택이나 배열이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도록 충분히 구체적으로 어우러졌다고 인정되는 NFT 아트 콘텐츠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구체적으로 표현방법을 정하지 않은 아이디어의 수준인 콘텐츠를 NFT로 발행한다면 자신이 직접 기록한 원본 아이디어라는 점 정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입증할 수 있겠지만, 자신이 최초로 NFT로 발행했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는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NFT 플랫폼에서 발견한 타인이 오히려 그 아이디어를 무단 이용하여 다른 콘텐츠를 만들어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라. 창작성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마지막 요건으로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하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sup>33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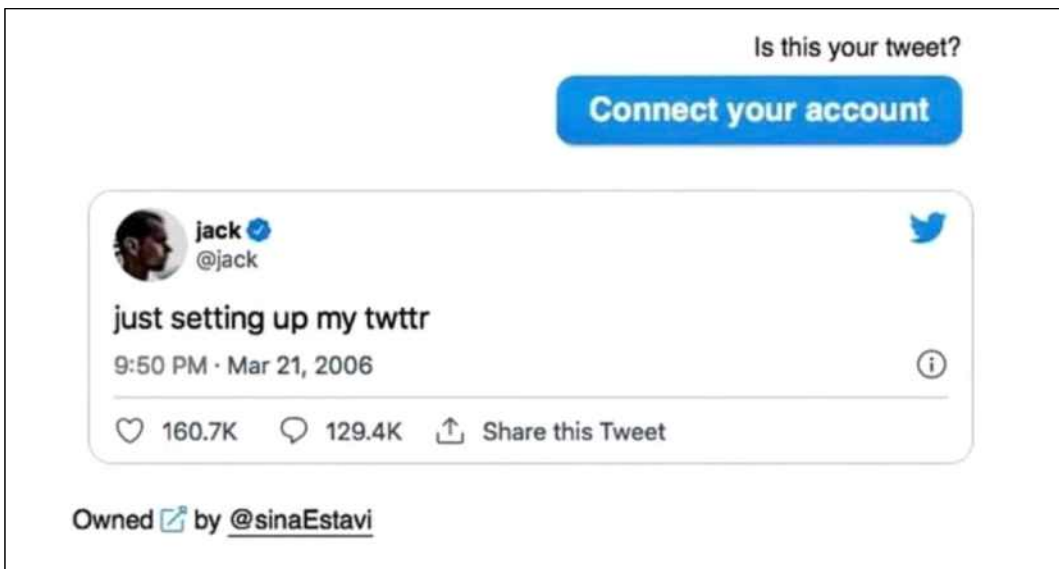
따라서 만약 촬영자의 어떠한 의도나 창작적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던 평범한 사

33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334)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진이 우연히 ‘짤(meme)’로 유행하여 이를 NFT로 발행하더라도, 해당 사진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때 NFT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잭 도시 트위터 공동 창업자의 첫 트윗’ NFT는 그 희소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높은 가치가 인정될 수 있지만, 콘텐츠 그 자체에는 창작적 노력이 없기 때문에 저작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림 IV-1> 잭 도시 트위터 공동 창업자의 첫 트윗



한편 최근 다수의 NFT 프로젝트들은 홀더에게 자유로운 2차 창작 권한을 부여하면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노리는데,<sup>335)</sup> 이를 통해 생성되는 2차 창작물에 있어서도 ‘창작성’은 중요한 요건이 된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에 대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sup>336)</sup> 이러한 2차적저작물과 관련하여 법원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권 침해로 보는 한편,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기준을 정한 바 있다.<sup>337)</sup> 즉, 원작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작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38)</sup>

335) 한국경제, “홀더들이 직접 나선다…2차 창작으로 뭉친 NFT 프로젝트”, 2022. 9. 19.

336) 물론 원작의 저작자도 보호된다(저작권법 제5조 제2항).

337)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등.

338) 한편, 전통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기존의 작품을 NFT로 발행하는 행위가 2차적저작물 작성 행위에

이상과 같이 무엇이든 NFT로 발행하기만 하면 당연히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작가의 독자적인 표현과 개성이 반영된 NFT 아트 콘텐츠만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마.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보호 방법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NFT 아트 콘텐츠가 커뮤니티를 통해 그 희소가치를 인정받거나 예술의 영역에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행사 등을 할 수 없다.<sup>339)</sup> 다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NFT 아트 콘텐츠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다.<sup>340)</sup>

특히 ‘NFT’의 경우 앞서 ‘물건’이나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설명했지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022. 4. 20. 시행) 제2조 제1호의 ‘데이터’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sup>341)</sup> 같은 날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이러한 데이터를 부정 사용하는 특정 행위들을 부정경쟁행위로 정의하여 금지하고 있다. 또한 만약 특정 NFT 아트 콘텐츠가 저작물로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여전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저작물’의 요건을 살펴봄으로써 NFT 아트 콘텐츠가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많은 NFT 아트 콘텐츠가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NFT 아트 콘텐츠와 저작권자에 관한 쟁점을 살펴본다.

---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위에서 별도로 살펴보기로 한다.

339) 한편, 저작권법은 저작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합법성’이나 ‘윤리성’을 제시하지 않는 바,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작품일지라도 저작물로서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음란물도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도 10872 판결).

340) 같은 취지에서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세법상 ‘미술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34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1호는 ‘데이터’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한다.

## 5. NFT 아트 콘텐츠와 저작자

### 가. 저작자

저작권은 특허나 상표 등과는 달리 등록과 같은 형식적 절차 없이도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바로 저작권이 발생하며(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 NFT 아트 콘텐츠라면 이를 창작한 자가 저작자가 된다. 일반적으로는 저작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만, 저작권법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저작자로서 이름이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하면서도 만약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경우 저작물의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8조). NFT 아트 콘텐츠에 있어서도 저작자가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최초로 NFT로 발행한 자가 저작자로 추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추정’이므로 다른 사실이 입증되면 그 사실에 따라 저작권이 귀속될 것이다.

한편,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그 법인 등이 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및 제9조). 만약 NFT 아트 콘텐츠를 특정 작가가 아닌 법인이나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춘 프로젝트팀 등이 만든 경우에는 해당 NFT 아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그 프로젝트팀이 가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가장 유명한 NFT 프로젝트 중 하나인 크립토펙크(CryptoPunks)의 경우 약관을 통해 이를 운영하는 회사인 유가 랩스(Yuga Labs)가 NFT 아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유함을 천명하고 있다.<sup>342)</sup>

### 나. 공동저작자

최근 이미 수많은 양질의 지적재산을 보유한 방송사, 기획사, 미술관, 옥션 등이 NFT 아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미디어 업계는 이를 단순히 일시적인 수익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최근 미디어 업계는 콘텐츠(Content), 커뮤니티(Community), 커머스(Commerce) 등 일명 3C를 결합한 통합 소비(Converged Consumption) 트렌드에 따라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sup>343)</sup> NFT 아트 콘텐츠는 커뮤니티의 파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

342) 크립토펙크(CryptoPunks), <https://licenseterms.cryptopunks.app> (2022. 9. 19. 방문)

343)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디어 업계의 3C 통합 소비 트렌드”, 미디어 이슈 & 트렌드 50호, 2022.

기 때문이다.

세계의 콘텐츠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이미 NFT를 쏟아 내고 있는데, 방송사, 기획사, 스포츠업계는 물론 언론사까지도 NFT 시장에 참전하고 있는 상황이다.<sup>344)</sup>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채널A의 ‘도시어부 NFT’, MBC의 ‘무한도전 NFT 전시회’ 등이 진행됐고, 최근 큰 성공을 거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관하여도 극중 내용을 소재로 한 글로벌 NFT 프로젝트인 ‘이상한 고래 클럽’이 출범하기도 했다.<sup>345)</sup>

한편, 위와 같은 과정에서 방송사 등은 단독으로 NFT를 발행한 것이 아니다. 채널A는 NFT 프로젝트팀 트레저스클럽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고, MBC는 NFT 아트 플랫폼 아트토큰과 협업했다. 영화 업계에서도 미디어그룹 NEW와 트레저스클럽의 합작으로 영화 “특송”으로 제너러티브 아트 NFT를 내놓았다. 미디어 업계 외에도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대기업 등도 NFT 프로젝트팀이나 플랫폼과 공동으로 NFT를 발행하고 있으며, 개별 디지털 아트 작가들의 작품에도 프로젝트팀이 깊게 관여하거나 작가들이 공동으로 NFT 아트 콘텐츠를 창작하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공동저작물’이라고 정의하면서(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이에 대한 권리 행사 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당사자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NFT 아트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NFT 아트 콘텐츠는 공동저작물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저작권은 창작에 참여한 저작자들 전원에게 귀속됨이 원칙이다. 물론 회사 단위의 협력 작업 시 사전에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저작권을 일방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거나 일방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규모의 협업 시에는 이를 미처 정하지 못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공동저작물인 NFT 아트 콘텐츠에 대한 모든 저작권 행사를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하여야 하고(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및 제48조 제1항), NFT 아트 콘텐츠에서 발생한 수익은 그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되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여 나누어야 한다(저작권법 제48조 제2항).

## 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권법상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같은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

344) 한정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와 NFT”, 미디어 이슈 & 트렌드 50호, 2022.

345) 뉴스1, “'우영우 NFT' 나온다…폴리곤 기술 지원받은 '이상한 고래 클럽' 출시”, 2022. 8. 5.

가 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말하지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에서는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동일한 인물이겠지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이후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서로 다른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sup>346)</sup>

뒤에서 다시 살펴겠지만 NFT를 발행하는 행위는 복제나 전송과 같은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수반되기 때문에 무단으로 NFT를 발행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 저작재산권 양도로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달라진 상황인 경우 어느 한쪽의 NFT 발행으로 인한 분쟁 발생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분쟁이 실제 발생한 사례가 미국의 Miramax, LLC v. Quentin Tarantino 사건이다.

미국 영화계의 거장 쿠엔틴 타란티노(Quentin Tarantino) 감독은 2021년 자신이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했던 대표적 히트 작품인 1994년작 <펄프 픽션>의 각본과 미공개 장면 등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려고 했다. 그런데 타란티노는 1993년 할리우드 영화사 미라맥스(Miramax)와 영화의 제작 및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라맥스에 저작권과 상표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양도한 바 있었고, 다만 각본 출판 등 출판물(전자 포맷 포함)을 인쇄할 권리나 TV 속편으로 리메이크할 권리 등 일부 권리는 이전하지 않고 유보했다. 미라맥스는 타란티노의 NFT 발행 및 판매에 대하여 계약 위반,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타란티노는 각본에 대한 출판권을 자신이 보유했기 때문에 NFT를 발행 및 판매할 권리가 있다고 다투었다. 타란티노는 분쟁에도 불구하고 NFT 발행을 강행했었으나 지나친 시장 변동성을 이유로 판매를 취소했었고, 위 소송은 최근 양측이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고 협업을 하는 것으로 결론난 것으로 보인다.<sup>347)</sup>

만약 위 사건이 끝까지 진행됐다면, 타란티노에게는 일부 권리들만 제한적으로 유보되어 있었고 나머지 권리 일체를 미라맥스가 포괄적으로 양도 받았기 때문에 타란티노가 미라맥스의 허락 없이 <펄프 픽션>에 관한 NFT를 발행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인정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sup>348)</sup> 다만 본 건은 법원이 계약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NFT 발행을 어떤 행위로 이해하느냐가 관건이었으므로 만약 법원이 각본의 NFT 발행을 출판권 범위 내로 판단했다면 타란티노의 선방으로 끝났을 수도 있다.<sup>349)</sup>

---

346) 후술하겠지만,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것이므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47)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Quentin Tarantino settles Miramax lawsuit over Pulp Fiction NFTs”, 2022. 9. 9.

348) 심민선·문명섭, “NFT 관련 IP 분쟁 현황 및 시사점”, IP Focus 제2022-17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15면.

349) 코트라(kotra) 해외시장뉴스, “영화 대본 NFT 출시한 타란티노 감독, 미라맥스로부터 저작권 및 상

한편,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작품을 처음 창작한 저작자에게 유보되기 때문에,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 권리 행사에 유의가 필요한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저작권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6. NFT 아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의 내용

### 가. 저작인격권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인격권으로는 ①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저작권법 제11조), ②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저작권법 제12조), ③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저작권법 제13조)가 있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하는데(저작권법 제14조), 이는 곧 저작인격권의 양도, 포기, 상속 등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저작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저작재산권의 양도만을 의미할 뿐,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유보된다. 이로 인해 만약 저작자로부터 작품의 저작권을 모두 양도받거나 NFT 발행을 허락받은 자가 NFT 발행을 하더라도 여전히 메타데이터에 입력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저작자의 성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NFT 아트 콘텐츠의 내용, 형식, 제호를 변경하여 발행할 수는 없다.<sup>350)</sup>

한편, NFT 아트 콘텐츠의 저작권 양도를 수반하는 조건으로 NFT를 구매한 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보호해야 하므로, NFT 아트 콘텐츠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다. 특히 NFT의 희소성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NFT 아트 콘텐츠구매자가 원본을 파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 나. 저작재산권

#### 1) 저작재산권의 내용

---

표권 침해로 피소”, 2022. 5. 18.  
350) 문화체육관광부 외 2인, 앞의 자료, 5~6면.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재산권으로는 ①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저작권법 제16조), ②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저작권법 제17조), ③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방송, 전송 등)할 권리(저작권법 제18조), ④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저작권법 제19조), ⑤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저작권법 제20조), ⑥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저작권법 제21조), ⑦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저작권법 제22조)가 있다.

## 2) NFT 발행(민팅)과 저작재산권

‘민팅’이라고 하는 NFT의 발행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전송권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전통적 형태로 존재하던 기존 작품을 NFT로 발행하기 위하여 디지털화 하는 과정은 저작물에 대한 ‘복제’ 행위에 해당하고, 이처럼 디지털화된 저작물 또는 처음부터 디지털 아트로 제작된 저작물을 NFT의 메타데이터에 포함시키거나 NFT 플랫폼의 서버에 업로드하는 행위 혹은 링크를 통해 원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링크 주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전송’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sup>351)</sup>

따라서 만약 저작권이 없는 자가 저작물을 NFT로 발행(민팅)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복제권과 전송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법 제35조의2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도록 정하지만, 단서를 통해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무단 NFT 발행이 일시적 복제를 이유로 복제권 침해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sup>352)</sup>

한편, 기존 작품을 단순히 민팅하는 행위는 디지털이라는 형식으로서의 변형은 있지만 별도의 창작성이 가미되지 않는다면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팅 과정에서 별도의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로 상당한 변형을 하는 경우에는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가 될 수도 있다.

---

351) 전재림, “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저작권 동향 2021 제 1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5면.

352) 다만 저작자로부터 작품에 대한 NFT 발행을 허락 받은 자라면 NFT 발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컴퓨터에 복제되는 행위들에 대해 모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의 근거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NFT 거래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관계

앞에서 살펴봤던 NFT에 대해 소유권의 개념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내용을 자칫 잘못하면 NFT 거래는 저작권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NFT 거래 시 당연히 NFT 아트 콘텐츠의 저작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많은 경우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NFT 거래 시 어떤 권리가 이전되는지는 NFT에 내포된 스마트 컨트랙트(계약)에 의해 발생한 계약상 채권을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 계약 조건에 저작권 이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NFT 거래 시 NFT 아트 콘텐츠의 저작권도 이전되지 않는다.

다만 많은 경우 NFT의 구매자는 NFT 아트 콘텐츠를 이용할 권한까지도 함께 부여받게 되고 이에 대한 근거로 ① 저작권이 양도되는 조건이 포함된 경우와 ②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라이선스) 조건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sup>353)</sup> 일반적으로 NFT 아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의미이다.<sup>354)</sup>

NFT 거래 시 구매자에게 허락되는 경우가 많은 권리로는 해당 NFT 아트 콘텐츠를 전시할 권리이다.<sup>355)</sup> 대법원은 저작권법상 ‘전시’를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등의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데,<sup>356)</sup> 온라인 웹사이트나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통한 전시 행위는 이러한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sup>357)</sup>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35조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데,<sup>358)</sup>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온라인에서 전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NFT의 구매자는 온라인에 전시하기 위해서는 저작자가 사전에 이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판매하지 않은 이상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sup>359)</sup>

353) 김현경, NFT콘텐츠 거래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33권3호, 성균관대학교, 2021, 398-401면.

354) 다만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NFT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분별한 저작권 행사가 NFT에 내재된 계약 조건의 위반이 될 수 있고 구매자들의 신뢰를 잃어 향후 작품 활동이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355) 만약 영상이나 음악과 같은 NFT 아트 콘텐츠라면 전시가 아니라 ‘공연’할 권리가 될 수도 있다.

356)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357) 최동배·김별다비, “NFT 미술관의 가능성과 수반되는 법적 문제점”,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125-126면.

358)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단서).

359) 최동배·김별다비, 앞의 논문, 126면.

또한 NFT 구매자에게 2차적저작물의 작성도 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장 유명한 NFT 프로젝트이기도 한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BAYC; Bored Ape Yacht Club)의 경우 약관을 통해 구매자로 하여금 2차적 창작을 하여 MD 상품 생산 및 판매와 같은 상업적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sup>360)</sup>

한편, NFT 프로젝트들 중에는 ‘Tubby Cats’ 프로젝트처럼 ‘CC0 라이선스 NFT(CC0 licenced NFT)’가 적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sup>361)</sup> 이는 NFT 아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분쟁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마치 공유저작물처럼 누구든지 영리적으로나 비영리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2차 창작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362)</sup> 이는 적용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권리 포기로 볼 수도 있지만,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볼 수도 있다.<sup>363)</sup>

#### 4) NFT 거래의 추급권 기능과 권리소진의 원칙

NFT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작품이 재판매되면 그때마다 NFT를 최초로 발행한 자에게 귀속되는 로열티 수익을 스마트 계약에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른바 ‘추급권’에 따른 수익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sup>364)</sup> ‘추급권(Droit de suite)’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에는 없는 개념으로 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인정되는 권리인데, 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을 최초로 양도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재판매로부터의 수익을 일정 비율 분배받을 권리로서 일종의 재판매 보상청구권이라 할 수 있다.<sup>365)</sup> 이러한 권리는 국내에서 인정되지 않음에도 NFT 거래를 통해 시장에서 먼저 채권적 권리로서 실질적으로 추급권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sup>366)</sup> NFT를 최초 발행한 자에게 지급되는 로열티 비율은 NFT 플랫폼마다 대동소이한데, 오픈씨의 경우 창작자는 판매 가격에서 최대 10%까지 로열티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367)</sup>

이러한 재판매 로열티 수령 구조는 저작권법상 배포권 행사 시 ‘권리소진의 원

---

360)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Bored Ape Yacht Club), <https://boredapeyachtclub.com/#/terms> (2022. 9. 19. 방문)

361) 알트코인버즈(altcoinbuzz), “Tubby Cats and The NFT CC0 Trend”, 2022. 3. 30.

362) 전재림, “CC0(Creative Commons Zero) NFT의 의미와 저작물 가치의 전환”, 저작권 동향 2022 제2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1면.

363) 김현경, “저작권 관점에서 NFT에 대한 미국의 관련 법적 검토”,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7면.

364) 박정훈, “NFT 재판매 수익과 추급권 간의 관계”, 저작권 동향 2022 제2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1면.

365) 윤종수·표시영, 앞의 논문, 236면.

366)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라 스마트계약상 인정되는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스마트계약에 사전에 설정해두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367) 박정훈, 앞의 논문, 2면.

칙’ 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sup>368)</sup>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 에는 배포권이 제한되도록 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저작물이 한 번 적법하게 판매된 이후에 이를 중고 거래와 같은 형태로 재판매할 때는 더 이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소진의 원칙’ 은 유체물에 한정되는 개념으로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 온라인상의 복제물과 같은 무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sup>369)</sup> 그러나 NFT의 경우 NFT가 가지는 그 고유의 특성인 ‘대체불가능성’ 으로 인하여 고유성과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래는 실질적으로는 유체물의 소유권 이전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띤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고,<sup>370)</sup> 동일한 내용의 저작물이라도 존재 형식이 달라지면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sup>371)</sup>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미 NFT 아트 콘텐츠에 관하여 권리소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NFT가 재판매되면 그에 따라 해당 NFT 아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채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sup>372)</sup>

## 5)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됨을 명시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9조).<sup>373)</sup> 이러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자유 이용 저작물(Public Domain)이 되는데, 이러한 자유 이용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 국내에서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훈민정음 해례본 NFT’ 를 판매했던 사례가 있고, 해외에서는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아트뮤지엄(Global Art Museum)’ 이라는 단체가 구스타프 클림트, 빈센트 반 고흐, 에드가 드가, 폴 세잔 등 유명 예술가들의 작품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려고 시도했다가 소

368) 특히 전통적 형태의 기존 작품을 NFT로 발행한 경우로서 NFT 판매 시 기존 작품 원본의 소유권 까지 같이 이전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재판매 로열티를 수령하는 것은 명백하게 권리소진의 원칙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369) 박정훈, “NFT를 통한 권리소진 원칙 확장에 대한 재검토”, 저작권 동향 2022 제1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2면.

370) 윤영진,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유권 전쟁의 서막 - NFT가 IP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과 법 제17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1, 68면.

371) 박경신, 앞의 논문, 34면.

372) 윤종수·표시영, 앞의 논문, 235-236면.

373) 다만 업무상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한 때’로부터 70년으로 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1조 및 제42조).

장 미술관들의 문제 제기로 중단한 사례가 있다.<sup>374)</sup>

자유 이용 저작물(Public Domain)이 된 작품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NFT로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누구나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창작한 것이 아님에도 자신이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는 NFT 아트 콘텐츠가 원본이라고 주장하여 판매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윤리성 비판이 있을 수 있고,<sup>375)</sup> 특히 만약 NFT 아트 콘텐츠를 자신이 창작한 것인 것처럼 고의로 속여 판매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sup>376)</sup>

## 6)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은 앞서 살펴본 미술저작물등의 전시(저작권법 제35조 제1항)나 일시적 복제(저작권법 제35조의2)와 같이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들을 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정한 인용(저작권법 제28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등이 있는데, 특히 공정이용의 경우 이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이용의 목적 및 성격, ②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③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④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NFT의 제작에 있어 ‘패러디’ 라는 말로 타인의 원작을 허락받지 않고 이용하여 2차 창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타인의 유명 작품의 인기에 편승하여 쉽게 작품을 만든 후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sup>377)</sup> 물론 자신의 작품에 사용된 타인의 작품의 양이 극히 적고 해당 타인의 작품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지 않음이 명백한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다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다. 저작인접권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① 실연자, ② 음반제작자, ③

374) 더벨(thebell), “‘저작권 침해 막아라’ 법제 보완 한목소리”, 2021. 6. 28.

375) 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사망 후일지라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다라면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저작권법 제14조 제2항), NFT 발행 시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76) 문화체육관광부 외 2인, 앞의 자료, 9면.

377) 저작권 침해 외에도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도 해당할 소지가 높다.

방송사업자를 인정하고 있다. 이들도 저작권자와 유사하게 복제권 등의 권리를 가지므로, 저작자(혹은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저작물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저작권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NFT를 발행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권리자가 전부 함께 NFT를 발행 및 판매하거나 그들 모두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가수가 음반을 틀고 노래 부르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사람이 그 영상을 NFT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 자신은 영상에 대한 저작자이지만 작곡가, 작사가 등 노래의 저작권자, 그 노래의 음반제작자, 그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한 실연자 등 모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sup>378)</sup>

## 7. NFT 아트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침해 및 보호방안

### 가. 저작권 침해의 양태

#### 1) 소유자 등 무권리자의 NFT 발행

NFT를 발행할 권리가 없는 자가 타인의 창작물을 도용하여 NFT를 발행하는 행위를 ‘페이크 민팅(Fake Minting)’ 이라고 한다. 가장 대표적인 NFT 플랫폼인 ‘오픈씨(OpenSea)’ 와 같이 누구나 NFT를 발행할 수 있는 오픈마켓 형태의 NFT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 행위이다. 창작물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 작가의 작품을 작가도 모르는 사이에 NFT로 발행하여 버젓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제 사례로 스웨덴의 일러스트 작가 시몬 스텔렌하그가 자신의 작품 중 하나가 NFT가 되어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트위터에 알렸는데, 자신은 NFT를 발행하거나 누군가에게 발행을 허락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sup>379)</sup>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페이크 민팅(Fake Minting)’ 중 하나는 전통적 형태의 기존 미술작품의 ‘소유자’ 에 의한 NFT 발행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적 형태의 기존 미술작품에 대한 소유권과 저작권은 서로 다른 것으로, 미술작품을 구매한 자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더라도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유보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 미술작품을 구매한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NFT로 발행할 권리도 없는 것인데,<sup>380)</sup> 이러한 인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사례

378) 문화체육관광부 외 2인, 앞의 자료, 7면.

379) 김민지, 앞의 책, 317면.

380) 만약 소유권을 양도 받으면서 저작권까지 함께 양도 받은 경우라면 NFT를 발행할 권리가 있을 수

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알려졌던 사례는 이중섭 작가 등의 작품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하려고 했던 사례이다. 2021년 5월경 한 종합광고대행사가 이중섭 작가, 김환기 작가 등의 작품 소장자와 협의를 통해 이를 NFT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가 유족 등이 반발하여 무산됐던 사건이다.<sup>381)</sup>

특히 이러한 페이크 민팅으로 인하여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NFT의 구매자도 피해자가 된다. 2021년 8월 오픈씨에 등록됐던 ‘새드 프로그 디스트릭트(Sad Frog District)’ NFT 7000개는 당연히 기존 작품인 ‘페페 더 프로그(Pepe the Frog)’를 연상시켰지만, 모두 페이크 민팅으로 드러나 삭제됐으며 이를 구매했던 1,900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sup>382)</sup>

한편, 비록 저작권이 아닌 상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들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무권리자의 NFT 발행 관련하여 ① 메종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라는 작가가 에르메스(Hermes)의 명품 가방 ‘버킨백(Birkin Bag)’을 연상시키는 ‘메타 버킨(MetaBirkin)’ NFT 컬렉션을 판매함에 따른 분쟁과 ② 온라인 리셀 플랫폼 스탁엑스(StockX)가 허락 없이 나이키(Nike) 신발의 이미지를 NFT 발행에 이용함에 따른 분쟁이 있다. 상표법적 관점에서는 상표적 사용 여부나 동일·유사 상품 여부 등의 법적 쟁점이 엄격하게 판단되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마치 유명 브랜드가 NFT 발행을 허락한 것처럼 하여 출처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성과를 도용한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여지도 있다.<sup>383)</sup>

## 2) 위작 NFT와 표절 NFT

기존의 미술 시장 질서를 교란했던 ‘위작’ 행위는 NFT 아트の世界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된다. 다른 기존 작품(전통적인 형태의 작품이나 다른 NFT 아트)을 비슷하게 따라하여 창작한 작품을 NFT로 발행하는 경우는 물론, 인증 목적으로 NFT 발행을 한 기존 작품 자체가 원본이 아니라 위작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관한 유명한 실제 사례로는 Yuga Labs, Inc. v. Ripps 사건이 있다. 보어드에이프요트클럽(BAYC; Bored Ape Yacht Club) NFT 프로젝트의 모든 저작권 및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유가 랩스(Yuga Labs)는 기존의 BAYC NFT 아트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RR/BAYC’ 라는 NFT를 제작하여 발행한 라이더 립스(Ryder Ripps)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라이더 립스는 패러디라고 주

---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81) 아주경제, “이중섭 작가 작품의 NFT 경매 논란...저작권 침해 여부 따져보니”, 2021. 7. 20.

382) 경향신문, “대체 불가의 가치를 원했는데...‘짜통 NFT’였다면?”, 2022. 4. 11.

383) 심민선·문명섭, 앞의 논문, 8-13면.

장하며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384)</sup> 그러나 라이너 립스 측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RR/BAYC’는 기존의 BAYC NFT 아트 콘텐츠의 주된 특징들을 거의 그대로 모방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상업적으로 이용된 점이나 원작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 이용(fair use)과 같은 항변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sup>385)</sup>

그 외에도 오픈씨(OpenSea)에 크립토 아티스트 트레버 존스의 작품을 표절한 위조품이 올라와 오픈씨를 통해 이에 대한 삭제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었으며,<sup>386)</sup> 이러한 사례들은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위작 NFT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성유지권이나 성명표시권도 침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성명표시권의 내용으로 자신이 창작하지 않은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그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나, 미국 저작권법은 자신이 창작하지 않은 저작물에 자신의 성명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할 권리도 명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마치 유명 작가의 작품인 것처럼 위작을 NFT로 발행하면 성명표시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sup>387)</sup>

또한 위작 NFT를 발행하는 행위는 권리관리정보<sup>388)</sup>를 허위로 부가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제104조의3 제1호 규정 위반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제136조 제2항) 또는 저작자 명의를 허위로 표시하여 공표한 행위(제137조 제1항 제1호)로서 처벌될 수 있다.<sup>389)</sup>

한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타인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침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는 표절에 해당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사실이 사후적으로 밝혀질 경우, 시장에 의해 해당 NFT 아트 콘텐츠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할 것이고, 해당 NFT를 구매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저작권의 보호방안

---

384) 심민선·문명섭, 앞의 논문, 16면.

385) 심민선·문명섭, 앞의 논문, 17면.

386) 김민지, 앞의 책, 316-317면.

387) 박경신, 앞의 논문, 22면.

388) ‘권리관리정보’는 ①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② 저작권등을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③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9호).

389) 박경신, 앞의 논문, 23-25면.

## 1) 저작권 침해의 예방

저작권자는 NFT를 발행할 때 구매자가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며 어떤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sup>390)</sup> 특히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다시 말해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유보되는지 아니면 구매자에게 양도되는지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 살펴본 크립토펙크(Cryptofunks)가 약관을 통해 저작권은 회사에게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구매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특히 2차적 창작(derivative work)도 허용하되 이를 크립토펙크를 보유한 기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sup>391)</sup>

한편, 구매자는 ① NFT를 발행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② 구체적인 판매 대상의 정보, 특히 NFT 메타데이터에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③ 판매자가 게시한 사항과 플랫폼 약관에 따라 본인이 취득하게 되는 권리나 이용허락의 범위, ④ 재판매 시 이용조건이 이전되는지 등의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구매를 진행해야 한다.<sup>392)</sup>

##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

저작권자(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직접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sup>393)</sup> 만약 저작권자가 NFT 발행 업체(에이전시 등)에게 ‘독점적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에이전시가 저작권자를 대위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만약 저작권자가 에이전시에 ‘배타적 발행권’까지 설정해주었다면 해당 에이전시는 독자적으로 금지청구 등 권리 행사도 가능하다. 다만 침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를 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다. NFT 플랫폼의 책임

NFT 거래의 장을 제공하는 NFT 플랫폼들은 일반적으로 이용약관에 위조 작품이나 저작권 침해물을 NFT로 발행하거나 유통하지 말도록 정하면서도, 실제 위조품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작권 침해 NFT를 발행한 자의 계정을 삭제하고 관련 지급

390) 문화체육관광부 외 2인, 앞의 자료, 14면.

391) 크립토펙크(CryptoPunks), <https://licenseterms.cryptopunks.app> (2022. 9. 19. 방문)

392) 문화체육관광부 외 2인, 앞의 자료, 12-13면.

393) 문화체육관광부 외 2인, 앞의 자료, 14-15면.



계정의 이용을 중지하는 정도의 조치만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sup>394)</sup> 더 나아가서는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개인이 올린 작품을 삭제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하며 위작 NFT의 삭제를 거부하는 해외 사례도 있다.<sup>395)</sup>

저작권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나 웹하드 서비스 운영자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로 하여금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저작권법 제102조부터 제104조), NFT 플랫폼에도 이러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NFT의 거래는 앞서서도 살펴본 것처럼 저작물 자체에 대한 거래라기보다는 거래 기록 등이 담긴 데이터 파일의 거래라고 할 수 있고 탈중앙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저작물을 서버에 저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sup>396)</sup>

그러나 NFT 플랫폼이 손을 놓으면 NFT 거래는 침해로 얼룩지고 그 플랫폼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NFT 시장 자체를 침체시킬 수도 있으므로, NFT 플랫폼은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법원이 ‘퐁퐁한 호랑이가 백신을 맞다’라는 저작권 침해물이 거래되도록 한 NFT 플랫폼에 대해 높은 심사 주의의무를 부담하여야 함을 명시하면서, NFT 플랫폼으로서 심사주의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주관적인 과실이 있기 때문에 기여침해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었다.<sup>397)</sup> 해당 NFT 플랫폼이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난 후 소각 조치를 했다고 항변했지만 중국항저우인터넷법원은 사후적 조치 외에 사전심사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sup>398)</sup>

다만, NFT 플랫폼은 중앙통제적인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과는 달리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을 살려 탈중앙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통제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sup>399)</sup> 그러나 NFT 플랫폼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점도 고려하여,<sup>400)</sup> 플랫폼이 NFT 발행 및 판매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중앙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경우 전통적인 통상의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책임론과 먼

394) 김민지, 앞의 책, 311-312면.

395) 김민지, 앞의 책, 316면.

396) 김병일, 앞의 논문, 12-13면.

397) 서새남, “항저우인터넷법원, NFT 디지털 저작물 거래에 플랫폼의 저작권침해 방조책임 인정”, 저작권 동향 2022 제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398) 이웅영, “중국의 블록체인 정책과 NFT 규제 동향”,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174-175면.

399) 윤영진, 앞의 논문, 70면.

400) NFT 플랫폼은 ① 비사용자 제작 NFT 플랫폼(운영 주체가 발행한 NFT만 거래 가능), ② 선별형 플랫폼(운영 주체가 선발한 사람이나 초대된 사람만 NFT를 발행하여 판매 가능), ③ 무허가형 플랫폼(오픈마켓처럼 누구든지 NFT를 발행하여 판매 가능), ④ NFT 거래가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성소라, 앞의 책, 127-132면).

책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sup>401)</sup>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위원회의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는 NFT 플랫폼에 대해 ①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을 약관 등을 통해 사전고지하고 그 주요 내용을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② 권리자, 판매자 및 구매자가 NFT 거래에서 저작권에 대한 이의신청, 애로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이메일 등)를 공지하고, ③ 안전한 NFT 거래를 위해 컨트랙트 주소, 토큰 ID, 블록체인 종류, 에디션 번호(총발행량 포함)를 게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sup>402)</sup>

이와 같은 NFT 플랫폼 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이하 ‘V. NFT 아트 플랫폼 관련 쟁점’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401) 박경신, 앞의 논문, 29면.

402) 문화체육관광부 외 2인, 앞의 자료, 10-11면.

## V. NFT 아트의 플랫폼 관련 쟁점

### 1. NFT 플랫폼의 법적 지위<sup>403)</sup>

#### 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성

우리나라에서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2020. 3. 24. 법률 제17113호로 개정된 것)이 2021. 3. 25.에 시행됨에 따라,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큰 이슈가 되었다.<sup>404)</sup>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로 정의하고(동법 제2조 제3호), 다만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등 일부 제외되는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동호 각목), NFT가 이러한 제외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2021년 10월 및 11월경에 국내외에서 유의미한 발표들이 있었다.

먼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인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2021년 10월, NFT는 교환가능(interchangeable)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며(unique), 결제수단 혹은 투자수단이라기 보다는 수집물로서 사용(used as collectibles)되므로 일반적으로는 FATF 정의에 따른 가상자산(VA)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NFT의 특성에 따라 실제 결제 또는 투자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여 개별 NFT의 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sup>405)</sup> 한편, 머니투데이가 2021. 11. 23. “NFT는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 제하 기사에서 금융위가 NFT를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였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며,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sup>406)</sup>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FATF의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밝힌 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가

403) 본 절의 논의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NFT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404) 해당 개정안은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의 규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한국경제신문, 코인시장 뒤흔든 ‘특정금융정보법’ 핵심정리, 2021. 8. 10.).

405) 파이낸셜뉴스, 금융위 “NFT, 가상자산 아니다...FATF 새 지침 반영”, 2021. 11. 7.

40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95957> (2022. 9. 19. 방문)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상 분류를 토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2021년 12월경에 발표한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는, NFT를 발행 형태에 따라 ① 게임 아이템 NFT, ② NFT 아트(예술품), ③ 증권형 NFT, ④ 결제수단형 NFT, ⑤ 실물형 NFT로 분류한 바 있다.<sup>407)</sup>

먼저 금융연구원은 게임아이템 NFT의 경우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에 해당해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다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NFT의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결제수단형 NFT의 경우 발행량이 수백만개가 되어 실질적으로는 지급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408)</sup> 한편 디지털 예술 작품을 NFT로 발행한 NFT 아트와, 실제 예술 작품(회화 등)을 디지털화하여 NFT로 발행한 실물형 NFT는 수집품, 소장품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결제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워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위와 같은 분류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NFT가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는 케이스는 쉽게 존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NFT가 가치 척도, 즉, 어떠한 계산의 단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동일한 가치를 지니는 NFT를 수십~수백만 개 발행한 후에 해당 NFT만을 교환수단으로 하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해당 NFT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면 NFT가 결제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경우 ‘대체불가능’이라는 NFT의 가장 큰 특징은 허울뿐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Fungible Token과 유사한 특징을 갖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NFT가 투자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금융연구원 보고서 분류상 증권형 NFT가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위 보고서에서는 ‘기능적으로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의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형 NFT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달리 말하면 NFT에 ‘증권성’이 있을 경우 해당 NFT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NFT 아트나 실물형 NFT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증권성’이 없으므로 투자수단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022. 4. 2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물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조각투자와는 달리,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에 관하여는 금융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sup>409)</sup> 이에

407) 디지털투데이, [단독] 금융위, NFT 정의·규제 결론 못 내려...추가 연구 예상, 2022. 2. 21.

408) 코인데스크코리아, 금융연 “NFT, 결제·투자에 쓰이면 특금법상 가상자산”, 2022. 2. 24.

409) 법무법인 디라이트, NFT 증권성 인정 여부, 2022. 8. 19.

따르면 NFT 아트나 실물형 NFT 자체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것이 아닌, NFT 아트나 실물형 NFT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은 ‘증권성’이 인정될 수 있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NFT 플랫폼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및 각종 자금세탁방지 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실명계정 확보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제2호) 등을 부담하게 되며, 위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더라도 NFT 플랫폼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여부는 개별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NFT 플랫폼이 단순히 NFT의 매수·매도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거나, 단순히 NFT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념에서 제외될 수 있다.<sup>410)</sup>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NFT는 증권성이 없는 ‘NFT 아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NFT 아트의 거래를 중개하는 NFT 플랫폼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해당성

NFT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여 NFT 플랫폼이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또는 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무인가 영업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11조, 제12조), 이후 금융투자업자로서 건전경영 유지의무 및 각종 행위규칙 준수 의무 등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NFT는 증권성이 없는 ‘NFT 아트’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NFT 아트의 거래를 중개하는 NFT 플랫폼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해당성

NFT 아트의 거래를 중개하는 NFT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NFT 플랫폼은 그 구체적 역할과 기능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NFT 플랫폼이 NFT의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로부터 청약의 접수를 받는 경우로서, 전자상거

410) 법무법인 화우, “NFT 관련 법적 쟁점”, 법률신문, 2022. 3. 18.

래법 제20조의3 제1호 가목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NFT 플랫폼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이행이 완료된 NFT 거래의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NFT 플랫폼이 위와 같은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 제6호). 요컨대 NFT 플랫폼은 NFT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청약철회, 계약의 해제, 원상회복의 방법 등의 절차가 시스템상 구현 가능하도록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상세는 이하의 본 장 제3절에서 후술하고자 한다.

## 2. NFT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

### 가. NFT 플랫폼의 계약상 책임

####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일반론

NFT 아트를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NFT 플랫폼을 이용하여 NFT 아트를 거래하게 된다. 이용자는 NFT 플랫폼이 마련한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하는 절차를 거쳐 NFT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NFT 플랫폼과 이용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등은 해당 플랫폼의 약관의 내용에 의하여 규율되게 된다. 한편, 위와 같은 NFT 플랫폼의 약관은 NFT 플랫폼이 다수의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되, 이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이 적용되게 된다.

약관규제법은 편입통제, 해석통제 및 내용통제라는 3단계 통제를 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되는 것은 해석통제와 내용통제이다. 약관의 해석통제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계약해석원칙에 더해 약관규제법상의 특수한 해석원칙에 따라 편입된 약관의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게 되는데, 약관규제법에 규정된 해석원칙으로는 첫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둘째,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셋째,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 넷째,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이 존재한다(동법 제4조 및 제5조).<sup>411)</sup>

411) 이병준,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한국소비자원, 2012, 189면.

약관의 내용통제 단계에서는 약관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sup>412)</sup>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는 일반조항에 기한 내용통제(제6조)와 개별적 금지규정을 통한 내용통제(제7조 내지 제14조)로 나눌 수 있다.<sup>413)</sup> 우선 불공정 약관에 대한 일반조항인 제6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기능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대법원은 “당해 약관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상대방인 고객으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로서는 반드시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 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 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sup>414)</sup> 나아가 동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제1호)<sup>415)</sup>,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제2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제3호)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약관규제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의 면책조항(제7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제8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과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등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제9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및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제14조) 등 약관의 조항이 무효가 되는 개별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현행 약관규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는 약관규제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개별적 금지규정이

412)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413) 이병준,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의 대상과 그 제한”,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95호, 법무부, 2021, 65면.

414)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다43873 판결.

415)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등).

적용되지 아니하는 3개의 업종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시행령 제3조 제1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시행령 제3조 제2호),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시행령 제3조 제3호)을 명시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NFT 플랫폼은 위와 같은 예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NFT 플랫폼의 약관에 대해서는 일반조항에 기한 내용통제와 개별적 금지규정을 통한 내용통제가 모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NFT 아트는 주로 ‘오픈씨(OpenSea)’와 같이 미국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국외 NFT 플랫폼에서 다수 거래되고 있는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약관에 유사하게, 고객에 의한 변경가능성 없이 수용 또는 거부(take it or leave it)의 선택만 가능한 경우를 부합계약(adhesion contract)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부합계약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① 표준서식서면의 사용(the use of standard form documents), ② 수용 또는 거부만으로 수요의사 표출(the presentation of demands on a take-it-or-leave-it basis)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핵심으로 여겨진다.<sup>416)</sup>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과 같은 특별법이 없이 계약법상의 법리<sup>417)</sup>를 사용하여 약관의 내용통제를 하거나 약관의 해석에 작성자 불리의 원칙 등의 적용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공정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일반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적 심사에 의존하고 사법적 심사의 결과도 일관되지 않아 어떠한 약관의 내용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정 기준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sup>418)</sup>

## 2) 국외 NFT 플랫폼의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 가능성

### 가) 들어가며

NFT 아트의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상에서 NFT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며, NFT 아트를 판매하거나 구매하고자 하는 국내의 이용자들은 오픈씨(OpenSea)와 같이 규모가 큰 국외 NFT 플랫폼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국외 NFT 플랫폼이 약관에 규정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저작권 침해 방조 등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이용자는 해당 NFT 플랫폼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로 다음의 두 가지의 국제사법상 쟁

416) 박설아, “약관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41~42면.

417) 미국에서의 계약 해석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참고할 수 있는데, 특히 약관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합리성의 기준’이 주요하며, 리스테이트먼트 제206조의 작성자 불리의 원칙 또한 주로 약관의 해석에 적용되고 있다. 나아가 리스테이트먼트 제211조에서는 표준계약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어 그 해석에 합리성 기준이 적용됨을 확인하고 있다(박설아, 위의 논문, 106면).

418) 박설아, 위의 논문, 73면.



점이 문제 되는데, 첫째는 국내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지의 문제이며, 둘째는 국내 이용자와 국외 NFT 플랫폼 사이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준거법 문제이다.

## 나) 국제재판관할의 문제

대법원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왔다. 특히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 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 71915 판결 등). 한편,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과거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최근 전부 개정된 국제사법(2022. 7. 5.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국제재판관할권 유무의 기준이 되는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해석이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으나, 최근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중국 회사인 원고들이 중국 회사인 소외 회사에게 물품을 공급한 후 지급받지 못한 물품 대금을 소외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중국법상 1인 주주의 유한책임회사 연대책임 법리에 따라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판시함으로써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규정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30588 판결).<sup>419)</sup> 해당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지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대

419) 최정지, “국제재판관할의 ‘실질적 관련성’ 판단에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고려”, 법률신문.

한국에 있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로서 자료 확보나 사실관계 파악에 무리가 없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중국 법원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지리상·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원고들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로서는 자신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대한민국 법원에 소외 회사의 물품 대금 채무와 관련한 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에 국제재판관할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재판의 적정, 신속 이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과 해당 소송의 당사자 또는 그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상의 국제사법 제2조의 해석과 관련한 논의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유효한 일반론인바, 국외 NFT 플랫폼과 국내 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이용계약(약관)을 통해 국제재판관할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일반론과 다른 기준에서 재판관할을 판단하게 된다. 우선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국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국외 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국외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등). 만약 국외 NFT 플랫폼과 국내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진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이상 국내 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관할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제사법 제42조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의 적용 여부 또는 약관규제법 제14조의 적용 여부에 따라 국제재판관할합의의 효력이 부정되어 국내 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우선 국외 NFT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가 국제사법상의 ‘소비자’에 해당할 경우 아래와 같은 국제사법 제42조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특칙이 적용된다.

**국제사법 제42조(소비자계약의 관할)** ① 소비자가 자신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소비자는 계약의 상대방(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이하 “일상거소지국”이라 한다)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 외의 지역에서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을 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그 계약이 사업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3.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소비자의 일상거소지국이 아닌 국가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소비자계약”이라 한다)의 경우에 소비자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법원에만 제기할 수 있다.
- ③ 소비자계약의 당사자 간에 제8조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을 때 그 합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후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한 경우
  2.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서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비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국제사법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소비자는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로서 ‘수동적 소비자(passive consumer)’에 한정되고 ‘능동적 소비자(active consumer 또는 mobile consumer)’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동적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당해 계약이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어야 하고, 둘째,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42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호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국외 NFT 플랫폼이 국내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영업활동을 하거나, 국내에서 그러한 활동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통신수단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또는 지향하여)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영업활동을 한 경우, 즉, 통신판매에 의한 판매를 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가 웹사이트에 들어가 클릭함으로써 주문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특정국가를 지향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sup>420)</sup>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국외 NFT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들이 NFT 아트를 주문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웹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대한민국을 지향한 영업활동을 한

420) 석광현,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비자의 보호: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84~85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외 NFT 플랫폼과 국내 소비자(주로 NFT 구매자) 사이의 이용계약은 국제사법 제42조의 소비자계약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사법 제42조는 부당한 재판관할합의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사후적 합의만을 허용하는바, 국외 NFT 플랫폼이 국외법원에 전속관할을 부여하는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 이 경우 국내 소비자는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외 NFT 플랫폼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국외 NFT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가 NFT 아트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자 및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목적으로 NFT 아트를 구매하는 자(갤러리 등) 등에 해당할 경우, 해당 국내 이용자는 국제사법상의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외 NFT 플랫폼과 국내 이용자 사이의 이용계약에 관하여는 국제사법 제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경우에는 국외 NFT 플랫폼과 국내 이용자 사이의 재판관할합의에 대해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따른 내용통제가 가능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약관규제법 제14조는 관할합의의 허용요건의 문제이므로 그 허용요건의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면 적용되며, 다만 국제재판관할 합의조항이 없었더라면 국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을 가졌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약관에 포함된 관할합의조항에 의해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박탈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더라도 약관규제법 제14조가 적용된다. 문제는 약관규제법 제14조가 적용되더라도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은 무효로 한다는 추상적 조항이므로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sup>421)</sup>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은 국내 소비자가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약관규제법에서는 제14조를 통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을 무효로 할 뿐 위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과 같이 국내법원에 재판관할을 부여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경우 국내 이용자는 국제사법 제2조의 일반론에 따라 국내 법원이 ‘실질적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준거법 결정의 문제

국제사법은 국제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의 원칙을 선언하고(제45조 제1항), 주관적 준거법에 관하여 준거법의 분열, 준거법의 사후적 변경, 국내계약에 대한 외국 준거법 지정의 가부, 준거법 합의의 성립과 유효성에 대한 준거법 등 관련 논점들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sup>422)</sup> 제46조는 객

421) 석광현, 위의 논문, 95면.

422) 국제재판관할합의와 마찬가지로 준거법 합의 또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가령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은, 당해

관적 준거법의 결정방법을 규정하는데, 로마협약의 태도를 받아들여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조 제2항은 ‘특징적 이행(characteristic performance)’에 기초하여 깨어질 수 있는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국제사법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을 제47조(소비자계약)에 두고 있는데, 소비자계약의 경우 준거법의 주관적 결정과 객관적 결정 모두에서 통상의 계약에 대한 특칙이 인정된다.<sup>423)</sup>

국제사법은 소비자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자치를 허용하나 당사자의 법의 선택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될 객관적 준거법, 즉,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제47조 제1항). 준거법 합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환경을 이루는 법의 강행규정이 부여하는 보호를 ‘최소한의 보호(minimum protection)’로서 관철시키는 것이다. 여기의 ‘강행규정’은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는 법규”, 즉, ‘국내적 강행규정’을 말한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은,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명백하게 표시되지 않는 한 국내적 강행규정인데, 이를 “보호적 강행규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내적 강행규정의 예로는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등을 들 수 있다.

요컨대 소비자계약을 통해 체결된 이용약관이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준거법보다 국제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내적 강행규정이 국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가 유리한 때에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법원은 소비자계약의 준거법과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은 계약의 준거법이 규율하는 사항이므로, 예컨대 전자상거래인 통신판매계약의 준거법이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를 허용하면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부여하는 기간(7일)보다 긴 기간(예컨대 10일)을 허용한다면 철회 기간은 10일이 되지만, 만일 준거법이 더 짧은 기간(예컨대 3일)을 허용한다면 전자상거래기본법이 부여하는 보호(7일의 철회 기간)가 관철된다.<sup>424)</sup>

한편, 미국의 2차 계약법 리스테인먼트는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47조와 같은 준거법 결정의 특칙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결정 시 준거법 결정에 관한 일반원칙(당사자자치를 인정한 제187조 또는 객관적 연결 규정인 제188조)에 따라 해결한다.<sup>425)</sup>

---

사건 계약이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그 준거법 약정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지지하였다(석광현, 위의 논문, 100~101면).

423) 석광현, 위의 논문, 98면.

424) 석광현, 위의 논문, 100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외 NFT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가 국제사법상 ‘소비자’에 해당한다면 국외 NFT 플랫폼과 국내 이용자 사이의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국외 NFT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가 NFT 아트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자 및 직업 또는 영업활동의 목적으로 NFT 아트를 구매하는 자(갤러리 등) 등으로서 국제사법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러한 국내 이용자와 국외 NFT 플랫폼 사이에 체결된 이용계약(약관)에서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였을 때 해당 약관에 대해 약관규제법에 따른 내용통제가 가능할지 여부가 문제 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은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① 원고와 피고들이 2003. 8. 1. 원고가 캐나다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인 피고들의 제품을 국내에서 배급·판매대리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준거법을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법률에 의하도록 약정한 사실, ② 이 사건 계약 당시 계약해지 사유 중의 하나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당사자의 편의에 따라 6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③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들의 제품을 국내에서 배급·판매대리 하는 영업을 하여 오다가 피고들이 2007. 3.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해지조항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계약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법을 준거법으로 정함으로써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근거가 없어 그 준거법 약정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피고들의 위와 같은 해지통보에 따라 위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해지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계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위 대법원 판결은 약관규제법의 일반적인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부인한 최초의 판결이며, 이와 같은 결론은 국제사법 제47조와의 균형 및 약관규제법의 취지 등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① 국제사법에서 소비자계약의 경우 준거법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일상거소지법의 보호를 관철하는 데 그치므로 약관규제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긍정하는 것은 균형에 반한다는 점, ② 약관규제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을 긍정하자면 입법자의 적용의지가 표현되어야 하나 동법상 이를 간취할 수 없다는 점, ③ 약관규제법을 전면적으로 국제 거래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국제사법 제47조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 ④ 설령 약관규제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

425) 윤남순,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안암법학 제51호, 안암법학회, 2016, 506~507면.

을 긍정하더라도 약관이 사용되는 모든 국제 거래에 약관규제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내국관련성 등)이 필요한데, 동법의 해석상 기준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판결의 결론을 지지하는 견해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sup>426)</sup>

요컨대 국외 NFT 플랫폼과 국내 이용자 사이의 이용계약이 국제사법 제47조의 ‘소비자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국외 NFT 플랫폼과 국내 이용자가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국외 NFT 플랫폼의 약관은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의 내용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국외 NFT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가 국제사법상 ‘소비자’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으므로(국제사법 제47조 제1항),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에 따라 국외 NFT 플랫폼의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가 가능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국외 NFT 플랫폼의 약관에 대해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상정하여 국외 개별 NFT 플랫폼들의 약관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3) 국외 개별 NFT 플랫폼의 약관에 대한 검토

#### 가) ‘오픈씨(OpenSea)’ 약관<sup>427)</sup> 검토

오픈씨는 미국 뉴욕주에 기반을 둔 세계 최대의 NFT 플랫폼이다. 오픈씨는 이용 약관 제1조<sup>428)</sup>, 제3조<sup>429)</sup> 및 제6조<sup>430)</sup>에서 오픈씨가 NFT 아트 거래의 당사자가 아

426) 석광현, “약관규제법은 국제적 강행규정인가, 법률신문, 2011. 3. 21.; 한승수,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의 계약에 있어서의 약관규제법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의 검토 -”, IT와 법연구 제13집,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16, 161면.

427) <https://opensea.io/tos> (최종 업데이트 : 2022. 8. 2.)

428) OpenSea is not party to any agreement between any users. You bear full responsibility for verifying the identity, legitimacy, and authenticity of NFTs that you purchase from third-party sellers using the Service and we make no claims about the identity, legitimacy, functionality, or authenticity of users or NFTs (and any content associated with such NFTs) visible on the Service.

429) As a peer-to-peer web3 service, OpenSea helps you explore NFTs created by third parties and interact with different blockchains. OpenSea does not make any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about this third-party content visible through our Service, including any content associated with NFTs displayed on the Service, and you bear responsibility for verifying the legitimacy, authenticity, and legality of NFTs that you purchase from third-party sellers. We also cannot guarantee that any NFTs visible on OpenSea will always remain visible and/or available to be bought, sold, or transferred.

430) Finally, by using the Service, you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DYOR - doing your own research. You bear full responsibility for verifying the authenticity, legitimacy, identity, and other details about any NFT, collection, or account that you view or

니며, 오픈씨 이용자가 NFT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NFT의 적법성 및 진위성 등을 확인할 전적인 책임이 있고, 오픈씨는 해당 NFT의 적법성(가령 해당 NFT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과 진위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NFT 아트 거래의 리스크를 전적으로 이용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NFT 판매 건당 2.5%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오픈씨가 고의, 중과실 등 귀책사유의 존부를 불문하고 NFT의 적법성 및 진위성 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온라인 갤러리인 데비안아트가 “지금까지 NFT 시장에서 29만 건 이상의 무단 도용과 표절 행위가 발견되었고, 현재 NFT 시장의 표절 행위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할 만큼 NFT 시장에서의 도용과 표절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sup>431)</sup> 오픈씨와 같은 대형 NFT 플랫폼이 NFT의 적법성과 진위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약관 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오픈씨 이용약관 제11조<sup>432)</sup>는 오픈씨가 서버 장애, 데이터 손실, 무단 액세스 또는 사용, 서비스 또는 NFT에 대한 바이러스·피싱·무차별 대입 공격(Brute Force Attack)·기타 공격 수단의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승인되지 않은 제3자 활동 등에 의한 이용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해당 약관 조항 역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

---

otherwise interact with in conjunction with our Service. We make no guarantees or promises about the identity, legitimacy, or authenticity of any NFT, collection, or account on the Service.

431) The New York Times, Thefts, Fraud and Lawsuits at the World's Biggest NFT Marketplace, 2022. 6. 6.; 연합뉴스, 해킹·사기·도용 범람하는 미국 NFT 시장…거래소는 ‘모르쇠’, 2022. 6. 7.

432) WE WILL NOT BE RESPONSIBLE OR LIABLE TO YOU FOR ANY LOSS AND TAKE NO RESPONSIBILITY FOR, AND WILL NOT BE LIABLE TO YOU FOR, ANY USE OF NFTS, CONTENT, AND/OR CONTENT LINKED TO OR ASSOCIATED WITH NF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LOSSES, DAMAGES, OR CLAIMS ARISING FROM: (A) USER ERROR, INCORRECTLY CONSTRUCTED TRANSACTIONS, OR MISTYPED ADDRESSES; (B) SERVER FAILURE OR DATA LOSS; (C) UNAUTHORIZED ACCESS OR USE; (D) ANY UNAUTHORIZED THIRD-PARTY ACTIVITI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USE OF VIRUSES, PHISHING, BRUTEFORCING OR OTHER MEANS OF ATTACK AGAINST THE SERVICE OR NFTS.



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보기술(IT) 업계 경영자 출신인 엘리 샤피라(Eli Shapira)가 NFT 작품을 보관하던 전자 지갑에 지난 2월 해커가 접근해 10만 달러(약 1억2천500만 원) 상당의 NFT 작품 2점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는데, 엘리 샤피라는 오픈씨에 연락하여 해킹을 보고했으나 오픈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자신이 스스로 해커의 계정을 추적한 결과 해커가 오픈씨에서 여러 NFT를 도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나아가 오픈씨의 시스템 에러 때문에 크리스 채프만(Chris Chapman)의 100만 달러(약 12억5천만 원) 상당의 NFT 작품( Bored Ape Yacht Club 시리즈 중 하나)이 약 30만 달러에 판매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에서 오픈씨는 3만 달러의 보상을 제안하였다. 오픈씨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르면 위와 같이 해킹이나 시스템 에러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오픈씨에게 제대로 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나아가 많은 이용자들은 오픈씨가 해커가 탈취한 NFT 판매를 차단하는 조치에 서두르지 않는 점을 비판하는데,<sup>433)</sup> 심지어 일부 이용자로부터 오픈씨가 NFT 판매 건당 수수료를 징수하여 이득을 보기 때문에 회사가 도용된 NFT의 판매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최근 들어 오픈씨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저해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오픈씨 이용약관 제13조<sup>434)</sup>는 제11조와 마찬가지로 오픈씨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제13조는 오픈씨가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았을지라도 오픈씨의 책임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433) 네바다주의 투자자인 로버트 아미조(Robert Armijo)는 자신의 NFT 중 일부를 훔친 해커가 플랫폼에서 NFT 중 하나를 판매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OpenSea에 대해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434)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YOU AGREE THAT IN NO EVENT WILL OPENSEA OR ITS SERVICE PROVIDERS BE LIABLE TO YOU OR ANY THIRD PARTY FOR ANY LOST PROFIT OR ANY INDIRECT, CONSEQUENTIAL, EXEMPLARY, INCIDENTAL, SPECIAL, OR PUNITIVE DAMAGES ARISING FROM THESE TERMS OR THE SERVICE, PRODUCTS OR THIRD-PARTY SITES AND PRODUCTS, OR FOR ANY DAMAGES RELATED TO LOSS OF REVENUE, LOSS OF PROFITS, LOSS OF BUSINESS OR ANTICIPATED SAVINGS, LOSS OF USE, LOSS OF GOODWILL, OR LOSS OF DATA, AND WHETHER CAUSED BY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BREACH OF CONTRACT, OR OTHERWISE, EVEN IF FORESEEABLE AND EVEN IF OPENSEA OR ITS SERVICE PROVIDERS HAVE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OR (B) FOR ANY OTHER CLAIM, DEMAND, OR DAMAGES WHATSOEVER RESULTING FROM OR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SE TERMS OF THE DELIVERY, USE, OR PERFORMANCE OF THE SERVICE. ACCESS TO, AND USE OF, THE SERVICE, PRODUCTS OR THIRD-PARTY SITES, AND PRODUCTS ARE AT YOUR OWN DISCRETION AND RISK, AND YOU WILL BE SOLELY RESPONSIBLE FOR ANY DAMAGE TO YOUR COMPUTER SYSTEM OR MOBILE DEVICE OR LOSS OF DATA RESULTING THEREFROM.

나아가 오픈씨 이용약관 제16조는 이용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오픈씨와 중재합의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강제중재조항(Mandatory Arbitration), 배심재판 포기조항(Waiver of Jury Trial), 집단소송 포기조항(Class Action Waiver) 등을 두고 있으며, 이용약관 제17조는 뉴욕주 소재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을 전속적 재판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으로서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특히 오픈씨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가 국제사법상 ‘소비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이용자는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오픈씨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파운데이션’ 약관<sup>435)</sup> 검토

파운데이션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둔 NFT 플랫폼이다. 파운데이션 이용약관 제1조 a)<sup>436)</sup>는 NFT를 “Digital Artwork” 라고 칭하는 한편, 이용자의 거래, 이용자와 제3자와의 상호작용, 제3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등에 의해 이용자가 입는 손해에 대해 파운데이션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약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파운데이션 이용약관 제2조 d)<sup>437)</sup>는 파운데이션이 플랫폼 또는 그 일부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변경하거나 중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며, 이와 같은 플랫폼

435) <https://foundation.app/terms> (최종 업데이트 : 2022. 9. 22.)

436) a) Smart-Contract Enabled. “Digital Artwork” on the Platform refers to a non-fungible Ethereum-based token that uses smart contracts on the Ethereum blockchain (“Smart Contracts”). The Ethereum blockchain provides an immutable ledger of all transactions that occur on the blockchain. This means that all Digital Artwork is outside of the control of any one party, including Foundation, and is subject to many risks and uncertainties. We neither own nor control MetaMask, Coinbase, the Ethereum network, the smart contracts on which Collections (as defined below) are based (“Collection Smart Contracts”), your browser, or any other third party site, product, or service that you might access, visit, or use for the purpose of enabling you to use the various features of the Platform. We will not be liable for the acts or omissions of any such third parties, nor will we be liable for any damage that you may suffer as a result of your transactions or any other interaction with any such third parties. You understand that your Ethereum public address will be made publicly visible whenever you engage in a Transaction on the Platform.

437) d) Modifications to the Platform: Foundation reserves the right to modify or discontinue, temporarily or permanently, the Platform (or any part thereof) with or without notice. You agree that Foundation will not be liable to you or to any third party for any modification, suspension, or discontinuance of the Platform.

품의 변경 또는 중단에 대해 이용자와 제3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이용자가 동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파운데이션의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파운데이션의 책임이 배제된다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10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한편 파운데이션 이용약관 제7조 c)<sup>438)</sup> 또한, 플랫폼의 사용, 플랫폼의 사용 불능, 플랫폼과 관련한 기타 모든 문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계약책임, 불법행위, 과실, 무과실 책임 여하 불문) 파운데이션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광범위한 면책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파운데이션의 책임 제한은 파운데이션이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았을지라도 그대로 유지되는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파운데이션 이용약관 제7조 c) 하단에서는 이용자의 손해 등에 대한 재단의 총 책임은 이용자가 6개월 동안 파운데이션에게 지불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이상일 경우 1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파운데이션 이용약관 8조<sup>439)</sup>는 파운데이션이 자신의 재량에 따라 이용자에게 대

---

438) c) Limitation of Liability: YOU EXPRESSLY UNDERSTAND AND AGREE THAT FOUNDATION WILL NOT BE LIABLE FOR ANY INDIRECT, INCIDENTAL, SPECIAL, CONSEQUENTIAL, EXEMPLARY DAMAGES, OR DAMAGES FOR LOSS OF PROFI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IN VALUE OF ANY DIGITAL ARTWORK, DAMAGES FOR LOSS OF GOODWILL, USE, DATA OR OTHER INTANGIBLE LOSSES (EVEN IF FOUNDATION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WHETHER BASED ON CONTRACT, TORT, NEGLIGENCE, STRICT LIABILITY OR OTHERWISE, RESULTING FROM: (I) THE USE OR THE INABILITY TO USE THE PLATFORM; (II) THE COST OF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AND PLATFORMS RESULTING FROM ANY DIGITAL ARTWORK, GOODS, DATA, INFORMATION OR PLATFORMS PURCHASED OR OBTAINED OR MESSAGES RECEIVED OR TRANSACTIONS ENTERED INTO THROUGH OR FROM THE PLATFORM; (III) UNAUTHORIZED ACCESS TO OR ALTERATION OF YOUR TRANSMISSIONS OR DATA; (IV) STATEMENTS OR CONDUCT OF ANY THIRD PARTY ON THE PLATFORM; OR (V) ANY OTHER MATTER RELATING TO THE PLATFORM. IN NO EVENT WILL FOUNDATION'S TOTAL LIABILITY TO YOU FOR ALL DAMAGES, LOSSES OR CAUSES OF ACTION EXCEED THE AMOUNT YOU HAVE PAID FOUNDATION IN THE LAST SIX (6) MONTHS, OR, IF GREATER, ONE HUNDRED DOLLARS (\$100).

439) You agree that Foundation, in its sole discretion, may suspend or terminate your account (or any part thereof) or use of the Platform and remove and discard any content within the Platform, for any reas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for lack of use

한 사전 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플랫폼 또는 그 일부의 제공 중단, 이용자 계정의 일시 중단 또는 해지, 플랫폼 내의 콘텐츠 제거 및 폐기, 이용자 계정과 계정 관련 정보 및 파일의 비활성화 또는 삭제, 해당 파일 또는 플랫폼에 대한 추가 액세스 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조치들은 이용자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는 것임에도 단지 파운데이션의 재량에 의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앞서 살펴본 파운데이션 이용약관 제2조 d)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10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해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파운데이션 이용약관 제10조<sup>440)</sup>는 중재 대상이 아닌 분쟁 또는 소송과 관련하여

---

or if Foundation believes that you have violated or acted inconsistently with the letter or spirit of these Terms. Any suspected fraudulent, abusive or illegal activity that may be grounds for termination of your use of the Platform may be referred to appropriate law enforcement authorities. Foundation may also in its sole discretion and at any time discontinue providing the Platform, or any part thereof, with or without notice. You agree that any termination of your access to the Platform under any provision of these Terms may be effected without prior notice, and acknowledge and agree that Foundation may immediately deactivate or delete your account and all related information and files in your account and/or bar any further access to such files or the Platform. Further, you agree that Foundation will not be liable to you or any third party for any termination of your access to the Platform.

440) These Terms constitute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you and Foundation and govern your use of the Platform, superseding any prior agreements between you and Foundation with respect to the Platform. You also may be subject to additional terms and conditions that may apply when you use affiliate or third party services, third party content or third party software. These Terms wi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State of California without regard to its conflict of law provisions. With respect to any disputes or claims not subject to arbitration, as set forth above, you and Foundation agree to submit to the personal and exclusive jurisdiction of the state and federal courts located within San Francisco County, California. The failure of Foundation to exercise or enforce any right or provision of these Terms wi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such right or provision. If any provision of these Terms is found by a court of competent jurisdiction to be invalid, the parties nevertheless agree that the court should endeavor to give effect to the parties' intentions as reflected in the provision, and the other provisions of these Terms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You agree that regardless of any statute or law to the contrary, any claim or cause of action arising out of or related to use of the Platform or these Terms must be filed within one (1) year after such claim or cause of action arose or be forever barred. A printed version of this agreement and of any notice given in electronic form will be admissible in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s based upon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to the same extent and subject to the same conditions as other business documents and records originally generated and maintained in printed form. You may not assign the Terms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Foundation, but Foundation may assign or transfer these Terms, in whole or in part, without restriction. The section titles in these Terms are for convenience only and have no legal or contractual effect. Notices to you may be made via either email or regular mail. Foundation may also provide notices to you of changes to these Terms or other matters by displaying notices or links to notices generally on the Platform.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소재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을 전속적 재판관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법적 청구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파운데이션 이용약관 제12조는 강제중재조항, 배심재판 포기조항, 집단소송 포기조항을 두고 있는데(이용자가 소액 사건 법원에 개별 청구를 하는 것을 제외), 해당 약관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으로서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특히 파운데이션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가 국제사법상 ‘소비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이용자는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파운데이션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다) ‘노운오리진’ 약관<sup>441)</sup> 검토

노운오리진은 영국에 기반을 둔 NFT 플랫폼이다. 노운오리진의 이용약관은 제8조<sup>442)</sup> 및 제10조<sup>443)</sup>를 통해 NFT의 구매가 지적 재산권의 양도로 이어지지 않는 점, NFT 구매자가 원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는 점,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점, NFT 구매자는 단지 토큰의 소유권(우리나라 민법상의 소유권과 일치하는 개념은 아님)을 취득할 뿐인 점을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 내용은 NFT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저작권 양도나 이용 허락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보충조항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NFT 판매자와 구매자가 저작재산권 양도, 이용 허락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약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노운오리진 이용약관 제11조는 서비스, 웹사이트 및 앱에 대한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한 위험은 전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는 점, NFT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이용

---

441) <https://medium.com/knownorigin/terms-of-service-3efae6d0c20f> (최종 업데이트: 2021. 4. 23.)

442) Owning a Token is just like owning a physical artwork, like an original painting or a print. In owning a Token, you understand that n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ontent on the Token are passed on to you from the Artist (including the ability to produce the Content commercially or create merchandise from the Content).

443) If you buy a Token on the App:  
you do not acquire an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Content, but instead you receive ownership (or title) of the Token. You have the right to display the Token and resell it to another person if you wish;  
the original artist of the Content does not give up any copyright in the Content, meaning that you cannot prevent the original artist from using the Content for further commercial work; and  
you have no right to use the Content for commercial purposes.

사의 앱 사용과 관련하여 노운오리진이 이용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 서비스의 운영상의 문제에 대한 위험을 이용자가 인식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의 운영에 관하여 노운오리진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과 같은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운오리진의 책임을 제한하는 약관조항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노운오리진 이용약관 제13조<sup>444)</sup>는 이용자가 노운오리진에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노운오리진에게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고, 콘텐츠에 대한 저작인격권을 포기하며, 노운오리진과 재실시권자 및 양수인에 대해 이용자가 콘텐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이용자가 콘텐츠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심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노운오리진 이용약관 제18조는 노운오리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연 또는 중단, 서비스에 액세스하거나 연결하여 얻은 바이러스 또는 기타 악성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모든 종류의 결함, 버그, 오류 또는 부정확성,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하드웨어 장치 손상 등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용약관 제18조는 또한 노운오리진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책임 발생 12개월 전 이용자가 노운오리진에게 지불한 수수료 또는 100파운드 중 큰 금액으로 배상액이 제한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노운오리진은 이용약관 제20조에서 영국 법원에 ‘비독점적’ 재판관할이 있고 이용자는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함으로써,

---

444) When providing Content, you grant us a non-exclusive, worldwide, perpetual (or for the duration of any copyright or other rights in such Content), irrevocable, royalty-free, sublicensable (through multiple tiers) right to use the Conte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creating and using derivative works), and you authorise us to exercise any and all copyright, trademark, publicity, database or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you have in or to the Content in any media known now or developed in the future. Further,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under applicable law, you waive your moral rights in the Content and promise not to assert such rights or any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you have in the Content against us, our sublicensees or our assignees.

재판관할과 관련하여 다른 NFT 플랫폼들과 사뭇 다른 조항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사법 제2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국내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노운오리진 회원은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국내 법원에 노운오리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실질적 관련성 판단 국면에서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 라) ‘니프티게이트웨이’ 약관<sup>445)</sup> 검토

니프티게이트웨이는 미국 뉴욕주에 기반을 둔 NFT 플랫폼이다. 앞서 살펴본 오픈씨, 파운데이션 등과 마찬가지로 니프티게이트웨이의 이용약관에서도 광범위한 면책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과 같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들이 발견된다. 가령 니프티게이트웨이 이용약관 제21조<sup>446)</sup>는 서버 장애, 데이터 손실, 바이러스, 피싱, 무차별 공격, 플랫폼의 취약성, 개발자나 대표자의 보고 해태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니프티게이트웨이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니프티게이트웨이에 책임이 없다는 광범위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단 이용약관 제17조에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온라인 거래의 본질적인 보안 위협을 수용하며 니프티게이트웨이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보안 위반에 대해 니프티게이트웨이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규정 또한 존재하는바, 니프티게이트웨이에 중대한

445) <https://www.niftygateway.com/termsfuse> (최종 업데이트: 2022. 9. 20.)

446) WE WILL NOT BE RESPONSIBLE OR LIABLE TO YOU FOR ANY LOSS AND TAKE NO RESPONSIBILITY FOR, AND WILL NOT BE LIABLE TO YOU FOR, ANY USE OF NIF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LOSSES, DAMAGES OR CLAIMS ARISING FROM: (1) USER ERROR SUCH AS FORGOTTEN PASSWORDS, INCORRECTLY CONSTRUCTED TRANSACTIONS, OR MISTYPED ADDRESSES; (2) SERVER FAILURE OR DATA LOSS; (3) CORRUPTED WALLET FILES; (4) UNAUTHORIZED ACCESS TO APPLICATIONS; (5) ANY UNAUTHORIZED THIRD PARTY ACTIVITI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USE OF VIRUSES, PHISHING, BRUTEFORCING OR OTHER MEANS OF ATTACK AGAINST THE SITE OR NIFTIES.

Nifty Gateway is not responsible for sustained losses due to vulnerability or any kind of failure, abnormal behavior of software (e.g., wallet, smart contract), blockchains, or any other features of Nifties. Nifty Gateway is not responsible for sustained losses due to late reports by developers or representatives (or no report at all) of any issues with the blockchain supporting Nifties including forks, technical node issues or any other issues having fund losses as a result.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니프티게이트웨이 책임을 지는 보안 위반 사항과 니프티게이트웨이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니프티게이트웨이가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보안 위반 사항이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한 니프티게이트웨이 이용약관 제25조<sup>447)</sup>는 강제중재조항, 배심재판 포기조항, 집단소송 포기조항 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으로서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편, 니프티게이트웨이 이용약관은 다른 NFT 플랫폼들과 다르게 전속적 재판관할 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경우 국제사법 제2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국내에 일상거소를 두고 있는 니프티게이트웨이 회원은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국내 법원에 니프티게이트웨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실질적 관련성 판단 국면에서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다.

#### 마) ‘슈퍼레이어’ 약관<sup>448)</sup> 검토

슈퍼레이어는 미국 뉴욕주에 기반을 둔 NFT 플랫폼으로, 거래 대상 NFT에 관하여 엄격한 큐레이션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슈퍼레이어는 ‘슈퍼레이어 저작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및 정책’ (이하 ‘저작권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이용약관에 통합시키고 있는데,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슈퍼레이어를 이용하는 NFT 판매자(Artist)와 구매자(Collector)가 준수하여야 할 저작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가령 저작권 가이드라인은 NFT의 소유권과 저작권이 별개라는 점, NFT 판매자가 서면으로 저작재산권 양도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해당 권리가 NFT 판매자에게 유보된다는 점, NFT 판매자가 기본적으로 모든 독점적 권리를 보유하고 구매자는 합법적으로 구입한 NFT에 관한 재산상의 이익만 보유한다는 점, NFT 구매자는 작품의 사본을 판매하거나, 작품에 기초한 추가 NFT를 발행하거나, 작품에 대

---

447) You agree that any dispute or claim relating in any way to: your access, use, or attempted access or use of the Site; any products sold or distributed through the Site; or any aspect of your relationship with Nifty Gateway will be resolved by binding arbitration, except that (1) you may assert claims in small claims court if your claims qualify; and (2) you or Nifty Gateway may seek equitable relief in court for infringement or other mis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trademarks, trade dress, domain names, trade secrets, copyright, or patent). You agree that any such arbitration shall be settled solely and exclusively by binding arbitration held in New York, New York, administered by JAMS and conducted in English, rather than in court.

You understand that by agreeing to this Arbitration Agreement, you and Nifty Gateway are each waiving their right to trial by jury and to participate in a class action or class arbitration.

448) <https://www.notion.so/SuperRare-Terms-of-Service-075a82773af34aab99dde323f5aa044e>  
(최종 업데이트: 2022. 3. 8.)



한 접근권을 판매하거나, 작품을 구체화한 파생 작품을 판매하거나, 기타 작품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는 점, NFT 판매자가 동일한 원저작물에 관하여 다수의 NFT를 민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저작권 가이드라인은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이용과 관련한 판단 기준, ‘Blanch v. Koons’ 사건 등을 상세히 소개하며, NFT 판매자가 자신의 독창적인 창작물을 콘텐츠로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경우, 해당 콘텐츠가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거나 공정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과 공정이용 등과 같은 저작재산권 사유가 존재할 여지가 낮은 경우 NFT 판매자가 그러한 콘텐츠를 민팅하는 것을 삼가도록 권유하고 있다. 또한 슈퍼레이어 이용약관은 NFT 구매자인 콜렉터가 가지는 ‘전시권<sup>449)</sup>’의 내용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타 NFT 플랫폼 이용약관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슈퍼레이어 이용약관은 다른 국외 NFT 플랫폼들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을 두고 있는데, 가령 슈퍼레이어 이용약관에는 다른 이용자의 약관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관하여 슈퍼레이어를 모든 책임에서 면제하는 규정<sup>450)</sup>, 슈퍼레이어 사이트로의 접속과 이용, 서버나 유저 데이터로의 허가되지 않은 액세스, 버그와 바이러스 등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슈퍼레이어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슈퍼레이어에게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규정<sup>451)</sup>, 슈퍼레이어 플랫폼에 대한 사이버 공

449)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전시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로 한정되나, 미국 저작권법상의 전시권은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전송권과 같은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450) User Releases SuperRare Labs from Claims Arising From Other Users' Violations of these Terms

The User irrevocably releases, acquits, and forever discharges SuperRare Labs and its subsidiaries, affiliates, officers, and successors for and against any and all past or future causes of action, suits, or controversies arising out of another User's violation of these Terms.

451) TO THE EXTENT PERMITTED BY APPLICABLE LAW, SUPERRARE LABS AND ITS AFFILIATES MAKE NO REPRESENTATIONS OR WARRANTIES ABOUT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CONTENT AVAILABLE ON OR THROUGH THE SITE OR ABOUT PRODUCTS, THE VALUE OR TITLE OF SUPERRARE ITEMS, OR THE CONTENT OF ANY THIRD-PARTY WEBSITES OR SERVICES LINKED TO OR INTEGRATED WITH OUR SITE. SUPERRARE LABS AND ITS AFFILIATES WILL HAVE NO LIABILITY FOR ANY: (A) ERRORS, MISTAKES, OR INACCURACIES OF CONTENT; (B) PERSONAL INJURY OR PROPERTY DAMAGE RESULTING FROM YOUR ACCESS TO OR USE OF THE SITE OR CONSUMPTION OF ANY PRODUCTS; (C) ANY UNAUTHORIZED ACCESS TO OR USE OF OUR SERVERS OR OF ANY PERSONAL INFORMATION OR USER DATA; (D) ANY INTERRUPTION OF TRANSMISSION TO OR FROM THE SITE; (E) ANY BUGS, VIRUSES, TROJAN HORSES, OR THE LIKE WHICH MAY BE TRANSMITTED ON OR THROUGH THE SITE OR SERVICES BY ANY THIRD PARTY; (F) ANY LOSS OR DAMAGE OF ANY KIND INCURRED AS A RESULT OF THE USE OF ANY CONTENT POSTED OR SHARED THROUGH THE SITE OR SERVICES; OR (G) LOSS OR DAMAGED CAUSED BY ANOTHER USER'S VIOLATION OF THESE TERMS.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OUR COMPANY AND ITS AFFILIATES WILL NOT BE RESPONSIBLE FOR LOST PROFITS, REVENUES, OR DATA, FINANCIAL LOSSES, OR

격이나 운영 또는 기술적 어려움으로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중단 또는 지연될 경우 슈퍼레어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슈퍼레어에게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규정<sup>452)</sup>, 슈퍼레어 이용약관상 슈퍼레어가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액의 한도는 이용자가 12개월 동안 슈퍼레어에 지급한 수수료로 제한된다는 손해배상 범위 제한 규정<sup>453)</sup> 등을 두고 있다. 해당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슈퍼레어 이용약관은 다른 국외 NFT 플랫폼 이용약관과 마찬가지로 강제중재조항, 배심재판 포기조항, 집단소송 포기조항, 뉴욕주 소재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을 전속적 재판관할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약관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으로서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특히 슈퍼레어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가 국제사법상 ‘소비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이용자는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슈퍼레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바) ‘매직에덴’ 약관<sup>454)</sup> 검토

매직에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기반을 둔 NFT 플랫폼이다. 매직에덴 이용약관 제13조는 서버 장애 또는 데이터 손실, 허가되지 않은 액세스, 바이러스나 피싱 등 보안 위협에 대해 매직에덴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매직에덴에게 책임이 존재

---

INDIRECT, SPECIAL, CONSEQUENTIAL, EXEMPLARY, OR PUNITIVE DAMAGES.

452) You acknowledge that the Platform is subject to flaws and acknowledge that you are solely responsible for evaluating any code provided by the Platform. This warning and others provided in this Agreement by SuperRare Labs in no way evidence or represent an ongoing duty to alert you to all of the potential risks of utilizing or accessing the Platform. The Platform may experience sophisticated cyber-attacks, unexpected surges in activity, or other operational or technical difficulties that may cause interruptions to or delays on the Platform. You agree to accept the risk of the Platform failure resulting from unanticipated or heightened technical difficulties, including those resulting from sophisticated attacks, and you agree not to hold us accountable for any related losses. We will not bear any liability, whatsoever, for any damage or interruptions caused by any viruses that may affect your computer or other equipment, or any phishing, spoofing, or other attacks.

453)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HE TOTAL LIABILITY OF OUR COMPANY AND ITS AFFILIATES, FOR ANY CLAIMS UNDER THESE TERMS, INCLUDING FOR ANY IMPLIED WARRANTIES, IS LIMITED TO THE TOTAL AMOUNT YOU PAID TO US IN FEES OVER THE PAST TWELVE (12) MONTHS.

454) <https://magiceden.io/terms-of-service.pdf> (최종 업데이트: 2022. 10. 16.)

하지 않는다는 규정<sup>455)</sup>, 이용자가 매직에덴 서비스를 통해 구매한 자산의 출처, 적법성 및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전적인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규정<sup>456)</sup> 등을 두고 있는데, 해당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 제1호) 및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매직에덴 이용약관 제17조 및 제18조는 다른 국외 NFT 플랫폼 이용약관과 마찬가지로 강제중재조항, 배심재판 포기조항, 집단소송 포기조항, 캘리포니아 주 소재 주법원 또는 연방법원을 전속적 재판관할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약관 조항들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으로서 무효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특히 매직에덴을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가 국제사법상 ‘소비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이용자는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서 매직에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455) EUCLID LABS DOES NOT REPRESENT OR WARRANT THAT ANY CONTENT ON THE SERVICES IS ACCURATE, COMPLETE, RELIABLE, CURRENT OR ERROR-FREE. WE WI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OF ANY KIND FROM ANY ACTION TAKEN OR TAKEN IN RELIANCE ON MATERIAL OR INFORMATION, CONTAINED ON THE SERVICES. WHILE EUCLID LABS ATTEMPTS TO MAKE YOUR ACCESS TO AND USE OF THE SERVICES AND ANY CONTENT THEREIN SAFE, EUCLID LABS CANNOT AND DOES NOT REPRESENT OR WARRANT THAT THE SERVICES, ANY CONTENT THEREIN, ANY NFTS LISTED THEREIN, OR OUR SERVERS ARE FREE OF VIRUSES OR OTHER HARMFUL COMPONENTS. WE CANNOT GUARANTEE THE SECURITY OF ANY DATA THAT YOU DISCLOSE ONLINE. YOU ACCEPT THE INHERENT SECURITY RISKS OF PROVIDING INFORMATION AND DEALING ONLINE OVER THE INTERNET AND WILL NOT HOLD US RESPONSIBLE FOR ANY BREACH OF SECURITY.

EUCLID LABS WILL NOT BE RESPONSIBLE OR LIABLE TO YOU FOR ANY LOSS AND TAKES NO RESPONSIBILITY FOR, AND WILL NOT BE LIABLE TO YOU FOR, ANY USE OF THE SERVI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LOSSES, DAMAGES OR CLAIMS ARISING FROM: (I) USER ERROR SUCH AS FORGOTTEN PASSWORDS, INCORRECTLY CONSTRUCTED TRANSACTIONS, OR MISTYPED WALLET ADDRESSES; (II) SERVER FAILURE OR DATA LOSS; (III) BLOCKCHAIN NETWORKS, CRYPTOCURRENCY WALLETS OR CORRUPT FILES; (IV) UNAUTHORIZED ACCESS TO SERVICES; OR (V) ANY THIRD PARTY ACTIVITIES,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USE OF VIRUSES, PHISHING, BRUTEFORCING OR OTHER MEANS OF ATTACK.

456) YOU BEAR FULL RESPONSIBILITY FOR VERIFYING THE IDENTITY, LEGITIMACY, AND AUTHENTICITY OF ASSETS YOU PURCHASE THROUGH THE SERVICES. NOTWITHSTANDING INDICATORS AND MESSAGES THAT SUGGEST VERIFICATION, EUCLID LABS MAKES NO CLAIMS ABOUT THE IDENTITY, LEGITIMACY, OR AUTHENTICITY OF ASSETS ON THE SERVICES.

## 나. NFT 플랫폼의 불법행위 책임 및 형사책임

NFT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맺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와 NFT 플랫폼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약관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 아닌 불법행위 책임 또는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온라인 갤러리인 데비안아트가 “지금까지 NFT 시장에서 29만 건 이상의 무단 도용과 표절 행위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할 만큼,<sup>457)</sup> NFT 플랫폼에서는 저작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NFT 플랫폼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특정 NFT 플랫폼을 통해 제3자의 저작권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 NFT 플랫폼은 제3자의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 자와 더불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해당 쟁점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디다스 사건’에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판매자로서 직접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전자거래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구체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오픈마켓(Open Market)에서는,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판매 정보가 게시되고 그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러한 상품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운영자에게 상표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하며 “다만 상표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 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 태도, 관련 인터넷 기술의 발전 수준, 기술적 수단의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오픈마켓 운영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상표권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② 오픈마켓 운영자가 위와 같은 게시물로 인하여 상표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고, ③ 나아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해당 판매자가 위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며(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오픈마켓 운영자가

457) The New York Times, Thefts, Fraud and Lawsuits at the World's Biggest NFT Marketplace, 2022. 6. 6.; 연합뉴스, 해킹·사기·도용 범람하는 미국 NFT 시장…거래소는 ‘모르쇠’, 2022. 6. 7.

이를 게을리하여 게시자의 상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하였을 때에는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결이 실시하는 법리에 따르면 ① 권리 침해 NFT의 불법성의 명백하고, ② NFT 플랫폼이 권리자로부터 권리 침해 NFT의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았거나 권리 침해 NFT의 존재를 인식 또는 인식할 수 있었으며, ③ 기술적, 경제적으로 권리 침해 NFT에 대한 관리·통제가 가능하다면, NFT 플랫폼은 권리자에 대하여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NFT를 발행 또는 판매하는 자(직접 침해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최근 선고된 아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이 NFT 플랫폼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 방조죄의 죄책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죄의 경우 대부분 양벌규정이 존재하는바(가령 저작권법 제141조, 상표법 제235조), 방조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NFT 플랫폼도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전략)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웹사이트 서버 등에 업로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면,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실제로 송신하지 않더라도 공중송신권 침해는 기수에 이른다. 그런데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를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가별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전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범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는 그 의도나 양태에 따라서는 공중송신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그 행위자에게 방조 책임의 귀속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터넷에서 원활한 정보 교류와 유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링크 고유의 사회적 의미는 명목상의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행위자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고,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적·계속적으로 제공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과 같이 방조범의 고의 또는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거나 범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후략)

## 다. NFT 플랫폼의 역할

### 1) 스마트 계약과 오라클의 문제

오라클 문제(oracle problem)란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올 때 발생하는 문제를 말한다. 오라클 현상 또는 연결성 문제(connectivity problem)라고도 한다. 오라클은 블록체인 내에서 발생한 스마트 계약이 외부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지 체크하고 이를 지정된 외부 데이터 루트를 통해 공수해 오거나 공수한 데이터를 해당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호환되도록 변경하거나 연산하고 이를 전파하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면,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계약 내용을 미리 프로그래밍하여 블록체인 안에 넣어두고, 이 계약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 내용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스마트 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블록체인 외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sup>458)</sup> NFT 거래 시에도 외부 데이터가 스마트 계약의 한 내용 또는 조건으로 편입 될 경우 오라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조건으로 NFT

458) 해시넷, [http://wiki.hash.kr/index.php/%EC%98%A4%EB%9D%BC%ED%81%B4\\_%EB%AC%B8%EC%A0%9C](http://wiki.hash.kr/index.php/%EC%98%A4%EB%9D%BC%ED%81%B4_%EB%AC%B8%EC%A0%9C) (2022. 9. 19. 방문)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자가 2명이 있는데 NFT 판매자가 “2022년 4월 10일 열리는 정찬성과 볼카노프스키의 UFC 대결에서 정찬성이 이기면 A에게 NFT를 판매하고, 볼카노프스키가 이기면 B에게 NFT를 판매한다.” 는 스마트 계약을 작성했다고 가정해 보자. 해당 경기에서 볼카노프스키가 이겼다면 오라클이 가져온 ‘볼카노프스키가 승리했다는 정보(기록할 외부 정보)’ 를 통해 NFT는 B에게 판매될 것이다. 문제는 누가 ‘볼카노프스키의 승리’ 와 같은 외부 데이터를 입력할 자격이 있는지, 나아가 입력된 데이터의 신뢰성은 누구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지(만약 실제로는 정찬성이 이겼는데 입력된 데이터는 볼카노프스키의 승리라면?)이다.

근본적으로 오라클 문제는 데이터 생성과 입력 주체의 불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첫째, 신뢰성 있는 주체가 데이터를 생성하고 입력하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주체가 신뢰성이 없으면 신뢰성 있는 주체에게 맡겨 이를 보증하는 것이다. 가령 미들웨어 솔루션은 오라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중 하나로서 외부 데이터 입력·생성자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외부 데이터의 신뢰성을 대신 보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sup>459)</sup>

## 2) NFT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분쟁 관련 역할

NFT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에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 ①저작물이면서 예술품인 것, ② 저작물이지만 예술품은 아닌 것, ③ 저작물도 예술품도 아닌 것(가령 책 도시의 최초의 트윗 캡처 사진). 위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희소가치’ 일 것이며, 희소가치가 높다면 디지털 자산이 저작물이나 예술품에 해당하지 않아도 해당 디지털 자산을 민팅한 NFT가 매우 고가에 거래될 수 있다. 문제는 디지털 자산의 저작물성에 관하여 NFT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견해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라 NFT 거래 이후 NFT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령 디지털 자산이 사진의 형태를 가질 경우, NFT 판매자는 메타데이터에 해당 사진의 저작자가 자신임을 기재하고 NFT 판매 정보에 NFT 구매자가 디지털 자산을 어느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사전에 규정해놓을 수 있다. 이러한 구매조건에 따라 NFT 구매자가 NFT를 구매하였는데, 구매 이후 해당 디지털 자산의 이용범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니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sup>460)</sup> 등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디

459) 매거진한경, NFT도 피할 수 없는 ‘오라클 문제’ [비트코인 A to Z], 2021. 11. 22.

460)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데, 사진저작물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

디지털 자산은 사진저작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NFT 구매자는 NFT 판매자의 이용 허락범위와 관계 없이 디지털 자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NFT 구매자는 당초 NFT 판매자가 허락한 이용범위를 넘어서서 디지털 자산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고, NFT 판매자는 이를 저작권법 침해로 문제 삼으려 할 것이다.

이와 달리 NFT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믿고,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해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는 조건으로 NFT를 구매하였는데 알고보니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진이어서 누구나 해당 디지털 자산을 복제, 전송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NFT 구매자와 NFT 판매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NFT 판매자가 디지털 자산을 창작한 자와 동일 인물인지 여부 등은 보장이 가능하나, NFT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이 창작성 있는 저작물인지 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거래당사자가 보장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NFT로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가 NFT 거래에서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경우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의 미충족으로 NFT 거래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언급한 오라클 문제로 인해 ‘디지털 자산이 저작물이 아닐 경우 양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NFT 거래는 무효로 한다’는 식의 스마트 계약을 구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미들웨어 솔루션’은 법원이 아니기에 계약 위반 사유 등 법적 판단의 신뢰성을 보증할 수 없으며, 만약 미들웨어 솔루션이 잘못 판단하여 NFT 거래를 무효로 하는 스마트 계약이 이루어졌다면(일종의 자동화된 ‘특정조건부 계약해제’) 이러한 계약 해제 또한 그 효력이 추후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현실적으로도 구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의 효력 여부, 조건들에 대한 해석을 법적 전문가들이 포진한 권위 있는 미들웨어 솔루션의 결정에 맡기기로 사전에 합의하였다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위한 스마트 계약의 구현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 경우 해당 미들웨어 솔루션은 일종의 민간 ADR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 라. NFT 플랫폼과 보험

### 1) NFT 거래에 있어 보험의 필요성

NFT 아트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되며 유의미한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

다.”



는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자산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험시장은 NFT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NFT 보험 가입 대상, 기존 보험을 통한 부보 가능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sup>461)</sup> 기존에는 경매에서 미술품이 판매되기까지 미술품 보험을 가입했다면, NFT 거래에서는 NFT 거래 플랫폼이 물리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할 수 있어 플랫폼 차원에서의 보험은 불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미술품 보험은 미술품의 물리적 손실이나 손상만을 보상하도록 설계되었는데, NFT 예술 작품들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물리적 손실이나 손상 또한 발생하지 않아 기존 미술품 보험으로 보장하기 어렵다. 오히려 NFT 예술 작품들은 작품의 암호가 분실되거나 해킹당하는 경우 디지털 파일 자체는 존재하는 반면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듯, 사이버 보험은 데이터의 보안, 도난 등을 다루고 있으나,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위험은 물리적 손실(하드 드라이브가 화재로 손상을 입는 경우)이나 직원의 시스템 해킹 등에 그치고 있어 보장 내용이 불충분한 상황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인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MiCA) 법안이 통과되어, MiCA 법안이 시행되는 2024년부터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단일 규제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나, NFT 및 보험에 대한 논의는 제외되었다. MiCA의 제정 목적은 유럽연합의 기존 금융서비스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에 관하여 혁신 및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성 및 금융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MICA 뿐 아니라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도 NFT 보험에 대한 규율 체계는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이다.<sup>462)</sup> 현재 NFT 관련 규정을 내용으로 한 법안은 없고, NFT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논의되고 있다는 점<sup>463)</sup>을 감안할 때, NFT 아트를 포함한 NFT 거래에 대한 보험 정책도 입법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 2) NFT 거래 보험의 어려움

새로이 등장한 디지털 자산을 보험 대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의 높은 변동성, 손실 측정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으나, NFT가 예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비롯하여 향후 미래 산업인 메타버스 분야에서 중요한

461) 손지영, NFT 거래 활성화에 따른 보험의 필요성, KIRI리포트 530호, 보험연구원, 2021

462) 신경희, NFT 규제 동향, 자본시장포커스 2021-09호, 자본시장연구원, 2021

463) 이투데이, 2022.3.17, 가상자산 전문가들, “윤석열 정부, 디지털자산 전담기구 신설해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NFT의 등장을 기회의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sup>464)</sup>

#### 마. 국외 NFT 플랫폼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국외 NFT 플랫폼을 통해 NFT를 구매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NFT 구매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국외 NFT 플랫폼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NFT의 적법성과 진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외 NFT 플랫폼들은 이용약관에서 ① 플랫폼은 NFT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고, ② 구매자가 NFT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NFT의 적법성 및 진위성 등을 확인할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③ 플랫폼은 판매되는 NFT의 적법성과 진위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국내 소비자가 오픈씨와 같은 국외 NFT 플랫폼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판매자로부터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로 생성된 불법 NFT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를 대상으로 민사상 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대금반환을 청구하거나, 기망을 이유로 사기죄의 죄책을 물어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픈씨와 같은 국외 NFT 플랫폼은 정당한 권리자(가령 저작권자)의 신고가 있으면 불법 NFT를 바로 삭제할 뿐이며, 불법 NFT를 구매한 구매자에게 매매대금 환불이나 보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sup>465)</sup> 오픈씨는 그간 발행된 NFT 80% 이상이 불법 복제 작품과 가짜 수집품, 스팸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구매자의 입장에서 판매자 및 판매되는 NFT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우선 NFT 판매자의 공식 홈페이지, 트위터, 디스코드 채널 등을 통해 판매자와 NFT 컬렉션 및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프로젝트의 이력, 거래 내역, NFT 메타데이터, 지갑 기록 등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경우 판매자의 소셜 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직접 연락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것이 권장된다.<sup>466)</sup>

판매자의 신뢰도, NFT의 적법성과 진위성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NFT 구매자에게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가령 NFT 구매자에게 저작권이 양도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작권자로부터 특정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받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저작권이 양도되는 경우보다 구매자가 NFT 콘텐츠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외 NFT 플랫폼

464) Capital Law, “Insuring a New Asset Class: the NFT Problem”, 2021. 7. 16

465) 서울경제, 450만원 주고 산 NFT, 알고보니 '짜퉁'...삭제 후에도 오픈씨는 '모르쇠', 2022. 1. 14.

466) 오픈씨의 경우 특정 NFT 컬렉션이나 프로젝트에 파랑색 인증 마크(Verified Collection)를 부여하는데, 오픈씨에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해당 인증 시스템의 목표를 “오픈씨에서 사칭과 위조 작품의 판매를 방지하는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오픈씨로부터 인증을 부여받은 NFT 컬렉션은 제작자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구매 리스크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에서 판매되는 NFT의 경우 콘텐츠를 이용 가능한 범위나 조건이 판매자의 공식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 채널에 기재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이용 가능한 범위나 조건에 불명확한 부분이 존재할 경우 판매자의 소셜 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직접 연락하여 구매자의 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전시권’ (rights to display)과 같은 법적 용어의 경우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전시권의 대상은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에 한정되나, 미국 저작권법상 전시권의 대상은 건축저작물과 음반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이므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 것이 미국 저작권법상 ‘전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SNS나 홈페이지, 메타버스를 통한 저작물 전시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나, 미국 저작권법상 ‘전시’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일부 법적 용어는 각 나라별 저작권법상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적 용어에 구애받지 않고 구매자가 저작물을 이용 가능한 상황, 조건, 범위 등의 내용을 판매자로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이 구매자가 판매자 및 NFT와 관련하여 사전에 여러 정보를 확인하고 NFT를 구매하였음에도 불법 NFT였음이 사후에 드러날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매자는 자신이 보유한 NFT가 삭제되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구매자는 1차적으로 불법 NFT를 판매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불법 NFT 판매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일 경우 시간, 비용, 절차적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매자는 2차적으로 불법 NFT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국외 NFT 플랫폼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는데, 국내 구매자가 국제사법상 ‘소비자’에 해당할 경우, 구매자와 국외 NFT 플랫폼 사이에 체결된 이용 계약(이용약관)은 국제사법 제42조의 소비자계약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외 NFT 플랫폼이 국외법원에 전속관할을 부여하는 약관 조항을 두었다라도, 국내 구매자는 국제사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국외 NFT 플랫폼을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내 이용자가 국제사법상 ‘소비자’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의 일상거소지법의 강행규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으므로(국제사법 제47조 제1항),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에 따라 국외 NFT 플랫폼의 약관에 대한 내용통제가 가능한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 NFT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규정된 광범위한 면책조항들은 불공정 약관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외 NFT 플랫폼에 불법 NFT 관리와 관련하여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국내 구매자는 국내 법원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VI. NFT 아트의 과세 쟁점

### 1. NFT의 유형과 과세 쟁점

#### 가. NFT의 유형

NFT(Non Fungible Tokens, 대체불가토큰)는 작품과 구매자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해 디지털 자산으로 바꾸는 암호화 기술이나 그 결과물을 말한다. NFT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매개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떠한 결과물로 보는 경우 NFT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과세 여부, 과세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 NFT 과세 쟁점은 종전 전통적인 과세 체계 어디에 해당하는지 문제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NFT 과세에 대하여 종전과 특이한 과세 쟁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NFT를 가상자산과 동일한 것과 다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NFT를 가상자산의 하나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한 부분이 가상자산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NFT가 가상자산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이 아닌 NFT가 증권형, 실물형, 기타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결국 NFT를 가상자산형, 증권형, 실물형, 기타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 나. NFT 유형별 과세 쟁점 개관

앞에서 살펴본 NFT 아트의 유형별로 NFT 아트의 과세 쟁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다만, 특정의 NFT 아트에 대하여 위 유형별 중 여러 가지 성질이 혼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막상 과세 단계에서 세법적인 판단이 일도양단식으로 쉽게 내려지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 1) 가상자산형

가상자산형의 경우, 그동안 세법상 과세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지속되었다. 그러한 논란 끝에 과세당국에서 가상자산 자체에 대해서는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인정

되었고,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입법적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가상화폐 등과 같이 일반적 가상자산 과세와 같이 취급한다.

## 2) 증권형

증권형의 경우 이를 주식, 회사채 등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주식, 회사채의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 대상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 과세액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권형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유가증권으로 보는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원천설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열거되지 않는 한 과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NFT가 증권형의 성격을 갖더라도 실제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엔화스왑이라는 금융상품이 등장했을 때 기존의 소득세 과세 체계하에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를 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과세 근거를 마련한 입법적 보완이 있었다. 결국 사업소득의 경우가 아니라면 증권형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해석론이 아닌 입법론의 문제일 수 있다.

## 3) 실물형

실물형의 경우에는 특히 미술품 자체나 미술품과 유사한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다. NFT아트로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들은 실물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바, NFT가 아닌 일반 미술품에 대한 과세 문제를 NFT 아트에도 그대로 적용할지가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 4) 기타형

기타형의 경우에는 가상자산형, 증권형, 실물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의 분류라 할 수 있다. 심지어 기타형 자체에 대하여 자산성이 인정될 것인지도 논란이 될 것이다.

## 다. 과세 논의 시 유의사항

NFT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매개로 한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NFT에게

는 자산성이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건의 범주에서 어떻게 불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유체물뿐만 아니라 무체물도 물건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민법 제98조에서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무체물이 물건은 아니며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만이 법률상의 물건 속에 포함된다. NFT를 물건의 범주에 넣을지에 대한 논의이다. 권리도 무체물의 전형적인 것이지만, 우리나라 민법상은 물건 이외의 재산이라 할 수 있다. NFT를 물건과 권리 등 어떻게 불지도 과세상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는 재산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미술품 NFT를 구매하는 경우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로 결제하는 경우 NFT 자체와는 구분되는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라는 잣점이 나타나게 되므로 NFT의 결제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의 과세상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그리고 NFT 과세를 논의함에 있어 이미 만들어진 NFT라는 결과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NFT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단계에서 일종의 재산이 아니라 용역 제공에 대한 과세가 논의될 수 있다. 종전 과세체계에서 NFT는 어떻게 과세될 것인지, 아니면 종전 과세체계의 어디에 포함시킬지 또는 별도 과세체계가 필요한지 등을 논의해야 하므로, NFT 과세에 있어 해석론과 입법론을 구별해야 한다.

## 2. NFT 아트의 유형별 과세 검토

### 가. 가상자산형

NFT가 가상자산이라고 한다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적용된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 끝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기로 입법적으로 결정된 바 있다. 가상자산을 통화로 볼 것인지(가상화폐로 지칭), 자산으로 볼 것인지 그 법적 성격부터 논란이 되었지만, 후자로 입법적 해결되었다.

#### 1) 가상자산 관련 기타소득

한편 당초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하기로 했으나 2021년 12월 여야는 과세 인프라, 투자자 보호 등 제도 미비를 이유로 과세를 1년 유예시켰다. 2023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으로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 21.12.)에 따

라 ' 23. 1. 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제8호 다목). 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여기서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다(특금법 제2조제3호). 제외대상에는 ①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②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④ 전자등록주식 ⑤ 전자어음 ⑥ 전자선하증권 ⑦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등이 있다.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이러한 특금법상 규정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금법에서 NFT를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따라 NFT에 대한 과세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이때 특금법 자체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의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등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2020년 3월 위와 같이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거래내역 구분관리조치, 특정 거래 보고의무, 고객 확인의무,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Travel rule) 등을 규정하는 개정안 바 있다. 시행은 2021. 3. 25.부터였다.

다만 여기서 유념할 부분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타소득 규정이 도입되기 전이라도 사업소득으로서는 과세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소득세는 법에 열거된 것만을 원칙적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이 등장한 세원(稅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그것이 위법하든 적법하든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 규정이 없었더라도 소득세 과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사업소득의 사업 분류 등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과세는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소득과세를 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가 될 것이다.

위에서 가상자산의 기타소득 과세와 관련해서, 소득금액의 계산은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제37조제1항 제3호).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주소별로 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다만, 2023년 1

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란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은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그 외의 가상자산은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3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로, ' 22.3.31. 기준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이 해당한다.<sup>467)</sup>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제3항). 여기서 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예컨대 BTC마켓의 비트코인, ETH마켓의 이더리움, USDT마켓의 테더가 이에 해당한다.<sup>468)</sup> 기축가상자산 가액의 산정방법은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은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으로,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의 세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세율>에 따른다(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 동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및 제2항). 총수입금액은 양도(매매, 교환) · 대여의 대가를 말한다.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 등을 말한다. 여기에는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도 포함된다. 가상자산 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으로 ①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이동평균법, ② 그 외의 경우는 선입선출법에 따른다.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은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에 따른다. 기본공제(과세최저한)는 연 250만원이다.<sup>469)</sup> 세율은 20%이다. 이러한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의 세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에 기타소득(분리과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70조제2항).

46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2022. 9. 19. 방문)

468)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2022. 9. 19. 방문)

469) 주식과 유사성을 강조하여 5000만원으로 개정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소득세법 64조의3 2항을 개정해 가상자산 소득에도 5000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하고, 3억원 이하의 투자소득에는 20%, 3억원 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이 제시된다 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2/03/271349/> (2022. 9. 19. 방문)



한편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여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된다. 가상자산소득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타목, 제126조 제1항 제3호, 제156조 제16항). 원천징수대상 금액은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인출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가상자산소득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고,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대여·인출로 인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다(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8호 나목).

한편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쟁점가상자산을 거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조세불복이 진행중에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거래차익은 국내 금융계좌를 통해 원화로만 지급되고 있는 점, 회원들이 이 사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쟁점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관리되고 있는 점, 「소득세법」 제156조 및 「법인세법」 제98조에 비추어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가상자산을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고 청구법인에 쟁점거래차익에 관한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고 판단한 바 있다.<sup>470)</sup> 이처럼 새로운 거래가 나타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다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가상자산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NFT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가상자산 관련 상속세, 증여세 관련 평가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시행은 2023년부터)이 소득세법상 마련되어 비교적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고, 소득세가 아니라도 상속,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증여세가 그 이전이라도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법 평가 규정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을 반영한 바 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시행이 2023년 이후로 연기되었지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며 2022년부터 평가액 산정 방법이 변경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가상

470) 조심2020서7378(2022.01.18)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2021. 12. 28. 고시한 바 있다. 이때 고시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두나무 주식회사,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인원이다.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이다. 2022. 1. 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가상자산별로 매일(00:00~24:00)의 총 거래대금을 거래수량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1. 12. 31. 이전 가상자산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 상증세법 평가원칙인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한다.

국세청에서 소개하고 있는 평가사례 두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471)</sup> 가상자산 A가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인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고 2022.2.5. A 가상자산 1개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평가액과 관련하여 (예시1)평가기준일이 ' 22.2.5.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모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방법 (예시2) 평가 기준일이 ' 22.2.5.이고,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업비트, 빗썸, 코인원)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A의 평가 방법에 대한 것이다.

<표 VI-1>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평가 사례(사례1)

평가대상기간					
2022. 1. 5.(기산일)		2022. 2. 5.(평가기준일)		2022. 3. 4.(종료일)	
일자	가상자산 사업장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원)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원)	A가상자산 평가액
2022.1.5.	업비트	A	11,000	12,250*	$\frac{12,250 + \dots + 21,750}{59\text{일}}$ = 15,500원(가정) 2022.1.5.~2022.3.4.까지의 일평균액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 →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간의 일평균액의 평균액
2022.1.5.	빗썸	A	12,000		
2022.1.5.	코빗	A	13,000		
2022.1.5.	코인원	A	13,000		
⋮	⋮	⋮	⋮	⋮	
2022.3.4.	업비트	A	21,000	21,750	
2022.3.4.	빗썸	A	22,000		
2022.3.4.	코빗	A	23,000		
2022.3.4.	코인원	A	21,000		

\* '22. 1. 5. A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 :  $(11,000 + 12,000 + 13,000 + 13,000) \div 4 = 12,250$ 원

471)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 2022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운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 2021.12.28자

<표 VI-2>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평가 사례(사례2)

평가대상기간					
2022. 1. 5.(기산일)		2022. 2. 5.(평가기준일)		2022. 3. 4.(종료일)	
일자	가상자산 사업장	가상자산	일평균 가액(원)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원)	A가상자산 평가액(원)
2022.1.5.	업비트	A	11,000	12,000*	$\frac{12,000 + \dots + 22,000}{59\text{일}}$ $= 15,000\text{원(가정)}$ 2022. 1. 5.~2022. 3. 4.까지의 일평균액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 →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022.1.5.	빗썸	A	12,000		
2022.1.5.	코인원	A	13,000		
⋮	⋮	⋮	⋮	⋮	
2022.3.4.	업비트	A	21,000	22,000	
2022.3.4.	빗썸	A	22,000		
2022.3.4.	코인원	A	23,000		

\* '22. 1. 5. A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 :  $(11,000 + 12,000 + 13,000) \div 3 = 12,000\text{원}$

### 3)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한 국제적 비교

가상자산 시세차익 등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우리나라의 경우 입법적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새로운 논의가 되는 NFT의 과세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의 과세와 혼재되어 있고 이를 가상자산과 달리 과세하려 하는 경우의 입법방식에 참고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에서 정리된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요국의 경우에도 가상자산의 과세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고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례의 경우는 실제 그 시점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해야 한다.

2021년 11월 현재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112개국 중 65개국이다. 이 중 61개국이 과세제도와 함께 가상자산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Financing of Terrorism Laws)」을 적용하고 있다.<sup>472)</sup> OECD의 경우를 보면 38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37개국이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중 35개국이 가상자산 등에 대하여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2023년부터 시행)와 함께 「특정 금

472) The Law Library of Congress, Global Legal Research Directorate,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Around the World: November 2021 Update, p.1, 2021. <https://tile.loc.gov/storage-services/service/l1/lglrd/2021687419/2021687419.pdf> 에서 원문확인 가능하다(2022. 9. 19. 방문). 이는 2018년 보고서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Tax: Income Tax Act art. 21, para. 1, sub-para. 27, <https://perma.cc/KB96BRAU> (in Korean). AML/CFT: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 2, para. 1, sub-para. n, <https://perma.cc/P4BB-ASBA> (in Korean).”로 적고 있다.

용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규제하고 있다. NFT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와는 별개로 NFT의 과세에 대해 가상자산의 경우처럼 국가별 현황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가상자산형 NFT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국가별 대응이 일단 그래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 VI-3〉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비교

구분	법적성질	소득 분류	과세방식	세율	비과세 기준	금융상품 양도 소득과 차이	자본손익 통산 가부	결손금 이월공제
대한민국	무형자산	기타소득	분리과세	20%	250만원	20%, 25% 분류과세	×	×
미국	자산	단기자본이득 <sup>1)</sup> 장기자본이득	종합과세 분류과세	10%~37% 15%, 20%	- <sup>2)</sup> 41,675달러 <sup>3)</sup>	×	○ <sup>4)</sup>	○
영국	무형자산	자본이득	분류과세	10%, 20%	12,300파운드	×	○	○
독일	금융상품	기타소득	종합과세	0%~45%	1년 초과 보유, 600유로 미만	25% 분리과세	×	○
호주	자산	자본이득 <sup>5)</sup>	종합과세	0%~45%	△ <sup>6)</sup>	×	○	○
일본	지급결제수단, 금융상품	잡소득	종합과세	5%~45%	- <sup>7)</sup>	15% 신고분리과세	×	×

주:

- 1) 양도한 자산의 보유기간 1년을 기준으로 단기자본이득과 장기자본이득을 구분함
- 2) 가상자산소득을 종합과세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며 개인별 공제액도 상이하므로 비과세 기준을 일괄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움 3) 개인 및 부부별도는 41,675달러, 부부합산은 83,350달러, 세대주는 55,800달러 이하인 경우 비과세함
- 4) 순자본손실을 연간 3,000달러(부부별도 신고의 경우 1,500달러) 한도로 경상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음
- 5)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자본이득은 50%를 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하여만 자본이득세를 과세함
- 6) 1만 호주달러 이하로 취득한 가상자산이 사적용도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함
- 7) 2,000만엔 이하의 급여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금액이 원천징수되거나 연말조정을 하는 경우 암호자산 거래로 발생한 잡소득 등의 금액이 20만엔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됨(일본 「소득세법(所得稅法)」 제121조<sup>473)</sup>)

473) 임재범,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국회 입법조사처, 2022.5.12., 16면

#### 4) 가상자산 관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부가가치세 여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기재부 예규에서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sup>474)</sup> 국세청 과세기준자문의 경우에도 이에 따르고 있다.<sup>475)</sup>

#### 나. 증권형

NFT 중 그 법적 성격을 증권으로 보는 경우 증권에 대한 세제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증권형 NFT는 사업 내용에 따른 손익 분배의 계약상 권리를 담은 것으로 이를 증권의 속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금융감독 대상이 된다.

소득세의 경우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증권 자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에서 가상자산형 NFT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 소득에 대해 소개했지만, 가상자산의 경우도 금융상품과 차별을 둔 과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논란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증권형 NFT는 더욱이 금융투자소득과 관련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가상자산에 대해 금융투자소득과 차별화하여 과세하는 것과 관련하여, ①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②가상자산소득의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적용할지 아니면 국내 상장주식 등 양도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의 기본 공제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③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 또는 이익을 다른 금융투자손익 등과 통산(通算)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④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금융투자결손금과 마찬가지로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지 등 다툼이 있는데, 증권형 NFT는 위 쟁점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쪽에 가깝다면 확실히 가상자산과 과세상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증권형 NFT의 경우 그 법적 근거만 명확하다면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이고, 기본공제는 5천만원, 그 거래로 발생한 손실 또는 이익을 다른 금융투자

47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2021.03.02)

475) 부가,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313 [법령해석과-735] , 2021.03.04.; 자문법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이하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거래소에 판매하고자 컴퓨터 부품 등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하였다. 질의내용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채굴하여 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손익 등과 통상할 수 있고, 그 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를 허용받을 수 있게 된다. NFT 가격의 등락을 생각한다면 이익만이 아니라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증권형 NFT에 대해 금융투자소득 과세 대상이 될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의에 앞서 금융투자소득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이면 20%, 3억원 초과이면 25%의 누진세율로 분류과세 하게 되었다. 이는 원래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의 변화 등과 관련지어 그 시행 시기에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sup>476)</sup> 시행 시기에 대해 논란이 현재도 계속되고는 있지만, 시행된다면 국내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서 취득 가액 등 필요경비와 5천만원의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다. 그 이전에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상장주식인지, 양도인이 대주주인지 등에 따라 일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하였던 것이 변하는 것이다.

여기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은 주식 등, 채권 등, 투자계약증권의 각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양도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해산으로 발생한 이익과 적격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일정한 분배금,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소득세법 제87조의6, 동법 제150조의2, 제150조의7). 이때 주식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7조의2 제1호). 채권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같은 조 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채무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이자 또는 할인액이 발생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7조의2 제2호). 증권형 NFT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명확하지 않는다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소득이 있어도 과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엔화스왑의 경우 법 개정<sup>477)</sup> 이전의 구법령하에 과세시 대법원에서 과세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바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sup>478)</sup>

476)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513\\_0001870737](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513_0001870737) (2022.6.6. 접속)

477) 2012. 1. 1.부터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를 신설하여 과세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478) 엔화스왑예금은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바꿔 넣어두고 만기가 되면 일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되팔아 원리금을 원화로 돌려주는 예금거래방식이다. 이는 정기예금계약과 선물환계약의 결합이라 할 수 있는데, 선물환율에는 이자율이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예금의 이자라는 실체가 없으나 마치 예금의 이자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당시 소득세법은 예금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위 각 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작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87조의7 내지 제87조의17, 제87조의4 제2항 제1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는 상장주식 장내거래,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 K-OTC 거래,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5천만원을, 채권·파생상품 거래 등 국내 주식 이외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250만원을 각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소득세법 제87조의18, 동법시행령 제150조의24 내지 제150조의26). 증권형 NFT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기본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증권형 NFT의 경우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과세 중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실제 과세 여부 및 과세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받은 이익은 배당소득이 되는 것이고, 이에 반해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소득<sup>479)</sup>이 되기 때문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지급자의 과세를 달리 취급하는 전통적인 세제에서는 주식인지, 채권인지가 과세상 중요한 문제이다. 그 시행 시기가 2023년이 될지가 불투명하게 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이러한 주식, 채권의 구별에 따른 과세상 차이는 줄어들게 된다. 그럼에도 증권형 NFT라 할 때 가상자산형 NFT와는 다른 과세 문제가 생기는 또 다른 유형이라고 하더라도, 증권형으로 볼 때 종전의 금융상품 어느 것으로 볼지에 따라 과세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다. 증권형 NFT의 과세 문제는 이처럼 증권형 NFT라는 새로운 자산 또는 금융상품에 대한 독특한 과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종전의 유가증권에 대한 과세 문제를 어떻게 규율해야 할지를 정하는 그 법적 성격에 따라 과세에 대한 사항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제는 이러한 복잡한 금융상품의 차이를 줄이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개선이라 할 수 있다.

---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환율차이로 발생하는 외환매매이익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아 은행들은 외환매매이익이 비과세라는 점을 이용해 금융상품을 판매해 왔다. 대법원에서는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통해 고객이 얻은 선물환차익은 자본이익의 일종인 외환매매이익에 불과할 뿐 소득세법에서 정한 예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소득세법이 유형적 포괄주의의 형태로 규정돼 있다고 해 이를 근거로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외국통화의 매도차익인 선물환차익에 관해서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이에 대한 전운오·전병욱, “엔화스왑예금 과세사건 판결의 분석”, 조세법연구 16집 3호, 한국세법학회, 2010.12; 김유철, “엔화스왑예금의 과세문제와 그 해결”, 조세와법 5권 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7 참조.

479) 개인이 직접 채권에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개인이 투자한 펀드에서 발생한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 다. 실물형

실물형 NFT는 그것이 디지털 예술 작품이나 실물에 대한 NFT로서 취급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NFT가 디지털 예술 작품 그 자체이거나 이와 관련된 NFT라 할 때 기본적으로 종전 예술 작품에 대한 과세의 적용이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미술품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다.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세금을 매긴다. 미술품은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다.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필요경비율이 80%이다.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필요경비율은 90%로 높아진다. 그리고 살아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비과세다. 소득세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 미술품에는 조각은 빠져 있어 조각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실물형 NFT의 경우 이러한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4항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실물형 NFT를 예술 작품 자체로 보는 경우에도 과세하지 못 할 수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5호에서는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성(「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성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도 기타소득 과세가 됨을 밝히고 있는데, 실물형 NFT를 이 중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본다면 이 역시 기타소득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창작품에 실물형 NFT 자체가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서화·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지만,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한다는 점에서 실물형 NFT를 어디로 편입시킬지에 따라 필요경비의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 라. 기타형

NFT는 다양한 형태로 발급 및 유통이 되기 때문에 가상자산형, 증권형, 실물형 이외에 정형화하기 어려운 것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소득세 체계가 열거된 것이 아니라면 과세하지 못하는 소득원천설에 의한 입장에 따른다면, 그러한 새로운 형태가 사업소득으로 포섭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과세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세금이라는 것이 이익이 생기는 경우만이 아니고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어 NFT에 대한 비용이나 투자손실을 세제상 고려를 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있을 때 과세됨’을 명확히 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sup>480)</sup> 그리고 NFT를 상속이나 증여받는 경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상속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가상자산과는 다른 NFT라면 시가 원칙에 따라 과세될 것이고 이 경우 정확한 시가를 산정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480) 자문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데, 가상자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보유·판매)를 위해 가상자산 채굴에 필요한 전산장비, 환풍기 등을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8.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 신고하면서 “가상자산 채굴을 위한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과세자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가상자산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보유 또는 판매) 등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채굴 장비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16[법령해석과-789](2021.03.08.)).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납세의무자에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한편 게임과 관련된 NFT의 경우처럼 NFT를 활용해 게임 설계와 제작에 참여하고 수익금을 나누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분류 문제, 필요경비의 인정 문제, 원천징수의 문제 등 과세상 검토할 문제가 실무상 문제될 수 있다.

## VII. NFT와 ESG 관련 쟁점

### 1. ESG의 개념과 부상

#### 가. ESG의 개념과 세부 요소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이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가치들로서 ESG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VII-1> ESG의 세부 요소



출처 : 한국거래소 ESG 포털

#### 나.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2020년 연례 서한에서 처음으로 “기후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록이 이 같은 투자 계획을 공개하자 주요 글로벌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발표하는 등 ESG 경영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다.<sup>481)</sup> 투자자들은 비(非) 재무적 성과를 측정하는 ESG 지표에

481) 조선미디어 더나은미래, 블랙록 CEO “기후변화 대응, 장기적 수익 창출의 문제”, 2022. 1. 19.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블랙록은 화석 연료를 사용해 얻은 매출이 25%가 넘는 기업의 채권과 주식을 처분하고 있고, 영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사라신 앤드 파트너스(Sarasin & Partners UK)는 2019년 “자본은 기후 변화의 원인이 아닌 해결책에 투입해야 한다”며 세계 최대 정유 회사 로열 더치셸(Royal Dutch Shell) 보유주 상당 부분을 매각했다.<sup>482)</sup>

세계 최대 IT 및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 2021에서도 ESG가 핵심 테마로 부상하였는데, 보쉬(Bosch)와 GM은 CES 2021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비전과 노력을 비중 있게 소개하며, 단순히 지속 가능이라는 캠페인의 구호를 외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의 구체적인 ESG 전략과 이행 방안, 투자 계획까지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세계 최대의 IT 기업인 애플은 2021년 1월 ESG 경영과 관련된 메시지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인종 평등 및 정의 이니셔티브(REJI, Racial Equity and Justice Initiative)’를 출범하고, 2021년부터 경영진 보너스를 책정할 때 ESG 성과(친환경 활동, 다양성 증진, 보안 등 6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라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sup>483)</sup>

## 2. NFT와 환경

### 가. 환경에 대한 논의 배경

ESG의 요소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환경(E)이다. 기후 변화, 미세먼지, 탄소 배출, 나아가 COVID-19 등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미국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EU가 ‘탄소국경세’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환경문제와 관련한 세계 각국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환경문제는 기업 지속가능성의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sup>484)</sup>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ESG의 환경 요소는 비단 전통적인 산업군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및 NFT 분야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 나. 대규모 전력 사용과 탄소 배출 문제

NFT는 대부분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더리움은 그간 비트코인

482) 토큰포스트, 니프티, NFT 환경 문제에 '탄소상쇄권 매입'으로 대응, 2021. 3. 30.

483) 삼정 KPMG 경제연구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ESG 동향과 시사점”, 2021. 12., 7~9면.

484) 한국거래소 ESG 포털, <https://esg.krx.co.kr/contents/01/01020200/ESG01020200.jsp>, (2022. 9. 19. 방문).

과 마찬가지로 ‘작업증명(PoW)’ 방식을 사용해왔다. 작업증명(PoW, Proof of Work)이란 목표값 이하의 해시를 찾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함으로써 해당 작업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인데, 보통 채굴(mining)을 통해 작업증명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전력 소모가 발생한다.<sup>485)</sup> 또한 이더리움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블록체인에 해당 거래를 기록하게 되므로 NFT가 생성되고 거래될 때마다 상당한 전력 소모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환경파괴의 주범인 탄소배출도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이더리움 기반 NFT 플랫폼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정량화한 ‘크립토아트 풋프린트(cryptoart-footprint)’에 따르면, 2022년 3월 5일 기준으로 NFT 플랫폼 오픈씨(OpenSea)는 거래 약 2000만 건에 탄소 배출량이 5억5000만kg, 또 다른 NFT 플랫폼 라리블(Rarible)은 약 180만 건에 2770만kg, 니프티게이트웨이(Nifty Gateway)는 약 15만 건에 238만kg의 탄소를 배출하는 등 NFT 플랫폼의 탄소 배출량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sup>486)</sup>

<그림 VII-2> NFT 플랫폼의 탄소 배출량

Name	Fees	Transactions	kgCO2
Art Blocks	12,006	244,594	21,531,626
Async	224	27,403	332,657
Foundation	8,602	661,074	14,568,164
KnownOrigin	507	64,326	904,455
Makersplace	1,840	144,163	3,010,383
Nifty Gateway	1,621	151,950	2,385,675
OpenSea	314,515	20,012,086	551,268,013
Rarible	20,930	1,802,971	27,706,539
SuperRare	2,215	320,697	3,172,169
Zora	532	21,660	721,254

출처 : 크립토아트 풋프린트(2022. 3. 5. 기준)

485) 해시넷, ‘작업증명’, <http://wiki.hash.kr/index.php/%EC%9E%91%EC%97%85%EC%A6%9D%EB%AA%85>, (2022. 9. 19. 방문).

486) 테크42, 떠오르는 디지털 자산 NFT, 그런데 환경을 파괴한다고?, 2022. 4. 20.

‘크립토아트 풋프린트’의 정량적 데이터 외에도,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NFT의 전력 소모 문제는 곳곳에서 지적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가수 그라임스는 2월 NFT화된 디지털 아트 컬렉션을 600만달러(약 72억원)에 팔았는데 이와 관련해 영국 가디언이 터키 디지털 아티스트인 메모 아크텐이 만든 계산기 결과를 인용해 그라임스의 NFT 제작과 판매에 소모된 전력은 유럽연합(EU) 거주자의 33년 평균 소비량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분석하는 등 환경 문제가 제기된 전례가 있으며,<sup>487)</sup> 스타벅스가 연내 NFT 사업에 진출하기로 발표하자, 스타벅스 내부 직원이 블록체인이 환경에 부정적이라며, 스타벅스의 NFT 계획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일도 있었다.<sup>488)</sup> 또한 최근 영국의 대영박물관은 라컬렉션(LaCollection)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NFT 분야에 진출하였는데, 탄소 상쇄 웹사이트 Aerial에 따르면 2022년 5월까지 대영박물관이 NFT와 관련하여 배출한 탄소량이 총 819톤에 달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sup>489)</sup>

그러나 NFT와 ESG, 특히 환경문제에 관하여 전력 소모 및 탄소 배출 논란 등 부정적인 논란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최근 NFT 관련 업계에서는 ESG 이슈를 의식하여 환경문제 해결 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항을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다. 블록체인 및 NFT 업계에 부는 親ESG 바람

### 1)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2022년 9월 15일, 이더리움 2.0 더머지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이더리움의 블록 검증 방식은 ‘작업증명(PoW)’에서 ‘지분증명(PoS)’로 전환되었다. 지분증명(PoS, Proof of Stake)이란 해당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에 비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주는 합의 알고리즘으로, 주주총회에서 주식 지분율에 비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것과 유사하다.<sup>490)</sup> 지분증명 방식의 경우 작업 증명 방식보다 전력소모가 급감한다는 환경친화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가상화폐 전문매체인 디크립트(Decrypt)는 지난 9월 15일 블록체인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마친 이더리움의 탄소 배출량이 이전 대비 99.99%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487) 팩스넷뉴스, 게임업계 NFT 환경의 딜레마, 2022. 1. 11.

488) 디센트, NFT 사업 뛰어난 스타벅스…"블록체인, 환경에 부정적" 내부 불만 나와, 2022. 5. 10.

489) 이미디어, 미술관에서도 점차 활기 띠는 NFT...환경문제는?, 2022. 5. 3.

490) 해시넷, ‘지분증명’, <http://wiki.hash.kr/index.php/%EC%A7%80%EB%B6%84%EC%A6%9D%EB%AA%85>, (2022. 9. 19. 방문).

고 보도한 바 있다. 디크립트의 보도는 가상화폐 탄소 배출량 조사기관인 ‘크립토 카본 레이팅 인스티튜트(CCRI, 이하 연구소)’의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 연구소는 기존 시간당 2,300만 메가와트(MW) 수준이었던 이더리움의 전력 소비량이 업그레이드 이후 2,600 메가와트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의 이번 결과는 당초 예상치였던 99.95%를 웃도는 결과로 파악됐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후 전력 소비량이 줄어들어 따라 이더리움의 연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역시 기존 1,100만 톤에서 870톤으로 감소할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sup>491)</sup>

위와 같이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이후 지분증명(PoS) 방식의 전환으로 인해 전력 소모량과 탄소 배출량이 급감함에 따라 NFT의 발행과 거래 시 소모되는 전력과 탄소 배출량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는 NFT가 ESG 가치에 부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될 것으로 보인다.

## 2) NFT 플랫폼과 프로젝트들의 ESG 가치 제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상화폐·NFT 플랫폼들과 다수의 개별 NFT 프로젝트들이 친환경적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NFT가 ESG 가치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시선이 모이고 있다.

가령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 크립토닷컴은, 크립토닷컴 앱과 거래소, NFT 마켓, 디파이(DeFi), 크립토닷컴 체인(Crypto.com Chain) 등 모든 플랫폼에서 가상자산 거래, 입출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을 측정하고 또한 채굴 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상쇄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적용하겠다고 탄소 네거티브의 실현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바하마의 산호초 보존과 같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는 NFT 플랫폼 메타굿(Metagood)의 경우, 첨단 프로세스를 활용해 단일 거래에서 수천 개의 NFT를 생성함으로써 연산 부담을 줄이고, 자선단체들이 지불할 이더리움 가스비(거래 수수료)를 낮추고 있다. 나아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Gemini)가 운영하는 NFT 플랫폼 니프티게이트웨이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배출량에 준하는 탄소 상쇄권(carbon offsets)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sup>492)</sup>

일부 환경단체들은 NFT를 활용해 멸종 위기종 보호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 영국 지부는 지난 2월 ‘자연을 위한 토큰(Tokens For Nature)’이란 이름의 NFT를 공개했다. 판매 수익금은 멸종 위기종 동물과 서

491) 경향게임스, 이더리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99.99% 탈탄소화 성공, 2022. 9. 16.

492) 토큰포스트, 니프티, NFT 환경 문제에 '탄소상쇄권 매입'으로 대응, 2021. 3. 30.

식지 보호에 쓰인다. 남아공 야생동물 스트리밍 채널인 ‘와일드어스(WildEarth)’는 보호구역의 표범·사자·하이에나 25마리를 NFT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판매 수익의 40%는 이들 동물의 서식지 관리인에 전달된다. 브라질 기업 네무스(Nemus)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열대우림을 지키고 있는데, 이미 아마존 열대우림 4만1000헥타르(ha)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NFT 판매 수익금으로 소유지를 추가하고, 지역 원주민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sup>493)</sup>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친환경적인 NFT를 발행할 계획인데, 두나무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 ‘루니버스’는 권한증명(PoA·Proof of Authority) 기술을 사용해 채굴 과정 없이 거래를 처리할 수 있어서 전력 소모 및 탄소 배출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24년까지 ESG 경영 강화를 위해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두나무는, 최근 디지털 아트 전시회 ‘8K Big Picture in FOR: REST전(이하 포레스트 전)’에 출품한 작품을 NFT로 발행한 뒤, 판매 수익금 일부와 수수료 전액을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작은 숲 조성’에 기부하기도 하였다.<sup>494)</sup> 지난 5월 17일에는 멀티체인 기반 아트 콜렉터블 NFT 전문 기업 ‘트레저스클럽’과 AI 기반의 ICT 리사이클 기술 기업 ‘민틔’가 국내 최초 ESG 가치를 담은 멤버십 NFT 발행을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는데, 트레저스클럽이 민틔와 함께 발행하게 될 멤버십 NFT는 기존 민틔의 친환경·사회공헌 활동 및 서비스와 결합한 형태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ESG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sup>495)</sup>

### 3. NFT와 탈중앙화

NFT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은 기존 기업의 불투명한 거버넌스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탈중앙화 금융을 의미하는 DeFi(Decentralized Finance) 및 탈중앙화 자율조직을 의미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등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요소는 ESG의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Ark Invest)의 CEO 캐시 우드(Cathie Wood)는 자발적인 참여와 보상을 전제로 시스템이 운영되는 블록체인은 ESG 경영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sup>496)</sup>

493) 테크42, 떠오르는 디지털 자산 NFT, 그런데 환경을 파괴한다고?, 2022. 4. 20.

494) 비즈니스워치, 숲 전시품 NFT 발행·수익금 녹지 조성 '두나무의 ESG 경영', 2022. 6. 27.

495) MBN뉴스, 트레저스클럽, ESG 가치 담은 NFT로 협력사 글로벌 진출 지원 사격, 2022. 5. 17.

496)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커넥팅랩] ESG경영에 최적화된 기반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2022. 9.



특히 DAO의 경우 자금조달, 투자 등의 모든 활동을 중개 기관 없이 가능하게 하고 그 전체적인 과정을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로 진행하며 공동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형태의 조직으로, (1) 중앙관리자 없이 개인들이 공통 목적을 가지고 모여 투표를 통해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유동적인 온라인 공동체로 계층구조가 없다는 점, (2) 자체적인 토큰을 발행하여 구성원들에게 의결권을 배부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여 투표를 통해 의사 결정보다 수평적인 조직구조, 익명성, 투명성을 가진다는 점, (3) 국경 없이 대규모의 자금을 모집하며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 모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 (4) 구성원은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와 DAO의 자체 토큰의 가치 상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sup>497)</sup> 전통적인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Defi 및 DAO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NFT는 앞서 언급한 Defi 및 DAO와 비교하였을 때 ‘탈중앙화’라는 측면에서 일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큰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디파이 전문 미디어인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NFT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오픈씨(OpenSea), 니프티 게이트웨이(Nifty Gateway), 슈퍼레이어(SuperRare) 등 주요 NFT 플랫폼들은 다른 웹사이트들과 유사한 중앙화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NFT 아트를 거래할 때 NFT 토큰 자체는 블록체인상(온체인)에 저장되나 용량 및 비용 등의 문제로 NFT가 가리키는 디지털 콘텐츠나 메타데이터는 블록체인 밖인 오프체인에 저장되는 경우를 언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디파이언트는 NFT에 회의적인 프로그래머인 존티 웨어링(Jonty Wareing)가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인용하였는데, 존티 웨어링은 NFT가 참조하는 미디어들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많은 것들이 HTTP URL 메타 데이터 파일이나 IPFS 해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 URL들은 위치 기반인 만큼 본질적으로 중앙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중앙화된 공간에 NFT가 의미하는 콘텐츠가 저장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탈중앙화된 P2P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저장하기 위한 프로토콜인 IPFS(InterPlanetary File system)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IPFS에 호스팅되는 파일들은 IPFS 네트워크에 있는 한 노드(가령 중앙화된 NFT 플랫폼의 IPFS 노드)에 의해 의도적으로 호스팅된다는 점에서도 중앙화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한다.<sup>498)</sup>

NFT가 가리키는 디지털 콘텐츠나 메타데이터가 블록체인 밖인 오프체인에 저장

2.

497) 하온누리,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의 현황과 이슈”, 자본시장연구원, 2022, 1면.

498) 디지털투데이, 중앙화 딜레마에 빠진 NFT 소유권의 불편한 진실…대안은?, 2021. 4. 26.

되는 것에서 비롯되는 ‘중앙화’의 우려 이외에, NFT 시장이 판매 측면에서도 중앙화되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 댕레이더(DappRadar) 자료에 따르면, 전체 NFT 판매량의 상당 부분은 벤처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가 지원하는 오픈씨(OpenSea)와 룩스레이(LooksRare)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룩스레이 상의 판매 대부분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토큰 리워드 프로그램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트레이더들이 보유한 NFT를 스스로 사고파는 가장 매매(wash trades)이므로, 실제 NFT 거래는 대부분 오픈씨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NFT 시장에서는 콘텐츠 측면에서도 일종의 2차 중앙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BAYC)을 만든 유가랩스(Yuga Labs)가 개발사 라바랩스(Larva Labs)로부터 작년 NFT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도를 높인 크립토펡크와 그 3D 모델인 미비츠(Meebits), 두 NFT 프로젝트 컬렉션의 ‘브랜드, 예술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IP) 권리’를 인수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sup>499)</sup>

이외에도 2021. 10. 21. 블록체인 오픈소스 분석 기업 문스트림(Moonstream)이 깃헙(Github)에 게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액 투자자, NFT 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구성된 상위 16.71% 주소가 80.98%의 이더리움(ETH) 기반 NFT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주소에는 오픈씨(OpenSea), 니프티게이트웨이 등 NFT 플랫폼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데이터는 2021년 4월 1일부터 9월 25일(약 6개월) 기간 동안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이뤄진 NFT 거래 700만건 이상을 바탕으로 산출됐다. 이는 소수의 사용자가 NFT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로, NFT가 중앙기관의 탈중앙화를 지향하며 탄생한 가상자산 중 하나지만, 역설적으로 소수가 대부분의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중앙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문스트림의 위 보고서는 이 같은 수치에 다른 업계나 시장에서 보이는 현상인 파레토의 법칙, 즉,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규칙이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존재한다고 해석하며, 이더리움 기반 NFT 시장에서도 “소유권의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금융 미디어 인베스팅닷컴도 “이 연구 결과는 소수의 자본이 대다수 NFT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현재 NFT 시장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sup>500)</sup>

499) 코인데스크코리아, NFT 시장은 갈수록 독점으로 가고 있다, 2022. 3. 22.

500) 코인데스크코리아, “NFT 시장, 소수 고래가 80% 차지…불평등 현상 뚜렷”, 2021. 10. 23.

## VIII. 결론

### 1. 본 연구의 성과

NFT미술시장의 기초 조사 및 제도 연구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성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NFT 아트의 정의 및 유형 등에 대한 기초 연구
- NFT 아트 시장의 전반적인 현황 조사 및 구체적인 문제점 파악
- NFT 아트의 저작권법, 세법, 플랫폼, ESG 관련 쟁점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
- NFT 아트 종사자들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 2. 본 연구의 기대성과

#### 가. NFT의 정의, 유형 및 가상자산 해당성

NFT의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입법이 우리나라에서 미비한 상태에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는 경우, NFT 발행인에 대한 규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NFT와 관련하여 영업으로 거래 또는 이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는 특정금융정보법령상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업, 보관·관리, 발행인에 대한 인가·등록 등의 진입규제를 두고 있으며, 가상자산업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시세조종행위금지, 예치 의무(피해보상계약), 손해배상책임 등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NFT 관련 규정을 내용으로 한 법안은 없고, NFT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가상자산 전담 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만약 NFT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NFT 발행인은 모집금액 및 대상에 따라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제출의무, 공시의무 등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기업이 발행한 주식은 아니지만 주식과 비슷한 형태로 거래되며, 저작 청구권을 분할하여 투자자에 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경매처럼 매입하거나 이용자 간 거래를 함으로써 이를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으로 정의한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도 아직 NFT를 가상자산으로 직접 지정한 경우는 거의 없고, NFT의 정의를 내리고 규제 여부를 위한 조사,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나. NFT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방향성

NFT는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을 보이며 디지털 거래의 특성상 전 세계에서 거래되고 있으면서도, 명확한 법적 정의나 성격이 정립되지 않았고 기존 금융거래체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NFT는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할 수도 있고 새롭게 디지털 자산을 창조함으로써 그 가치를 거래하고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NFT 자체가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가상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또는 NFT가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를 표상하는 것으로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포섭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정의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3호),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등 기존 법률에 의하여 이미 규율되고 있어 자금세탁방지 관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적은 항목들을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구조로 가상자산의 범위를 규정한다. 금융위는 NFT가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 3. 향후 전개 방향

### 가. NFT 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 제안

2022년 하반기, NFT 시장은 FTX 사태라는 악재가 연이어 발생하며 크립토겨울인 침체기를 이어가고 있다. NFT는 시장의 유동성과 실제 사용성인 유틸리티를 대중이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특정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에서 활용 가능한 NFT가 또 다른 독자적인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 생태계로 이동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니게끔 하는 상호운용성은 아직 확대되지 않고 있는데, 예컨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NFT는 솔라나나 클레이튼과 같은 여타의 블록체인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한계는 향후 서로 다른 구조를 지닌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인터체인 NFT가 출시되면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단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NFT를 거래하기 위한 멀티체인 기술 또한 현재 개발 중에 있다. 이렇듯 매일같이 새로운 기술이 발전·적용되고 있는 NFT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및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국민체감형 NFT 실전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사업 확대이다.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NFT를 주요 미디어를 통해 불안정한 투기 혹은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도 NFT의 다양한 특성과 이용 방식에 따른 유형 분류를 해두었듯 NFT라는 범주 안에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전달해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디지털 자산 지갑을 설치하고 해킹 및 스캠 방지 방안을 이해하며 메타버스 공간에 자신의 NFT를 전시하는 등 실전 워크숍이 결합된 형태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NFT와 같은 신기술은 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도 빠르고 용어와 방식 자체가 생소한 면이 있어 실제 경험을 통한 이해가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둘째, NFT 기술의 미래 가치에 대한 연구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다. 암호화폐의 가격 급등락과 시장 변동성과 상관없이 블록체인 기술인 NFT는 향후 메타버스에서 디지털자산의 지식재산권을 입증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따라서 단기간 시장의 악재와 뉴스에 요동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NFT 기술의 미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기술의 미래 먹거리로서의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필요한 법령 및 법적 가이드라인, 향후 필요한 규제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예술 시장 관계자들을 위한 NFT 아트 전시 및 교육 지원사업의 마련이 필요하다. 여전히 국내 주요 미술관 관계자 및 예술 시장 종사자들은 NFT 아트에 대한 실전적 경험 및 전반적 이해를 위한 교육 및 자문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현재 국내 NFT 아트 시장은 기존 예술 시장과 괴리된 상태에서 성장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시선을 국외로 돌려보면 최근 열린 마이애미 아트바젤에서 웹3.0과 NFT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등 신기술과 만난 예술 시장을 선점하고 포용하려는 혁신적인 움직임들이 활발하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세계 미술시장의 이목이 한국에 쏠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NFT 아트를 현행 미술 관계자 및 전문가들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및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NFT 아트 거래 시 문제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가령 저작권법적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2022년 6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NFT 거래를 둘러싼 법적 쟁점은 저작권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데이터의 물건성과 관련한 전통적인 민법 쟁점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국제사법, 약관규제법, 세법 등 쟁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적 쟁점을 아우른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기, 탈취, 해킹 등의 여러 문제를 분기별로 조사해 이러한 문제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법적 체계 하에서 논의해나갈 수 있는 연구 협의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협의체에서는 NFT 전문 법조인 뿐 아니라 시장에서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NFT 작가, 기획자, 큐레이터, 기업 관계자 등의 의견이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입법 방향을 더 살펴보자면, NFT가 상이한 성격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명확한 정의를 내려 법적 성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단일 법령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NFT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영역을 개척하고, 메타버스, 게임, 예술품, 저작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만큼 NFT 시장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 시세 조종, 사기 범죄 등 불법행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NFT를 가상자산으로 지정할 것인지, NFT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상이해지므로 FATF의 권고에서와 같이 NFT의 성격과 그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나.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NFT는 상이한 성격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일의적인 정의를 내리거나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듯 NFT의 개념, 유형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으므로, NFT에 대한 법적 규제의 방향성 또한 불명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령 NFT가 민법상 물건인지 여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어떠한 사법적 판단 또는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한 여러 규제 상황은 어느 정도 사례가 축적되고 시간이 지나야 그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법적 규제 방향이 안정화되기 전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한 여러 해석론적, 입법론적 연구를 통해, 앞서나가는 시장의 불안감을 어느 정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NFT를 가상자산으로 지정할 것인지, NFT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상이해지므로 FATF의 권고에서와 같이 NFT의 성격과 그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후속적인 연구,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나아가 규제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 시세 조종, 사기 범죄 등 불법행위의 위험성으로 발생하는 시장의 불안감은 NFT의 개념, 유형에 관한 컨센서스가 생기고 NFT 거래 시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해결 사례, 해석론 및 입법론과 관련한 여러 심층적인 연구가 축적될수록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NFT는 블록체인 기술, 예술과 산업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므로, 기존 지식재산권법 체계에서의 해석론을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 웹3.0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해나갈지에 대해 새로운 사례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기존 법령의 해석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입법론적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월드와이드웹(WWW)의 발전과 관련하여 웹 3.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고 있다. 웹3.0은 블록체인 기술, 탈중앙화 자율조직, 탈중앙화 금융 등 다양한 요소와 연관되어 있는데, NFT 역시 웹3.0과 연관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NFT 아트에 국한된 것이 아닌, 향후 웹3.0 시대에 미래 예

술 시장이 어떻게 변화 및 발전해 나갈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전세계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NFT 아트 시장에 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혁신 사례를 파악하고 국내 상황에 맞는 선도적인 웹 3.0 및 NFT 아트 시장 육성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국내 문헌

#### 가. 논문/보고서

강형구, “NFT 및 메타버스 동향 및 금융업에 대한 시사점”, KIF Working Paper 2022-16, 20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2020.

곽상빈, “대체불가능토큰(NFT) 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지급결제학회지, 13권 2호, 2021.

곽선호, “일본의 대체불가능토큰 시장 동향”, 금융포커스 31권05호, 한국금융연구원, 2022.  
권혁준 외 2인, “NFT의 거래 가능성 및 확장성에 대한 고찰”, 지급결제학회지, 13권 1호, 2021.

김병일,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경희법학 53권 2호”, 경희법학연구소, 2018.

김병일, “NFT 아트와 저작권 이슈”, KISO저널 44호, 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1.

김선명,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문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8.

김진희, “주식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2020.

김현경, “NFT콘텐츠 거래의 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성균관법학 33권3호, 성균관대학교, 2021.

김현경, “저작권 관점에서 NFT에 대한 미국의 관련 법적 검토”,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2021.

문화체육관광부 외 2인,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 2022.

박경신, “NFT 아트를 둘러싼 저작권 쟁점들에 대한 검토”, 계간 저작권 34권3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박설아, “약관의 해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박웅신,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검토”, 한국지급결제학회지 13권 1호, 2021.

박정훈, “NFT를 통한 권리소진 원칙 확장에 대한 재검토”, 저작권 동향 2022 제1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박정훈, “NFT 재판매 수익과 추급권 간의 관계”, 저작권 동향 2022 제2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박지원, “NFT 블록체인 기반 사업화 사례연구 -디지털 자산 영역 확대를 중심으로”,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 논문, 2021.

박지원, “NFT를 통해 유통되는 제너러티브아트의 저작물성 검토”,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이슈리포트, 2022.



박해식, “투자상품으로서 NFT에 대한 우려”, 금융포커스 37권17호, 한국금융연구원 2022.

백승윤 외 3인,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 21권 3호, 한국법학회, 2021.

법무법인 디라이트, “NFT 증권성 인정 여부”, 2022. 8. 19.

빗썸경제연구소, “이더리움, Merge 이후 이렇게 달라진다”, Crypto Insight, 1호, 2022.

삼정 KPMG 경제연구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ESG 동향과 시사점”, 2021.

손지영, “NFT 거래 활성화에 따른 보험의 필요성”, KIRI리포트 530호, 보험연구원, 2021.

서새남, “항저우인터넷법원, NFT 디지털 저작물 거래에 플랫폼의 저작권침해 방조책임 인정”, 저작권 동향 2022 제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석광현, “해외직접구매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소비자의 보호: 국제사법, 중재법과 약관규제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커넥팅랩] ESG경영에 최적화된 기반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2022. 9. 2.

신경희, “NFT 규제 동향”, 자본시장포커스 2021-09호, 자본시장연구원, 2021.

신봉근, “NFT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 NFT의 사법적 성질과 권리의 대상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신상이 외 1인, “가상화폐(비트코인 등)의 과세가능성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19권 5호, 세무학회, 2019.

심민선 외 1인, “NFT 관련 IP 분쟁 현황 및 시사점”, IP Focus 제2022-17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2.

오승규,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 가능성 검토”, 정책연구보고서 2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

윤남순,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의 준거법”, 안암법학 제51호, 안암법학회, 2016.

윤명옥,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 과세방안”, 조세연구 18권 2호, 조세연구포럼, 2018.

윤영진, “디지털 시장에서의 소유권 전쟁의 서막 - NFT가 IP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기술과 법 제17권 제4호,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1.

윤중수 외 1인 “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법조협회, 70권 6호, 2021.

윤현석, “가상화폐의 과세문제”, 법과 정책연구 19권 3호 법정정책학회, 2019.

이경근,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평가 및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9권 4호, 조세연구소, 2020.

이병준,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의 대상과 그 제한”,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95호, 법무부, 2021.

이병준,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 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한국소비자원,

2012.

이순호, “가상자산 규제감독방향”, 주간금융브리프 30권11호, 한국금융연구원, 2021.

이용영, “중국의 블록체인 정책과 NFT 규제 동향”,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2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이종수 외 1인, “한국의 가상화폐-연구동향 및 향후연구 시사점”,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22권 4호, 2021.

이창규, “암호화폐의 소득세 과세 연구”, 조세논총 3권1호, 조세법학회, 2018.

이채율, “가상자산 관련 법제의 개선을 통한 금융투자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장기용,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세무회계연구 64권, 세무회계학회, 2020.

전우정, “맑고 투명한 디지털자산 시장 조성에 관한 연구”, 법조협회, 71권3호, 2022.

전재림, “NFT(Non Fungible Token)을 둘러싼 최근 이슈와 저작권 쟁점”, 저작권 동향 2021 제1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전재림, “CC0(Creative Commons Zero) NFT의 의미와 저작물 가치의 전환”, 저작권 동향 2022 제2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전홍민, “가상화폐의 과세가능성에 대한 초기연구”, 글로벌경영학회학술대회 논문집, 2018.

정승영, “가상화폐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비트코인 사례”, 조세학술논집 31권 1호, 국제조세협회, 2015.

정승영,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 조세학술논집 32집 1호, 국제조세협회, 2016.

정유석, “가상자산소득 신설과 기타소득 유형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 69권, 2021.

정재욱, “NFT에 대한 법적 이슈와 규제”, Digital 365 Vol.13, 한국정보산업연합회, 2022.

조근형, “가상화폐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조세논총 3권 4호, 조세법학회, 2018.

조연하,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 - 저작물성과 저작자 판단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제19호, 한국언론법학회, 2020.

차동준, “가상자산 양도차익의 과세체계 개선방안”, 국제회계연구 98집, 국제회계학회, 2021.

최동배 외 1인, “NFT 미술관의 가능성과 수반되는 법적 문제점”, 법학연구 통권 제68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최재식 외 3인, “NFT 기술 및 정책 동향과 법률적 쟁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Focus, 2021.

최정희,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법학논집 25권 2호, 이화여자대학교, 2020.

코빗 리서치, ‘2022년 가상자산 투자 테마 - Crypto Theses for 2022’, 2021.

코빗 리서치, “Chapter 1. 짧지만 대체불가능한 이야기”, 2022.

코빗 리서치, “BAYC 체인 출시와 아더사이드 NFT의 가치 창출”, 2022.

하은누리,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 동향과 규제 논의”, 자본시장포커스 2021-23호, 자본시장연구원, 2021.

하은누리,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의 현황과 이슈”, 자본시장연구원, 202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디어 업계의 3C 통합 소비 트렌드”, 미디어 이슈 & 트렌드 50호, 2022.

한승수, “글로벌 인터넷 기업과의 계약에 있어서의 약관규제법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소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의 검토 -”, IT와 법연구 제13집, 경북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2016.

한정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와 NFT”, 미디어 이슈 & 트렌드 50호, 2022.

허중 외 1인,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방안 연구”, 상업교육연구 34권 2호, 상업교육학회, 2020.

#### 나. 단행본

김민지, “NFT Art 그 무엇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예술”, 아트북프레스, 2022

김승주, “NFT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50”, 메이트북스, 2022

맷 포트나우 외 1인, “NFT 사용설명서 : 블록체인과 메타버스가 바꿀 거의 모든 돈의 미래, 여의도책방, 2021,

성소라 외 2인, “NFT 레볼루션”, 더퀘스트, 2022,

최형욱,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 한스미디어, 2021,

#### 2. 외국문헌

Ante, Lennart, “The non-fungible token (NFT) market and its relationship with Bitcoin and Ethereum”, 2021.

altcoinbuzz, “Tubby Cats and The NFT CCO Trend”, 2022. 3. 30.

Cointelegraph, “Quentin Tarantino settles Miramax lawsuit over Pulp Fiction NFTs”, 2022. 9. 9.

David Schatsky and Craig Muraskin, “Beyond Bitcoin: Blockchain is Coming to Disrupt your Industry”, Deloitte University Press, 2015.

The New York Times, Thefts, Fraud and Lawsuits at the World’s Biggest NFT Marketplace, 2022. 6. 6.

### 3. 웹사이트

노운오리진	<a href="http://www.knoworigin.io">www.knoworigin.io</a>
니프티게이트웨이	<a href="http://www.niftygateway.com">www.niftygateway.com</a>
매직에덴	<a href="http://www.magiceden.io">www.magiceden.io</a>
닥터그루트	<a href="http://www.drroot.dogesound.club">www.drroot.dogesound.club</a>
댕레이더	<a href="http://www.dappradar.com">www.dappradar.com</a>
디센트럴랜드	<a href="http://www.decentraland.org">www.decentraland.org</a>
렛저	<a href="http://www.ledger.com">www.ledger.com</a>
믹스오디오	<a href="http://www.mix.audio">www.mix.audio</a>
벨리곰	<a href="http://www.bellygom.world">www.bellygom.world</a>
빌리프	<a href="http://www.belifmeetsvdl.com">www.belifmeetsvdl.com</a>
선미야 클럽	<a href="http://www.sunmiya.club">www.sunmiya.club</a>
슈퍼레어	<a href="http://www.superrare.com">www.superrare.com</a>
슈퍼워크	<a href="http://www.superwalk.io">www.superwalk.io</a>
아이엠소피	<a href="http://www.iamsophie.io">www.iamsophie.io</a>
아트토큰	<a href="http://www.nft-art101.arttoken.ai">www.nft-art101.arttoken.ai</a>
업비트	<a href="http://www.upbit.com">www.upbit.com</a>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a href="http://www.upbitcare.com">www.upbitcare.com</a>
에트나	<a href="http://www.etnah.com">www.etnah.com</a>
오픈씨	<a href="http://www.opensea.io">www.opensea.io</a>
쟁글	<a href="http://www.xangle.io">www.xangle.io</a>
제미니	<a href="http://www.gemini.com">www.gemini.com</a>
커먼컴퓨터	<a href="http://www.comcom.ai">www.comcom.ai</a>
코인마켓캡	<a href="http://www.coinmarketcap.com">www.coinmarketcap.com</a>
크립트슬램	<a href="http://www.cryptoslam.io">www.cryptoslam.io</a>
크립토키티	<a href="http://www.cryptokitties.co">www.cryptokitties.co</a>
크립토펅크	<a href="http://www.larvalabs.com/cryptopunks">www.larvalabs.com/cryptopunks</a>
클립드롭스	<a href="http://www.klipdrops.com">www.klipdrops.com</a>
탑포트	<a href="http://www.topport.io">www.topport.io</a>
파운데이션	<a href="http://www.foundaion.app">www.foundaion.app</a>
폴리곤	<a href="http://www.polygon.technology">www.polygon.technology</a>
푸빌리소사이어티	<a href="http://www.puuvillasoiety.com">www.puuvillasoiety.com</a>
NBA Top Shot	<a href="http://www.nbatopshot.com">www.nbatopshot.com</a>
NFTGo	<a href="http://www.nftgo.io">www.nftgo.io</a>
NFTfi	<a href="http://www.nftfi.com">www.nftfi.com</a>